

공군

1986년 제 3 호
〈 통권 198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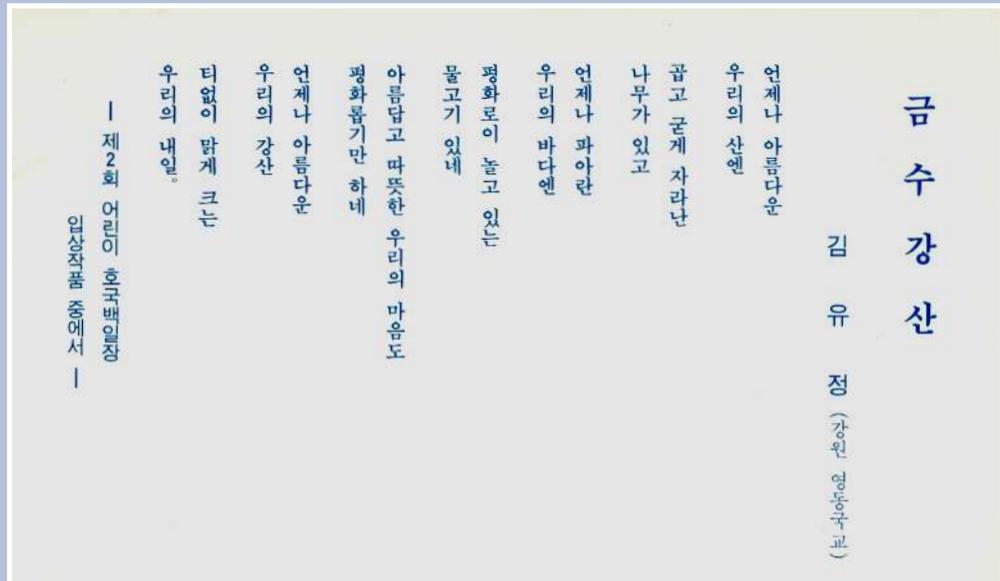
특집

8·15 광복 41년

특별 기고 :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공군력 운영

空軍本部





제 8 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86. 6. 22)



최신예(最新銳) F-16 전투기 「필승 보라매」,
공중전력 증강(空中戰力 增強)의 새 장(場)을 열다. ('86. 6. 27)

『…최첨단(最尖端)의 무기체계와 화력(火力)을 동원함으로써 전쟁초기에 승패(勝敗)가 결정되는 현대전(現代戰)에서 제공권(制空權)의 조기 확보가 초전필승(初戰必勝)을 보장(保障)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필승 보라매」의 취역(就役)은 우리 공군(空軍) 전투조종사의 일당 백(一當百)의 전투기량과 함께 물 샐틈없는 영공방위(領空防衛)의 굳건한 초석(礎石)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대통령 각하 치사(致辭) 중에서-

공군

차례

1986년 제3호
(통권 제 198 호)

- 권두언(卷頭言) 이은봉(李殷鳳) (1)

특별기고(特別寄稿)

- 한반도(韓半島)의 안보상황(安保狀況)과 공군력(空軍力)
운영(運營) 김인기(金仁基) (4)

논단(論壇)

- 항공우주산업(航空宇宙產業)의 육성방책(育成方策)
..... 김동래(金東來) (17)
- 한국독립전쟁론(韓國獨立戰爭論)에 관(關)한 연구(研究)
..... 이남진(李男珍) (28)
- 서태평양(西太平洋)의 군사정세(軍事情勢)와 미국(美國)의
대응전략(對應戰略) 이선호(李善浩) (43)
- 정치적(政治的) 망명자(亡命者)의 국제법적(國際法的)
지위(地位) 정덕모(鄭德謨) (49)

정훈교육자료(政訓教育資料)

- 명예심(名譽心) / 너와 너의 이름을 빛내자 김봉학(60)
- 병영생활 명랑화를 위한 장병 상담과 선도 김동억 (65)
- 신식민주의론(新植民主主義論) 비판(批判) ... 현대이념비교연구회 (71)
- 북괴(北僕) 대남전술(對南戰術)의 변화양상(變化樣相) 김기국 (90)

장병 문예(將兵文芸)

- 수필**
- 생의 조그마한 의미 신준상(98)
 - 하늘에 올 라 임관영(100)
 - FALCON이 나른다 전호명(102)



특별기획(特別企劃) 8·15

-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 ... 오광석(吳光錫) (104)
- 한국지식인(韓國知識人)의 사명(使命)과 임무(任務)
..... 이현희(李炫熙) (110)
- 제(第)2의 광복(光復)으로 가는 길 마욱(馬郁) (117)

군사지식(軍事知識)

- 현대(現代) 화학전(化學戰)의 특성(特性)과 대책(對策)
..... 백창우(白昌雨) (123)
- 소련(蘇聯)의 전략적(戰略的) 기만(欺瞞) 개념(概念)
..... 임충식(任忠植) (133)
- 중공 전투기 개발추세 및 전망 최양수 (141)
- 고성능 항공방송장비 소개 서효창 (153)
- 베르린 공수(空輸) 이귀형 (158)
- 병무행정(兵務行政)에 관(關)한 종합적(綜合的) 이해(理解)
..... 한석규(韓錫圭) (165)

교양(教養)

- 의학 / 하절기 질병과 예방대책 이태용 (177)
- 전사(戰史) / 불멸(不滅)의 보라매 임택순(任宅淳) 대위(大尉)
..... 홍성범(洪性範) (182)
- 음악 / 음악적 청취(聽取)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방법(諸方法)의
고찰(考察) 최인봉(崔仁鳳) (190)
- 역사(歷史) / 구한말(舊韓末) 일(日) · 로(러시아, 露)의
38선(線) 분할음모(分割陰謀) 박현종 (200)



필승 보라매 (F-16) 명명식(命名式) ('86. 6. 27)



참모총장 프랑스정부 훈장 전수 ('86. 6. 12)



필승 보라매 (F-16)의 위용



참모차장 취임식 ('86. 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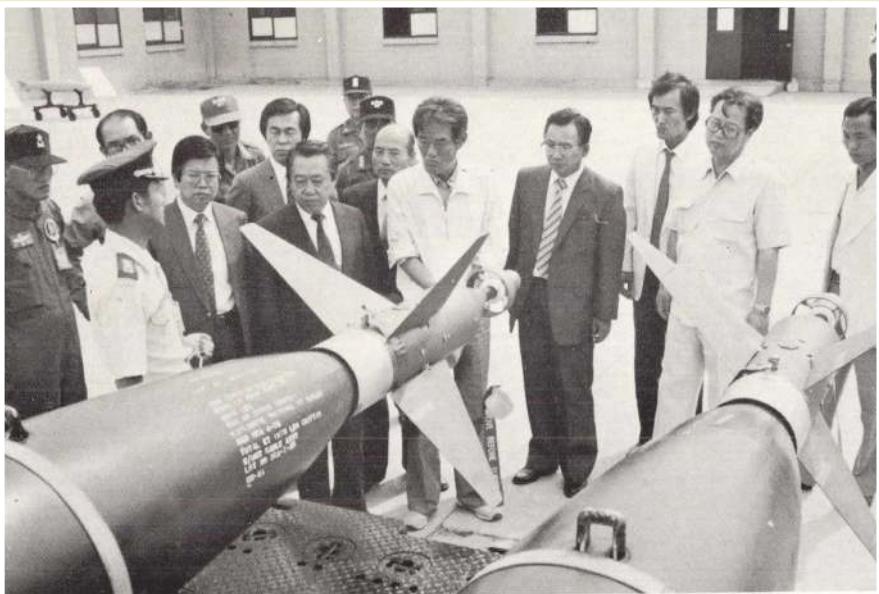


제2회 항공우주 심포지움 ('86. 5. 8 ~ 5. 9)

- 공군사관학교 -



이태리 공사생도 한국 공군사관학교 방문 ('86. 7. 11)



언론인 부대견학 ('86. 6. 12 ~ 6. 13)

- 제 3579 부대 -



6·25 제36주년 반공웅변대회 ('86. 6. 7)

- 공군본부 -



제8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시상식 ('86. 6. 22)

- 공군사관학교 -



정신교육의 날 주제발표 시범 ('86. 6. 26)

- 제5672 부대 -

권두언(卷頭言)



생활(生活)속에
구현(具顯)하는 애국(愛國)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領)
이 은 봉(李殷鳳)

현대인(現代人)에 있어서 애국심(愛國心)이란, 첫째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우선적(優先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감정(感情)의 일시적인 분출(噴出)이 아니라 평생동안 확고(確固)하
고 헌신적(獻身的)인 봉사(奉仕)로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미국(美國)의 위대(偉大)한 정치가(政治家) 스티븐슨(R. Stevenson)이 현대국
가(現代國家)의 국민(國民)으로서 애국(愛國)하는 자세(姿勢)를 간명(簡明)하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옛부터 애국(愛國)하는데 남녀노소(男女老少), 천귀(賤貴)의 구별이 없어, 나라
가 환란(患亂)을 당할 때면 백성 모두가 하나로 뭉쳐 외적(外敵)과 재난(災難)을 극복(克
服)해 왔던 슬기롭고 아름다운 전통(伝統)을 갖고 있다. 애국순절(愛國殉節)은 순교(殉
教)와 함께 인간(人間)의 가장 숭고(崇高)한 정신경지(精神境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
든 사상가(思想家), 역사가(歷史家)가 입모아 말하거나, 우리의 역사(歷史) 속에 이러한
충절(忠節)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韓國人)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애국(愛國)하는 마음은 단순한 공명심(功名心)과 달라서, ‘비범(非凡)’보다는 평범
(平凡)의 지속(持続)’으로, 마치 땅에 떨어져 있는 한 톨의 밀알처럼, 그리고 큰 지붕을 이
고 있는 작은 주춧돌처럼, 일상(日常) 속에 나라와 거레를 향한 헌신(獻身)과 봉사(奉仕)
로 구현(具顯)될 때 보다 값있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공직(公職)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
들, 더우기 우리 군인(軍人)은 이러한 애국애족(愛國愛族)의 가치관(價值觀)을 항상 자신의
의 생활(生活)에 투영(投影)해 보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구미선진(歐美先進) 각국(各國)에서도 국민(國民)들에게 ‘생활(生活) 속의 애
국(愛國)’을 교육(教育)하는데 심혈(心血)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추상적(抽

특별기고(特別寄稿)

한반도(韓半島)의 안보상황(安保狀況)과 공군력 운영(空軍力 運營)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mployment of Air Power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인 기

象的)이고 어려운 이상향(理想鄉)으로서의 애국(愛國)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분수(分數)를 지켜가며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게 하는 최선(最善)의 ‘자아실현(自我實現)’ 상태를 강조하는 교육(教育)이다.

근자(近者)에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教育)도 이같은 맥락(脈絡)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國民的)인 단합(團合)과 민족적(民族的)인 일체감(一體感) 형성(形成)을 위해 범국가적(汎國家的)인 노력이 경주(傾注)되고 있는 이 때, 아직도 국가현실(國家現實)을 올바로 인식(認識)하지 못한 채 외래문물(外來文物) 사조(思潮)의 무분별(無分別)한 수용(受容)으로 말미암아 비록 소수(少數)일지라도 사회 일각(一角)에서 이념적(理念的) 혼란(混亂)과 갈등(葛藤)을 야기(惹起)시킬 때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生存)과 번영(繁榮)마저 누구도 보장(保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내외적인 갈등과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창조(創造)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精神姿勢)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를 생활 속에 구현(具顯)하는 것이 긴요(緊要)하다고 본다.

‘그 교육(教育)의 성자(聖者)인 ‘페스탈로찌’(Pestalozzi), ‘그룬트비히’(Grundwig), ‘달가스(Dalgas)’가 그러하였듯이 ‘모범(模範)’과 ‘동행(同行)’의 실천교육(實踐教育)이 이러한 때 더욱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수호(祖國守護)의 신성한 사명(使命)을 안고 있는 우리 군(軍)이 국민선도적(國民先導的) 역할(役割)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데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고 진취적(進取的)이며 의지로운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모병장병(模範將兵)이 많이 나와 우리 병영(兵營)을 이끌어가고 조국(祖國)의 장래(將來)를 짚어질 때, 평화통일(平和統一)이라는 민족(民族)의 염원(念願)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韓半島)의 안보상황(安保狀況)과 공군력 운영(空軍力 運營)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인 기

* 본고(本稿)의 내용(內容)은 지난 1986년 4월 29일 김인기 공군 참모총장님이 미공군협회(Air force Association)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주최된 범세계 항공우주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주제 발표 전문임.

1. 서론(序論)

주제발표(主題發表)에 앞서 이와 같이 성대(盛大)하고 뜻있는 행사(行事)를 주최(主催)한 AFA(Air Force Association) 관계관(關係官) 여러분께 경의(敬意)를 표(表)하며, 아(亞)·태지역(太地域)의 공군력(空軍力) 운용(運用)에 관(關)해 의견(意見)을 나눌 수 있도록 본인(本人)에게 기회(機會)를 주신 AFA측(側)에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지역(地域) 전반(全般)의 안보(安保)와 공군력(空軍力) 운용(運用)에 대(對)하여는 Bazley장군(將軍)께서 이미 설명(說明)하셨기 때문에 본인(本人)은 한반도(韓半島)를 중심(中心)으로 한 극동지역(極東地域)에 관(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한반도(韓半島)의 안보상황(安保狀況)

한반도(韓半島)는 전쟁(戰爭)이 종식된지 36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 평화(平和)가 정착(定着)되지 못한 채, 불안정(不安定)한 주변정세(周邊情勢)와 더불어 북한공산세력(北韓共產勢力)의 위협(威脅)으로 긴장상태(緊張狀態)가 계속(繼續)되고 있습니다.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mployment of Air Power

1. Prefac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pay my sincere respects to all the members of the Air Force Association who prepared this exciting and significant event, and I thank the AFA for providing me with this opportunity to discuss the role of air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General Bazley has detailed the overall Far Eastern security situation and, in general, the employment of air power, I shall focus, in particular, on the Korean Peninsula.

2.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some thirty years ago that the fighting in the Korean War was halted by a military armistice. However, peace in a real sense has yet to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특(特)히 한반도(韓半島)는 세계(世界)에서 그 유례(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155마일 휴전선(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22만평방킬로미터의 좁은 면적(面積)에 남북한간(南北韓間)에 약(約) 150만(万)의 정규군(正規軍)이 서로 대치(對峙)하고 있어 무력충돌(武力衝突) 가능성(可能性)이 가장 높은 지역중(地域中)의 하나입니다.

또한 한반도(韓半島)는 지정학적(地政學的) 특성(特性)으로 주변열강(周邊列強)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얹혀있는 곳으로서 한반도(韓半島)에서 전쟁(戰爭)이 발발시(勃發時) 세계대전(世界大戰)으로 비화(飛火)될 위험성(危險性)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안정(安定)은 동북아(東北亞)의 안전(安全)은 물론, 아(亞)·태(太) 전역(全域)에 걸친 자유진영(自由陣營)의 안전(安全)과도 직결(直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韓國)의 안보(安保)를 위협(威脅)하는 직접적(直接的)인 요소(要素)는 북한(北韓)으로

부터의 위협(威脅)입니다만, 북한(北韓)과 군사동맹(軍事同盟)을 맺고, 북한(北韓)을 지원(支援)하고 있는蘇聯(소련)과 중공(中共)은 한국안보(韓國安保)에 대한 잠재적(潛在的)인 위협요소(威脅要素)라 하겠습니다.

특(特)히, 蘇聯(소련)은 19세기말(世紀末)부터 그들의 남진정책(南進政策)을 실현(實現)하기 위(為)하여 한반도(韓半島)에 많은 관심(關心)을 가져왔습니다.

Due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n's communist forces, a state of elevated tension continues. An area covering only some 80, 000 square miles, a total of 1.5 million troops of the two opposing regular forces of the South and North are confronting each other along a 155 mile Military Demarcation Line.

Such an unprecedented high degree of military concentration makes the peninsula one of the most conspicuous spots of potential armed conflict in the world. Because of its geo-political location, Korea has never ceased to be in a tug of war among the great powers surrounding it. In the event of an outbreak of hostilities on the peninsula, it follows that Korea would again become the focal point for confrontation between the super powers.

Accordingly,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related to the stability not only of the Far East and Pacific, but also the free world.

In the strictest sense, the north Korean threat is the direct factor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ROK. However, it must also be recognized that the Soviet Union and Red China are latent threat factors as they provide the support which fuels North Korea's belligerence.

Since World War Second, the USSR has expanded vast amounts of capital, energy, and manpower to extend their sphere of influence in the Far East southward. This is readily understood with only a cursory glance at a map. Should the Soviet Union control the whole Korean Peninsula, it would gain a warm water port, thus allowing freedom of movement for its Siberian based air and sea fleets. This eventuality would pose a very real danger to the free world forces of the region.

지도(地圖)를 살펴보면 명확(明確)합니다만, 蘇聯(소련)이 한반도(韓半島)를 그들의 영향권내(影響圈內)에 넣을 수만 있다면 부동항(不凍港)의 확보(確保)는 물론(勿論), 연해주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해(海)·공군세력(空軍勢力)의 자유(自由)로운 활동(活動)이 한반도(韓半島)를 거쳐 동남아세아(東南亞細亞)와 나아가서 인도양(印度洋)까지 팽창(膨脹)하게 되어 지역내(地域內)의 자유진영(自由陣營)에 큰 위협(威脅)이 될 것입니다.

최근(最近) 소련(蘇聯)은 북한(北韓)에 MIG-23, SA-3 및 SCUD-유도탄(誘導彈)을 제공(提供)한 대가(代價)로 원산항(元山港)에 소련군함(蘇聯軍艦)의 기항권(寄港權)과 소련정찰기 및 폭격기(爆擊機)의 북한상공비행권(北韓上空飛行權)을 획득(獲得)하여, 아측(我側)의 군사기지(軍事基地)에 대한 정찰비행(偵察飛行)을 계속(繼續)함으로써 북한(北韓)의 남침도발의욕(南侵挑發意慾)을 고취(鼓吹)하고, 한반도(韓半島)의 긴장(緊張)을 가속화(加速化)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사례(過去事例)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북한(北韓)과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 밀착시(密着時) 북한(北韓)은 도발(挑發)을 자행(恣行)하여 왔습니다. '60년대(年代)의 프레블로호 피랍사건(被拉事件), EC-121 격추사건(擊墜事件), 대규모(大規模)의 비정규전부대(非正規戰部隊) 남파사태(南派事態) 등(等)이 이를 증명(證明)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警戒)해야 할 것은 소련(蘇聯)과 북한(北韓)의 밀착(密着)으로, 소련(蘇聯)의 세력팽창정책(勢力膨脹政策)과 북한(北韓)의 적화통일목표(赤化統一目標)가 상호(相互通) 일치(一致)하여, 소련(蘇聯)이 북한(北韓)을 사주(使嗾), 대리전쟁(代理戰爭)을 야기(惹起) 시킬 경우입니다.

한편, 북한(北韓)은 무력(武力)에 의한 한반도(韓半島)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절대적(絕對的) 목표(目標)로 하여 중공(中共) 및 소련(蘇聯)과 등거리관계(等距離關係)를 유지(維持)하면서, 군사력(軍事力)을 증강(增強)하고 있으며, 최근(最近)에는 기갑사단(機甲師團)을 새로이 편성(編成), 개성주변(開城周辺) 등(等)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부근(附近)에 전진배치(前進配置)하여 군사력(軍事力)의 재배치(再配置) 없이도 기습공격(奇襲攻擊)을 자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is leads to the inescapable conclusion that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related not only to Southeast Asia, but to whole of the Pacific free world and its security and stability.

The Soviet Union has recently supplied north Korea with modern MIG-23 aircraft, SA-3 surface to air missiles, as well as SCUD ground launched missiles. In return, Soviet warships are paying port calls at locations such as Wonsan and are using north Korean airspace for reconnaissance missions.

The increasing number of overflights has clearly heightened tensions in the region as well as provided valuable intelligence data for the North.

As evidenced from the recent past, whenever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moved closer to a political alliance,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have followed by the North : the most notable of these being the Pueblo incident, the downing of an EC-121 aircraft and the insertion of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 guerrillas into the South.

Accordingly, we have to take extreme precaution against the close tie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 coincidence of Soviet expansionism and north Korea's scheme to communize the entire peninsula by military invasion stands reignite armed hostilities. North Korea, whose ultimate goal is to unify the peninsula through military provocation, has maintained a balanced polic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Red China. North Korea has steadfastly improved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established new mechanized armor and artillery corps formations deployed them in the frontline area along the DMZ. Through this forward redeployment of combat forces, they are now in position to mount a surprise preemptive attack without prior mobilization or troop predeployment.

특(特)히 수적(數的)으로 월등(越等)히 우세(優勢)한 전력(戰力)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북한(北韓)은, 우리의 예비전력(予備戰力)이 동원(動員)되고, 미국(美國)의 증원군(增援軍)이 도착(到着)하기 이전(以前)인 5~7일 이내에 기침투(既浸透)된 특수부대(特殊部隊)와 연결(連結), 초전(初戰)에 전세(戰勢)를 결정(決定)지으려는 이른바 “5~7” 일 작전계획(作戰計劃)을 세워 놓고 공격훈련(攻擊訓練)을 강화(強化)하고 있어, 군사적(軍事的) 긴장(緊張)과 도발위협(挑發威脅)이 한층 고조(高潮)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經濟力)에 있어 월등(越等)히 앞지르고 있는 한국(韓國)이 국방력(國防力) 강화(強化)를 추진(推進)할 경우 3~4년(年) 후(後)에는 남(南)·북한간(北韓間)의 군사력(軍事力) 격차(隔差)가 현저(顯著)히 감소(減少)되고, '90년대(年代)에는 역전(逆轉)될 전망(展望)입니다.

따라서 북한(北韓)은 한국(韓國)의 군사력(軍事力)이 북한(北韓)과 균형(均衡)을 이루기 전(前)에 무력남침(武力南侵)을 감행(敢行)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기본노선(基本路線)을 변경(變更)하고 평화공존(平和共存)을 선택(選択)하느냐의 기로(岐路)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북한(北韓)은 서울에서 개최(開催)되는 ‘86아시안 게임과 ’88국제(國際)올림픽대회(大会)의 성공적(成功的)인 개최(開催)를 적극(積極) 저지(沮止), 방해(妨害)하리라 예상(予想)됩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韓)·미(美) 안보회의(安保會議)에서 양국(兩國) 국방장관간(國防長官間)의 일치(一致)된 판단(判斷)과 같이, 앞으로 수년간(數年間)은 한반도(韓半島)에서 북한(北韓)의 도발 가능성(挑發可能性)이 가장 높은 취약시기(脆弱時期)로 판단(判斷)됩니다.

Specially north Korea, which maintains numerical military superiority, has worked out a so-called “5 to 7 day strategy”, and is intensifying the training of military units in offensive operations. This strategy was designed to conclude the war in its initial stage, before the mobilization of the reserve

forces in South Korea and the arrival of the reinforcements from the United States can take place. Accordingly, military tension and the possibility of major provocations are now greater than at any other time.

The present prospect is that South Korea, which excels in economic power, will achieve military balance in three or four years, and following that, will achieve a military edge.

North Korea will have to decide whether they will continue their scheme against the South, before the South achieves military balance, or they must choose to co-exist in peace, discarding their basic policy line held thus far.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Pyongyang will attempt to obstruct this year's Asian Games and the summer Olympics in 1988, both to be held in Seoul.

As Defense Minister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firmed at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held in Seoul in early April, we expect that the next several years will be the most crucial period, a time when the possibility of provocation is very high.

3. 작전상황(作戰狀況) 및 공군력(空軍力) 운영(運營)

남북한(南北韓) 군사력(軍事力)을 비교(比較)해 보면 북한(北韓)은 한국(韓國)에 비(比)해 인구(人口)가 1/2이며, GNP는 1/4입니다만 GNP의 25% 이상(以上)을 군사력(軍事力) 증강(增強)에 투입(投入)함으로써 우위(優位)에 있습니다.

북한(北韓)의 병력(兵力)은 우리의 1.2배(倍)이고, 전차(戰車)는 2.7배(倍), 야포(野砲)는 2배(倍), 함정(艦艇)은 2.4배(倍)의 수적(數的) 우위(優位)에 있으며, 군사력(軍事力)은 780대(台)의 전술기(戰術機)를 보유(保有)하여 한국공군(韓國空軍)의 1.7배(倍)로서 남북한(南北韓)의 군사력(軍事力)은 불균형(不均衡) 상태(狀態)에 있습니다.

작전여건(作戰條件)을 분석(分析)하여 보면 한국(韓國)은 경제력(經濟力)의 70%, 인구(人口)의 30% 가 휴전선(休戰線)으로부터 불과 35Miles에 위치한 수도권(首都圈)에 집결되어 있으므로 방어중심(防禦縱深)이 부족합니다.

더우기 북한(北韓)은 최근 그들 전력(戰力)의 65%를 이미 휴전선(休戰線) 부근(附近)에 배치(配置)함으로써 언제든지 현(現) 위치(位置)에서 기습(奇襲)을 감행(敢行)할 수 있는 준비(準備)가 되어 있어,

전쟁(戰爭)을 유리(有利)하게 전개(展開)시킬 수 있는 주도권(主導權)을 보유(保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취약점(脆弱點)을 이용(利用)한 북한(北韓)의 기본군사전략(基本軍事戰略)은 전형적(典型的)인 전격전(電擊戰)입니다.

그들은 모든 여건(條件)이 자기편(自己便)에 유리(有利)하다고 판단(判斷)되면 우수(優秀)한 화력(火力)과 기갑전력(機甲戰力)으로 기습돌파(奇襲突破)하여 수도권(首都圈) 점령(占領)을 기도(企圖)할 것이며, 소위(所謂) 속도전(速度戰)으로서 해외(海外)로부터 증원군(增援軍)이 도착(到着)하기 전에 전쟁(戰爭)의 종식(終熄)을 기도(企圖)할 것입니다.

3. Strategic Situationand Employment of Air Power

When we look at the peninsula as a whole, we see that north Korea has half the population of the South, but only one quarter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GNP).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orth spends over 25% of their GNP on military hardware and personnel.

North Korean troop strength is 1.2 times that of the South. They also have 2.7

times as many tanks than the ROK, and twice the number of artillery pieces. The north Korean air force comprises more than 780 tactical fighters, 1.7 times the number of ROK air force fighters. As this data shows us, the military power of North and South is in a state of unbalance.

A closer inspection of the South reveals we have some 70% of our economy and 30% of our population centered within the capital area of Seoul. Since to the DMZ lines only 35 miles to the north of Seoul, the small area and short distance complicate our defense strategy.

Further complicating this issue is the fact north Korea has massed more than 65% of its overall military resources in frontline areas along the DMZ. Using their expected tactics, the north would undertake a blitzkrieg type attack directed at our most vulnerable points. Employing this preponderance of military force, a surprise attack could be mounted and sustained by the North without further mobilization.

The ultimate goal of any campaign mounted by the North would be the capture and occupation of our capital, Seoul employing the “5 to 7” plan which I referred to earlier.

Their aim would be to quickly, obtain control of Seoul, and thus the very lifeblood of South Korea, before reinforcement from abroad could arrive.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北韓)은 공격(攻擊)의 주도권(主導權)을 가졌기 때문에 병력(兵力)과 장비(裝備)를 한 두 곳으로 집중(集中)하여 돌파(突破)를 시도(試圖)할 것이므로 전(全) 전선(戰線)에 분산배치(分散配置)되어 있는 방어측(防禦側)으로서는 대단히 불리(不利)한 것입니다.

적(敵)에 비하여 부족(不足)한 방어력(防禦力)을 보완(補完)하는 길은 융통성(融通性)과 기동성(機動性)이 우수(優秀)한 공군력(空軍力)의 투입(投入)입니다.

따라서 개전초기(開戰初期)에 우리 공군(空軍)은 적(敵) 지상군(地上軍)의 공격(攻擊)을 저지(沮止), 속도(速度)를 둔화(鈍化)시킴으로써 우리 지상군(地上軍)이 전력(戰力)을 재정비(再整備)하고 예비군(豫備軍)을 동원(動員)하여 반격작전(反擊作戰)의 기회(機會)를 조성(造成)토록 집중적(集中的)인 CAS와 BAI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即), 적(敵) 지상군(地上軍)의 침투속도(浸透速度)를 둔화(鈍化)시켜 반격작전(反擊作戰)의 여건(与件)을 조기(早期)에 조성(造成)하고 미공군(美空軍) 지원전력(支援戰力)의 성공적(成功的)인 전개(展開)를 보장(保障)할 수 있는 상황(狀況)으로의 전환(轉換)이 적(敵)의 정규전(正規戰) 도발(挑發)에 대응(對應)할 수 있는 일차적(一次的)인 과제(課題)인 것입니다.

지상군(地上軍)을 지원(支援)하기 위하여 물론 제공권(制空權)이 확보(確保)되어야 하는데 이런 작전(作戰)들은 기상(氣象)만 좋으면 큰 문제(問題)가 없을 것입니다.

The primary problem in defending against such an attack is knowing exactly where, along such a massive front, the attack will be concentrated. Only through the employment of air power can we hope to fill this void and turn the tide of battle.

Accordingly, the early stages of the conflict will be earmarked with gaining and maintaining air superiority and with close air support and battlefield air interdiction missions to neutralize enemy ground troops and movements while our own forces are realigned, and reserves mobilized, to begin a counter attack.

The gaining of air superiority is the prerequisite to support of ground forces in a successful campaign, and we are confident this will be achieved.

However, operations in adverse weather and at night are areas where we need added capability. We must modernize to conduct continuous air operations in weather and at night, and then train our forces to accomplish them.

그러나 기상(氣象)이 불량(不良)하거나 야간(夜間)에는 문제(問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천후(全天候) 및 야간(夜間)에 어떻게 지속적(持續的)인 공군작전(空軍作戰)을 수행(遂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研究)와 훈련(訓練)이 필요(必要)합니다.

다음에 예상(豫想)할 수 있는 적(敵)의 도발(挑發)은 AN-2와 미제(美製) 500 MD Hd기(機)에 의한 비정규군(非正規軍)의 공격(攻擊)일 것입니다.

북한(北韓)은 10만명(萬名)에 달하는 특수전부대(特殊戰部隊)를 보유(保有)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 한국군(韓國軍)과 같은 복장(服裝)과 장비(裝備)를 갖추고 야음(夜陰)을 틀타 침투(浸透)하여 전(全) 국토(國土)를 전장화(戰場化)할 것입니다.

AN-2와 500MD Hel기(機)는 속도(速度)가 느리고 Ground Masking을 이용(利用) 침투(浸透)하기 때문에 큰 위협(威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저속(低速), 저고도(低高度) 항적(航跡)을 어떻게 포착(捕捉)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課題)이며 이 문제(問題)가 해결(解決)되면 하방탐색(下方探索), 하방공격(下方攻擊) 무기체계(武器體系)로서 대비가능(對備可能)할 것입니다만 그 중 몇 %라도 침투(浸透)에 성공(成功)하여 특수군(特殊軍)을 투하(投下)하면 많은 혼란(混亂)이 야기(惹起)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北韓)은 정규전(正規戰)과 비정규전(非正規戰)을 복합(複合) 수행(遂行)할 것이 예상(豫想)되는 바 이에 대한 많은 연구(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역사(歷史)를 돌아보면 기습(奇襲)을 감행(敢行)한 측(側)이 전승(勝勝)을 거둔 예(例)는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습(奇襲)을 당한 측(側)의 국민(國民)의 분노(忿怒)가 고조(高潮)되어 적개심(敵愾心)이 전의(戰意)를 드높임으로써 최후(最後)의 승리(勝利)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격(反擊)을 할 수 있는 시간적(時間的), 공간적(空間的)인 중심(縱深)이 있었습니다.

Without a doubt, our first priority in any conflict is to slow the enemy advancement. We must provide for an early counter attack and ensure a secure and successful deployment of U. S. augmentation forces.

In conjunction with this ground invasion, we expect the North to employ AN-2 Colt aircraft and helicopters to deploy special forces behind our lines to disrupt supply and communication centers.

With some 100,000 special forces troops using the cover of darkness and dressing exactly like our own forces, detection and neutralization will be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 AN-2 and helicopters are slow moving and capable of such low altitude operation.

Without this detection, interception is virtually impossible. This has become our most pressing problem, and one we are working daily to overcome.

With our present look down-shoot down capability, it is likely at this stage that

some infiltrating aircraft will penetrate our defenses and deploy forces. We must counter this threat.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t is rare that an invading force has been the ultimate victor in any protracted conflict. The will to resist, and feeling of outrage among the citizens of the invaded country have led to a fighting spirit and desire to sacrifice which enabled the defending nation to overcome the initial onslaught and be the ultimate victor.

충분(充分)한 시간적(時間的), 공간적(空間的) 여유가 없는 상황(狀況)에서 정규전(正規戰)과 비정규전(非正規戰)을 동시(同時)에 감행(敢行)하여 오는 적(敵)을 효과적(効果的)으로 격멸할 수 있는 공군력(空軍力)의 운용(運用)에 대하여 깊은 관심(關心)과 연구(研究)를 거쳐 새로운 교리(教理)가 발전(發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韓半島) 상황(狀況)에서의 가장 효과적(効果的)인 대처(對處)는 적(敵)의 기습(奇襲)을 사전(事前)에 탐지(探知)할 수 있는 징후판단체제(徵候判斷體制)의 향상(向上)과 정보능력(情報能力)의 과시(誇示)로서 적(敵)의 기습(奇襲)을 억제(抑制)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韓)·미연합(美聯合)으로 적(敵)의 도발징후(挑發徵候)를 사전(事前)에 탐지(探知)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早期警報能力)을 강화(強化)하고, Team Spirit와 같은 대규모 한(韓)·미(美) 연합훈련(聯合訓練)의 규모(規模)를 확대(拡大)하며, 극동지역(極東地域)의 공군력(空軍力), 그중에서도 공격능력(攻擊能力)을 증강배치(增強配置)하는 것은 효율적(效率的)인 억제방안(抑制方案)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공군(空軍)은 지속적(持續的)으로 공군력(空軍力)을 증강(增強)하여 북한(北韓)과 대등(對等) 또는 우위(優位)의 전력(戰力)을 확보(確保)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남(南)·북한(北韓)의 군사력(軍事力) 균형(均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국(美國)의 한국방위의지(韓國防衛意志)와 연합전쟁(聯合戰爭) 억제력(抑制力) 및 방어력(防禦力)으로 전력상(戰力上)의 열세(劣勢)가 보완(補完)되어야 하겠습니다.

4. 결언(結言)

결론적(結論的)으로 북한(北韓)은 여건조성시(与件造成時), 즉 한국(韓國)의 정치사회(政治社會)가 혼란(混亂)되거나, 북한내부정세(北韓內部情勢) 및 미국(美國)의 대한방어의지(對韓防禦意志)가 약화(弱化)될 시(時) 기습공격(奇襲攻擊)을 감행(敢行)하리라 판단(判断)됩니다.

However, here the key word is “protracted”. When the North does cross the DMZ, their intention is to attack and penetrate quickly so as to preclude the chance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In the face of such an adversary, it is clearly evident why we need a more modernized, air force maintained at a high state of readiness.

Here on the peninsula,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deterrence is the enhancement of our early warning and detection systems coupled with a demonstrated capability to employ these systems.

In addition, the continued cooperation of ROK-US forces through joint exercises such as the recently completed Team Spirit '86 and the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free world air power in the Far East will go far to further stabilize the region.

We of the Korean air force pledge to continue our efforts to expand our capabilities until a suitable balance with the North is achieved. However, in the interim, the continued augmentation and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is imperative. Only through our combined deterrent capabilities can we insure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4. Conclusion

As you have seen, the likelihood of the North coming South in the next few years is very high. A perception of weakness in our resolve to fend off such an attack provides the North with additional incentive for military aggression. Such indicators as political or social unrest in South Korea, a weakened U. 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 or a highly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re all possible indicators of an impending military action.

한반도(韓半島)의 안보(安保)는 동북아(東北亞) 안전(安全) 및 나아가서는 세계평화(世界平和)에도 직결(直結)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한반도(韓半島)의 긴장완화(緊張緩和)와 전쟁재발(戰爭再發) 및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위하여 모든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向後) 2~3년(年)은 한국(韓國)의 안보상(安保上) 어려운 시기(時期)로서, 지역내(地域內)의 우방제국(友邦諸國)의 적극적(積極的)인 지원(支援)과 협조(協助)가 요구(要求)됩니다.

극동(極東)의 미공군력(美空軍力)은 더 증강(增強)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내(地域內) 자유진영간(自由陣營間)의 안보협력(安保協力)을 강화(強化)하고 연합훈련(聯合訓練)을 통한 방위의지(防衛意志)를 과시(誇示)하여 한반도(韓半島)를 비롯한 동북아지역(東北亞地域) 안보(安保)에 다같이 노력(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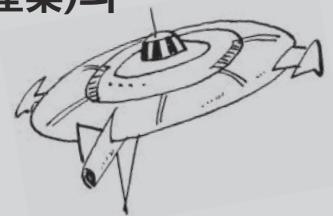
The security of Korea is pivotal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at in turn is vital to world peace. We shall continue to do our utmost to ease tension, deter war and ensure peace in this region.

The next two to three years will be a very critical period for Korea from a security standpoint.

We must continue to demonstrate our defensive will through combined exercises. We should all strive to work together,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Korea, but for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논단(論壇)

항공우주산업(航空宇宙産業)의 육성방책(育成方策)



증령 김 동 래(金東來)
<공본 군참부>

목 차(目次)

1. 서언(序言)
2. 본론(本論)
 - 가. 항공우주산업(航空宇宙産業)의 현황(現況)
 - 나. 미국(美國)의 항공기(航空機) 및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의 검사제도(検査制度)와 수출입(輸出入) 감항성(堪航性) 인정제도(認定制度)
 - 다.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 방안(方案)
4. 결론(結論)

1. 서언(序言)

1983년(年) 3월(月) 23일(日) 레이건 미국(美國) 대통령(大統領)이 TV 연설(演說)을 통(通)해 발표(發表)한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세칭(世稱) “별들의 전쟁(戰爭)(Star Wars)”이라 불리우며 SDI가 구체적(具體的)으로 추진(推進)되고 있음을 세상(世上)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計劃)이 '83년(年)에 14억불(億弗)의 연구개발비(研究開發費)가 투자(投資)되었고 '84~'89년(年)까지 6개년간(個年間) 약(約) 250억불

(億弗)의 예산(予算)이 편성(編成) 추진(推進)되다가 철린저호(号)의 추락으로 계획(計劃)에 차질(蹉跌)을 가져 올 것이나 이러한 구상(構想)은 머지 않아 실현(實現)될 것이다. 이러한 방위구상(防衛構想)은 어린이의 공상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사항(事項)이 현대과학(現代科學)의 발달(發達)로 현실화(現實化)되어 가고 있다.

인류(人類)가 지구상(地球上)에 존재(存在)하면서 전쟁(戰爭)이 없었던 시간(時間)은 불과 수분대(帶)에 불과하며 이 순간(瞬間)에도 지구(地球) 도처에서는 전쟁양상(戰爭樣相)에 관계(關係)없이 계속(繼續)되고 있으며 미래(未來)에 전개(展開)될 전쟁(戰爭)은 과거(過去)와는 달리 지상(地上), 해상(海上)은 물론(勿論) 해저(海底) 및 우주(宇宙)에서 보다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分明)하게 해주는 것은 근대(近代)에 들어 항공공업(航空工業)이란 용어(用語) 대신(代身)에 사용(使用)하고 있는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이란 보다 포괄적인 내용(內容)이 담긴 장래(將來)의 계획(計劃)을 내포(內包)하고 있음을 의미(意味)하며 자국(自國)의 국력(國力)을 대변(代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本) 논설(論說)에서는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의 의의(意義)와 현(現) 실태(實態)를 타국(他國)과 우리 나라와 비교(比較) 검토(檢討), 미국(美國)의 항공기(航空機) 부품검사(部品検査) 제도(制度)와 수출입(輸出入), 감항성(堪航性) 인정제도(認定制度)와 우리 나라의 가입(加入) 필요성(必要性)을 검토(檢討)해 본 후 우리 나라의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 육성방책(育成方策)을 고찰(考察)해 향후(向後)의 발전방향(發展方向)을 필자(筆者) 나름대로 제시(提示)하려 한다.

2. 본론(本論)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은 원자력(原子力) 산업(産業)과 함께 고도(高度)의 안전성(安全性), 신뢰성(信賴性)과 품질보증(品質保証)이 절실(切實)이 요구(要求)되는 산업(産業)이다.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의 육성(育成)을 위(為)해서는 항공기(航空機)나 항공기(航空機) 부분품(部分品)의 해외수출(海外輸出)이 필수적(必須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이들에 대(對)하여 외국(外國)의 감항인정(堪航認定)을 받기 위(為)하여 각(各) 기업체(企業體) 자체적(自體的)인 품질보증(品質保証) 뿐 아니라 체계적(體系的)이고 전반적(全般的)인 국가적(國家的) 품질보증(品質保証)이 요구(要求)될 것이다.

이를 위(為)해 항공기(航空機) 및 관련(關聯) 부분품(部分品)의 설계(設計), 구성(構成)에 대(對)한 평가(評価), 제작(製作) 완성품(完成品)에 대(對)한 품질(品質) 및 성능(性能)의 시험검사(試驗検査)에 대(對)한 것과 외국(外國)의 항공기(航空機) 및 동부품(同部品)에 대(對)한 검사제도(検査制度)와 방법(方法)을 상호비교(相互比較)하여 교역(交易)하는 연구(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의 현황(現況)

(1) 국내현황(國內現況)

군용기(軍用機)의 경우(境遇) 1970년대(年代)까지 최신예(最新銳) 항공기(航空機)를 포함(包含)하여 왕복(往復) 항공기(航空機)에 이르는 모든 창정비(廠整備)나 대수리(大修理) 작업(作業)과 동종기관(同種機關) 및 관련(關聯) 보기(補器)의 재생(再生)(Overhaul)을 수행(遂行)하면서 그 능력(能力)을 신장(伸張)시켜오고 있으며 비록 부분적(部分的)이긴 하나 설계변경(設計變更)에 관련(關聯)된 설계능력(設計能力)과 제작능력(製作能力)을 계속(繼續) 발전(發展) 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자주성(自足性) 확보측면(確保側面)에서 능력개발(能力開發)은 더욱 발전(發展)을 거듭하고 이에 수반(隨伴)되는 고급인력(高級人力)도 점진적으로 증가일로(增加一路)에 있으며 이러한 단계(段階)는 다음 도표(圖表)에서와 같이 창조적(創造的)인 항공(航空) 우주병기(宇宙兵器) 제작(製作)에는 요원한 단계(段階)이나 여타국가(餘他國家)에서도 이러한 과정(過程)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 항공과학(航空科學) 병기(兵器)의 발달과정(發達過程)

Creature (창조(創造))



Idea (착상(着想))



Design (설계(設計))



Production (생산(生産))



Maintenance (정비(整備))



Utilization (운용(運用))



Maintain (유지(維持))

국내(國內) 방산업체(防產業體)는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와 병행(並行)해서 완벽(完璧)한 정비능력(整備能力)을 구비(具備)하여 국내(國內) 방위산업(防衛產業) 소요물량(所要物量)은 물론(勿論) 해외(海外) 물량(物量)도 상당량을 수주(受注)받아 주문(注文)에 응(応)하고 있

으며 K기업(企業)의 경우(境遇) 보유(保有) 기종(機種)의 정비능력(整備能力)을 완전보유(完全保有)하고 있으며 부품(部品)의 제작능력(製作能力)을 확대(拡大)하고 있으며, D기업(企業)의 경우(境遇)는 OFF SET PROGRAM의 일환으로 항공기(航空機)의 주요(主要) 골격(骨格)을 제작(製作) 및 조립(組立)에 응(応)하고 있으며, D공업(工業)의 경우(境遇) 신소재(新素材)로 각광(脚光)받고 있는 복합재료(複合材料)(Composite Material)의 제작(製作), 가공능력(加工能力)을 지니고 있으며, S기업(企業)의 경우(境遇) 내부(内部) 탑재 전자장비(電子裝備) 및 각종(各種) 보기(補器)를 제작(製作) 납품(納品)을 하고 있으며 이 외(外)에도 8개(個) 기업(企業)이 부품(部品)의 제작(製作), 조립(組立), 가공(加工) 및 정비(整備)를 담당(擔當)하고 있으며 이밖에 타사(他社)에서도 선진(先進)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에 대(對)한 인식(認識)과 관심(關心)이 점차(漸次) 고조(高潮)되어가고 있어 육성(育成)에 관한 국내외적(國內外的) 관심(關心)이 집중(集中)되고 있다.

(2) 외국(外國) 항공산업(航空產業)의 현황(現況)

미국(美國)은 현재(現在)까지 기술면(技術面)이나 생산규모(生產規模) 수요(需要)에 있어서 세계(世界)에서 가장 선두국가(先頭國家)이며 소련과 함께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을 주도(主導)해오고 있고 각종(各種) 항공기(航空機) 및 부품(部品)의 총(總) 생산업체(生產業體)가 4천여(千余)에 달(達)하고 있다.

새로운 민간(民間) 항공기(航空機) 개발(開發)에 필요(必要)한 예산(予算)의 25%를 정부(政府)에서 지원(支援)해 주고 있고 주로 민간자본(民間資本)에 의(依)하여 개발(開發)된다.

미국(美國)은 전체(全體) 항공기(航空機) 생산(生產)에 있어서의 민간(民間) 항공기(航空機)의 점유율(占有率)은 다른 나라에 비(比)하여 높고 또 증가추세(增加趨勢)에 있어 비교적(比較的) 군수(軍需)쪽과 균형(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민간(民間) 항공기(航空機)의 판매시장(販売市場)으로써 점유율(占有率)은 현재(現在)의 45% 정도(程度)에서 '90년대(年代) 말(末)까지는 40% 정도(程度)가 될 것으로 예상(予想)되고 있다.

유럽을 보면 영국(英國)을 따르지 못했던 프랑스가 정부(政府)의 강력(強力)한 지원(支援)에 힘입어 지금은 유럽의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을 주도(主導)하는 역할(役割)을 하고 있고 영국(英國)과 합작(合作)의 콩코드 초음속(超音速) 여객기(旅客機), 수직(垂直) 이(離)·착륙기(着陸機)인 HARRIER와 AIR BUS, TORNADO 등(等)을 설계(設計) 제작(製作)하였거나 제작중(製作中)에 있다.

유럽의 항공산업(航空產業)은 민간용(民間用) 보다는 군용기(軍用機)에 더 치중(置重)하여 왔기 때문에 대형(大型) 제트기(機)의 경우(境遇) 전체(全體) 수요(需要)에 약(約)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판매량(販売量)으로는 전체(全體)의 10%에 미달(未達)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이것이 다양(多樣)한 생산기종(生產機種)과 항공기(航空機)를 특정국가(特定國家)의 항공사(航空社)에 적합(適合)하게 설계(設計)하여 범용성이 부족(不足)한 것이 원인(原因)이 있으나

AIR BUS는 이 점(点)을 개선(改善)하여 1979년(年) 미국(美國) BOEING사(社) 다음의 수주(受注) 실적(實績)을 올릴 정도(程度)로 성공(成功)하였다.

1980년대(年代)에 들어서는 유럽의 항공기(航空機) 생산(生產)은 거액(巨額)의 개발비(開發費)를 한 국가에서 부담(負担)하기에 벅차서 프랑스 주도하(主導下)에 공동(共同) 생산방식(生產方式)으로 주로 개발(開發)하고 있다. 이 공동(共同) 생산방식(生產方式)은 미국(美國)의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으로부터 유럽의 항공산업(航空產業)을 지키기 위(為)한 목적(目的)에서 시작(始作)되었고 시장확보(市場確保)에도 유리(有利)한 이점(利點)이 있다. 현재(現在)에는 대형(大型) 민간항공(民間航空) 분야(分野)에서도 공동개발방식(共同開發方式)이 이용(利用)되고 있는데 공동개발(共同開發)의 주도권(主導權), 생산담당부위(生產擔當部位)에 따라 기술수준(技術水準)의 향상(向上)이나 해당국(該當國)의 업계(業界)에 큰 영향(影響)을 주게 되므로 각국(各國) 정부(政府)에서도 강력(強力)한 지원(支援)을 하고 있다.

유럽에 대(對)한 미국(美國)의 공동(共同) 생산방식(生產方式)으로는 일본(日本)과 이태리(伊太利)가 참여(參與)한 최근(最近)의 BOEING-767의 예(例)를 들 수 있다. 일본(日本)은 항공우주산업계(航空宇宙產業界)에 가장 최근(最近)에 나타난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타공업(他工業)에서의 일본(日本)의 급성장(急成長)을 볼 때 항공산업(航空產業) 역시 예외(例外)가 아닐 것으로 예상(予想)되어 앞으로 미국(美國)이나 유럽에 대(對)한 가장 강력(強力)한 경쟁국(競爭國)이 될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그 이외(以外)에 자체(自體) 군용기(軍用機)를 설계(設計) 제작(製作)할 수 있는 스웨덴은 미국(美國)과 공동(共同)으로 COMPUTER 항공기(航空機)의 공동생산(共同生產)을 계획(計劃)하고 있으며 이미 AIR BUS에도 관여(關与)하였고 자체(自體)의 COMMUTER 항공기(航空機)도 제작(製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브라질, 캐나다, 호주도 자체적(自體的)으로 항공기(航空機)를 생산(生產)하고 있다.

나. 미국(美國)의 항공기(航空機) 및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의 검사제도(検査制度)와 수출입(輸出入) 감항성(堪航性) 인정제도(認定期制)

(1) FAA의 개요(概要)

FAA(Federal Aviation Admini Stration)는 현재(現在) 미국(美國) 교통성(交通省) 산하의 독립(獨立)된 기구(機構)로써 민간(民間) 항공기(航空機) 및 부품(部品)의 품질보증(品質保証)을 위(為)한 검사(検査) 뿐 아니라 미국(美國)의 민간(民間) 항공우주(航空宇宙) 시스템의 안전성(安全性), 효율성(効率性) 및 신뢰성(信賴性)을 위(為)한 모든 업무(業務)를 관掌(管掌)하며 새로운 항공기(航空機)의 형식증명(形式證明), 항공종사자(航空從事者)(AIR MAN)에 대(對)한 면허(免許), 비행장(飛行場)의 허가(許可), 안전규정(安全規定)의 제정(制定)과 보강(補強)

또한 항공기술(航空技術) 발전(發展)과 비행안전(飛行安全)의 증진(增進)을 위(為)한 연구개발(研究開發) 프로그램도 촉진(促進) 장려(獎励)하고 있다.

검사제도(検査制度)의 특성(特性)은 효율성(効率性)과 경제성(經濟性)을 들 수 있으며 중요(重要)한 검사(検査)인 최초(最初) 항공기(航空機)의 형식증명시험(形式證明試験) 등(等)은 FAA에서 주(主)로 관여(關与)하나 형식증명(形式證明)이 된 항공기(航空機)는 FAA에서 위임(委任)한 제작회사(製作會社) 위임(委任) 검사관(検査官) (D. M. I. R : Designated Manufacturing Inspection Representative)에 의(依)해 수행(遂行)되는 등(等) 제작회사(製作會社)에 검사업무(検査業務)를 많이 위임(委任)하고 있고 필요(必要)한 수(數)많은 검사(検査)를 형식증명(形式證明)된 설계(設計) 등(等)에 의(依)하여 제작(製作)되었는지 여부(与否)를 감독(監督)하는 일과 그 회사(会社)의 품질보증(品質保証) 시스템의 해석(解析)과 검토(検討)로 대신(代身)하고 있다. 즉(即) 항공기(航空機)의 개발(開發), 제작(製作) 검사(検査)는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을 제외(除外)하고 제작회사(製作會社)에 일임하는 제작회사(製作會社) 중심제(中心制)로 운영(運營)되고 있다.

(2) 미국(美國)의 수출입(輸出入) 감항성(堪航性) 인정제도(認定制度)

현재(現在) 미국(美國)은 24개국(個國)과 BAA (Bilateral Airworthiness Agreement)를 체결(締結)하고 있는데 BAA는 민간(民間) 항공기(航空機) 및 부품(部品)에 대(對)한 상호감항성(相互堪航性) 인정협정(認定協定)으로써 생산업체측(生産業體側) 정부(政府)의 관할당국(管割當局)(Competent Authority)이 AERONAUTICAL PRODUCTS에 관(關)한 법(法), 규정(規定), 기타(其他) 요구조건(要求条件)과 수입국(輸入國) 측(側) 정부(政府)가 규정(規定)한 부가(附加) 요구조건(要求条件)에 부합(符合)하다고 인정(認定)하면 수입자(輸入者) 측(側) 정부(政府)의 관할당국(管割當局)은 자국(自國)의 법(法), 규정(規定)과 기타(其他) 요구조건(要求条件)에 의(依)해 합당(合當)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것과 같은 효력(効力)을 수입품(輸入品)에 대(對)해 부여(賦与)한다는 협정(協定)이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이 협정(協定)이 체결(締結)되지 않았으며 체결국가(締結國家)와의 대상품목(對象品目)에 대(對)한 내용(內容)도 다양(多樣)하다. 감항성(堪航性)을 인정(認定)하는 부품(部品)을 CLASS별(別)로 보면 CLASS I PRODUCTS는 조립(組立)된 항공기(航空機)나 ENGINE, PROPELLER를 포함(包含)하여 이의 감항성(堪航性) 인정(認定)은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의 형식(形式)으로 발생(發生)되며 다음의 조건(条件)을 만족(滿足)해야 한다.

(가) 미국(美國)에서 제작(製作)되거나 사용(使用)된 항공기(航空機)로써 미국(美國)의 감항성(堪航性) 기준(基準)에 부합(符合)되거나 수입국(輸入國)의 특별(特別) 요구조건(要求条件) (Special Requirement)을 만족(滿足)시켜야 한다.

(나) 사용(使用)된 항공기(航空機)는 매년(毎年)마다 형식검사(形式検査)를 거쳐 FAR PART

43의 정비(整備), 예방정비개조(予防整備改造)에 관(關)한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재사용(再使用)되고, 검사(検査)는 수출(輸出) 감항성(堪航性)이 인정(認定)되기 30일(日) 전(前)에 수행(遂行)되어야 한다.

(다) NEW ENGINE, PROPELLER는 형식설계(形式設計)와 일치(一致)하며 안전작동(安全作動) 조건(条件)이 있어야 하며 항공기(航空機)에 장착(裝着)되어 수출(輸出)되지 않는 경우(境遇) 즉(即) 독자적(獨自的)으로 수출(輸出)되는 경우(境遇)는 새로 재생(再生)(Overhaul) 되어야 한다.

(라) 새로 제작(製作)된 항공기(航空機)는 조립(組立)되어 시험비행(試驗飛行)되어야 한다.

CLASS II PRODUCTS는 CLASS I의 주요부품(主要部品)으로써 날개, 동체(胴體), 강착장치(降着裝置), 동력(動力) 전달장치(伝達裝置), 조종면(操縱面) 등(等) CLASS I의 안전(安全)에 큰 영향(影響)을 미치는 부분품(部分品)이며 CLASS III PRODUCTS는 CLASS I 및 II에 포함(包含)되지 않는 부분품(部分品)이나 AN, NAS, SAE류(類)의 표준부품(標準部品)인데 이를 CLASS II와 CLASS III PRODUCTS는 AIRWORTHINES APPROVAL TAG를 붙여 감항성(堪航性)을 증명(證明)하는데 다음 조건(条件)을 만족(滿足)시켜야 한다.

- 1) 미국내(美國內)에서 제작(製作)된 것이어야 한다.
- 2) PRODUCTS는 새로 제작(製作)되거나 새로 재생(再生)(Overhaul)하여야 하고 승인(承認)된 설계(設計) 자료(資料)와 일치(一致)하여야 하고 안전작동조건(安全作動条件)에 있으며
- 3) 수입국(輸入國)의 특별요구조건(特別要求条件)에 부합(符合)되어야 한다.

다.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 방안(方案)

(1)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 발전(發展) 형식(形式)

통상(通常) 항공산업(航空產業)은 보유(保有) 항공기(航空機)의 정비(整備) 수리단계(修理段階)로부터 시작(始作)하여 라이센스 조립생산(組立生產) 및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 하청제작(下請製作), 공동생산(共同生產)((국제분업(國際分業)) 과정(過程)을 단계별(段階別)로 거치면서 궁극적(窮極的)으로는 자체설계(自體設計)에 의(依)한 자국형기(自國型機)의 개발생산단계(開發生產段階)에 이르게 되며 선진(先進) 항공(航空) 우주산업국(宇宙產業國)을 제외(除外)한 모든 후발국(後發國)들은 개발방법(開發方法)이나 생산기술(生產技術)에 있어 유사(類似)한 과정(過程)으로 항공기산업(航空機產業)을 발전(發展)시켜왔다.

앞에서 제시(提示)한 5단계(段階) 정비수리(整備修理) 단계(段階)는 현용기(現用機)의 운영(運營), 유지(維持), 관리단계(管理段階)로서 생산(生産)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嚴密)한 의미(意味)에서 생산(生産)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실질적(實質的)인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의 착수(着手)는 라이센스 조립(組立) 생산(生産) 단계(段階)로부터

시작(始作)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단계(段階)를 통(通)하여 항공산업(航空産業)을 영위(營為)해 가기 위(為)한 기본적(基本的)인 항공기(航空機) 생산기술(生産技術)을 습득(習得)하게 되므로 사실상(事實上)의 기술축적단계(技術蓄積段階)인 동시(同時)에 그 수단(手段)인 것이다. 일본(日本)의 경우(境遇) 그들은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産業)의 초기(初期)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라이센스 조립생산방식(組立生産方式)을 통(通)해 새로운 기술(技術)을 습득(習得)함으로써 일본(日本)의 항공기산업수준(航空機産業水準)을 향상(向上)시켜 온 것이다.

라이센스 조립생산단계(組立生産段階)는 항공산업(航空産業) 추진과정(推進過程)을 통(通)해 가장 중요(重要)한 단계(段階)인데 이 단계(段階)에서 반드시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가 병행(並行) 추진(推進)되어야 한다는 사실(事實)이다. 이것은 대단(大端)히 중요(重要)한 점(点)으로써 만일(万一) 이 단계에서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가 병행(並行) 추진(推進)되지 않는 상태(狀態)에서 라이센스 조립(組立) 생산단계(生産段階)가 끝나면 다음 단계(段階)인 하청생산단계(下請生産段階)로 이행(移行)해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向後) 육성(育成)은 묘연하게 된다. 단적(端的)으로 육성(育成)을 위(為)한 가장 중요(重要)한 단계(段階)이다.

이전(以前)에도 언급(言及)한 바 있지만 이 단계(段階)에서 고려요소(考慮要素)로서 발전속도(發展速度)를 배가(倍加)시킬 수 있는 것은 라이센스 조립생산단계(組立生産段階)에서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 대상(對象) 부위(部位) 선정(選定)이다. 이 선정(選定)에 따라 발전속도(發展速度)를 좌우(左右)한다.

(2)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의 필요성(必要性)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의 필요성(必要性)은 자주국방(自主國防) 체제(體制)의 제고(提高),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무역수지균형(貿易收支均衡) 개선(改善), 적정(適正) 산업구조(產業構造)의 유지(維持) 등(等) 여러 가지 측면(側面)에서 검토(檢討)해 보면

(가) 시기적(時期的)으로 볼 때 현시점(現時點)이야말로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가 강력(強力)히 추진(推進)되어야 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미 500MD 헬기, F-5 E / F 제공호(制空号) 조립생산(組立生産)의 경험(經驗)과 기술(技術)이 많이 축적(蓄積)되었고 부품(部品) 수출시장(輸出市場)은 각국별(各國別)로 성장로(成長路)에 와있고 군수요(軍需要)에 의(依)한 전력증강사업(戰力增強事業)으로 직(直), 간접(間接) OFF SET PROGRAM이 다소(多少) 제기(提起)될 수 있는 호기(好機)이다.

(나) 경제적(經濟的) 측면(側面)에서 필요성(必要性)은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은 다품종(多品種)의 호환성(互換性) 상품(商品)으로서 국제분업화(國際分業化)가 용이(容易)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後發國)이라도 일단(一旦) 외국(外國)에 비교(比較)하여 우위(優位)에 있는 특정부품(特定部品)을 생산(生産)하게 되면 세계시장(世界市場)에 진출(進出)할 수 있는 여지(余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附加價值)를 보면 항공기(航空機)는 47%인데 비(比)해 부품(部品)은 54% 쪽으로 부품(部品)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높다. 이런 점(点)에서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産業)의 육성(育成)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특(特)히 최근(最近)에 BOEING사(社)와 라이센스 생산(生産)을 하고 있는 일본(日本)의 경우(境遇) 자국내(自國內) 사정(事情)으로 인(因)한 인건비(人件費) 상승(上昇)으로 인(因)하여 초기(初期) 계약단가(契約單価)보다 상승요인(上昇要因)이 발생(發生)하여 종국적(終局的)으로는 BOEING 747의 단가상승(單価上昇)을 초래(招來)하여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잃게 되어 오히려 우리 나라 방산업분(防産業體)과 활발(活發)한 협상(協商)을 진행중(進行中)에 있다. 이러한 면(面)에서 우리 나라는 향후(向後) 세계(世界)의 부품(部品) 생산국(生產國)으로서 호기(好機)를 맞은 셈이다.

(3) 부품시장(部品市場)의 진출방식(進出方式)

항공기(航空機) 제작회사(製作會社)의 계약성립(契約成立)과 조건(条件)에 따라 시장진출(市場進出)이 좌우(左右)된다고 판단(判斷)된다. 시장진출방식(市場進出方式)은 정부(政府) 주도하(主導下)에 OFF SET PROGRAM 방식(方式)과 부품(部品)을 생산(生産)하는 기업(企業) 자사(自社)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방식(方式)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OFF SET PROGRAM 방식(方式)은 기업자체(企業自體)만으로는 추진(推進)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필(必)히 정부(政府) 주도하(主導下)에 추진(推進)되어야 한다. 이 방법(方法)은 정부예산(政府預算)으로 항공기(航空機) 또는 항공기용(航空機用) 자재(資材)를 외국(外國)으로부터 수입시(輸入時) 대신(代身) 상대국(相對國)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 생산부품(生産部品)을 구입(購入)케 하는 직접(直接) OFF SET (Direct Off Set) 과 기술(技術) 이전(移轉)이나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産業)에 관계(關係)없는 여타(余他) 분야(分野)를 일정액(一定額)을 구입(購入)하는 간접(間接) OFF SFT(Indirect Off Set)의 형식(形式)이 있다. 예(例)를 들면 호주의 경우(境遇) 차기전투기(次期戰闘機)를 F-16 혹(或)은 F-18을 구매(購買)함에 있어 전체(全體) 금액(金額)의 40%를 OFF SET PROGRAM 조건(条件)으로 걸고 있어 이에 대(對)하여 GENERAL DYNAMICS 사(社)와 McDOUGAL DOUGLAS사(社)는 여러 가지 제안(提案)과 더불어 항공 우주산업(航空宇宙産業)의 필수소재(必須素材)인 타이타늄 제조공장(製造工場)의 건설(建設)과 제품(製品)의 구매보증(購買保証)과 알루미늄 생산기술(生産技術)과 여타(余他)의 제안(提案)을 하고 있다.

OFF SET PROGRAM의 성과(成果)는 국내외(國內外) 정치(政治), 외교(外交), 군사(軍事), 경제력(經濟力), 지리(地理), 천연자원(天然資源) 등(等) 국력(國力)(National Power)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독자적(獨自的)으로 항공우주산업(航空宇宙産業) 전체(全體)의 개발능력(開發能力)이 없고 외국(外國)으로 구입(購入)해야 하는 많은 나라들이 활발(活潑)히 추진(推進)하고 있는 시장(市場) 진출방식(進出方式)이다.

(4) 부품(部品) 공급업자(供給業者)의 선정기준(選定基準) 및 단계(段階)

기본적(基本的)인 선정요소(選定要素)로써 재무상태(財務狀態), 지리적(地理的) 위치(位置), 계약(契約)수행능력(遂行能力), 신뢰성(信賴性), 제품(製品)의 품질(品質), 제품(製品) 원가(原價), 납기(納期)와 전체적(全體的)인 고객(顧客) 대(對) 공급자(供給者) 관계(關係) 등(等)을 고려(考慮)해야 되고 새로운 공급자(供給者)를 선정(選定)하려면 공급자(供給者)의 예비식별(予備識別) 단계(段階), 공급자(供給者)의 인가단계(認可段階), 입찰(入札) 및 계약단계(契約段階)를 거쳐야 하는 바 입찰자격(入札資格)을 취득(取得)하기까지는 상당(相當)한 시일(時日)과 노력(努力)이 필요(必要)하다.

(5) 품질보증체계(品質保証體系)의 확립(確立)

우리나라의 경우(境遇)는 상용(商用) 항공기(航空機)(Commercial Airplane)의 경우(境遇)는 전(前) 절(節)에서 언급(言及)된 바 있는 BAA에 가입(加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國家) 혹은(惑은) 특정(特定) 기구(機構)에서 BAA를 가입(加入)하여야 하며 군용기(軍用機)의 경우(境遇)는 MIL-SPEC의 적용(適用)을 받게 되므로 관련(關聯) 규격(規格)을 필수적(必須的)으로 준수(遵守)하여야 한다.

3. 결론(結論)

지금까지 항공우주산업(航空宇宙產業)의 의의(意義)와 현(現) 실태(實態)를 타국(他國)과 우리나라의 비교(比較) 검토(檢討) 미국(美國)의 항공기(航空機) 부품(部品) 검사제도(檢查制度)와 수출입(輸出入) 감항성(堪航性) 인정제도(認定制度)와 우리나라의 가입(加入) 필요성(必要性)을 검토(檢討)하였고 우리나라의 항공(航空) 우주산업(宇宙產業) 육성방안(育成方案)을 고찰(考察)해 본 후(後) 항후(向後)의 발전방향(發展方向)을 고찰(考察)해 본 결과(結果) 항공기(航空機) 기체(機體), 기관(機關) 및 선정(選定)된 계통(系統)이나 구성품(構成品)의 최종조립(最終組立) 및 시험(試驗)을 하거나 관심(關心)있는 신기술(新技術) 전수(伝受)나 예비(予備) 구성품(構成品)의 성격(性格)인 운영항공기(運營航空機) 부품생산(部品生產), 경험(經驗)이 있거나 보유설비(保有設備)로 생산가능(生産可能)한 세계시장(世界市場) 수요품목(需要品目)의 분업생산(分業生產)과 장기적(長期的)으로 우리 나라 고유(固有)의 국산기(國產機)나 개조기(改造機)의 설계(設計), 개발방식(開發方式)으로 집약(集約)할 수 있고, 이를 위(為)하여 민수물량(民需物量)은 극(極)히 한정(限定)되어 있으므로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비록 방대한 예산소요(予算所要)가 따르고 위험성(危險性)(Risk)을 안고 있지만 과감한 투자(投資)가 요구(要求)된다.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 방안(方案)은 참여(參與)하는 기업(企業)들이 부품(部品) 메이커로서의 자격조건(資格條件)을 구비(具備)하는 것이 선행조건(先行条件)이고 독자적(獨

目的)인 국산기(國產機) 제작능력(製作能力) 확보(確保)를 위(為)한 대형(大型) 프로젝트가 추진(推進)되어야 하며 재반여건(諸般與件)을 고려(考慮)하여 엄선(嚴選)된 부품(部品)에 한(限)하여 전문업체(專門業體)를 양성(養成)토록 하며 외국(外國)의 기술보유(技術保有) 부품(部品) 메이커와 기술제휴(技術提携)로 기술습득(技術習得)과 경쟁력(競爭力)을 배양(培養)하고 결과적(結果的)으로 국제시장(國際市場)으로 진출(進出)되어야 한다. 또한 차기(次期) 기종(機種)에 대(對)한 조속(早速)한 프로젝트 추진(推進)으로 본격적(本格的)인 부품(部品) 국산화(國產化)를 기(期)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OFF SET PROGRAM을 강력(強力)히 추진(推進)하여 물량 확보(物量確保)와 아울러 국제시장(國際市場)에 진출(進出)하여야 한다.

한국독립전쟁론(韓國獨立戰爭論)에 관(關)한 연구(研究)

1910년(年) 전후(前後),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중심(中心)으로



소령 이 남진 (李男珍)
<공군 정신교육원>

* 본(本) 연구논문(研究論文)은 필자(筆者)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부속대학원)의 석사학위(碩士學位) (사회윤리전공(社會倫理專攻)) 논문(論文)으로서 제출(提出)한것으로 필자(筆者)의 양해하(下)에 일부(一部)를 발췌 편집한 내용임.

목 차(目次)

1. 서론(序論)
2. 의병(義兵)의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대한 인식(認識)
3.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애국계몽운동단체
(愛國啓蒙運動團體)의 이원적(二元的) 인식(認識)
 - (1) 대한협회(大韓協會)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인식(認識)
 - (2) 신민회(新民會)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인식(認識)

1. 서론(序論)

개화기(開化期)1)의 민족운동(民族運動)2)은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과 개화사상(開化思想)이라는 상반(相反)된 의식(意識)의 바탕에서 시작되었다.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은 외세(外勢)의 침투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존의 가치질서를 보호하려는 자위사상(自衛思想)이었다. 따라서 위정(衛正)의 대상은 중화문화(中華文化)의 맥을 이어온 조선(朝鮮)의 문화(文化)였고, 척사(斥邪)의 대상은 양이(洋夷)라 불리운 서양세력(西洋勢力)과 서양화(西洋化)된 일본(日本)이었다.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은 이러한 화이의식(華夷意識)에 입각하여 서양(西洋)을 비판하고 존왕적(尊王的) 충성(忠誠)의 윤리(倫理)를 강조하였으며, 을미(乙未) 병오(丙午) 정미의병전쟁(丁未義兵戰爭)으로 표출(表出)되었다.

반면에 개화사상(開化思想)은 서양(西洋)의 선진문화(先進文物)을 받아들여 산업(產業)을 진흥(振興)시키고, 교육(教育)을 통하여 국민을 계몽하여, 부강한 근대민족국가(近代民族國家)를 건설하려는 사상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 갑신정변(甲申政變)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으로 표출(表出)되었다.

이와같은 사상적(思想的) 바탕과 외세(外勢)에 대한 대응방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민족운동(民族運動) 사이에는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에 전개된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은 비록 그 수행 방법은 달랐으나, 상실된 국권(國權)을 회복(恢復)하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고,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신민회(新民會)가 등장하면서 종래의 대립적인 관계에 신축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 일본(日本)의 강점(強占)이 가까와 오면서 양(両) 활동(活動)은 종래의 투쟁방법에 한계를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두된 것이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3)이다.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법통(法統)을 이어받은 의병장(義兵將) 유인석(柳麟錫)과 개화사상(開化思想)을 바탕으로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주도했던 신민회(新民會)에서 다 같이 구상되었는데4), 유인석(柳麟錫)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신민회(新民會)의 구상은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고 무관학교를 건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그 실천과정에서는 결실을 보았다. 그리고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을 기반으로 설립된 독립운동 기지에 많은 의병(義兵)들이 합류함으로써 1910년대에는 합일(合一)된 독립운동(獨立運動)이 전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과 개화사상간(開化思想間)의 갈등도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10년 전후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의병전쟁(義兵戰爭)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① 의병전쟁(義兵戰爭)의 개황이나 사상적 측면에 관한 연구5), ② 의병장(義兵將) 유인석(柳麟錫)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의병진영(義兵陣營)에 관한 연구6) 등이 있다. 둘째로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①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7), ② 애국계몽운동단체(愛國啓蒙運動團體)에 대한 연구8), ③ 계몽교육(啓蒙教育)에 대한 연구9), ④ 구국언론활동(救國言論活動)에 관한 연구10) 등이 있다.

세째로 1910년대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① 만주지방의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관한 연구11), ② 만주지방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그 조직과 전투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12),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 전후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이라는 논제(論題)로,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 양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며, 단지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입장에서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의 개념(概念)과 그 대두 경위에 관한 연구13)와, 신민회(新民會)의 국권회복운동(國權恢復運動)의 일환으로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14)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論文)은 개화기의 사상적 표출인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 양면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 1910년대의 독립운동이 그 이전과는 달리 합일되어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관계에서 파악(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상호인식을 비교하되 특히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주도했던 대한협회(大韓協會)와 신민회(新民會)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이원적(二元的) 인식을 비교하여 의병전쟁(義兵戰爭)이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의 실천과정에 합일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유인석(柳麟錫)이 구성한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이 실현될 수 없었던 요인과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이 비록 국권회복(國權恢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실천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앞서 밝힌 바대로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의 민족운동(民族運動)은 의병전쟁(義兵戰爭)¹⁵⁾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양면으로 전개되었다.

의병전쟁(義兵戰爭)은 국권(國權)을 빼앗긴 이상 “성패이둔(成敗利鈍)과 경중대소(輕重大小)”¹⁶⁾에 관계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日帝)에 대결하자는 것이었고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은 민족(民族)의 힘이 일제(日帝)의 힘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인사

(人土)들이 “견인내구(堅忍耐久)”¹⁷⁾의 뜻을 가지고 실력(實力)을 양성(養成)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양활동(両活動)간에는 그 주류(主流)에 있어서 대립적(對立的)인 관계를 보였으나 신민회(新民會)가 등장하면서 양자의 관계에 신축성을 보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후일 의병전쟁(義兵戰爭)이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에 합일(合一)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밝히기로 한다.

2. 의병(義兵)의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대한 인식(認識)

의병전쟁(義兵戰爭)을 주도(主導)했던 핵심집단이 보수적(保守的)인 유생(儒生)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개화(開化)를 표방한 어떠한 활동(活動)에도 부정적(否定的)이었으며, 토벌(討伐)의 대상인 적(賊)으로 간주하였다.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으로 을미의병(乙未義兵)에 거의(拳義)하여 싸우다가 전사(戰死)한 의병장(義兵將) 안승우(安承禹)는 의병의 구호는 오직 “토적복구(討賊復舊)”로 집약(集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의 의리는 오직 적을 쳐서 옛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주를 삼을 뿐이오…¹⁸⁾

이처럼 의병(義兵)이 개화(開化)를 토벌(討伐)의 대상으로 보고 옛 것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당시의 개화(開化)를 의미가 다른 개화(開化) 즉, 일제(日帝)의 침략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옛날의 개화(開化)는……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룬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의 개화(開化)는 외이(外夷)를 끌어들여 우리 백성을 악하게 만들고 적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개화(開化)는 망국(亡國)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유인석(柳麟錫) 개화망국론(開化亡國論)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구법이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지만 망국은 개화가 행하여진 뒤의 일이다. 말로는 개화라 했지만 그 행한 바는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君父)를 폐위하고 윤리와 법강을 문란케 하고 나라를 팔아 결국 나라를 망친 것이다. 구법을 행하여 나라가 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찌 개화해서 망국한 것만큼 심했겠는가.²⁰⁾

개화(開化)에 대한 의병의 이러한 인식은 갑오경장(甲午更張)후의 삽발의 반대에서부터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던 각종의 학회활동(學會活動)과 신식교육(新式教育)의 반대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개화운동(開化運動)을 배격하는 철저한 반개화주의(反開化主義)로 발전하였다. 다음의 창의가(倡義歌)는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의병의 인식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한광무(大韓光武) 갑오(甲午)년에

왜적이 침범하여
옛 법을 모두 고쳐
개화(開化)하기 시작했네.
관제(官制)도 모두 고쳐
의복(衣服)도 모두 고쳐
이리저리 몇년만에
인심은 산란(散亂)하고
이회(會) 저(會) 무슨 회(會)가
그렇게도 많은지
청년회(青年會)도 일어나고
동양회(東洋會)도 일어 나고,
자강회(自強會)도 일어나고
황국회(皇國會)도 일어나고
교육회(教育會)도 일어나고
설교회(說教會)도 일어나고
학회(學會)도 일어 나고
일진회(一進會)도 일어났네
보국안민(保國安民) 버려두고
난국난민(亂國亂民) 웬말이냐
세상이 이러하니
팔도의병(八道義兵) 났네.²¹⁾ (중략(中略))

이러한 의병의 반개화주의(反開化主義)는 구호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개화(開化)를 부르짖으면서 일제(日帝)의 침략정책에 가장 선도적으로 호응했던 단체가 일진회(一進會)였다. 일진회(一進會)는 이른바 「자위단(自衛團)」을 구성하여 의병탄압에 직접 나서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병의 대응은 단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일진회원(一進會員)이 의병의 공격으로 피살되었다. 당시 의병의 공격으로 인한 일진회(一進會)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진회가 일제와 통첩하여 자위단을 만들어 의병을 방어했다. 정미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일진회원 사망자가 9천 2백 여명에 이르렀다.²²⁾

그리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도 1907년 7월부터 1908년 5월까지 일진회원(一進會員) 피해는 사망자 9,260명, 부상자 140명, 소각가옥 360호, 재산피해액 50,501원41전으로 기록하고 있다.²³⁾

이러한 현상은 일진회(一進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병을 폭도시하는데 서슴치 않았던 24) 대한협회(大韓協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08년 9월 2일 전북(全北) 고부군(古阜郡) 줄포면(茁浦面)에 있는 대한협회지부(大韓協會支部)를 습격하여 그 총무 김영인(金永寅)을 포살(砲殺)한 것이 하나의 좋은 예이며²⁵⁾ 또한 신식학교(新式學校)를 소각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²⁶⁾

이처럼 의병은 개화운동(開化運動)을 추진하던 단체(團體)의 목적(目的)이 어떠했던 간에 일단 토벌(討伐)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대한 의병(義兵)의 인식(認識)은 부정적(否定的)일 수 밖에 없었다.

3.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

단체(團體)의 이원적(二元的) 인식(認識)

가. 대한협회(大韓協會)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인식(認識)

1906년 윤효정(尹孝定) 장지연(張志淵) 등에 의해 조직되어 교육을 통해 국민을 계몽시켜 독립자존(獨立自存)의 기반을 닦으려 했던 단체가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이다. 그러나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는 민중의 손을 잡고 과감히 투쟁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면서 지배층에 타협을 구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적(政治的) 성장(成長)을 제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²⁷⁾ 그런데 자강회(自強會)가 해산된 후 다시 전(前) 자강회(自強會) 고문이었던 일본인(日本人) 대원장부(大垣丈夫)의 활동에 힘입어 1907년 11월 17일 자강회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대한협회(大韓協會)」가 출발하게 되었다.²⁸⁾

대한협회(大韓協會)의 인사(人士)들은 출발당시부터 일제(日帝)를 그들의 “우방(友邦)”으로 인식하고 있었고²⁹⁾ 그들의 추구목표나 방법이 어떠했는 협회지도부(協會指導部)의 많은 인물들이 일진회(一進會)가 조직한 「자위단(自衛團)」을 지원하려는 이른바 「자위단원호회(自衛團援護會)」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협회(協會)의 총재(總裁) 민영휘(閔永徽), 회장(會長) 장박(張博) 부회장(副會長) 오세창(吳世昌), 총무(總務) 윤효정(尹孝定)을 비롯하여 평의원(評議員) 14명 중에서 장지연(張志淵), 이우영(李宇榮), 홍필주(洪弼周) 등을 제외한 10명, 그리고 일반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임원중 14명이 대한협회(大韓協會) 임원으로 창립총회(創立總會)(1907, 11, 17)에서 선출된지 일주일만에 자위단원호회(自衛團援護會)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³⁰⁾ 이로써 보아도 대한협회(大韓協會)가 창립(創立) 당초부터 일진회(一進會)와의 연합설(聯合說)이 나돌았던 것과 동시에 점점 친일적(親日的) 성격(性格)을 띤 단체(團體)로 전락(轉落)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장지연(張志淵)도 우리나라가 열강(列強)의 각축장이 되고 일제(日帝)의 침략정책(侵略政策)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병(義兵)의 과격한 투쟁방법에는 부정적이었다.³²⁾ 윤효정(尹孝定) 역시 “시국(時局)과 국세(國勢)가 이러한 때 무력(武力)을 남행(濫行)하는 것이 아국(我國)의 소위 의병(義兵)과 청국(淸國)의 단비(團匪)와 같은 즉 스스로 망하기에 적족(適足)하여 결코 자강(自強)이라 할 수 없다.”³³⁾ 고 하여 의병전쟁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의병전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강회(自強會)가 해산되고 나서 대한협회(大韓協會) 시절에 와서도 의병의 전례없는 투쟁상황을 보면서 더욱 부정적으로 고찰되어 갔다. 윤효정(尹孝定)의 「대한협회(大韓協會)의 본령(本領)」 이란 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현금(現今) 각지(各地)에 봉기(蜂起)한 의병(義兵)에 대하여는 그 정신(精神)인즉 애국(愛國)하는 충정(衷情)에서 출(出)한다 하는 자(者) 불무(不無)하나 기행동(其行動)을 논(論)하면 소위 조국(祖國)의 사상(思想)으로써 반(反)히 조국(祖國)을 단상(斷喪)하는 자(者)로 인(認)하여 본협회(本協會)는 기행동(其行動)에 대하여 비의(非議)를 집(執)하노니 하자(何者)요 현금(現今)의 정치운동(政治運動)은 세계열강(世界列強)의 동정여하(同情如何)함을 선찰(先察)하고……아(我)의 행동(行動)이 국가전도(國家前途)에 여하한 영향이 파급(波及)함을 계려(計慮)치 아니하고 의명폭행(義名暴行)을 감위(敢為)하면 국가(國家)를 심연(深淵)에 제함(濟陷)하여 극구(極救)할 방법(方法)이 무(無)하기에 지(至)할까 시구(是懼)하는 고(故)로 본협회(本協會)는 의병(義兵)의 정신(精神)에는 양찰(諒察)이 유(有)하나 의병(義兵)의 행동(行動)에는 절대적 비의(非議)를 집(執)하여 속히 진정하고 국민(國民)의 사업(四業)에 각귀(各歸)함을 절망(切望)하는 동시(同時)에……전국의병(全國義兵) 수령(首領)에게 경고(警告)하여 알(曰) 본협회(本協會)는 국가(國家)의 이해휴戚(利害休戚)을 쌍견(雙肩)에 담부(擔負)하고 설립(設立)한 자(者) 인즉 국가(國家)의 전도(前途)는 본협회(本協會)에 일임(一任)하고 속(速)히 폭행(暴行)을 중지(中止)해야 각자(各自) 본업(本業)에 종사(從事)하고 정당한 국민(國民)의 권리(權利)를 확수(確守)하라 하겠소.³⁴⁾

이를 요약(要約)하면 의병(義兵)의 그 정신(精神)은 인정하나 국가(國家)를 위한다는 행동(行動)이 오히려 국가(國家)에 해(害)를 끼칠까 염려되니 모든 것을 대한협회(大韓協會)에 일임(一任)하고 각자(各自) 본업(本業)에 돌아가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한협회(大韓協會)에 참여하여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고 있던 근대(近代) 지식인(知識人)들이 이와 같이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부정적(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심한 소요로 인하여 국가의 장래에 해를 끼칠까 염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의병(1907년의 정미의병(丁未義兵))의 실질적인 세력이 부유층을 공격 처단하고 반봉건적(反封建的) 요구(要求)를 강하게 표출(表出)하고 있던 농민(農民)이었다는 점이 더 큰 요인(要因)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⁵⁾ 일례로서 대한협회(大韓協會) 목포지회장(木浦支會長)인 김봉규

(金奉圭)란 자(者)가 1909년 4월 20일 상경하여 당시 회장(會長) 김가진(金嘉鎮)에게 전남의병(全南義兵)의 실정(實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전남지방(全南地方)은 목하(目下) 폭도창궐이 심해져서 각종업자(各種業者)는 거의 폐업도 산상태(廢業倒產狀態)에 놓여 있고 호구(糊口)에 궁한 자는 그 수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궁민(窮民)은 부득이(不得已) 폭도의 무리에 몸을 던져 그 생(生)을 이어 가려는 실정이다.

……이 상태가 영속한다면 전남지방(全南地方)은 완전히 우리 동포(同胞)의 자멸(自滅)을 초래할 것이다. 하루 속히 평온상태로 복귀시킬 양책(良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³⁶⁾ 이로써 보아도 대한협회(大韓協會)가 당시에 의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협회(大韓協會)는 노골적으로 의병을 폭도시하는데 서슴치 않았고 그 진압책을 건의하기도 하면서 의병진압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일본측(日本側)에 제공하기도 하였다.³⁷⁾

이처럼 의병(義兵)과 대한협회(大韓協會)가 다같이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한 민족운동(民族運動)을 전개하면서도 적대관계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양 계층의 상호 이해기반과 사상이 전혀 다른데다 대한협회(大韓協會)는 창립(創立) 당초부터 친일적(親日的) 성격(性格)을 띠고 출발하였고, 실제로 일제(日帝)의 침략세력과 타협해 가면서 끝내는 친일단체(親日團體)로 전락(転落)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신민회(新民會)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한 인식(認識)

같은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면서도 대한협회(大韓協會) 인사(人士)들의 의병관(義兵觀)이 부정적(否定的)이었던 것과는 달리 신민회(新民會)에 참여한 인사(人士)들의 의병전쟁(義兵戰爭)을 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었고 또 실제로 의병전쟁에 참여한 인사(人士)도 있었다.

신민회(新民會)는 자신들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기관지로 활용(活用)하고 있었는데 후일 신민회(新民會)의 총감독(總監督)이 된 양기탁(梁起鐸)이 주필(主筆)이 되고 영국인(英國人) 베델을 사장(社長)으로 추대하여 일제통감부(日帝統監部)의 겸영을 거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신민회(新民會)가 창건(創建)되면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논설위원(論說委員)과 사원(社員)들이 거의 신민회원(新民會員)으로 가입하였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강력한 논설(論說)을 통하여 일제(日帝)의 침략책동 및 일제(日帝)에 의해 괴뢰화한 이완용정부(李完用政府) 그리고 친일단체(親日團體) 일진회(一進會)의 매국행위(賣國行為) 등을 상세하게 폭로 규탄하였다. 그리고 반일의병전쟁(反日義兵戰爭)과 그 의병장(義兵將)들, 보호조약(保護條約)에 반대하여 자결한 전직고관(前職高官)과 유생(儒生)들,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사살한 안중근(安重根)과 이완용(李完用)을 척살(刺殺)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재명(李在明)의 사적(事跡)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반일의식(反日意識)을 고취시켜

나갔다.³⁸⁾ 특히 1907년 8월 이후에는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하여 별도의 “의병소식란”을 만들거나 “지방소식” “잡보(雜報)” 등을 통해서 각지(各地)에서 일어난 의병전쟁(義兵戰爭)을 그 때 그때 보도하여 은연중에 일제(日帝)에 대한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의병활동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을 간추리면 이은찬(李殷贊) 전해산(全海山) 이강년(李康年) 허위(許蔚) 이인영(李麟榮) 등 의병장(義兵將)들의 격문(檄文)이나 판결문(判決文) 선고(宣告)내용 처형소식 등과 각 지방에서 봉기한 90여 명에 이르는 의병장(義兵將)들의 거의(舉義)내용, 그리고 지역 관찰사(觀察使)와 의병장(義兵將)간에 주고 받은 공함전문(公函全文) 등이다.³⁹⁾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이처럼 의병전쟁(義兵戰爭)을 고무하고 반일투쟁의식(反日鬪爭意識)을 고취시켜나가자 이에 당황한 일제(日帝)는 1909년 4월 29일 이른바 “신문지법(新聞紙法)” 개악(改惡) 공포(公布)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外國)에서 발행하는 한자신문(韓字新聞) 또는 외국인(外國人)이 국내(國內)에서 발행하는 한자신문(韓字新聞)(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뜻함 : 필자주(註) 으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교란시킨다고 인정되는 것은 내부대신(內部大臣)이 해당신문을内外에서 발매·반포를 금할 수 있다.⁴⁰⁾이 신문지법(新聞紙法)에 의해서 많은 신문이 압수되었다. 1909년 1년간의 신문압수현황을 보면 여섯 종류의 신문이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총부수 21,037부 중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16,514부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더구나 국내신문중에서 압수된 것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뿐이었다.⁴¹⁾ 이로써 보아도 당시에 공포(公布)된 신문지법(新聞紙法)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압수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⁴²⁾

(1) 국권회복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보호에 반대하고 음으로 양으로 반기를 들도록 고취하는 것.

(2) 일본의 보호를 가리켜 한국을 병탕할 것이라고 모략하여 일반 한인(韓人)의 반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3) 근거없는 낭설을 전파하여 인심을 혼란케 하거나 또는 일을 과대하게 선전하고 국민을 분개시켜 관(官)의 시설을 방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

(4) 국권회복에는 국민의 공동일치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단체의 조직을 장려하는 것.

(5) 국권회복에는 문명의 개화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신교육의 보급을 창도하는 것.

(6) 블라디보스톡을 한국인 국권회복 단체의 근거지로 삼을 것을 고취하는 것.

(7) 암살자를 의사(義士)라 칭하고 그 사상의 고취에 노력하는 것.

(8) 폭도를 가리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원하는 것.

압수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일제(日帝)의 침략정책(侵略政策)을 폭로하고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한 국민적(國民的) 단결(團結), 문명개화(文明

開化)를 위한 신교육(新教育) 창도(唱導),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의 사상(思想) 고취, 그리고 의병전쟁(義兵戰爭)의 성원 등 사상적(思想的) 배경(背景)이나 투쟁방법상(鬪爭方法上)의 상위(相違)를 불문하고 범국민적(汎國民的) 항일투쟁(抗日鬪爭) 의식(意識)을 고취시켜 나갔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투쟁론(獨立鬪爭論)의 일환으로써 블라디보스톡에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한 기지건설을 고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제(日帝)는 안중근(安重根)을 암살자(暗殺者), 의병(義兵)을 폭도(暴徒)라 부르면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구국언론활동(救國言論活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이처럼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인(英國人) 베델이 사장(社長)으로서 방파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신문의 편집·경영면에서 주요(主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양기탁(梁起鐸)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임치정(林蚩正) 안태국(安泰國) 등이 모두 신민회원(新民會員)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민회(新民會)는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하여 무력행사(武力行事)도 구태여 기피하지 않았기 때문에⁴³⁾ 일부 인사(人士)는 의병전쟁(義兵戰爭)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동휘(李東輝) 안중근(安重根) 등이 그들이다. 이동휘(李東輝)는 구한국(舊韓國) 군대(軍隊)의 참령(參領)으로서 해관(解官)된 후 강화(江華)에 보창학교(普昌學校)를 세워서 교육활동(教育活動)에 힘써 왔다. 1907년 군대해산으로 강화진위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義兵)들과 합세하여 일진회(一進會) 출신 군수(郡守) 정경수를 처단하고 강화성을 장악했을 때 하사출신 유명규(柳明圭)와 함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⁴⁴⁾ 이동휘(李東輝)의 이러한 행적(行跡)을 볼 때 그의 의병 참여는 군인(軍人)이라는 출신성분(出身成分)과 무력(武力)도 볼사하는 신민회(新民會)의 노선이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한 방법(方法)에서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일치점(一致點)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중근(安重根)이 신민회원(新民會員)인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는 신민회(新民會)의 창립자(創立者)인 안창호(安昌浩)의 “축이천만동포지분기(促二千万同胞之奮起)”라는 계몽연설을 듣고 깨달아 국권회복운동(國權恢復運動)에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진남포(鎮南浦)에서 돈의학교(敦義學校)와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워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종사하다가 의병전쟁(義兵戰爭)을 하기 위하여 노령(露領)으로 맹명하였다.⁴⁵⁾ 안중근(安重根)은 맹명 이후 노령(露領) 연추(煙秋)를 근거지로하는 유인석(柳麟錫) 이범윤(李範允) 의병부대(義兵部隊)의 의병장(義兵將)으로 활약하다가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사살한 후 체포되어 공판정에서 나는 의병(義兵)의 참모중장(參謀中將)으로서 독립전쟁(獨立戰爭)을 하여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죽이는 것도 참모중장(參謀中將)으로서 계획한 것으로 도대체 이 법원 공판정에서 심문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⁴⁶⁾ (방점은필자)

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안중근(安重根)은 신민회(新民會)와 깊이 관련되어 신민회(新民會)의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⁴⁷⁾ 의병

전쟁(義兵戰爭)과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신민회(新民會)는 대한협회(大韓協會)나 기타 다른 애국계몽운동단체(愛國啓蒙運動團體)들이 의병(義兵)을 폭도시(暴徒視)했던 것과는 달리 의병(義兵)의 무력투쟁(武力鬪爭)을 동조하고 성원했을 뿐만 아니라 의병전쟁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고 무력사용(武力使用)을 투쟁방법(鬪爭方法)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적(思想的) 상위(相違)를 국복하고 후일 합일(合一)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내포(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해석(註解釋)

- 1) 개화기(開化期)의 기간설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화기(開化期)를 1876년부터 1910년까지로 설정한 구범모교수(具範謨教授)의 견해에 따랐다. 구범모(具範謨), “개화기(開化期)의 정치의식(政治意識) 상황(狀況)” 「한국정치학회보(韓國政治學會報)」 3집(輯) (한국정치학회(韓國政治學會), 1969), p. 134 참조.
- 2) 여기에서 민족운동(民族運動)이라 함은 “이민족(異民族)에 대한 민족독립운동(民族獨立運動)이며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이라는 조지훈교수(趙芝薰教授)의 견해에 따랐다.
- 조지훈(趙芝薰), “한국민족운동사(韓國民族運動史)” 「한국문화사대계(韓國文化史大系)」 I (고대민족문화연구소(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p. 558 참조
- 3)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이란 “만주지역에 항일무력투쟁을 위한 근거지를 건설하여 실력을 기른후에 적절한 기회를 포착, 일제와 독립전쟁(獨立戰爭)을 전개하여 국권(國權)을 회복(恢復)한다”는 이론체계(理論體系)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구한말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인사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 같다. 특히 1910년 전후에 일제군경(日帝軍警)이 작성한 민족운동 탄압문서에 그런 말이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안중근사건공판기(安重根事件公判記)(주(註)46 참조(參照))나 신민회사건판결문(新民會事件判決文)(주(註)96 참조(參照))을 보면 “독립전쟁(獨立戰爭)을 하여 국권(國權)을 회복(恢復)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4) 신민회(新民會)는 독립전쟁(獨立戰爭)이란 말을 사용했으나 유인석(柳麟錫)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인석(柳麟錫)의 구상이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의 개념(概念)(주(註)3 참조(參照))에 부합되기 때문에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이란 논제(論題)에 유인석(柳麟錫)의 구상을 포함하여 고찰함을 밝혀둔다.
- 5) 신석호(申奭鎬), “한말의병(韓末義兵)의 개황(概況)” 「사총(史叢)」 1 (1955).
- 김의환(金義煥), “한말의병운동(韓末義兵運動)의 분석(分析)” 「한일문화(韓日文化)」 2

(1962).

- , “의병운동의 사상적 측면” 「한국사상(韓國思想)」 8 (1972)
- 박성수(朴成壽), “1907~1910년간(年間)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하여” 「한국사연구(韓國史研究)」 제1집 (1968).
- , “구한말(舊韓末) 의병전쟁(義兵戰爭)과 유교적애국사상(儒教的愛國思想)”, 「대동문화연구(大同文化研究)」 6, 7 합집 (1970).
- 강재언(姜在彦), “반일의병(反日義兵)의 역사적(歷史的) 전개(展開)”, 「한국근대사연구(韓國近代史研究)」 (서울 : 한밭, 1982).
-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獨立軍)」,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7).
- 6) 이동우(李東宇), “의병장(義兵將) 유인석(柳麟錫)의 의병운동고(義兵運動考)” 「성대사림(成大士林)」 2 (1977).
- 김도형(金度亨),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의 정치사상연구(政治思想研究)”, 「한국사연구(韓國史研究)」 25 (1979).
- 김세규(金世圭),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의 반개화론(反開化論)”, 「경주사학(慶州史學)」 1 (1982).
- 김후경(金厚卿),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의 학문(學問)과 사상(思想)”, 「사학연구(史學研究)」 34 (1982).
- 이구용(李求鎔), “한말의병운동연구(韓末義兵運動研究)-강원도(江原道)를 중심(中心)으로”, 「사총(史叢)」 19 (1975)
- 7) 이현종(李鉉淙), “구한말정치사회단체고(舊韓末政治社會團體考)” 「김두종박사고희론총(金斗鍾博士古稀論叢)」 (1966).
- 8) 이현종(李鉉淙),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에 대하여”, 「진단학보(震檀學報)」 29, 30 합집 (1966).
- , “대한협회(大韓協會)에 관한 연구(研究)”, 「아세아연구(亞細亞研究)」 8 - 3 호 (1970).
- 신용하(慎鏞夏), “신민회창건(新民會創建)과 국권회복운동(國權恢復運動)” (상(上), 하(下)), 「한국학보(韓國學報)」 8, 9 집 (1977)
- 9) 손인수(孫仁銖), 「한국근대민족교육(韓國近代民族教育)의 이념연구(理念研究)」, (서울 : 문음사(文音社), 1983).
- 차경수(車京守), 1905~1910년 구국민족교육전개(救國民族教育展開)에 관한 研究” 「교육사학연구(教育史學研究)」 16- 1 (1978).
- 10) 조항래(趙恒來), “한말민족지(韓末民族紙)의 항일논조연구(抗日論調研究)”, 「아세아학보(亞細亞學報)」 13 (1983).

- 이해창(李海暢), “한말국권회복운동(韓末國權恢復運動)과 민족언론(民族言論)” 「한국사학(韓國史學)」 2 (1980).
- 11) 박영석(朴永錫), 「한국민족독립운동연구(韓國民族獨立運動研究)」 (서울 : 일조각 (一潮閣), 1982).
- 강재연(姜在彥),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문제”, 「한국근대사상사연구」 (서울 : 한울, 1983)
- 원의상(元義常),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신동아(新東亞)」 1969년 6월호.
- 윤병석(尹炳璽), “1910년대의 한국독립운동(韓國獨立運動)”, 「한국근대사론(韓國近代史論)」 II, (서울 : 지식산업사(知識產業社), 1977).
- 김의환(金義煥), “만주(滿洲)에 있어서의 초기(初期) 독립전쟁(獨立戰爭)의 고찰(考察)”, 「이선근박사(李善根博士) 고희기념논문집(古稀紀念論文集)」 (1974).
- 12)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편(編)),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군전투사(상), 1975.
- 민족문화협회(편(編)), 「독립군의 전투」 4, 1967.
- 13)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14) 신용하(慎鏞廈), “신민회(新民會)의 창건(創建)과 국권회복운동(國權恢復運動)”, 「한국학보(韓國學報)」 9집, (1977).
- 15) 의병(義兵)의 거의(拳義)에 대하여 흔히 “의병운동(義兵運動)”과 “의병전쟁(義兵戰爭)”의 두 가지로 부르고 있다. 의병(義兵)의 토벌(討伐)대상이 개화운동(開化運動)도 포함되지만 주된 대상이 일제(日帝)였고, 그 방법이 무력적(武力的)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의병전쟁(義兵戰爭)”으로 부른다.
-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 「독립운동사자료집」 1, 1971, pp. 87-88 참조.
- 17)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광무(光武)10년(年)(1906) 5월(月) 30일(日).
-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독립운동사자료집」 1, 1971, p. 374.
- 19)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심남일실기(沈南一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 3, 1971, p. 569.
- 20) 기수왈(其雖曰) 구법망국(舊法亡國) 망국재행개화후야(亡國在行開化後也) 활위개화(曰為開化) 이소위야(而所為也) 시국모(弑國母) 폐군부(廢君父) 괴륜상파법강(乖倫常敗法綱) 매국이(売國而) 지어국망(至於國亡) 사위구법이망국(使為舊法而亡國) 기유심어개화지위망국야(豈有甚於開化之為亡國也). 우주문답(宇宙問答)”, 「의암집(毅菴集)」 (下) 卷51, p. 538.
- 21) 기좌창의장행군가(畿左倡義將行軍歌).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 39에서 재인용.

- 22) 一進会通謀于倭 創自衛團 以禦義兵 自丁未七月至今年五月 會員死者 九千二百餘人. 「매천야록(梅泉野錄)」 권(卷) 6 응희원년(隆熙元年)(1907) 정미십월조(丁未十月條),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1955), p. 439.
- 23)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응희(隆熙) 2년(年) (1908) 6월(月) 16일(日) 잡보(雜報)참조.
- 24)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대한독립운동사(大韓獨立運動史)」 I, 1965, pp. 399-400참조.
- 25) 「대한협회보(大韓協會報)」 7, p. 59참조.
- 26) 박성수(朴成壽), “1907년(年)~10년간(年間)의 의병전쟁(義兵戰爭)에 대하여”, 「한국사연구(韓國史研究)」 1집 (한국사연구회(韓國史研究會), 1968), P. 132 주(註)기참조.
- 27) 권희영(權熙英),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의 사회사상(社會思想)과 민족운동(民族運動)”, 「해군제이사관학교논문집(海軍第二士官學校論文集)」 2, 1980, p. 165.
- 28) 이현종(李鉉宗), “대한협회(大韓協會)에 관한 연구(研究)”, 「아세아연구(亞細亞研究)」 8 - 3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P. 21.
- 29) “대한협회취지서(大韓協會趣旨書)”, 「대한협회보(大韓協會報)」 1, p. 5.
- 30) 흑룡회편(黑龍會編), 「일한합방비사(日韓合邦秘史)」 상(上), (동경(東京) :원서방(原書房), 1969), pp. 374-393참조.
- 31) 이현종(李鉉宗), 전계논문(前揭論文), p. 23참조.
- 32) 장지연(張志淵), “과거(過去)의 상황(狀況)”,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11, p. 2 참조.
- 33) 윤효정(尹孝定), “본회(本會)의 취지(趣旨)와 특성(特性)”,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1, p. 21.
- 34) 윤효정(尹孝定), “대한협회(大韓協會)의 본령(本領)”,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 p. 47.
- 35) 박성수(朴成壽), 전계논문(前揭論文), pp. 136-137참조.
- 36) 박성수(朴成壽), 전계논문(前揭論文), p. 130에서 재인용.
- 37)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I, 1965, pp. 399-400참조.
-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해청 편(崔海清 編), 「대한매일신보발췌록(大韓每日申報拔萃錄)」 (대구(大邱) : 청구대학출판부(青丘大學出版部), 1958) 참조.
- 39) 최해청 편(崔海清 編), 상계서(上揭書), pp. 42-72참조.

- 40)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조선보호급병합(朝鮮保護及併合)」, 1912, p. 61.
- 41) 김정명 편(金正明 編),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 I (동경(東京) : 원서방(原書房), 1967), pp. 109_ 110참조.
- 42) 김정명 편(金正明 編), 상계서(上揭書), P. H 0.
- 43) 신용하(慎鏞廬), “신민회(新民會)의 창건(創建)과 그 국권회복운동(國權恢復運動)” (상(上)), 「한국학보(韓國學報)」 8 (서울 : 일지사(一志社), 1977), p. 46 참조.
- 44) 장석규(張錫奎), “한국말의병운동(韓國末義兵運動)의 성격연구(性格研究)”, 「군사(軍史)」 8호(号) (1984. 6) p. 241 및 도산기념사업회편(島山紀念事業會編), 「도산안창호(島山安昌浩)」 (1953), pp. 45-4 6 참조.
- 45) 만수사보존회편(萬壽祠保存會編), 「의사안중근전기(義士安重根伝記)」, 1963, pp. 51-53참조.
- 46)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안중근공판시말서제일회(安重根公判始末書第一回)」,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자료(資料)6, 1967, p. 313.
- 47) 신용하(慎鏞廬), “신민회(新民會)의 창건(創建)과 그 국권회복운동(國權恢復運動)” (하(下)), 「한국학보(韓國學報)」 9 (서울 : 일지사(一志社), 1977), p.156참조.

힘찬 도약!
굳건한 단결!
영원한 전진!

논단(論壇)

서태평양(西太平洋)의 군사정세(軍事情勢)와 미국(美國)의 대응전략(對応戰略)



이 선호 (李善浩)
 <국방대학원 교수>

저서

- 핵무기(核武器)와 핵전략(核戰略)(법문사 982)
- 국방행정론(國防行政論)(고려원 1985)

목 차(目次)

1. 위협(威脅)의 출처(出處)는 소련, 월맹 그리고 북한이다.
2. 미국(美國)의 안보공약(安保公約)은 신실성이 있는가?
3. 미국(美國)의 군사전략(軍事戰略)은 우방국들의 역할분담(役割分担)을 강조한다.
4. 맺는말

1. 위협(威脅)의 출처(出處)는 소련, 월맹 그리고 북한이다.

서태평양(西太平洋)의 지도(地図)를 펼쳐 놓고 보면, 캄차카에서 캄푸치아에 이르는 전해안선(全海岸線)이 한국연안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평양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이 서태평양지역에 있어 소련의 기본전략(基本戰略)일진대 소련은 이 해안선을 연한 그들의 출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海)·공군력(空軍力)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태평양 전역을 엄호할 수 있는 지상유도탄기지도 확장 일로에 있다.

자유진영(自由陣營)에 대한 역내(域內)의 위협양태(威脅樣態)는 소련, 월맹, 그리고 북한 3나라에 의한 해상교통로(海上交通路) 차단(遮斷), 인접국가 침공 및 심리적 위협과 더불어 군사·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해·공군력은 새로이 획득한 월맹과 캄푸치아에 있는 기지를 발판으로 남지해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을 통하는 모든 항로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만일 역내(域內)의 해상교통로(海上交通路)가 차단된다면, 일본, 한국, 대만 등 공업화국가들은 유류와 식량 그리고 원자재의 도입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의 극동에 있어서 항공공격 능력은 괄목할 만한 향상을 가져 왔으며, 소련태평양함대는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하지만 약 90척에 달하는 공격잠수함 세력은 가장 강력한 그들의 해상 잠재력으로서, 미국의 항공모함, 잠수함 그리고 민간상선에 대항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잠수함과 폭격기들은 전술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20기애 달하는 중거리 탄도탄 (SS-20)이 전구 핵전력의 일부로서 시베리아 일대에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 SS-20은 사거리가 3천마일 이상인 복수탄 두로 장비되어 있으며, 중공, 일본, 한국, 필리핀 전역을 사정권 내에 넣고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들을 주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의 소련 군사전략은 극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세적(攻勢的) 수세전략(守勢戰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域內)의 그들 해·공군력은 원칙적으로 동(東)시베리아와 오쓰크해(海)의 방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아류산열도 일대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해군 대잠세력을 견제하면서 오쓰크해(海)에 잠항하고 있는 미본토공격용(美本土攻擊用) 전략잠수함(戰略潛水艦)의 방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소련의 공격 잠수함,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들이 유사시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외부 증원군 투입을 차단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월맹은 병력수(兵力數)에 있어서는 80만과 100만의 대군(大軍)으로서 세계 제6위와 제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련과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량기습남침전략(大量奇襲南侵戰略)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그들의 최초 군사목표는 전선(前線)에 배치된 한국군의 주력섬멸, 수도 서울탈취, 미증원군의 추가 투입 저지 등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북한은 현재 중·소의 지원 없이도 단독으로 수개월 간 치열한 공격주도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침공예고 가능성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한 그들이 노리는 결정적 시기는 한(韓)·미연합군(美聯合軍)의 효과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된 때일 것인 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을 끈질기게 획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월맹은 일부 미군장비와 다수의 소련제 신예장비로 무장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동남아의 무법자이다. 중·월전쟁에서 소련의 도움으로 미국과 더불어 대소 공동전선을 형성하려는 중공

에게 판정승을 거둔 바 있는 월맹은 계속적인 소련의 군사지원하에 라오스와 캄푸치아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태국에게까지 심각한 침공위협을 주고 있다.

2. 미국(美國)의 안보공약(安保公約)은 신실성이 있는가?

최근(最近) 이러한 위협과 관련하여 역내(域內)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치는 상징(Symbol)과 인지 (Perception)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우방은 종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이는 몇 해전 사이공 함락당시와 한국에서 미육군 제2사단의 일부를 철수시켰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1978년 이후(카터 대통령이 11/2 전략(戰略)을 1전략(戰略)으로 축소시켰다가 서태평양(西太平洋)에서 고조된 위협을 인식한 나머지) 워싱턴 당국이 취한 조치는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존속시키고, 주한미군 상군 철수를 취소하는 등 획기적인 것으로 우방의 이탈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범하였던 것이다.

즉 서태평양에 전개된 해·공군력을 현대화하고, 3번의 핵항모를 제7함대에 배치함으로써 2개의 항모타격부대를 서태평양에 상주시키고, F-16신예기 2개 대대를 일본에 전개하는 등 인상적인 노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태국, 싱가폴 등과의 빈번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월맹의 군사적 압력이 고조된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에 미국이 무기를 긴급투입하여 긴장사태를 완화시킨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회의적인 요인이 없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몇몇 동아시아 정부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서태평양(西太平洋)에서 역할분담을 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날 일본의 군국주의(軍國主義)가 부활(復活)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이 동(東)아시아보다도 페르시아만에 대한 공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공 간의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공에 이전한 군비와 군사기술이 북한이나 일부 동남아국가들을 과롭히는 분란분자들이 군사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과민반응이라고 하겠다.

아울든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닌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방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 가. 역내(域內)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군사위협(위협세력의 구조와 전쟁수행 잠재력)
- 나. 미국의 군사적 현시(顯示)(전개된 군사력의 형태와 기지구조)
- 다. 미국의 방위전략(기본적인 가정, 태평양전략의 범세계적 맥락, 전쟁수행목표, 미군의 임무 등)
- 라. 복수임무(複數任務)와 공약(公約)(동북아(東北亞)와 서남아(西南亞)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전략적 선택문제)마. 미국의 우방 및 맹방의 역할분담(미국의 전략구조상 우방국가들의 역할 담당 의지와 능력)

3. 미국(美國)의 군사전략(軍事戰略)은 우방국들의 역할(役割) 분담(分擔)을 강조한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서태평양에서의 미·소간의 분쟁이 전지구적(全地球的) 전쟁(戰爭)의 일부분이 될 것이나, 서구나 페르샤만(灣)에서의 싸움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인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군사력의 전방전개(前方展開), 자주성(自足性). 그리고 기동성(機動性)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은 중공(中共)과 대만(台灣)을 연합전력구조(聯合戰力構造)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기타 역내 자유진영 국가들의 좀더 큰 방위 기여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NATO와 같은 체제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역내 자유진영 해양국가들의 힘을 단합·재정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내에서 미·소분쟁이 야기될 것에 대비하여 미국의 평시 임무는 주요 해(海)·공로(空路)를 통제 확보하고, 시베리아로부터 태평양으로 뻗어 나올 소련의 세력 투사를 차단함으로써, 소련의 선제 기습공격을 거부하되, 전시엔 소련의 제 1격을 흡수하여 해(海)·공전(空戰)을 장기화 함으로써 지구력과 연합지원 잠재력을 큰 서방측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과 그 연합세력의 역할분담 임무는 다음 3가지가 될 것으로 본다.

가. 대잠전(對潛戰)에 의한 주요(主要) 해상통제(海上統制)(미 제7함대의 대잠항공기와 공격 잠수함이 광역해상(広域海上)방어의 주력을 이를 것이며, 하와이에서 동아시아해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에 대잠세력을 집중 투입한다).

나. 소련태평양함대의 3출국봉쇄(出國封鎖)(유사시(有事時) 쇼야, 쓰가루, 쓰시마의 3해협(海峡)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기뢰설치를 비롯하여 대잠항공기와 공격잠수함의 집중사용으로 가능해 진다).

다. 항공방어(航空防禦)(소련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이륙하여 태평양방어선을 돌파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방어를 위한 전략은 휴전선에서 불과 25마일 이격되어 있는 서울에 대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야포화력의 집중포격, 미항공모함과 일본 및 필리핀 그리고 괌도에 위치한 전술항공기의 대량지원, 추가적인 지상증원군의 투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페르샤만(灣)의 사태가 발발할 때는 태평양전역을 작전 책임지역으로 맡고 있는 미태평양사령부(美太平洋司令部)는 최소한도 동(東)·서태평양(西太平洋)에 있는 전 해상세력을 망라하여 3~4척의 항공모함, 괌으로부터 다수의 B-52 중폭격기, 필리핀으로부터 다수의 전술항공기, 그리고 태평양에 배치된 다수의 대잠항공기를 페르샤만(灣)으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西太平洋)은 일시적으로 힘의 공백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복수임무(複數任務) 수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태평양(西太平洋)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조지타운대학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밝히고 있다.

- ① 일본의 방위와 일본 및 한국에 이르는 항공·해상접근로 방어
- ② 한국의 방위
- ③ 남방해상교통로 및 항공수송로 개통·유지
- ④ 태국의 방위

이와 관련하여 일본북방이 소련의 항공 돌파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한 나머지, 일본은 P-3C 대잠기를 증강 배치하였으며, 남으로는 1,000해리 해로방어를 미국의 지원하에 분담하고 있으나, 전시에 소련의 태평양진출통로인 3해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뢰부설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공동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침차카반도 일대의 소련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의 항공폭격을 위해서는 태평양 전역에 배치된 6척의 항모가 총동원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국방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MIG-23과 유도탄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야기된 남북한의 심한 항공전력 격차를 고려할 때, 미국의 대량항공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괌도에 있는 B-52폭격기와 가용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이 주한미공군과 한국공군을 적기에 증원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남방해상 및 항공교통로의 방호를 위한 요건은 3가지가 있다. 첫째, 필리핀기지를 적의 항공기 및 잠수함발사 순항유도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둘째, 동북아 해협을 개통 유지해야 하며, 셋째, 월맹의 소련군사기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미국의 항공 및 대잠세력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싱가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은 상당 규모의 현장 방공 및 대잠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태국과 월맹의 군사력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서 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세안제국의 협력과 중공의 영향력 행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내에서 미국과 그 우방을 위한 방위부담은 점점 커져 가고 있으나, 미군사력 구조의 제한과 잠재적 취약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소련의 군사력 팽창은 월맹과 북한에 의한 국지적 위협을 지역적 위협으로 바꿔 놓게 되므로 말미암아, 지역적으로 통합된 대응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역내 우방들과 관계 증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역할분담 노력은 다음과 같은 5 가지의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① 태평양 세력으로 남으려는 결의
- ② 대일 안보협력의 증진
- ③ 한반도 안정을 위한 공약이행
- ④ 중공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유대강화
- ⑤ 안즈스(Anzus) 동맹체제 유지

4. 맷는 말

요컨대 미국의 서태평양에 있어서 평시의 군사력 전개는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적절히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대략적인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 함으로써, 국지화된 우발사태에 있어서 맹방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내에서의 복수임무부담(複數任務負擔)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무의 축소를 뜻하는 모순을 가져 오게 된다. 소련이 동시다발적(同時多發的)이고 다(多) 전구전쟁(戰區戰爭) 지향적인 전략을 확책하고 있는 현시점(現時點)에서 미국의 제한된 전력으로는 동시다발 사태에 균일한 보복이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수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능률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략의 양자택일을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방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미국의 입장은 국지적 내지 지역적 전략보다는 세계적 내지 전지구적 전략이란 맥락에서 대소대결 전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페르샤만(灣)의 긴장도에 따라 스윙전략의 대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대소정책을 힘, 현실주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서태평양에 대한 안보공약은 유동성과 모호성을 완전히 불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미국의 서태평양에 있어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소련과 월맹 그리고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에 달려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힘과 의지 그리고 우방국가들의 자위력량 증대 및 집단 안보를 지향한 협력에 따라서도 가변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현 위치를 견지하기 위한 의무와 능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명제가 조화적으로 수용됨으로써 그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 ① 전력규모의 확대
- ② 해외공약의 현상유지
- ③ 군대개혁 및 정예화
- ④ 맹방과의 군사적 분업도모

민족의 영광 격례의 도약

논단(論壇)

정치적 망명자(政治的 亡命者)의 국제법적 지위(國際法的 地位)



대우 정 덕 모 (鄭德謨)
(공본 법무감실)

목 차 (目次)

- I. 머리말
- II. 정치범(政治犯)의 지위(地位)
 - 1. 정치범(政治犯) 불인도(不引渡)의 원칙(原則)
 - 2. 정치범죄(政治犯罪)
 - 3. 가해조항(加害條項) 등(等)
 - 4. 결(結)
- III.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의 지위(地位)
 - 1. 영토적(領土的) 비호(庇護)
 - 2. 외교적(外交的) 비호권(庇護權)의 문제(問題)
 - 3. 3건(件)의 중공기(中共機) 사건(事件)
- IV. 맷음말

I. 머리말

일반적(一般的)으로 정치적(政治的) 망명자(亡命者)라 함은 첫째, 본국(本國)에서 정치범죄(政治犯罪)를 범(犯)한 까닭으로 소추(訴追)되어 이것을 면(免)하기 위하여 도망(逃亡)해온 자, 즉(即) 명백(明白)히 정치범(政治犯)에 해당(該當)하는 자(者), 둘째, 정치범죄(政治犯罪)를 현실적(現實的)으로 범(犯)하지는 않았으나 정치적(政治的) 압박(圧迫)을 받고 신변(身辺)의 위협(威脅)을 느껴 도망(逃亡)온 자(者), 세째, 신변(身辺)의 위협(威脅)을 느끼지는 않으나 정치적(政治的) 신조(信條)를 달리함으로써 외국(外國)에 도망(逃亡)해 온 자로 구분(区分)할 수 있는데 둘째, 세째의 경우는 이를 뮤어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범(政治犯)과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은 그 국제법적(國際法的) 지위(地位)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바, 다음에서 정치적(政治的) 망명자(亡命者)가 외국(外國)의 영토(領土)에 들어온 경우 어느 정도 보호(保護)받을 수 있는가를 중심(中心)으로 약술(略述)하고자 한다.

II. 정치범(政治犯)의 지위(地位)

1.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

국제법상(國際法上)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Extradition)는 타국가(他國家)의 범죄인(犯罪人)이 자국(自國)에 도망(逃亡)하여 왔을 때 이를 그 본국(本國)에 인도(引渡)하는 것을 말하는데,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는 아직 일반(一般)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제도(制度)는 아니며, 따라서 특별(特別)한 조약상(條約上)의 의무(義務)가 없는 한(限) 범죄인(犯罪人)의 인도(引渡)여부는 각(各) 국가(國家)가 자유(自由)로 이르를 결정(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實際)에 있어서는 각(各) 국가(國家)는 다른 나라와의 개별적(個別的)인 조약(條約) 또는 국내법(國內法)에 의(依)하여 범죄인(犯罪人)을 인도(引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나아가 이러한 조약(條約)이 없는 경우라도 각국가(各國家)는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있는 한(限) 범죄인(犯罪人)을 인도(引渡)하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인(犯罪人) 인도(引渡)는 일반(一般)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원칙(原則)으로 확립(確立)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各) 국가(國家)의 개별적(個別的)인 조약(條約)에 의(依)하여 또는 국제예양상(國際禮讓上)의 관례(慣例)로 실질상(實質上)으로 일반화(一般化)된 제도(制度)이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아래 대부분(大部分)의 범죄인(犯罪人) 인도조약(引渡條約)은 정치범죄(政治犯罪)를 인도범죄(引渡犯罪)로부터 제외(除外)한다는 규칙(規則)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관행상(慣行上) 및 조약상(條約上)으로 정치범(政治犯)을 인도(引渡)하지 않는 규칙(規則)을 「정치범(政治犯) 불인도(不引渡)의 원칙(原則)」이라 부른다.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은 프랑스 혁명(革命) 후(後)에 성립(成立)하였으

며, 그 이전(以前)에는 반대(反對)로 정치범(政治犯)을 인도(引渡)하고 보통범(普通犯)을 인도(引渡)하지 않은 관행(慣行)이 보통이었다. 원래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의 관행(慣行)은 외국 정부(外國政府)에 대(對)한 일종(一종)의 봉사(奉仕)로서 외교적(外交的) 효과(效果)를 목표(目標)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外交的)으로 효과(效果)가 가장 큰 정치범(政治犯)의 인도(引渡)로부터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가 시작(始作)되었다는 것은 자연(自然)의 순서(順序)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革命)에 이르러 일방(一方)으로는 전제(專制)와 압박(圧迫)에 반항(反抗)하는 정치범(政治犯)의 비호(庇護)가 인도상(人道上)의 견지(見地)에서 요청(要請)됨과 동시에 타방(他方)으로는 오늘의 정치범(政治犯)은 내일(來日)의 주권자(主權者)가 되는 전변무상(転變無常)의 정치정세(政治情勢) 하(下)에서 자국(自國)에 망명(亡命)한 정치범(政治犯)을 현재(現在)의 주권자(主權者)에게 인도(引渡)하는 것이 과연 외교적(外交的) 공리주의(功利主義)에 상응(相應)하는 것인지 의문시되었다.

이리하여 먼저 1793년(年)의 프랑스 헌법(憲法)은 자유(自由)를 위한 외국(外國)의 망명자(亡命者)에게 비호(庇護)를 부여하였으며, 다른 여러 나라도 공포정치(恐怖政治)로부터 도망(逃亡)한 프랑스 망명자(亡命者)에게 비호(庇護)를 부여하였다. 그후(後) 1830년(年)까지 영국(英國)을 위시한 자유주의(自由主義) 제국(諸國)이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을 먼저 국내법(國內法)에 채용하고 다음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 중(中)에 채용하여 반동제국(反動諸國)(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과 항쟁(抗爭)하였다.

즉(即) 1833년(年)에는 벨지움이 유명한 범죄인(犯罪人) 인도법(引渡法)을 제정(制定)하여 처음으로 정치범(政治犯)의 인도(引渡)를 금(禁)하였다. 1834년(年)에는 벨지움과 프랑스간(間)의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에서 처음 국제적(國際的)으로 채용되었다. 그 후(後)에도 불인도원칙(不引渡原則)은 점차로 광범하게 채용되어 가장 반동적(反動的)인 러시아도 1867년(年)부터 이 원칙(原則)을 채용함에 이르렀다.

2. 정치범죄(政治犯罪)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行為)가 규정상의 불인도(不引渡)대상인 정치범죄(政治犯罪)에 해당(該當)하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伝統的)으로 정치범죄(政治犯罪)의 개념상(概念上) 유형(類型)은 순수정치범죄(純粹政治犯罪)와 상대적(相對的) 정치범죄(政治犯罪)로 구분(区分)되며, 전자(前者)에 관(關)하여는 불인도(不引渡)의 원칙(原則)을 일반적(一般的)으로 수락(受諾)하고 있으나, 후자(後者)에 있어서는 그 처리상(處理上) 상당(相當)한 관행(慣行)의 불일치(不一致)와 혼란(混亂)이 있다.

가. 순수정치범죄(純粹政治犯罪)

순수정치범죄(純粹政治犯罪)는 범죄행위(犯罪行為)의 대상이 국가(國家), 구체적(具體的)으로는 정부(政府) 또는 정부조직(政府組織)인 범죄(犯罪)로서 보통범죄(普通犯罪)의 요소(要素)를 결(缺)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역(反逆)(treason), 선동(煽動)(sedition) 및 간첩(間諜)

(espionage) 등(等)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Havard Draft참조) 이들 순수정치범죄(純粹政治犯罪)는

(1) 보통범죄(普通犯罪)로서의 기본적(基本的) 요소(要素) 예(例)건대 형법상(刑法上)의 범의(犯意)가 없고,

(2) 범죄(犯罪)의 목적(目的)이 현존정부(現存政府)의 공권침해(公權侵害)이며 불법적(不法的) 수단(手段)으로 기존정치상황(既存政治狀況)의 변화(變化)를 유도(誘導)하는데 있으며,

(3) 범죄(犯罪)의 목표(目標)가 정부(政府)이기 때문에 개인(個人)의 사권침해(私權侵害)가 없으며,

(4) 범죄인(犯罪人)이 주(主)로 공격(公的) 관심(關心)의 동기에서 범죄(犯罪)한 것이며, 복수(復讐), 증오(憎惡)와 같은 개인적(個人的) 고려가 아니라 이타적(利他的) 애국적(愛國的) 감정(感情)에 의(依)하여 감행(敢行)되었고,

(5) 확신범적(確信犯的) 성질(性質)을 지니고 있다.

순수정치범(純粹政治犯)은 자신(自身)이 굳게 믿고 있는 정치상황(政治狀況)을 변경(變更)시키려는 기도에 실패(失敗)한 것이므로 인도(引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상대적(相對的) 정치범죄(政治犯罪)

순수정치범죄(純粹政治犯罪) 행위(行為)에 보통범죄(普通犯罪)의 요소(要素)가 내포되어 있거나 관련(關聯)되어 있을 때 이를 상대적(相對的) 정치범죄(政治犯罪)라고 부른다. 상대적(相對的) 정치범죄(政治犯罪)는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과 보통범죄(普通犯罪)의 성격(性格)을 공유(共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본국(本國)으로 인도(引渡)되어지지 않기를 원(願)하는 범죄인(犯罪人)은 보통범죄(普通犯罪)를 모두 정치범죄(政治犯罪)에 몰입(沒入)시켜 주장(主張)할 것이고, 범죄인(犯罪人)의 인도(引渡)를 요구(要求)하는 추적국(追跡國)으로서는 정치범죄(政治犯罪) 성질(性質)을 배제(排除)하거나 별개(別個)의 범죄(犯罪)로 분리(分離)할 것을 주장(主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事件)을 취급하는 법원(法院)으로서는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을 위반(違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同時)에 보통범죄(普通犯罪)에 관(關)하여는 범죄인(犯罪人)을 처벌(處罰)하여야 하는 입장(立場)에 서기 때문에 법원(法院)은 보통범죄(普通犯罪)와 정치범죄(政治犯罪)와의 관계(關係)를 특정사건(特定事件)에 당(當)하여 개별적(個別的)으로 또한 상대적(相對的)으로 평가(評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관(關)하여 입법례(立法例) 및 판례(判例)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基本的) 방식(方式)은 다음과 같이 대별(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英)·미법계(美法界)의 부수이론(附隨理論) (Incidence - test)

1870년(年)에 제정(制定)된 영국(英國)의 범죄인(犯罪人) 인도법(引渡法)은 정치범죄(政治犯罪)에 관(關)한 조항(條項)에서 도망범죄인(逃亡犯罪人)의 인도(引渡)를 거부(拒否)하여야 할 경우로서 ①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의 범죄(犯罪)와 ② 인도청구(引渡請求)가 실제(實際)로

는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의 범죄(犯罪)를 처벌(處罰)하기 위하여 행(行)하여 졌을 때로 규정(規定)하고 있다. 영국(英國)은 In Re Castioni 사건(事件) (1890)에서 앞의 조항(條項)을 해석(解釈)함에 있어 Castioni와 같이 “범죄(犯罪)가 정치적(政治的) 동란(動亂)(소요(騷擾))에 부수(附隨)되었거나 그 일부(一部)를 구성(構成)하는 경우”에는 인도(引渡)에서 제외(除外)된다고 판결(判決)함으로써 영국(英國)의 부수이론(附隨理論)을 판례(判例)로써 확립(確立)하였다. Castioni는 스위스인(人)으로 정치적(政治的) 소요(騷擾) 중(中)에 주의회의원(州議會議員)을 살해(殺害)한 후(後) 영국(英國)으로 도망(逃亡)하였는데, 이 사태(事態)는 소수인의 소란상태(騷亂狀態)를 넘어 무장집단(武裝集團)이 정권획득(政權獲得)을 목적(目的)으로 주청사(州廳舍)에 난입(亂入)한 내란상태(內亂狀態)에서 발생(發生)하였다. Castioni가 피해자(被害人) 개인(個人)에 대(對)한 적의(敵意) 또는 악의(惡意)의 동기(動機)에서 범행(犯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事實)이 증명(證明)됨으로써 재판부(裁判部)는 인도제외(引渡除外)대상인 정치범죄(政治犯罪)에 해당(該當)한다고 판시(判示)하였다.

부수이론(附隨理論)에 의(依)하면

첫째, 정치적(政治的) 반란(反亂) 또는 폭동(暴動)이 존재(存在)하고

둘째, 인도청구(引渡請求)된 범죄(犯罪)가 반란(反亂)의 일부(一部)를 구성(構成)하거나 부수(附隨)되는 것일 경우 상대적(相對的) 정치범죄(政治犯罪)의 보통범죄부분(普通犯罪部分)은 정치범죄(政治犯罪)로 전환(轉換)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美國)의 부수이론(附隨理論)은 영국(英國)의 제도(制度)에 그 기초(基礎)를 두고 있지만, 일반범죄(一般犯罪)와 정치적(政治的) 행위(行為)의 부수관계(附隨關係)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범죄인(犯罪人) 불인도(不引渡)의 사유(事由)로 고려된다. 1894년(年) In Re Ezeta 사건(事件)에서 정치범죄(政治犯罪)란 “내란(內亂)(civil war), 반란(反亂)(insurrection), 정치적(政治的) 선동(煽動)(political commotion)의 조장 또는 그 과정에서 범행(犯行) 된 모든 범죄(犯罪)”라 하였다.

(2) 불란서법(仏蘭西法)의 정치적(政治的) 목적이론(目的理論)(political objective test)

불란서법(仏蘭西法)은 전통적(傳統的)으로 보다 엄격한 해석기준(解釈基準)을 택(択)하고 있다. 정치범죄(政治犯罪)를 넓게 해석(解釈)할 때의 남용(濫用)을 막기 위하여 범죄(犯罪)의 성격(性格)을 그 피해(被害人) 받은 권리(權利)의 성질(性質)에 따라 결정(決定)한다. 범죄(犯罪)의 결과(結果)가 국가(國家)의 정치조직(政治組織)을 향(向)한 것이면 범죄인(犯罪人)의 범죄동기는 개의치 않고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의 범죄(犯罪)로 간주(看做)한다. 정치(政治) 범죄(犯罪)가 되기 위하여는 범죄(犯罪)의 목적(目的)이 통치기구(統治機構) 및 주권(主權)에 대(對)한 권리침해(權利侵害)에 있고 정치기관(政治機關)에 손해(損害)를 끼치는 범죄(犯罪)로서 국가(國家)의 기본법(基本法)에 의(依)하여 확립(確立)된 질서(秩序)에 혼란(混亂)을 주고 권력배분(權力分配)을 교란(攢亂)하는 범죄(犯罪)여야 한다.

(3) 스위스법상(法上)의 정치적(政治的) 동기이론(動機理論)(political motive test)

In Re Ockert 사건(事件)(1933)을 비롯한 Swiss 판례(判例)의 입장(立場)은 상대적(相對的) 정치범죄(政治犯罪)가 보통(普通) 범죄(犯罪)의 성격(性格)을 갖고 있지만 부대적(附帶的) 상황(狀況) 특(特)히 동기와 목적때문에 우월적(優越的)으로 정치적(政治的) 성질(性質) (predominantly political complexion)을 갖는 행위(行為)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정치적(政治的) 동기(動機)는 범죄(犯罪)의 성질(性質) 결정(決定)에 지배적(支配的) 작용(作用)을 하지만 범죄인(犯罪人)이 인도(引渡)대상에서 제외(除外)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要件)을 충족(充足)하여야 한다.

첫째로 국가(國家)의 정치조직(政治組織)에 변화(變化)를 주기 위하여 한 정당(政党)이 추구(追求)하고 있는 목적(目的)과 범죄인(犯罪人)이 행(行)한 보통범죄행위(普通犯罪行為) 사이에는 직접적(直接的)인 관련(關聯)이 존재(存在)하여야 하고, 정치적(政治的) 활동(活動)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行為時)의 정치적(政治的) 동기(動機)가 추정(推定)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상대적(相對的) 정치범(政治犯)에 있어 정치적(政治的) 요소(要素)는 보통범죄(普通犯罪)의 요소(要素)보다 우월(優越)하여야 한다는 우월이론(theory of predominance) 상의 요건(要件)을 충족(充足)하여야 한다.

3. 가해조항(加害條項) 등(等)

국가원수(國家元首)의 살해(殺害) 및 그 미수(未遂)는 정치범죄(政治犯罪)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大部分)의 현행(現行) 조약(條約) 및 국내법(國內法)에는 “외국정부(外國政府)의 원수(元首) 및 그 가족(家族)의 신분(身體)에 대(對)한 침해(侵害)가 살인(殺人)을 구성(構成)할 때에는 정치범(政治犯)으로 인정(認定)되지 않는다”는 가해조항(加害條項)(Attentat Clause)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조항(加害條項)을 탄생(誕生)시킨 원인(原因)은 법리론적(法理論的)인 타당성(妥當性)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간(國家間)의 외교관계상(外交關係上)의 곤경(困境)을 피하기 위하여 창안(創案)된 정책적(政策的) 배려의 결과(結果)이었다. 이 가해조항제도(加害條項制度)의 직접적(直接的)인 계기는 1854년(年) Napoleon 3세에 대한 살해미수사건(殺害未遂事件)에 있었다. 범인(犯人)인 Jacquin이 벨지움으로 도피하자 프랑스는 범죄인(犯罪人)의 인도(引渡)를 요청(要請)하였으며, 벨지움은 당시(當時)의 개념상(概念上) 당연(當然)히 정치범(政治犯)에 해당(該當)하였으므로 조약상(條約上)의 의무(義務)로서 인도(引渡)를 거부(拒否)할 수 밖에 없었다. 법적(法的)으로는 정당(正當)한 인도거부(引渡拒否)이었지만 외교적(外交的)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고통(苦痛)이었기 때문에 벨지움은 1856년(年) 국내입법(國內立法)으로 가해조항(加害條項)을 신설(新設)하고 그 후(後)의 국제조약(國際條約)에도 삽입하였다. 때문에 가해조항(加害條項)은 Belgium Clause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그후(後) 많은 국가(國家)가 조약(條約) 및 국내입법(國內立法)에 이러한 취지를 규정(規定)함으로써 일반적(一般的)인 관행(慣行)으로 성립(成立)하였다.

한편 집단살해죄(集團殺害罪)도 정치범(政治犯)으로 인정(認定)되지 아니 한다(Genocide 조약(條約) § 7 ①).

4. 결(結)

이상(以上) 기술(記述)한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은 일반(一般) 국제법상(國際法上) 확립(確立)된 것으로 정치범(政治犯)을 본국(本國)에 송환(送還)하는 것은 일반국제법(一般國際法)에 대(對)한 위반(違反)이 된다.

III.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의 지위(地位)

1. 영토적(領土的) 비호(庇護)

정치범(政治犯)에 해당(該當)되지 않는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에 대(對)해서도 퇴거(退去)를 강제(強制)하거나 본국(本國)에 송환(送還)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을 보호(保護)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1차대전(次大戰) 이후(以後)의 국제법(國際法)의 방향(方向)이다(1933년(年)의 「피난민(避難民)의 국제적(國際的) 지위(地位)에 관한 조약(條約)」. 즉 Nansen조약(條約) § 3, 1948년(年) 세계(世界) 인권선언(人權宣言) § 13②, § 14①, 1951년(年) 주네브에서 체결(締結)된 「피난민(避難民)의 지위(地位)에 관(關)한 조약(條約)」 § 31, § 32①, § 33①). 그러나 이런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에 대(對)한 보호(保護)는 소수의 국가(國家)가 국내법상(國內法上)으로 보장(保障)하고 있을 뿐(1947년(年) Italy 헌법(憲法) § 10, 독일연방공화국(獨逸聯邦共和國) 기본법(基本法) § 16②) 개개(個個)의 조약(條約)을 떠나서 일반(一般) 국제법상(國際法上)의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된 것은 아니다.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의 입국(入國)을 인정(認定)하여 영토내(領土內)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保護)하는 것을 영토적(領土的) 비호(庇護)(territorial asylum)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1967. 12. 24. UN이 채택한 외국영토상(外國領土上)의 망명권(亡命權)에 관(關)한 선언(宣言)(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이 있다. 이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人間)은 다른 나라 영토상(領土上)에 정치적(政治的) 망명권(亡命權)을 갖는다고 확인(確認)하며 이러한 망명권(亡命權) 부여가 평화(平和)롭고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인 행위(行為)인 경우 다른 나라에 비우호적(非友好的)인 행위(行為)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大部分)의 국가(國家)는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의 입국(入國)을 인정(認定)하며 비호(庇護)를 부여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권리(權利)로서 정(定)하는 것이고 비호(庇護)의 의무(義務)를 인정(認定)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외교적(外交的) 비호권(庇護權)의 문제(問題)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이 외국(外國)의 영토(領土)아닌 외국공관(外國公館)에 비호(庇護)를 청구(請求)하였을 때에 어떻게 처리(處理)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영토적(領土的) 비호권(庇護權)에 대(對)하여 외교적(外交的) 비호권(庇護權)이라 한다. 즉 공관(公館)이 외교적(外交的) 비호권(庇護權)을 갖느냐의 문제(問題)이다(이것은 정치범(政治犯)에 관(關)하여도 동일(同一)하다). 16, 7세기(世紀)의 유럽에 있어서 가혹(苛酷), 편파적(偏頗的)인 재판(裁判)의 집행(執行)으로부터 보호(保護)하기 위(為)하여 공관(公館)에 범죄인(犯罪人)을 비호(庇護)한 예(例)는 많으며, 정정(政情)이 불안(不安)한 중남미(中南美) 제국(諸國)에서도 정치범(政治犯)에 대(對)한 비호(庇護)의 관행(慣行)은 거의 일반화(一般化)된 형편(形便)이다. 그러나 공관(公館)의 불가침(不可侵)은 외국대표(外國代表)에 대(對)한 예우(禮遇)의 관념(觀念)과 사절(使節)의 직무수행(職務遂行)을 용이케 할 필요(必要)에서 나온 것이지 공관(公館)이 파견국(派遺國)의 영토(領土)의 일부분(一部分)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19세기(世紀) 이후(以後) 각국(各國)의 국내법(國內法)이 정비됨에 따라 이 관행(慣行)은 거의 폐지(廢止)되었다. 다만 오늘날에는 내란(內亂), 혁명(革命)이 빈발하는 라틴 아메리카 제국(諸國)에 있어서 정치범(政治犯)에 대(對)한 비호(庇護)가 조약(條約)(ex, 1928년(年)의 Havana조약(條約))에 의(依)하여 인정(認定)되고 있을 뿐이며 일반국제법상(一般國際法上)으로도 외교공관(外交公館)에 비호권(庇護權)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美國)은 19세기(世紀) 아래(以來) 폭도군중(暴徒群衆)의 추적(追跡)을 받아 생명(生命)이 풍전등화격(風前燈火格)이 된 경우가 아닌 한(限) 외교적(外交的) 비호(庇護)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대폭적(大幅的)인 정책선회(政策旋回)가 일어나 군중폭도(群衆暴徒)의 추적(追跡)이 없는 경우라도 외교적(外交的) 비호(庇護)를 인정(認定)하는 여러 선례(先例)를 남기고 있다.

예(例)를 들어 1956년(年) 형가리폭동(暴動) 때 민센티 초기경(枢機卿)을 부다페스트주재(駐在) 미대사관(美大使館)에 비호(庇護)한 것이나 1978. 6. 정부시책(政府施策)에 불만을 품은 소련인 7명이 모스크바주재(駐在) 미대사관(美大使館)에 피난하여 대사관측이 이들을 비호(庇護)한 것 등(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外交的) 비호(庇護)는 영토국(領土國) 주권(主權)과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무력충돌(武力衝突)에까지 치달은 사례(事例)가 역사상(歷史上) 많았다. 최근(最近)의 신상옥(申相玉)-최은희사건(崔銀姬事件)에서 양인이 빈주재(駐在) 미대사관(美大使館)에 보호(保護)를 요청(要請)한 사실(事實)에 대(對)하여 미국(美國)이 “그들이 도움을 청해와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비호(庇護)(asylum)란 표현(表現)을 쓰지 않고 도움(assistance)이라는 표현(表現)을 쓴 것은 외교적(外交的) 비호(庇護)가 갖는 문제점(問題點)과 영역국(領域國)으로서의 오스트리아 주권(主權)에 대(對)한 배려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외교적(外交的) 비호(庇護)와 관련하여 외국군대(外國軍隊)가 비호권(庇護權)을 가지느냐가 문제되는 바, 외국군대(外國軍隊)는 외교사절(外交使節)과 달라 정치(政治)와는 무관(無關)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이므로 병영구역(兵營區域)에 들어온 정치범(政治犯) 등(等)을 비호(庇護)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반면(反面) 외국군함(外國軍艦)은 비호권(庇護權)이 있다는 것이 통설(通說)이다.

3. 3건(件)의 중공기사건(中共機事件)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의 지위(地位)와 관련하여 경우가 다른 3건(件)의 중공기(中共機) 망명사건(亡命事件)에 관(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오영근(吳榮根) 사건(事件)

1982. 10. 16. 중공군(中共軍) 조종사(操縱士) 오영근(吳榮根)이 MIG-19기를 몰고 ○○기지에 착륙하여 자유중국(自由中國)으로 망명요청(亡命要請)을 하였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對)하여 정치적(政治的) 망명의사(亡命意思)가 있음을 인정(認定)하여 받아들인 후(後)/영토적(領土的) 비호(庇護) 망명희망국(亡命希望國)인 자유중국(自由中國)으로 송환(送還)하였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망명의사(亡命意思)가 확인되면 외교당국(外交當局)이 망명희망국(亡命希望國)과의 교섭(交涉)을 통(通)하여 망명(亡命)을 주선하는데, 망명희망국(亡命希望國)이 신병인수(身柄引受)에(患) 대(對)하여 적극적(積極的)인 의사(意思)를 표명(表明)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송환(送還)하면 되나, 망명희망국(亡命希望國)이 신병인수(身柄引受)에 대(對)하여 양해(諒解)정도의 소극적(消極的) 의사(意思)를 표명(表明)한 경우에는 제네바에 있는 UN 난민고등판무관(難民高等辦務官)과 협의한 후(後) 일단 UN 난민수용소(難民收容所)에 보낸 후 그 곳에서 망명처(亡命處)로 보낸다.

나. 중공민항기(中共民航機) 사건(事件)

1983. 5. 5 탁장인(卓長仁) 등(等) 납치범(拉致犯) 6명(名)이 정치적(政治的) 망명(亡命)의 의도하에 중공민항기(中共民航機)를 납치(拉致)하여 ○○기지(基地)에 불시착(不時着)한 사건(事件)이다. 우리 나라가 가입(加入)되어 있는 항공기(航空機)의 불법납치(不法拉致) 억제(抑制)를 위한 협정(協定)(헤이그협약(協約))에 의(依)하면 항공기(航空機) 납치범(拉致犯)에 대(對)하여는 각(各) 체약국(國)은 엄중(嚴重)한 형벌(刑罰)로 처벌(處罰)할 수 있도록 할 의무(義務)를 지고, 이와 같은 기상범죄(機上犯罪)에서 형사재판관할권(刑事裁判管轄權)은 착륙국(着陸國)과 항공기(航空機) 등록국(登録國)이 경합(競合)하여 관할권(管轄權)을 가진다. 불법납치(不法拉致)는 범죄인인도조약상(犯罪人引渡條約上)의 인도범죄(引渡犯罪)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헤이그협약 § 8), 우리나라와 중공(中共) 간(間)에는 범죄인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이 체결(締結)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공(中共)이 범인인도(犯人引渡)를 요구(要求)하였음에도 이에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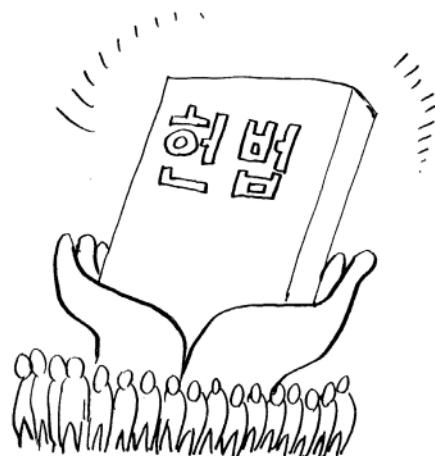
하지 않고 관할권(管轄權)을 행사(行使)하여 탁장인(卓長仁) 등(等)에게 항공법(航空法), 항공기운항안전법(航空機運航安全法) 등(等) 죄(罪)를 적용(適用) 구속기소(拘束起訴)하여 4~6년(年)의 징역형(懲役刑)을 선고(宣告)하였다.

위 재판(裁判)에서 탁장인(卓長仁) 등(等)은 그들의 항공기(航空機) 납치행위(拉致行為)가 순수(純粹)한 정치적(政治的) 동기(動機)에서의 망명(亡命)을 위한 상당(相當)한 수단(手段)으로 행(行)하여진 것으로서, 세계(世界) 각국(各國)이 비호권(庇護權)을 인정(認定)하고 있으므로 위법성(違法性)이 없다고 주장(主張)하였으나, 우리 대법원(大法院)은 탁장인(卓長仁) 등(等)이 정치범(政治犯)이 아닌 정치범(政治犯) 피난민(避難民)에 해당(該當)한다고 전제(前提)한 후(後) 이러한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에 대(對)한 보호(保護)는 소수의 국가(國家)가 국내법상(國內法上)으로 보장(保障)하고 있을 뿐 우리 나라에서 이를 보장(保障)하는 국내법규(國內法規)가 없으며 개개(個個)의 조약(條約)을 떠나 일반국제법상(一般國際法上)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된 것이 아니고, 또한 헤이그협약 제 8조(전술(前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탁장인(卓長仁) 등(等)의 위 주장(主張)은 이유(理由)없다고 판시(判示)하였다(대법원(大法院) 1984. 5. 22. '84도 39판결(判決)). 그러나 당국(當局)은 사건후(事件後) 466일(日)만에 “인도적(人道

공군만평(空軍漫評)

< 7. 17 제헌절 >

법, 질서 준수하여 선진낙도 이룩하자



의) 차원(次元)"에서 형집행정지처분(刑執行停止處分)을 한 후(後) 강제추방형식(強制追放形式)으로 망명희망국(亡命希望國)인 자유중국(自由中國)으로 송환(送還)하였는 바 당시(當時)의 언론(言論)은 이같은 처리(處理)를 운영(運營)의 묘(妙)를 살린 "적당(適當)한 선(線)"의 처리(處理)라고 표현(表現)하였다.

다. 중공기(中共機) 이리(裡里) 불시착(不時着) 사건(事件)

1985. 8. 24. 중공군(中共軍) 조종사(操縱士) 초천윤(肖天潤)이 IL-28기를 몰고 자유중국(自由中國)으로 망명(亡命)을 하기 위하여 다른 승무원(乘務員)의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리(裡里)에 불시착(不時着)한 사건(事件)이다. 군용기(軍用機)는 앞서 본 헤이그협약(協約) 대상에서 제외(除外)되므로(동협약(同協約) §2) 위 초천윤(肖天潤)의 지위(地位)는 민항기(民航機) 사건(事件) 때의 납치범(拉致犯)과 다르고 오영근(吳榮根)의 지위(地位)와 동일(同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천윤(肖天潤)도 망명희망국(亡命希望國)인 자유중국(自由中國)으로 송환(送還)되었다.

IV. 맷음말

이상(以上)의 것을 요약(要約)해서 말한다면, 정치적(政治的) 망명자(亡命者)가 다른 나라의 영토(領土)에 들어 갔을 때 정치범(政治犯)일 경우에는 정치범불인도(政治犯不引渡)의 원칙(原則)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본국(本國)에 송환(送還)하면 국제법 위반(違反)이 될 것이고, 정치적(政治的) 난민(難民)의 경우에는 본국(本國)에 송환(送還)하지 않고 보호(保護)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國際法)의 방향(方向)에 불과(不過)하며, 또한 비호(庇護)를 부여하는 일 이 있어도 그것은 영토국(領土國)이 권리(權利)로 행(行)하는 것이지 비호(庇護)의 의무(義務)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政治的) 망명자(亡命者)가 외교공관(外交公館)에 들어 갔을 경우가 분쟁(紛爭)의 소지가 많은 바 1950년(年)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ICJ)가 소위 Asylum Case에서 내린 판결내용(判決內容)처럼 국제법상사절단(國際法上使節團)의 공관(公館)은 정치망명자(政治亡命者)에 대(對)하여 비호(庇護)를 부여할 권리는 없으나, 당사자(當事者)를 인도(引渡)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국간(當事國間)의 교섭(交涉)에 의(依)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教育) 9대(大) 덕목(德目)

명예심(名譽心)

나와 너의 이름을 빛내자



대위 김봉학
(제3579부대)

국민학교 학창시절 때 일이다. 산수를 가르치는 호랑이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과 목소리를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좋다는 휴식시간의 신호가 울리자마자 우리반 굽우들은 마치 해방이라도 맞은듯, 교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교실로 뛰어다니며 천진난만하게 휴식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잠시 후, 휴식시간이 끝나고, 호랑이 선생님과는 대조적으로 인자하기에 그지없는 국어 선생님 시간이었다. 상당히 연로하신 국어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교과서를 뒤적거리다가, 책자를 덮고 나서 수수께끼를 하나 널테니 맞춰보라고 하셨다. ‘분명히 자기 것인데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제일 먼저 답을 맞추어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웅성웅성대며 떠들었지만 결국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로 선생님은 해답을 말씀해 주시기는커녕, 교단 밑에 있는 출석부를 꺼내 펼치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60여명의 출석학생을 모두 부르고 나서,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그 해답을 모르겠냐고 거듭 질문하셨다. 상대방 얼굴에서 무엇인가 발견하려는듯,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선생님은 그때서야 ‘이름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은 너그러운 표정으로 결결 웃으시더니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것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불쌍한 동료를 자기 일처럼 도와줄 때 비로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우리들은 힘찬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지만, 당시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너,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라는 제하(題下)의 소재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떠오르는 것은 본인도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못한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선생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도, 퍽이나 다행스럽게 여기도 위안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성실했는지, 스스

로 반성해 보면 아직도 나는 암탉(스스로의 행위)이 계란(명예)을 품었다기보다는, 암탉이 계란을 품었는지 혹은 안 품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 같다(물론, 자신의 행동이 계란의 양적·질적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인간 기본 욕구의 하나인 타인(他人)의 인정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명도 없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계란 뿐 아니라, 네가 가진 계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란을 생각해 보자. 누구에게 내놓아도 떳떳하고, 건강한 계란이라고 자부(自負)할 수 있는지 잠시 반성하자.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땅위에서 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매우 「자랑스럽다」는 답변이 서슴없이 나온다면 국민정신교육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이고, 반면에 머리를 긁적이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교육의 중요성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 될 것이다. 물론, 상기(上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의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에 와서는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숙명적인 위치에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요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을 냉철히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요인이 지배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국민정신교육을 마음 속에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의문을 가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명예심과,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민족의 산 저력을 일깨우기 위해 부각된 국민정신교육의 설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업사회 속에서의 인간성 회복이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후진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하여, 이제는 우리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고도 산업체제로 틸바꿈하였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우리의 복지생활은 윤락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산업 간의 불균형, 해외의존도의 심화, 과도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심각한 문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적 풍토가 인간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문화, 조직화 분업화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식구조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주의적 경향으로 빠져들어 따뜻한 인간미 다정한 이웃관계, 상부상조의 정신 등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의 미덕이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민족 고유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국민정신교육이다. 둘째는, 분단 상황 하에서의 체제 이데올로기 극복이다. 아시아의 지도를 걸쳐 놓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를 살펴보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북으로는 소련, 중공, 북한과 접하고 있기에 한반도가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라는 것을 한 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우기 우리는 불과 30여 년 전에 6.25라는 민족의 비극을 통하여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지금도 허리가 잘린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이다.

세째는, 우리의 독특한 민족주체성 인식이다. 주체(主體)라는 것은 몸으로 행동하는 실질적인 것임으로, 의식과 관련된 주관(主觀)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러기에 한민족에 있어서 주체성은 그저 관념이 아니라, 그대로 한 민족의 산 저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성이란 민족적으로는 혈통이요, 정치적으로는 주권이요, 문화적으로는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체성의 산 저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단결이 행동에 의해서 생활화되고 습관화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설정된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은 우리 국민이 좀더 보람있는 삶, 좀더 건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9대 덕목은 국민 기본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의지이다. 그 중 이름을 빛내기 위한 덕목은 바로 명예심이다. 명예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하였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하다. 1개월 간의 가입교 기간동안은 Animal Training으로써, 즉 집단생활을 하기 위한 규정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자질을 소유케 하기 위한 훈련이다. 식사 한끼를 하더라도 직각 식사를 하고 보행 할 때는 부대행동이며 복도나 밖에서 보행할 때는 어느곳에서든지 직각 보행이었다.

1개월의 고된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 잠까지 설치던 어느날, 취침시간을 알리는 나팔 음악과 함께 소등을 하고, 잠자리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비상집합 명령이 기지방송을 통해 생도대에 울려퍼졌다. 우당탕…… 우당탕…… 군장을 꾸려 신속한 동작으로 점호장에 집합하여 인원보고를 마치자, 이후고 O선배님이 연단 위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귀관들은 자랑스런 공군 사관 생도다. 그러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듯 일부 훈련 메추리가(정식으로 입교식을 하기 전까지는 메추리라고 명함) 보이는 곳에서는 직각 보행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직각 보행을 실시하지 않는데, 그래서야 어찌 뜻밖의 사관생도가 되겠는가!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하자」라는 말과 함께 정신자세(명예심)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그날 밤 많은 땀을 흘리고, 내무반에 돌아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남이 보든 안보든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행동하였는지……」

가입교가 끝나고 정식으로 생도가 되었을 때에도 「명예」라는 두 글자는 항상 우리 눈 앞에 있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 전대장 생도는 점호장에서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명예구호를 힘차게 말하자고 구령했다.

- 명 예 -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하고 있는
행할 행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행하면 그것이 명예다.

시험 보기 전에 명예는 곧 Cunning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거두어 들이자는 것이다. 상기(上記) 명예 구호만큼, 명예에 대해 짧막하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구호도 없을 것이다. 물론,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행위를 뜻밖의 명예로 생각하듯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이 뜻밖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뜻밖하다고 자부하는 사고 방식은 명예 구호에서 제외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명예와 체면(體面)을 혼동하고 있다. 웬만한 국어사전을 찾아 보아도 명예=자랑(Glory)=이름 높은 명판(Honour)=체면(Dignity)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명예란 체면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 어느 유명한 권투선수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손님과 싸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권투선수가 우세한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권투를 하지않은 손님이 권투선수를 떡 주무르듯 주물러 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화가난 권투선수는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후배, 동료를 전화로 불러내어 여러 명이 그 손님을 주물러 등심처럼 주물러 놓았다면, 그 권투선수는 권투선수로서의 체면은 어느정도 유지했지만 명예는 구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명예 체면이 된다. 그러면 명예를 개인의 이름을 빛낸다는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흔히 우리는 남이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이 남을 부를 때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별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있다.

이를테면 우등생, 자선가, 모범사원, 모범용사 등과 같이 좋은 의미에서의 고유명사와 낙오자, 실패자, 사기꾼 등 불미스러운 고유명사가 붙어다니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법 신빙성 있게 표현할 때에도, 「공자, 맹자, 예수그리스도께서」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한다.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날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과 일맥상통한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야 하고, 남는 것은 이름밖에 없다. 유태인들은 자신이 유태인인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빛낸 민족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한국인이다. 나의 이름이 빛남은 곧 우리 한국인이 빛나는 것이다. 우리 민족도 술한 이(異) 민족(民族)의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오늘날까지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이루어 온 저력 있는 민족이 아닌가! 남

강 이승훈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7년 7월 평양에서 「교육의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라는 연설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오산학교를 세웠다. 1930년 5월 9일 67세의 나이로 고향 오산에서 별세하신 이승훈 선생은 생전의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屍身)을 학생들의 공부를 위하여 자신의 뼈로 골격표본을 만드는데 사용해 달라고 하셨다.

193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동우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을 때, 일본인 검사가 그를 심문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자 잠시 거리낌 없이 안창호 선생은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행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원래 비범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치신 분이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예는 개인적인 명예이기 보다는 한국인 모두의 명예이다. 선조들의 이름을 빛내고, 한국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데 뭉쳐야 비로소 빛나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위업을 송상하고 후세에게 떳떳한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군인은 국토방위에, 학생은 학업에, 예술인은 예술에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해야겠다. 원래 글이란 개인의 체험과 지식이 일치되어야 글로서의 생명력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횡설수설했어도, 다음에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명예는 아득히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명예」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자.

병영생활 명랑화를 위한 장병상담과 센토

증위 김동억
(제8639부대)



목 차

1. 군상담의 특징
2. 상담자의 태도
3. 상담을 이끌어가는 기술
4. 맷음말

인간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사회 중에서도 군대사회는 일반사회와 다른 강한 폐쇄성과 행동제한, 상명하복관계의 계급질서요구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소속원이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입대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병사들의 문제는 그가 입대하기 전의 사회, 학교, 가정에서부터 근원되는 것이겠지만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휘감독관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각급 지휘감독관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병사들의 고민과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법 중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적 이해에 바탕을 두는 관계로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의 기본적인 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상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즉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자의 태도, 피상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군상담의 특징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상담을 피트로페사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내담자의 자기이해,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에 군상담이라 하면 「군집단 내 병사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가 그들의 훈련이나 업무수행 등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앞에 제시한 상담의 정의를 살펴 보면 일반상담이든, 군상담이든 문제를 지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돋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군상담의 경우, 조직의 특수성과 임무의 중요성, 그리고 집단의 목표를 비중높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상담과 구별된다. 이에 따른 군상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피상담자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사춘기를 벗어난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는 사춘기 후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는 성숙되었지만 정신적, 인격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에 있는 미성숙 시기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급격한 환경변화와 역할변화에 따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적응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이다. 상이한 가정, 학교, 지역 등 성장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매우 복잡한 집단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생활과 공동목표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각자 계급이 다른 제복을 입고 대화를 하는 군에서는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대등한 입장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는 보고체계를 철저히 요구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피상담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피상담자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네째,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군대 사회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엄격한 규율과 구성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로 설사 유익한 해결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다섯째,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거짓으로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군대 집단의 구성은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징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부대배속과 임무를 부여 받는 데도 군방침에 따라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구성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부대를 이탈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허위로 꾸며서 휴가, 전속, 보직변경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2. 상담자의 태도

상담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상담자의 상담기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자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담자는 돋는 자이다

상담은 일반적인 훈육과 달라 병사 자신이 문제를 느끼고 도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며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 문제해결을 강

요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담의 주체는 피상담자 자신인 것이다.

나. 주관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다. “군인은 반드시 아래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졸업자보다 열등하다”는 등의 편견이 일반화되어 있다. 편견이 강한 사람은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쳐서 상대방의 심정을 오해하거나 상대편 입장에 서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데 급급해한다. 상담자는 자기의 주관과 편견을 가능한 버려야 한다.

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을 처음 실시해 보는 초심자는 상담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쉽다. 그러나 상담은 사고예방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착각하면 상담은 실패하기 쉬우므로 상담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피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피상담자의 말을 꾸준히 경청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동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수동적 태도로 임해야 한다.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성급한 충고나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피상담자 자신이므로 상담자는 지나친 적극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3. 상담을 이끌어가는 기술

가. 상담의 시작

군대에서의 상담은 피상담자가 스스로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상담자가 호출하여 상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상담을 진행하기가 수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저항감 등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과정이 보다 힘이 들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상담자가 호출하여 왔든 피상담자가 스스로 찾아왔든 상담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수용적이며 온화한 태도로 피상담자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차분하게 피상담자의 말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피상담자가 머뭇거리며 말머리를 꺼내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이야기라도 말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가령 나를 만나자고 한 동기가 있을텐데”

“김일병, 요즘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불렀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등으로 피상담자가 말을 할 기회를 준다. 상담의 첫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은 피상담자가 상담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기대를 확인하고 적절한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와 영역을 밝히고, 피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도 교육하는 것이 좋다.

나. 경청

상담에서의 경청은 단순히 듣는 작업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외에 피상담자가 나타내는 말과 표현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피상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며 문제를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경청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선을 통한 접촉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의 자세이다. 약간 상담자쪽으로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째, 상담자의 몸짓이다. 상담자의 몸짓으로 피상담자의 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네째, 언어를 통한 반응이다. 피상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의 흐름이 보다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으흠”, “그래” 등의 반응으로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는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반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 질문

피상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담자에게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의 질문이나 직선적으로 물어보는 것 보다는 간접적으로 질문하여 피상담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이야기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중적 질문, 예를 들면 “내일 오겠나? 아니면 모레 오겠나?”와 같은 질문과 마구 질문을 퍼붓는 질문의 폭주, “왜?”라는 형식의 질문을 피해야 한다. 이중적 질문은 피상담자를 당황하게 하기 쉬우므로 하나씩 나누어 해야하며, 질문의 폭주는 피상담자가 생각하고 반응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또 “왜?”라는 형식의 질문은 마치 피상담자를 꾸짖는 듯한 느낌을 주기 쉽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라. 반영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이야기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 생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주면 피상담자는 상담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상담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반영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설사 그것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신상에 위협을 느낄 때는 피상담자에 의해 부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감정적 분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요약

상담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거나 혹은 1회의 상담이 끝날 때마다 그 동안에 오고 간 대화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할 때에 지난 번에 실시했던 상담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상담의 연속성을 확실히 인식하기로 한다.

바. 침묵

상담과정에서 대화가 중단되고 침묵이 계속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침묵은 그것이 언제 발생했으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 저항으로 인한 침묵

피상담자가 보기에 상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나 방향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피상담자는 종종 침묵으로서 저항을 한다. 이럴때는 “이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군.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지” 등으로 피상담자의 감정도 수용하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다.

(2) 혼돈으로 인한 침묵

피상담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생각 또는 감정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혼돈이 일어나기 쉽다. 이럴 때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3) 탐색으로 인한 침묵

피상담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를 생각하거나, 피상담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느라 침묵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도 침묵하게 된다.

이런 때는 설불리 말을 하여 피상담자의 생각의 흐름을 중단시키지 말고 다시 상담할 태세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4) 기타 요인에 의한 침묵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침묵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담자를 안정시켜 편안히 말하도록 격려해 주고 때로는 종이와 연필을 주어 글로서 표현하도록 도와주거나,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화제를 찾아야 한다.

사. 조언

군상담에 있어서 그 주된 목적이 심리치료보다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병사들의 적응과 발달을 돋는 데 있기 때문에 조언과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조언을 할 때에는 피상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입대 전 경력 등을 고려하고, 피상담자가 조언을 수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암시적인 형태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상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상담 중에서도 군상담은 문제예방을 위한 방편임을 고려할 때 상담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 필자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병사 개개인의 신상파악이다.

신상파악은 문제예방의 첫걸음이면서도 그 어려움은 누구나 이해하리라 믿는다. 필자의 소속대대에 J라는 방위병이 있었다. 평소 반항적인 성격을 나타내긴 하였으나,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집해제는 1개월 가량 남겨 둔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군무이탈을 하게 되어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 신상파악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J가 평소 이야기하던 집안환경, 본인의 학력, 주변환경 등이 실제로 비해 엄청나게 과장되었던 것이다. 평소 과장했고 또 되고 싶었던 자신을 군 생활에서는 남을 속이고 생활할 수 있었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비판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례였다.

이 사고는 보다 정확한 신상파악으로 적절히 상담하고 충고함으로써 예방도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며 신상파악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 사례였다.

둘째, 병사집단의 분위기이다. 같은 군인이라 하지만,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소속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근무지를 조정한 방위병이 2일만에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각 부서 간의 분위기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상 거론한 이외에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상담자에 따라서 또 피상담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상담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은 간부 개개인이 경험을 쌓음으로써 가능하리라 믿으며 본고를 읽어준 간부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는 바이다.

신좌경사상비판(新左傾思想批判)

신식민지주의론(新植民地主義論) 비판(批判)

현대이념비교연구회(現代理念比較研究會) 편(編)

* 본(本) 논문(論文)은 현대이념(現代理念) 비교(比較) 연구회(研究會)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부설(附設)) 고(故) 이승현교수(李承憲教
授)의 유고(遺稿)로서, 연구회(研究會)측의 협조로 수록한 것임.



목 차(目次)

- I.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의 문제시각(問題視角)
- II. 전후 국제체제(戰後國際體制)의 변동(變動)과
제삼세계(第三世界)의 특수성(特殊性)
- III.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에 대한 평가(評価)

I.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의 문제시각(問題視角)

1.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 대두(擡頭)의 국제환경(國際環境)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neo-colonialism)는 1950년대말(年代末) 이후(以後) 먼저 「아프리카」의 지도자(指導者)에 의해 제기(提起)되고 이어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 및 중남미(中南美)에 이른바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이 확산(拡散)됨에 따라 국제적(國際的) 마르크스주의(主義) 진영(陣營)의 이론적(理論的) 연구과제(研究課題) 및 실천적(實踐的) 투쟁과제(鬪爭課題)가 되어 온 것이다. 이상(以上) 삼개대륙(三個大陸)의 「마르크스」 주의자(主義者) 및 과격주의자(過激主義者)들은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구식민지(舊殖民地) 통치국(統治國)이 식민지(殖民地)에게 형식적(形式的)으로 독립(獨立)을 부여(賦與)하였으나 간접적(間接的) 방법(方法)으로 신생국(新生國)을 지배(支配)함으로써 사실상(事實上)은 식민지통치(殖民地統治)를 계속(繼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結果)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主張)한다,

2.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의 개념내용(概念內容)

다음으로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가 개시(開始)된 시기(時期)와 그때의 국제정세(國際情勢) 및 그 개념내용(概念內容)을 살펴 본다. 1960년(年) 2월(月) 당시(當時)의 「맥미란」 영국(英國) 수상(首相)은 「케이프·타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陳述) 하였다. 『변혁(變革)의 바람이 대륙(大陸) (아프리카) 전체(全體)에 불어 다니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間)에 이러한 민족적(民族的) 자각(自覺)의 성장(成長)은 정치적(政治的) 사실(事實)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사실(事實)로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국가정책(國家政策)은 이 사실(事實)을 고려(考慮)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미란」 연설(演說)에 대하여 「모스크바」 성명(声明)은 제국주의(帝國主義) 제국(諸國)이 1950년대(年代) 말(末)부터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 및 중남미삼대륙(中南美三大陸)에서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의 고양(高揚)으로 인(因)해 생긴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의 위기(危機)를 현실(現實)로서 인정(認定)한 것은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을 무력(武力)으로 억압(抑压)하여 구래(旧來)의 식민지(殖民地) 지배(支配)를 계속(繼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狀況) 아래 그들은 그 식민지정책(殖民地政策)을 전환(転換)하여 구식민지(旧殖民地)에 대한 지배(支配)와 착취(榨取)를 새로운 방법(方法)과 형태(形態)로 계속(繼續)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指摘)하는 반응(反應)을 보였다.

이러한 제국주의(帝國主義) 제국(諸國)의 식민지정책(殖民地政策)의 변화(變化)에 대해 가장 민감(敏感)히 대응(對應)한 것은 이와 대결(對決)하여 완전독립(完全獨立)을 위해 투쟁(鬪爭)하고 있던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이었다. 즉 1960년(年) 1월(月) 「튜니스」에서 개최(開催)된 제이차(第二次) 전(全) 「아프리카」 인민회의(人民會議)가 제국주의(帝國主義) 제국(諸國)의 새 정책(政策)을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라고 명명(命名)한 이래(以來) 「코나크리」에서 개최(開催)된 제이차(第二次)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人民連帶會議) (60년(年) 4월(月)), 「카이로」에서 개최(開催)된 제삼차(第三次) 전(全) 「아프리카」 인민회의(人民會議) (61년(年) 3월(月)), 「반동」에서 개최(開催)된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 인민연대위원회(人民連帶委員會) 제사차(第四次) 이사회(理事会) (61년(年) 4월(月)) 등의 제회의(諸會議)에서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의 제형태(諸形態)와 방식(方式)이 명확(明確)히 구명(究明)됨과 아울러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의 주요(主要)한 투쟁(鬪爭) 목표(目標)로서 인식(認識)하였던 것이다.

* 이 글은 1984년(年) 1월(月) 2일(日) 작고(作故)한 건국대학교(建國大學校) 정법대(政法大) 교수(教授) 이승현박사(李承憲博士)가 본 연구회에서 한 특강(特講)을 정리 제출한 유고(遺稿)입니다. 삼가 고인(故人)의 명복(冥福)을 빕니다.

그 중(中)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에 관한 가장 포함적(包括的)인 정의(定義)는 「반동」에서 개최(開催)된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 인민연대기구(人民連帶機構) 제사차(第四次) 이사회(理事会)에서 채택(採擇)된 다음과 같은 정의(定義)이다.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란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새로운 형태(形態)이며 신흥국(新興國)의 독립(獨立)을 형식적(形式的)으로 승인(承認)하면서 정치적(政治的)·사회적(社會的)·군사적(軍事的)·기술적(技術的)으로 간접(間接)·교묘(巧妙)한 지배형태(支配形態)에 의하여 이들의 나라를 희생(犧牲)에 공(供)함으로써 새로이 독립(獨立)을 획득(獲得)하였거나 독립(獨立)을 쟁취(爭取)하려 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諸國)에 대한 최대(最大)의 위협(威脅)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여기서는 간접지배(間接支配)라는 정책형태(政策形態)가 강조(強調)되었다.

또한 동독(東獨)의 「돔다이」 (K. H. Domdey)라는 학자(學者)가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이해(理解)하는 전제(前提)로서 첫째 제국주의(帝國主義)의 본질(本質) 및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 저개발국(低開發國), 신흥국(新興國)에 대한 제국주의정책(帝國主義政策)의 본질(本質)은 변화(變化)하고 있지 않다는 것, 둘째 국제적(國際的)인 세력관계(勢力關係)가 결정적(決定的)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에 유리(有利)하게 변화(變化)하고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전반적(全般的) 위기(危機)가 더욱 첨예화(尖銳化)한 가운데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존재조건(存在條件)이 더욱 악화(惡化)하고 있다는 것, 세째로 본질적(本質的)으로 변화(變化)하지 않는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하기 위한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수법(手法), 그 중(中)에서도 특히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중남미(中南美) 제국(諸國)에 대한 팽창(膨脹)의 체제(體制)가 변화(變化)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事實) 변화(變化)하고 있다는 것의 삼점(三点)을 들어 '60년대(年代) 전후(前後)의 역사적(歷史的) 단계(段階)에 있어서의 국제적(國際的) 세력관계(勢力關係)의 맥락(脈絡) 속에서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파악(把握)한다는 관점(觀點)을 제시(提示)한 것이 주목(注目)된다.

그런데 식민지주의(殖民地主義)란 원래(元來)가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에 대(對)한 정책체계(政策體系)를 의미(意味)하는 역사적(歷史的) 개념(概念)이므로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의 개념(概念)을 보다 명확(明確)히 하기 위해서는 현대(現代)에 있어서의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의 상황(狀況)을 고찰(考察)할 것이 필요(必要)해 진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라는 개념(概念)은 단순(單純)히 식민지(殖民地)만을 포함(包含)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殖民地)·반식민지(半殖民地)·종속국(從屬國)의 종체(總體)를 의미(意味)해 왔다. 그런데 반식민지(半殖民地)란 「레닌」 이 지적(指摘)한 바에 따르면 형식적(形式的)으로는 독립(獨立)하고 있으나 금융적(金融的)으로도 정치적(政治的)으로도 종속(從屬)된 국가(國家)이며 금융적(金融的)으로 종속(從屬)되고 있으나 정치적(政治的)으로 독립(獨立)되고 있는 국가(國家)와는 구별(區別)된다.

이 경우 문제(問題)가 되는 것은 이차대전후(二次大戰後)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에

서 새로이 형성(形成)된 국가(國家)를 어떠한 기준(基準)에서 정치적(政治的) 종속국(從屬國), 정치적(政治的) 독립국(獨立國)으로 구분(區分)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답(解答)은 다음과 같은 제이차(第二次) 아세아(亞細亞) · 「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人民連帶會議) 선언(宣言)에 의해 일응제공(一應提供)되었다.

『회의(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족(民族)은 진심(真心)으로 독립(獨立)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법령(法令)이 국민(國民)의 완전(完全)한 동의(同意)를 얻고 있지 않은데 그 국민(國民)의 이름으로 제정(制定)될 때

② 외국(外國)의 군대(軍隊)가 독립국(獨立國)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나라의 영토(領土)에 주둔(駐屯)하거나 또는 군사기지(軍事基地)를 설치(設置)하고 있을 때 ③ 어떤 국가(國家)가 식민지주의국(殖民地主義國)에 지도(指導)되는 공동체(共同體)의 일원(一員)이거나 또는 제국주의국(帝國主義國)과의 군사동맹(軍事同盟)에 참가(參加)하고 있을 때

④ 어떤 국민(國民)이 정치(政治) · 군사(軍事) · 경제(經濟) · 사회(社會)의 제계획(諸計劃)을 실행(實行)함에 있어 민족주권(民族主權)에 수반(隨伴)하는 제(諸) 기능(機能)을 자기(自己)의 재량(裁量)으로 완전(完全)히 행사(行使)할 수 없을 때

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에 규정(規定)된 개인(個人)의 기본적(基本的) 자유(自由)가 존중(尊重)되지 않을 때.』

이를 기준(基準)으로 하여 생각하면 이차대전(二次大戰) 후(後) 식민지제도(殖民地制度)는 소멸(消滅)해 왔으나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 그 자체(自體)는 위기상태(危機狀態)에 있으되 아직 붕괴(崩壞)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본(日本)의 좌익계(左翼系) 학자(學者)인 토생장수(土生長穗)는 1960년대(年代) 중엽(中葉)의 시점(時點)에서 다음과 같이 논(論)하였다. 『보다 정확(正確)히 말하면 전전(戰前)의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가 식민지(殖民地)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구성(構成)되고 있었는데 반(反)하여 현대(現代)의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는 반식민지(半殖民地)를 중심(中心)으로 하여 재편성(再編成)되고 있다. 신식민지주의(新殖民地主義)란 이와 같이 새로운 국면(局面)에 대응(對應)하여 반식민지(半殖民地)를 중심(中心)으로 재편성(再編成)되고 있는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에 대응(對應)하는 개념(概念)이며 위기적(危機的) 상태(狀態)에 있는 식민지체제(殖民地體制)를 재편성(再編成) 유지(維持)하고 나아가 이를 확장(拡張)하려는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식민지(殖民地) 지배(支配)의 체제(體制)를 총칭(總稱)하는 개념(概念)이다. 이렇게 이해(理解)하면 개량(改良)에 의한 신식민지주의(新殖民地主義) 수법(手法)과 폭력(暴力)에 의한 구식민지주의적수법(舊殖民地主義的手法)과의 혼재(混在)는 별(別)로 모순(矛盾)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신식민지주의(新殖民地主義)의 이론(理論)을 최초(最初)로 체계화(體系化)하였던 「가나」의 초대(初代) 대통령(大統領) 「응크루마」(Kwame Nkrumah)는 1963년(年)

에 발간(發刊)한 「아프리카는 단결(團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저서(著書)와 1965년(年)에 발간(發刊)된 「신식민지주의(新殖民地主義)」라는 저서(著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레닌」의 제국주의이론(帝國主義理論)과 동일(同一)한 이론적(理論的) 입장(立場)을 취(取)하여 신(新) 식민지주의(殖民地主義)도 구식민지주의(舊殖民地主義)와 마찬가지로 경제적(經濟的) 착취(搾取)를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식민지(新殖民地)를 「레닌」이 말한 반식민지(半殖民地)(semi-colony)와 본질적(本質的)으로 같다고 보았다. 그밖의 「아프리카」 지도자(指導者)들은 구식민지주의(舊殖民地主義)를 정치적(政治的) 제국주의(帝國主義) (political imperialism) 또는 사상적(思想的) 제국주의(帝國主義) (ideological imperialism)라 부르고 신식민지주의(新殖民地主義)를 경제적(經濟的) 제국주의(帝國主義) (economic imperialism) 또는 신제국주의(新帝國主義)(new imperialism)라 불러왔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제국주의(帝國主義)는 패권주의(霸權主義)(hegemonism), 팽창주의(膨脹主義) (expansionism) 등으로 표현(表現)되기도 하며 여러 학자(學者)의 소론(所論)을 종합(綜合)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할 수 있다. 『제국주의(帝國主義)는 한 국가(國家)가 다른 국가(國家)를 정치적(政治的) · 경제적(經濟的) 또는 문화적(文化的)으로 통치(統治)하거나(rule), 지배(支配)하거나 (control), 영향(影響)을 미치는(influence) 행위(行為) 또는 정책(政策)을 말한다.』 엄밀(嚴密)히 분석(分析)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類型)을 취(取)할 수 있다.

① 제국주의(帝國主義) = A 1, 2, 3 + B 1, 2, 3 + C 1, 2, 3

② 식민지주의(殖民地主義) = A 2 + B 1, 2, 3 + C 1

③ 신식민지주의(新殖民地主義) = A 2 + B 1, 2, 3 + C 2, 3

④ 위성국(衛星國) = A 1, 2, 3 + B 1, 2, 3 + C 2

⑤ 세력권(勢力圈) = A 1, 2, 3 + B 1, 2, 3 + C 3

이차대전후(二次大戰後) 제국주의(帝國主義)나 식민지주의(殖民地主義)를 공공연(公然)히 추구(追求)하는 나라는 없으나 공산권(共產圈)에서는 미국(美國)을 규정(規定)하여 대결(對決) 내지(乃至) 경쟁(競爭)을 일삼아 왔고 이에 대항(對抗)하여 자유세계(自由世界)는 소련(蘇聯)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東亞) 국가들(中國, 北韓, 日本)과 함께 공동으로 대항(對抗)하였다.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제유형(諸類型)>

	목적(A)	방법(B)	통제형태(C)
1	정치적(政治的)(군사적(軍事的))	정치적(政治的)	완전통제 통치(完全統制 統治)
2	경제적(經濟的)	경제적(經濟的)	중간통제 지배(中間統制 支配)
3	문화적(文化的)(이념적(理念的))	문화적(文化的)	형식적통제 영향(形式的統制 影響)

聯)을 공산(共產)(적색(赤色))제국주의(帝國主義) 국가(國家)의 총수(總帥)로 지목(指目)하여 그의 패권주의정책(霸權主義政策)을 봉쇄(封鎖)하려 힘써 왔는가 하면 심지어(甚至於) 중공(中共)도 중소분쟁(中蘇紛爭) 격화(激化)에 따라 소련(蘇聯)을 사회제국주의(社會帝國主義) 국가(國家)로 비난(非難)해 왔다.

다음으로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우리나라의 학자(學者)인 박상식교수(朴尚植教授)는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하고 있다. 『한 국가(國家)가 다른 국가(國家)를 경제적(經濟的)으로 차취(榨取)하기 위하여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문화적(文化的) 방법(方法)으로 지배(支配)하거나 영향(影響)을 미치는 행위(行為) 또는 그리하려는 정책(政策)이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이며 그 차취(榨取)의 대상(對象)이 된 국가(國家)를 신식민지(新植民地)라 한다. 식민지통치국(植民地統治國)이 신식민지(新植民地)를 직접(直接) 통치(統治)하지 않고 간접(間接) 지배(支配)하는 것이 식민지(植民地)와 다르다.』

3.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 간접(間接) 지배(支配)의 방법(方法)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가 실시(實施)하는 간접(間接) 지배(支配)의 방법(方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추종정권(追從政權)의 수립(樹立) -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추구(追求)하는 국가(國家)가 지배(支配)하거나 영향(影響)을 미칠 수 있는 개인(個人)이나 집단(集團)으로 하여금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하도록 지원(支援)하거나 이미 집권(執權)하고 있는 개인(個人)이나 집단(集團)을 원조(援助)한다.

(2) 「발칸」화(化) (Balkanization) - 신식민지(新植民地)가 너무 강대(強大)해지는 것을 방지(防止)하고 또한 신식민지(新植民地)끼리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하여 신식민지(新植民地)를 가능한(可能)한 한(限) 작게 분할(分割)한다. 구식민지주의(舊植民地主義) 국가(國家)가 사용(使用)한 분할통치(分割統治) (divide and rule)의 원칙(原則)과 같다.

(3)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의 수립(樹立)-투자(投資), 경제(經濟) 및 기술원조(技術援助), 무역(貿易) 등을 통하여 신식민지(新植民地)인 신생국(新生國)에 경제적(經濟的)으로 침투(浸透)하여 신생국(新生國) 경제(經濟)를 신식민지통치국(新植民地統治國) 경제(經濟)에 종속(從屬)시킴으써 경제적(經濟的) 이익(利益)을 얻고 신생국(新生國)을 정치적(政治的)으로도 지배(支配)하거나 그 영향하(影響下)에 둔다. 이 경제적(經濟的) 방법(方法)이 가장 흔히 사용(使用)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이 이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를 강조(強調)하기 때문에 종속이론(從屬理論)과 혼돈(混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두 이론(理論)이 다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와 경제적(經濟的) 차취(榨取)를 강조(強調) 또는 경계(警戒)하는 점(点)에서 동일(同一)하나, 종속이론(從屬理論)이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가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를 적용(適用) 받는 신생국(新生

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저해(沮害)하고 권위주의(權威主義) 정치체제(政治體制)를 불가피(不可避)하게 만든다는 점(点)을 강조(強調)하는데 반(反)하여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 이론(理論)은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가 개발국(開發國)과 개발도상국간(開發途上國間)의 빈부(貧富)의 차이(差異)를 증대(增大)하고 신생국(新生國)의 신식민지통치국(新植民地統治國)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의존관계(依存關係)마저 증대(增大)시킨다는 것을 강조(強調)하고 있다는 점(点)에서 구별(區別)된다. 다시 말해서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은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의 대외적(對外的) 효과(效果)를 그리고 종속이론(從屬理論)은 대내적(對內的) 효과(效果)를 강조(強調)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군사기지화(軍事基地化)-신식민지(新植民地)에 군대주둔권(軍隊駐屯權)을 얻거나 군사기지(軍事基地)를 획득(獲得)하여 신식민지(新植民地)를 자국방위상(自國防衛上) 군사적(軍事的)으로 이용(利用)하거나 또는 무기(武器)·군사기술(軍事技術)의 제공(提供), 군사적(軍事的) 훈련(訓練) 등 군사원조(軍事援助)를 통하여 신식민지(新植民地)를 군사적(軍事的)으로 식민지통치국(植民地統治國)에 종속(從屬)시킨다.

(5) 지역단체(地域團體)의 조직(組織)-신식민지(新植民地)인 신생국(新生國)으로 하여금 경제적(經濟的) 지역단체(地域團體)를 형성(形成)케 하여 보다 큰 지역(地域)을 신식민지통치국(新植民地統治國)의 경제적(經濟的) 시장(市場)으로 이용(利用)한다.

(6) 경제적(經濟的) 유대(紐帶)의 형성(形成) -개발선진국(開發先進國)들로 구성(構成)된 경제적(經濟的) 지역단체(地域團體)에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을 가입(加入)시켜 경제적(經濟的)으로 차취(榨取)한다. 「응크루마」는 「유럽」 공동체(共同體)에 준회원국(準會員國)으로 가입(加入)한 「아프리카」 국가(國家)를 그 예(例)로 들고 있다.

II. 전후국제체제(戰後國際體制)의 변동(變動)과 제삼세계(第三世界)의 특수성(特殊性)

1. 제삼세계(第三世界)와 수평적(水平的)·수직적(垂直的) 빈부격차(貧富隔差)

국가(國家)를 분류(分類)하는 방법(方法)도 국제정세(國際情勢)의 변화(變化) 및 국제체제(國際體制)의 변동(變動)에 따라 달라진다. 이념대결(理念對決)에 따르는 냉전(冷戰)이 가장 격심(激甚)하였던 1950년대(年代)에는 지구상(地球上)의 국가(國家)들을 동(東)(공산권(共產圈))과 서(西)(자유진영(自由陣營))로 분류(分類)하는 것이 유행(流行)이었고 서구(西歐) 식민지(植民地)가 대거(大舉) 독립(獨立)하여 신생국가(新生國家)로서 비동맹중립주의(非同盟中立主義)를 표방(標榜)해 나가게 된 1960년대(年代)에는 동(東)·서(西) 및 비동맹국가군(非同盟國家群)으로 분류(分類)하는 것이 유행(流行)이 되었으며, 국가간(國家間)의 빈부(貧富)의 격차(隔差)

가 심각(深刻)하게 느껴지게 된 1970년대(年代)에는 남(南)(빈국(貧國) · 개발도상국권(開發途上國圈))과 북(北)(부국(富國) · 개발국권(開發國圈))으로 분류(分類) 하는 것이 유행(流行)이 되었다. 남(南)을 제삼세계(第三世界)라고 부르고 북(北)을 제일(第一) 및 제이세계(第二世界)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목(注目)할 것은 동(東) · 서(西) · 비동맹국가군(非同盟國家群)으로의 삼분법(三分法)은 정치적(政治的) · 이념적(理念的) 분쟁(紛爭)과 관련(關聯)된 구분법(区分法)이고 제일(第一) · 제이(第二) · 제삼세계(第三世界)로의 삼분법(三分法)은 경제적(經濟的) 갈등(葛藤)과 관련(關聯)된 구분법(区分法)이라는 점(点)이다. 그러나 엄밀(嚴密)히 말하면 후자(後者)의 구분법(区分法)은 경제적(經濟的) 갈등(葛藤)뿐만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 이념적(理念的) 분쟁(紛爭)도 고려(考慮)한 구분법(区分法)인 것이다. 왜냐하면 북(北)에 속(屬)하는 국가(國家)를 동서분쟁(東西紛爭)에 따라 제일세계(第一世界)(서방공업국가(西方工業國家))와 제이세계(第二世界)(동구(東歐) 공업(工業) 국가(國家))로 재분류(再分類)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는 개발도상국가(開發途上國家)로서 경제적(經濟的) 빈곤상태(貧困狀態)에 있다는 것이 공통(共通)된 특징(特徵)이다.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의 경제성장율(經濟成長率)은 최근(最近)에 이르러 제일세계국가(第一世界國家)의 경제성장율(經濟成長率)보다 대체(大體)로 높으나 1970년(年)에 있어 양자간(兩者間)의 개인(個人) 소득차(所得差)는 대략(大略) 15대(對) 1이며 기원(紀元) 2000년(年)까지 이 차이(差異)는 감소(減少)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専門家)들은 보고 있다. 더구나 제삼세계(第三世界)의 인구증가율(人

개발국(開發國)과 미개발국(未開發國)과의 비교(比較)

사회(社会) · 경제변수(經濟變數)	개발국(開發國)	미개발국(未開發國)
인구비율(人口比率)	30%	70%
세계총수입(世界總收入) 비율(比率)	70%	30%
문맹율(文盲率)	3%	60%
영양실조(營養失調) · 기아(饑餓)		10억명(億名)
1인당년간수입(人當年間收入)	3,600불(弗)	250불(弗)
평균수명(平均壽命)	71세(歲)	52세(歲)
유아사망율(幼兒死亡率)(1천명당(千名當))	21	110
의사(醫師)1인당(人當) 인구(人口)	3,400	700
일인당(一人當) 연간(年間) 에너지 소모량(消耗量) (kw/h)	5,140	200

<출처(出處)> Richard Falk, "Study of Future World", New York, 1975, p. 356.

口增加率)은 제일(第一) · 제이세계(第二世界)의 3배(倍) 이상(以上)이나 된다는 점(点)을 감안(勘案)한다면 제삼세계(第三世界)의 경제성장율(經濟成長率)도 제일세계(第一世界)보다 실질적(實質的)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도표참조(圖表參照)).

제삼세계(第三世界)는 전반적(全般的)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내(國家內)의 빈부차이(貧富差異)도 제일세계(第一世界) 국가내(國家內)의 빈부차이(貧富差異)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제삼세계(第三世界)는 제일세계(第一世界)보다 수평적(水平的)으로 빈곤(貧困)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垂直的)으로도 빈곤(貧困)하다.

2. 제삼세계(第三世界) 빈곤(貧困)의 이유(理由)에 관한 제학설(諸學說)

그 원인(原因)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論議)가 제기(提起)되어 오고 있으나 그 대표적(代表的)인 것으로는 제삼세계(第三世界)의 빈곤(貧困)의 원인(原因)이 제삼세계(第三世界) 자체(自體)에 있다고 보는 이론(理論)(문화적(文化的) 원인설(原因說)), 제일세계(第一世界)에 책임(責任)이 있다고 보는 이론(理論)(신식민주주의론(新植民主主義論), 종속이론(從屬理論), 마르크스 이론(理論) 및 양자(兩者)에 게 다 책임(責任)이 있다고 보는 이론(理論)(구조설(構造說))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차례(次例)로 검토(檢討)해 본다.

(1) 문화적(文化的) 원인설(原因說)

미국(美國)의 사회과학연구회의(社會科學研究會議)와 비교정치위원회(比較政治委員會)가 1950년대(年代)에 주(主)로 제창(提唱)하였고 그 후(後) 행태주의(行態主義) 학자(學者)들이 지지(支持)하고 있는 이 학설(學說)은 경제적(經濟的) 빈곤(貧困)의 근본원인(根本原因)을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자체(國家自體)의 문화(文化)에서 찾고 있다. 선진공업국가(先進工業國家)의 경제발전사(經濟發展史)를 보면 이른바 이재적(理財的) 문화(文化)의 요소(要素), 즉(即) 창의성(創意性), 독립성(獨立性), 겸약성(儉約性), 절제성(節制性), 타협성(妥協性) 등이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는데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에는 이와같은 요소(要素)가 결여(缺如)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위해서는 정치적(政治的) 안정(安定)이 필요(必要)한데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는 거의가 정치적(政治的)으로 불안정(不安定)하다는 것이다. 정치적(政治的) 불안정(不安定)의 원인(原因)도 정치문화(政治文化)의 성격(性格)에서 찾고 있다. 즉 제삼세계(第三世界) 정치문화(政治文化)의 공통(共通)된 특징(特徵)은 어떠한 사회집단(社會集團)도 정당성(正當性)을 가지고 집권(執權)하고 있지 않고 일반국민(一般國民)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不拘) 모든 사회집단(社會集團)이 제각기 집권(執權)의 정당성(正當性)을 주장(主張)하고 있다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정치문화(政治文化)를 가진 사회(社會)가 정치적(政治的)으로 불안정(不安定)할 것은 확실(確實)하다.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는 대부분(大部分)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정치체제(政治體

制)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치체제(政治體制)는 그들의 전통적(伝統的) 정치문화(政治文化)에 합당(合當)하다. 정치체제(政治體制)가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이기 때문에 부(富)의 분배(分配)도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수(少數)의 지배층(支配層)이 다수(多數)의 피지배층(被支配層)을 정치적(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經濟的)으로 지배(支配)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政治的) 권력(權力)은 부(富)의 독점(獨占)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文化的) 원인설(原因說)을 주장(主張)하는 학자(學者)들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이 후진성(後進性)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통문화(伝統文化)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삼세계(第三世界)는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위해서 제일세계(第一世界)의 이재적(理財的) 문화(文化)와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치체제(政治體制)를 도입(導入)하는 것과 부(富)가 풍부(豐富)한 제일세계(第一世界)로부터 부(富)를 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勸獎)하고 있다.

(2) 구조설(構造說)

제삼세계(第三世界)가 빈곤(貧困)한 근본원인(根本原因)은 현존(現存)하는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가 제삼세계(第三世界)에서 불리(不利)하고 제일세계(第一世界)에 유리(有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제사실(諸事實)을 지적(指摘)한다.

첫째, 물품(物品)(소비재(消費材)와 생산재(生產材))을 생산(生産)하기 위해서는 자본(資本)·노동력(勞動力)·기술자(技術者) 및 원료(原料)가 필요(必要)한데 제삼세계(第三世界)에는 원료(原料)는 풍부(豐富)하나 자본(資本)이 없고 노동력(勞動力)은 풍부(豐富)하나 기술자(技術者)가 없다. 그런데 물품(物品)을 취득(取得)하는 방법(方法)에는 생산(生産)과 구입(購入)이 있다. 그리하여 후진국(後進國)은 물품(物品)을 자체생산(自體生產)하기 위하여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을 선진국(先進國)에서 도입(導入)하고 물품(物品)을 즉시(即時) 사용(使用)하기 위하여 이를 또한 선진국(先進國)에서 수입(輸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原料)를 선진국(先進國)에 판매(販売)하여 그 수입(收入)으로 도입(導入)한 자본(資本)·기술(技術) 및 물품(物品)의 대가(代價)를 지불(支払)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원료(原料)의 가격(価格)은 물품(物品)의 가격(価格)에 비(比)하여 극(極)히 저렴(低廉)하고 국제시장가격(國際市場価格)의 변동(變動)이 심(甚)함으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과 선진국간(先進國間)의 거래(去來)에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이 항상(恒常) 불리(不利)한 입장(立場)에 서게 된다.

둘째,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을 제공(提供)하는 선진국(先進國)과 국제원조기구(國際援助機構)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오히려 방해(妨害)한다.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제공(提供)되는 원조(援助)는 유상(有償)·무상(無償)을 막론(莫論)하고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에 진실(眞實)로 공헌(貢獻)하기 보다 원조국(援助國)이나 국제원조기구(國際援助機構)를 지배(支配)하는 선진국(先進國)의 이익(利益)에 더 공헌(貢獻)하고 있다. 즉 원조국(援助國)은 경제적(經濟的) 착취(榨

取)나 정치적(政治的) 지배(支配)를 위하여 원조(援助)를 이용(利用)하고 있다는 것 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IBRD)이나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IMF)과 같은 국제연합전문기구(國際聯合專門機構)에서는 투표권(投票權)이 기부금(寄附金)의 정도(程度)에 비례(比例)하여 결정(決定)되므로 기부금(寄附金)을 많이 내는 국가(國家)의 발언권(發言權)이 강(強)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 기관(機關)의 정책(政策)은 기부금(寄附金)을 많이 내는 국가(國家)에 의하여 좌우(左右)될 것이 당연(當然)하다.

세째, 선진국(先進國)이 단독(單獨)으로 또는 국제원조기구(國際援助機構)를 통하여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제공(提供)하는 원조금(援助金)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에 크게 공헌(貢獻)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내재(內在)하는 빈부(貧富)의 차이(差異)를 더욱 악화(惡化)시킨다. 제삼세계국가(第三世界國家)는 권위주의(權威主義) 정치체제(政治體制)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先進國)이 제공(提供)하는 원조금(援助金)은 주(主)로 집권(執權) 「엘리트」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선진국(先進國)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을 착취(榨取)하려면 집권(執權) 「엘리트」의 지지(支持)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권(執權) 「엘리트」에게만 원조(援助)의 혜택(惠沢)이 돌아가는 것을 반대(反對)하지 않으며 여기서 선진국(先進國) 집권자(執權者)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집권(執權) 「엘리트」 와의 결탁(結託)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종속이론(從屬理論) 또는 신(新) 식민지주의이론(植民地主義理論)

70년대(年代)에 이르러 각광(脚光)을 받게 된 종속이론(從屬理論)은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구조(構造)를 중심(中心)(center=선진공업국가(先進工業國家)의 권역(圈域))과 주변(周辺)(periphery= 개발도상국가(開發途上國家)들)로 이루어진 제삼세계(第三世界)의 도식(圖式)에서 조명(照明)하여 종속(從屬)과 상호의존(相互依存)의 관계(關係) 및 신식민지(新植民地) 현상(現象)을 해명(解明)하고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할 것을 시도(試圖)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제점(諸點)을 지적(指摘)한다.

첫째 국민총생산고(國民總生產高)로 나타나는 국부(國富)의 주원천(主源泉)은 수출(輸出) 그 중(中)에서도 농산품(農產品)이나 광물(礦物)을 포함(包含)한 원료(原料)의 수출(輸出)에서 오는 수입(收入)이다. 따라서 원료(原料)를 주(主)로 수입(輸入)하는 제일세계(第一世界)의 수요(需要)에 따라 제삼세계(第三世界)의 수입(收入)이 크게 좌우(左右)된다.

둘째 제삼세계(第三世界)는 공업(工業)의 미발달(未發達)로 필요(必要)한 소비재(消費材)와 생산재(生產材)의 대부분(大部分)을 제일세계(第一世界)로부터 수입(輸入)한다. 이같이 저렴(低廉)한 원료(原料)의 판매(販賣)로 얻은 수입(輸入)으로 고가(高価)의 공산품(工產品)을 구입(購入)하여 하기 때문에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는 항상(恒常) 외화(外貨)가 부족(不足)하다.

세째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는 원래(元來) 자본(資本)이 부족(不足)하기 때문에 산업발전(產業發展)을 위한 자금(資金)을 지국(支國) 투자(投資) 및 차관(借款)과 같은 외자(外

資)에 크게 의존(依存)한다.

네째 외국자본(外國資本)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위해 사용(使用)되지 않고 수출(輸出) 목적(目的)의 상품(商品) 생산(生產)에 사용(使用)된다. 그리고 수출용(輸出用) 상품(商品)은 제한(制限)된 공업단지(工業團地)에서 생산(生產)되어 외국(外國)으로 수출(輸出)된다. 따라서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의 극소수(極少數)의 지역(地域)만 공업화(工業化)되고 나머지 대부분(大部分)의 지역(地域)은 전통적(伝統的)인 농업경제체제(農業經濟體制)를 그대로 유지(維持)하고 있다. 다섯째 제삼세계(第三世界) 국가(國家)는 산업발전(產業發展)을 위한 기술(技術)이 부족(不足)하므로 이를 제일세계(第一世界)에서 도입(導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특허권(特許權) 사용료(使用料)는 극(極)히 비싸고 또 사용권(使用權)은 언제라도 회수(回收)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下(狀況下)에서 제삼세계(第三世界)는 제일세계(第一世界)에 경제적(經濟的)으로 의존(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종속이론(從屬理論)은 결론(結論)짓는다. 종속이론(從屬理論)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삼세계(第三世界)의 제일세계(第一世界)에의 의존(依存)은 제삼세계내(第三世界內)에 불가피(不可避)하게 빈부(貧富)의 차(差)를 가져 온다고 주장(主張)한다.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집권(執權) 「엘리트」는 선진국(先進國)의 정부(政府)나 회사(会社)의 사업인가(事業認可)·수회(收賄) 등을 통하여 이득(利得)을 취(取)하나 일반국민(一般國民)은 고용면(雇傭面)에서나 임금면(賃金面)에서나 이익(利益)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論理) 아래 종속이론(從屬理論)은 선진국(先進國)에의 의존(依存)이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서의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정치체제(政治體制)의 등장(登場)을 불가피(不可避)하게 만든다는 점(点)도 지적(指摘)하고 있다.

(4) 「마르크스·레닌」주의설(主義說)

「칼·마르크스」 자신(自身)은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 자체(自體)의 성립(成立)과 몰락(沒落)에 큰 관심(關心)이 있었으므로 후진국(後進國)이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전단계(前段階)인 봉건주의단계(封建主義段階)에 있음을 지적(指摘)하였을 뿐 그 이상(以上) 이에 관해 구체적(具體的) 연구(研究)는 하지 않았다. 이어서 「레닌」은 「마르크스」가 예언(予言)한 것처럼 서구(西歐)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가 쉽게 몰락(沒落)하지 않는 이유(理由)를 그들의 식민지(植民地) 착취(榨取)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는 서구(西歐)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가 그 명맥(命脈)을 유지(維持)할 수 있는 이유(理由)는 잉여자본(剩余資本)과 상품(商品)을 후진(後進) 식민지(植民地)에 투입(投入)·판매(販賣)하고 후진(後進) 식민지(植民地)에서 노동력(勞動力)과 원료(原料)를 착취(榨取)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유명(有名)한 제국주의이론(帝國主義理論)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레닌」의 제국주의이론(帝國主義理論)은 후진국(後進國)이 미개(未開)한 이유(理由)를 서구(西歐)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의 착취(榨取)에 돌리고 있다는 점(点)에서 외부적(外部的) 영향(影響)을 인정(認定)하나 후진국(後進國)이 자본주의(資

本主義) 국가(國家)와의 관계(關係)를 단절(斷絕)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후진성(後進性)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내(自體內)에서 역사적(歷史的) 발전단계(發展段階)를 자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強調)한다는 점(点)에서 내부적(內部的) 요인(要因)을 더 중요시(重要視)하겠다 하겠다. 사실(事實) 전통적(伝統的) 「마르크스」 주의(主義)는 각(各) 사회(社會)가 각기(各其) 다른 역사적(歷史的) 발전단계(發展段階)에 있는데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이 지배(支配)하는 사회주의(社會主義) 단계(段階) 이후(以後)에 이르러서야 진정(真正)한 발전(發展)이 있다고 본다.

3. 이상(以上) 제학설(諸學說)에 대한 비판(批判)

이상(以上)에서 개설(概說)한 네가지 이론(理論)은 각기(各其) 명백(明白)만 오류(誤謬)를 범(犯)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화적(文化的) 원인설(原因說)에 관해서 보면 제삼세계(第三世界)에 속(屬)하는 국가(國家)들이 그 문화적(文化的) 특성(特性)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이 지연(遲延)되고 있는 것은 사실(事實)이나 그것이 경제적(經濟的) 빈곤(貧困)의 근본(根本) 원인(原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서구(西歐)의 선진국(先進國)들도 산업혁명전(產業革命前)에는 후진국(後進國)과 유사(類似)한 문화적(文化的) 특성(特性)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혁명(產業革命)이 시작(始作)되었으며 어떤 전통문화적(伝統文化的) 속성중(属性中)에는 산업발전(產業發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경제발전(經濟發展)과 문화변천(文化變遷) 사이에는 원인(原因)·결과관계(結果關係)보다도 변증법적(辨証法的) 관계(關係)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妥當)할 것이다.

둘째로 구조설(構造說)에 관해서 보면 그것이 현(現) 국제경제질서(國際經濟秩序)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불리(不利)하고 선진국(先進國)에 유리(有利)하다는 사실(事實)을 지적(指摘)한 점(点)은 옳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질서(經濟秩序)가 성립(成立)된 원인(原因)을 설명(說明)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설(說)은 이미 빈곤(貧困)한 국가(國家)를 이미 부유(富裕)한 국가(國家)가 경제적(經濟的)으로 착취(榨取)하고 있는 사실(事實)을 설명(說明)하는 이론(理論)이라 함이 옳을 것이며 후진국(後進國)이 빈곤(貧困)하게 된 원인(原因)은 따로 구명(究明)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종속이론(從屬理論)에 관해서 보면 경제적(經濟的) 종속(從屬)이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저해(沮害)한다는 이론(理論)은 사실(事實)과 다르며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이 경제(經濟)·사회적(社會的) 불평등(不平等)을 가져온다는 이론(理論)은 아직 확인(確認)되지 않았고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와 권위주의적정치(權威主義的政治) 체제(體制)와의 직접적(直接的)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一般的) 견해(見解)이다.

넷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설(主義說)에 관해서 보면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은 ① 똑같은 식민지경험(植民地經驗)을 가지고 있고 서구(西歐)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와

똑같은 정도(程度)의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에 있는 국가(國家)가 각기(各其) 다른 발전단계(發展段階)에 있고 ② 식민지(殖民地) 경험(經驗)이 있고 서구(西歐)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와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에 있는 국가(國家)가 똑같은 식민지(殖民地) 경험(經驗)을 가지고 있으되 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와 더 긴밀(緊密)한 경제적(經濟的) 관계(關係)를 맺고 있는 국가(國家)보다 더 경제적(經濟的)으로 발전(發展)되고 있으며 ③ 식민지(殖民地) 경험(經驗)이 있는 국가(國家)가 동경험(同經驗)이 없는 국가(國家)보다 더 경제적(經濟的)으로 발전(發展)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事實)을 설명(說明)하지 못한다.

④ 또한 미국(美國)과 같은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영향하(影響下)에 있는 국가(國家)가 소련(蘇聯) 같은 공산주의체제(共產主義體制)의 영향하(影響下)에 있는 국가(國家)보다 더 발전(發展)한 경우가 많은 이유(理由)도 설명(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III.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에 대한 평가(評價)

1. 제가설(諸假說)과 관련변수(關聯變數)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은 첫째 선진자본주의국(先進資本主義國)과 개발도상국간(開發途上國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는 반드시 전자(前者)에게만 유리(有利)하고 둘째 후자(後者)의 전자(前者)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를 가져온다는 두 개(個)의 가설(假說)에 입각(立脚)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의 타당성(妥當性) 여부(與否)를 평가(評値)하기 위해서는 이상(以上)의 두 가설(假說)이 과연(果然) 현실(現實)과 부합(符合)하는지를 조사(調查)해 볼 필요(必要)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순수(純粹)한 경제적(經濟的) 각도(角度)에서 제기(提起)되고 있는 종속이론(從屬理論)(dependency theory)과의 관련(關聯)에서 고찰(考察)하는 것이 효과적(效果的)이다.

경험적(經驗的) 경제이론(經濟理論)으로서 제창(提倡)되고 있는 종속이론(從屬理論)은 다음 세 가지 가설(假說)에 입각(立脚)하고 있다.

① 중심지역(中心地域)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국(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은 주변지역(周邊地域)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저개발국(低開發國) 또는 개발도상(開發途上) 국가(國家)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저해(沮害)한다.

②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는 저개발국(低開發國) 또는 개발도상국내(開發途上國內)의 사회(社會)·경제적(經濟的) 불평등(不平等)을 악화(惡化)시킨다.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은 국내적(國內的) 불평등(不平等)보다 국제적(國際的) 불평등(不平等)을 더 강조(強調)한다)

③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는 저개발국(低開發國) 또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정치체제(政治體制)를 가져온다(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

義理論)은 이 외(外)에 저개발국(低開發國) 또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선진자본주의국가(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의존관계(依存關係)를 강조(強調)한다.) 종속이론(從屬理論)의 과학성(科學性)을 증명(證明)하려면 종속(從屬)의 개념(概念)을 명확(明確)히 정립(定立)하고 종속(從屬)의 변수(變數) 내지(乃至) 경제적(經濟的) 의존도(依存度)를 측정(測定)하는 변수(變數)를 제시(提示)하여야 한다.

경제적(經濟的) 의존도(依存度)는 경제시장(經濟市場)의 의존도(依存度)와 경제력(經濟力)의 의존도(依存度)로 분리(分離)할 수 있다. 그 중(中) 경제시장(經濟市場)의 의존도(依存度)란 후진지역(後進地域) 또는 개발도상국가군(開發途上國家群)의 경제(經濟)가 선진자본주의(先進資本主義) 경제체제(經濟體制)에 전체적(全體的)으로 의존(依存)하는 정도(程度)를 말하고. 경제력(經濟力)의 의존도(依存度)란 어느 특정(特定)한 후진국(後進國) 또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經濟)가 특정(特定)한 선진자본주의(先進資本主義) 국가(國家)의 경제(經濟)에 개인(個人)·회사(會社)·지사(支社) 등을 통해 의존(依存)하는 정도(程度)를 말한다. 종속이론자(從屬理論者)가 말하는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이란 주(主)로 경제력(經濟力)의 의존(依存)을 의미(意味)한다. 경제력(經濟力) 의존(依存)의 개념(概念)이 경제시장(經濟市場) 의존(依存)의 개념(概念)보다 선진국(先進國)과 후진국(後進國)의 차이(差異)를 보다 명확(明確)하게 나타내 주고 종속이론자(從屬理論者)의 주(主) 공격(攻擊) 대상(對象)인 다국적기업체(多國籍企業體)(multinational corporation)의 기능(機能)을 보다 잘 설명(說明)해 주기 때문이다. 「맥기원」과 「스미스」(Patrick McGowan and Dale Smith)가 사용(使用)한 제변수(諸變數)는 다음과 같다.

◇ 경제시장(經濟市場)의 의존도(依存度) ① 상품집중도(商品集中度) : 총(總) 수출중(輸出中) 세 개(個)의 중요상품(重要商品)이 차지하는 비율(比率)

② 무역비중도(貿易比重度) : 총무역량(總貿易量)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比率) ③ 1인당(人當) 외국투자액(外國投資額) ④ 총외국(總外國) 개인투자액(個人投資額)

◇ 경제력(經濟力)의 의존도(依存度) ① 원조집중도(援助集中度) : 특정(特定) 원조국(援助國)의 경제(經濟)·기술(技術) 원조액(援助額)이 총원조액(總援助額)에서 차지하는 비율(比率)

② 무역집중도(貿易集中度) : 특정(特定) 무역대상국(貿易對象國)에 대한 수출액(輸出額)이 총수출액(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비율(比率) ③ 투자집중도(投資集中度) : 특정(特定) 투자국(投資國)으로부터의 투자액(投資額)이 총외국(總外國) 개인투자액(個人投資額)에서 차지하는 비율(比率)

◇ 경제적(經濟的) 발전도(發展度)를 측정(測定)하는데 흔히 쓰여지는 변수(變數) ① GNP(국민총생산고(國民總生產高)) ② 1인당(人當) GNP ③ 1인당(人當) 에너지 소모량(消耗量) ④ 1인당(人當) 의사수(醫師數) ⑤ 총활동인구(總活動人口) 중(中) 임금노동자(賃金勞動者)가 차지하는 비율(比率) ⑥ 문맹율(文盲率) ⑦ 인구(人口) 10만(万) 명당(名當) 영업용차량수(營業用車輛數) 여기서 주의(注意)할 것은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economic

dependency)과 경제적(經濟的) 미개발(未開發)(economic underdevelopment)과는 서로 다른 개념(概念)이라는 것이다. 경제적(經濟的) 미개발국가(未開發國家)가 대개(大概) 선진자본주의국가(先進資本主義國家)에 경제적(經濟的)으로 의존(依存)하고 있기는 하나 경제적(經濟的) 미개발국가(未開發國家)이면서 선진자본주의국가(先進資本主義國家)에 경제적(經濟的)으로 의존(依存)하지 않는 국가(國家)도 있고 또한 경제적(經濟的)으로 개발(開發)된 국가(國家)이면서 외국(外國)에 경제적(經濟的)으로 의존(依存)하는 국가(國家)도 있는 것이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과 종속이론(從屬理論)은 경제적(經濟的) 의존성(依存性)과 경제적(經濟的) 저개발성(低開發性)과의 관계(關係)에 관한 특수이론(特殊理論)이고 저개발(低開發)의 원인(原因)에 관한 일반이론(一般理論)이 아니므로 이들 이론(理論)의 타당성(妥當性)을 확인(確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經濟的) 의존국가(依存國家)이자 경제적(經濟的) 저개발국(低開發國)인 아세아(亞細亞)·「아프리카」 및 중남미국가(中南美國家)들을 연구대상(研究對象)으로 하여야 하며 세계(世界) 모든 저개발국(低開發國)을 연구대상(研究對象)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2. 이론적(理論的) 타당성(妥當性)에 관한 실증(實証)

(1) 후진국(後進國)의 선진국(先進國)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 관계(關係)는 선진국(先進國)에게만 유리(有利)하고 후진국(後進國)에게는 불리(不利)하다는 가설(假說)

가.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과 경제발전(經濟發展)과의 관계(關係)

현재(現在)까지의 행태주의(行態主義) 방법(方法)에 의한 연구(研究) 결과(結果)에 따르면 선진국(先進國)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이 후진국(後進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저해(沮害)한다는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이나 종속이론(從屬理論)의 가설(假說)이 사실(事實)에 반(反)한다는 것이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이다. 어떤 학자(學者)들은 저개발국(低開發國)이 선진자본국가(先進資本國家)와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를 유지(維持)함으로써 오히려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촉진(促進)할 수 있다는 신고전적(新古典的) 발전이론(發展理論)이 사실(事實)과 더 부합(符合)함을 발견(發見)하였다.

나.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과 경제(經濟)·사회적(社會的) 불평등(不平等)

「아프리카」와 중남미(中南美)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관한 행태주의(行態主義) 방법(方法)에 의한 연구결과(研究結果)에 따르면 경제적(經濟的) 의존도(依存度)와 경제(經濟)·사회적(社會的) 불평등간(不平等間)에는 다소(多少)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으나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가 경제(經濟)·사회적(社會的) 불평등(不平等)을 가져오는 직접원인(直接原因)은 아니고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이 급속도(急速度)의 경제성장(經濟成長)을 가

져오면 이것이 다음으로 경제(經濟)·사회적(社會的) 불평등(不平等)을 초래(招來)한다는 사실(事實)이 밝혀졌다.

(2) 경제적(經濟的) 의존관계(依存關係)는 국내적(國內的)으로 권위(權威) 주의적(主義的) 정치체제(政治體制)를 그리고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선진자본주의국가(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종속관계(從屬關係)를 가져온다는 가설(假說)

가.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과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정치체제(政治體制)와의 관계(關係)이 가설(假說)은 종속이론(從屬理論)이 주(主)로 강조(強調)하는 것인데 중남미국가(中南美國家)에 관한 몇몇 행태주의적(行態主義的) 방법(方法)에 의한 연구(研究) 결과(結果)에 따르면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은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정치체제(政治體制)와 하등(何等) 직접적(直接的) 관계(關係)가 없다는 것이 발견(發見)되었다.

나.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과 정치적(政治的) 의존(依存)과의 관계(關係)

주(主)로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이 제창(提唱)하고 있는 이 가설(假說)도 아직 행태론적(行態論的)으로 확인(確認)되지 않고 있다. 흑(黑) 「아프리카」 국가(國家)에 대하여 이 가설(假說)을 검증(檢証) 한 「밴그로프」 (Richard Vengroff)는 경제적(經濟的) 의존(依存)과 정치적(政治的) 의존간(依存間)에 상당(相當)한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의 검증법(檢証法)은 문제(問題)를 남기고 있다. 그는 정치적(政治的) 의존도(依存度)를 측정(測定)하는 척도(尺度)로서 오직 「유엔」에서의 표결동향(票決動向)만을 사용(使用)하였던 것인데 「유엔」 총회(總會) 표결시(票決時)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국가(國家)와 전식민지통치국간(前植民地統治國間)의 단결도(團結度)는 표결(票決)에 부친 문제(問題)의 종류(種類)에 따라 다르고 또한 문제(問題)의 종류(種類)에 관계(關係)없이 일반적(一般的)으로 얇은 것이다.

3. 결어(結語)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은 1960~70년대(年代)라는 최근(最近)의 특정(特定)한 역사적(歷史的) 시기(時期)에 강대국(強大國)과 중(中)·소국(小國) 또는 선진국(先進國)과 개발도상국간(開發途上國間)의 정치(政治)·경제관계(經濟關係)를 고찰대상(考察對象)으로 하여 기왕(既往)에 식민지통치(植民地統治)를 받다가 전후(戰後)에 독립(獨立)을 달성(達成)한 제이세계(第二世界)의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이 식민지주의(植民地主義)의 재현(再現)을 경계(警戒)하려는 의도(意圖)에서 제기(提起)하여 현실적(現實的)으로 영향력(影響力)을 발휘(發揮)해 왔다는데 그 의의(意義)가 있다. 사실(事實) 제삼세계(第三世界)의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은 비동맹중립주의노선(非同盟中立主義路線)을 취(取)하고 신식민지주의(新植民主義)에 반대(反對)함으로써 국제정치(國際政治)와 국제경제(國際經濟)의 현실(現實) 속에서 그들의 권리(權益)를 보호(保護)·증진(增進)하는데 많은 성과(成果)를 거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70년대(年代) 후반기(後半期) 이후(以後) 이들 국가(國家)의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에 대한 견해(見解)가 달라지게 되어 남북문제(南北問題)가 발생(發生)한 책임(責任)이 북(北)의 선진국(先進國) 들에게만 국한(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남(南)의 자원보유국측(資源保有國側)에게도 있다는 견해(見解)가 대두(擡頭)됨으로써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의 타당성(妥當性)이 재검토(再檢討)됨에 이르렀다. 그런 점(点)에서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은 모든 시간적(時間的)·공간적(空間的) 상황(狀況)에 적용(適用)될 수 있는 보편성(普遍性)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 어떤 특정상황(特定狀況) 하(下)에서의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봉사(奉仕)하기 위한 시한적(時限的) 효용성(効用性)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강대국(強大國)과 선진국간(先進國間)에도 권력정치(權力政治)를 지양(止揚), 이념(理念)과 체제(體制)와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초월(超越)하여 인류전체(人類全體)의 평화(平和)와 번영(繁榮)과 복지(福祉)를 위한 세계질서(世界秩序)를 구축(構築)하며 이에 이르는 도정(道程)에서 호혜평등(互惠平等) 및 국제정의(國際正義)에 입각(立脚)한 새 국제경제질서(國際經濟秩序)부터 형성(形成)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연합(國際聯合) 내외(內外)에서 힘을 얻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鼓舞的)인 추세(趨勢)라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努力)이 본격화(本格化)될 때 신식민지주의이론(新植民地主義理論)은 그의 역사적(歷史的) 역할(役割)을 다하고 보다 차원(次元) 높고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세계정치경제질서(世界政治經濟秩序)에 관한 이론(理論)과 구상(構想)에 그 자리를 넘겨 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参考文献)

1. 박상식(朴尚植) 저(著),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 서울, 집문당(集文堂), 1982. 제(第)4장(章) 제(第)3절(節) 제국주의(帝國主義), 제(第)4절(節)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 부분(部分).
2. 최종기(崔鍾起) 저(著), 「현대국제관계론(現代國際關係論)」, 전경판(全訂版), 박영사(博英社), 1983. 제(第)2편(篇) 제(第)10장(章) 마르크스주의(主義) 세계정치론(世界政治論), 제(第)3편(篇) 제(第)14장(章) 소국(小國)·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 제(第)4편(篇) 제(第)23장(章) 자원(資源)·에너지문제(問題).
3. 박상식(朴尚植) 저(著), 「제삼세계(第三世界)의 해부(解剖)」, 서울, 집문당(集文堂), 1982. 제(第)V 장(章) 제삼세계(第三世界)의 정치과정(政治過程), 제(第)W장(章) 제삼세계(第三世界)의 정치경제(政治經濟).
4. 염홍철 편저(編著), 「제 3 세계와 종속이론」, 서울, 한길사, 1980. 서론(序論), 제(第)2부(部), 제(第)3부(部), アジア アフリカ연구소(研究所) 「A. A. LA찰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 アジア アフリカ 강좌(講座) 제(第)1권(卷), 동경(東京), 경초서방(勁草書房), 1964.

5. 토정장은(土井長穩) “식민지체제(植民地體制)의 붕괴(崩壞)と 신식민지주의(新植民地主義)” 「アジア アフリカ연구(研究)」 1962년 3월호(月号), 동경(東京).
6. 서천윤(西川潤) 저(著), 「제삼세계(第三世界)의 구조(構造)과 동태(動態)」, 동경(東京),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 1977.
7. Kwame Nkrumah, Neo-Colon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65.
8. Kwame Nkrumah, Africa Must Unite, Prager. New York, 1963. ,
9. Patrick McGowan & Dale, L. Smith, “Economic Dependency in Black Africa : An Analysis of Competing Theo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XXXII, No.1, (Winter 1978).
10. Richard Vengroff, “Dependency and Underdevelopment :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XV, (October 1977), Benjamin J. Cohe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New York, 1973.
11. Gabriel Almond and James Coleman, 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1960.
12. N. S. Fatemi&G.W. Williams, Multinational Corporation : The Problems and the Prospects, A. S. Barnes and Co., Inc., N. J., 1975; 김민재(金民彩) 역(譯), 「다국적기업론(多國籍企業論) - 문제(問題) 와 전망(展望)」, 법문사(法文社), 1976.
13. Wassily Leontif, The Future o f the W orld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7.
14. Dieter Senghaas, “Self-Reliance and Autocentric Development : Historical Experience and Contemporary Challenges”, Bulletin of Peace Proposals, (January 1981).

한마음 한뜻으로

88 큰일 치리내자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教育) 9대(大) 덕목(德目)

북괴(北傀) 대남전술(對南戰術)의 변화양상(變化樣相)

증위 김 기 국
(제5315부대)

목 차



- 서론(序論)
 - 1. 8·15해방에서 6·25 남침까지
 - 2. 6·25남침 이후 휴전제의까지
 - 3. 휴전제의 이후 휴전성립까지
 - 4. 휴전성립 이후 4·19 의거까지
 - 5. 4·19의거 이후 5·16 혁명까지
 - 6. 5·16혁명 이후 남북대화 개시까지
 - 7. 남북대화 개시 이후 대화 중단까지
 - 8. 남북대화중단 이후 범마사건까지
 - 9. 범마사건 이후 현재까지
- 결론(結論)

서론(序論)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고 있는 이른바 공산화 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은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정식화(定式化)하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탈린에 의하면 전략이란 “혁명의 해당 단계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공(主攻) 방향을 결정하고 혁명적 역량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을 작성하여 혁명의 해당 단계 전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라 하고 있다.

또 ‘전술’이란 “운동의 만조 및 간조, 혁명의 양양 및 침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프롤레타리아가 행동할 노선을 결정하고 투쟁 및 조직형태, 그리고 표어를 낸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교체 하며 또한 그것들을 배합하는 방식 등으로 그 노선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략이란 기본적이고 지속성을 지닌 차원(次元)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단계의 혁명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며, 전술이란 종속적이고 가변성을 지닌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혁명단계에 있어서도 그 혁명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28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코민테른대회에서는 공산화 혁명의 기본 유형을 ‘강령’으로 결정해 놓았는 바, 그 하나는 선진국에 적용하는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중진국에 적용하는 혁명이며, 또다른 하나는 후진국에 적용하는 혁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고 있는 혁명 유형이 바로 이 후진국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후진국에서는 공산화 혁명을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이고 그 다음 단계가 주민의 재산권(생산수단)을 몰수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인 것이다.

북괴의 김일성(金日成) 집단은 8·15해방 이후 소련 점령군의 지원하에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일방으로는 소위 ‘민주기지(民主基地)노선’에 입각하여 6·25 무력남침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다음, 전 한반도를 동시적(同時的)인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시키려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UN군의 개입에 부딪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남한을 여전히 인민민주주의혁명 대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15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북괴 공산집단에 의한 대남전략(對南戰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는 것이며, 오직 변화된 것은 공산정권의 수립이라고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목표 달성을 복종하기 위한 전술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북괴가 오늘날까지 취해 온 대남전술의 행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본론(本論)**1. 8·15 해방에서 6·25남침까지**

1945년 8·15해방으로부터 6·25남침까지의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북한)을 침체기 전술 단계로 보고 그 객관적 여건(남한)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괴의 자체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대응역량을 약화시켜 무력남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세적 방어형 전술과 우회공격형 전술을 배합한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에 서는 소위 ‘민주기지노선’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식 정치·경제적 재개혁을 단행하고 소련의 지원하에 군사력을 육성하는 한편, 남한 각지에서는 무장유격 전과 군내의 반란, 그리고 10·1 대구폭동 및 4·3 제주도폭동 등을 일으키게 해놓고서도 한편으로는 ‘남북 정당·사회 단체 연설회의’ 등을 제안하는 술책을 썼던 것이다.

이 시기의 북괴의 대남전술적 지도과제는 우회공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법(合法) 및 비합법(非合法) 투쟁, 경제 및 정치투쟁 등을 배합해 나가고 거기에 알맞는 조직 형태와 표어를 취하면서 남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중에서도 이 기간 중, 특히 그들이 전술적인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도록 공작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되기만 하면 그동안 준비한 압도적인 무력으로서 남한 정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타산에 의하여 소련과 공모하여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군이 선제 철수하면서 남한 주둔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고, 그런 가운데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2. 6·25 남침 이후 휴전제의까지

다음으로 6·25 남침으로부터 휴전제의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만조기 단계로 보고 피아역량(彼我力量)의 계산과 시험을 마치고 결정적 시기를 포착한 바탕 위에서 본격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1월 초에는 에치슨 미(美)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으며, 더우기 남한 내부에는 정치적·사회적 불안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 무장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무력 남침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북괴는 만조기 전술단계의 정면공격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각지에 남로당계 당간부를 파견하여 각 지구당을 양성화시켰으며 또한 호전적인 표어를 내걸어 남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소위 ‘인민군’의 남침작전을 지원하도록 공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 각지에서는 각종 좌익단체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조작되었고 특히 ‘반동분자’ 숙청이란 명분하에 수많은 양민을 처형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력을 다하여 성취하려고 했던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 전역을 조속히 강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한 전역을 무력으로서 강점하기만 하면 나머지 공산화 목적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3. 휴전제의 이후 휴전성립까지

세째로 휴전제의로부터 휴전 성립시까지의 기간에는 북괴에 의한 본격적인 정면공격이 UN군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자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간조기 전술단계로 보고 자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1950년 9월 UN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위기에 몰리게 되자 생존 유지책으로서 1951년 6월 소련의 UN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 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한편으로는 타협적 협상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양면 전술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남한 내의 와해된

지하당을 5 개 지구당으로 개편, 재건하고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5개 지구당 통제하에 유격전을 감행케 함으로써 남한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전선에서의 보다 나은 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휴전을 가능한한 유리하게 매듭지으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전선과 남한 내의 후방에서 전개하는 유격전을 결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과 보다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면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휴전을 않고서는 생존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어차피 일단 휴전을 하기는 하되 장차의 재남침을 위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지위를 격상시켜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유지함으로써 ‘침략자’의 오명을 씻고 현실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4. 휴전성립 이후 4·19 의거까지

네째로 휴전성립으로부터 4·19 의거까지의 기간에는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적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그들이 자체 역량을 비축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와해된 대열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6·25 남침 실패의 책임을 남로당계에 전가시켜 정적을 숙청하는 한편, ‘민주기지노선’을 재확인하고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행에 착수하였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둔 5개년계획 실천에 착수했다.

그리고 1955년 5월에는 일본에 있는 ‘재일본(在日本)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을 ‘재일본(在日本) 조선인총연합회(朝鮮人總聯合會)’로 개편하여 남한 공산화의 간접기지를 만들어냈고 그들을 내세워 재일동포 북송공작을 추진한 결과, 1959년 11월부터 재일동포의 북송이 개시됨에 따라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의 일부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이 이루어지자 1958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통일(平和統一)’을 내세워 대남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남한이 호전적이며 그들은 평화지향적인 정권인 것처럼 위장하는 평화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동향은 수세적 방어전술에서 앞으로 공세적 방어전술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으며 6·25동란이 남침 아닌 ‘북침’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한미(韓美) 양국을 ‘침략자’로 조작하려는 적반하장적인 전술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앞으로의 재남침을 위하여 북괴 자체의 정치·경제·군사력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5. 4·19의거 이후 5·16혁명까지

4·19 이후부터 5·16까지의 기간에는 혁명의 객체적 여건은 만조기 전술 단계였으나 북괴의 주체적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4·19사태라고 하는 공산화 ‘인민혁명(人民革命)’에 유리한 여건을 바라보면서도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맹렬한 평화 공세에만 의존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만 구사하였다. 즉, 공산화 혁명 성취에 직접 연결될 적극적 행동은 단행하지 못

하고 4·19 학생의거가 마치 북괴를 지지하여 일어난 인민봉기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남북협상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하는데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 조성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공작원을 대량 낭파시켰다.

그리고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대회 석상에서 김일성(金日成)은 연방제 통일안을 제의하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한의 정국혼란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였고 민선민주청년동맹(후의 사로청(社労青)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조직같이 ‘조선학생위원회’로 탈바꿈시켜 남한 학생들의 조직과 대등하게 꾸밈으로써 남한 학생들에 대한 선동·침투공작을 강화하였다.

더우기 북괴는 당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남한의 혁신계열을 지원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일방으로는 그들의 종속적인 당으로서의 지하당 조직을 서둘면서 겉으로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요란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괴는 이 기간 중에 자체 역량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한 내에 지하당 구축을 비롯한 용공세력의 부식을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고 간첩의 대량 투입과 평화통일론을 요란하게 선전하는데 광분하였던 것이다.

6. 5·16혁명 이후 남북대화 개시까지

여섯째로 5·16혁명 이후부터 남북대화 개시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정면공격 임무가 부여되는 만조기 직전의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피아역량(彼我力量)을 계산·시험하는 완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남한의 반공태세가 강화되자, 이에 자극되어 ‘4대 군사노선’을 서둘러 추구하였고 그 결과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1966년부터는 적극적인 폭력적 대남도발 공작으로 전술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1월 21일에는 31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청와대 기습을 시도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울진·삼척지역에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재남침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역량의 시험은 실패하였으나 서울의 심장부에까지 그들의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는데 고무되어 비정규전적인 폭력에 의한 남한 공산화를 본격적으로 획책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특수8군단을 신설하여 10만명内外의 특공병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게릴라 투입에 의한 대남 공산화가 뜻대로 진전되지 않자 김일성(金日成)은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의 혁명기지(革命基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남한에서의 자체 혁명역량을 육성·강화시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합법(合法)·반합법(半合法) 투쟁과 비합법(非合法) 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 투쟁, 대규모 투쟁과 소규모 투쟁 등을 배합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전술적 중심고리는 비정규전 방식을 위주로 하는 ‘인민전쟁(人民戰爭)’ 즉 게릴라 전술을 구사해서 만조기를 조성해 나가려는 것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7. 남북대화 개시 이후 대화 중단까지

남북대화 개시로부터 중단까지의 기간에는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남북대화라고 하는 우회적 방법을 써서 공산화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세적 방어형 전술로서의 우회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무력도발을 통한 남한 공산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계기로 남한국민들이 통일의 기분에 들뜰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편승하여 용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한 국민들의 대공(對共) 경각심을 이완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법적 방법으로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드디어는 대화의 지속 및 진전의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획책하였다. 그와 같은 의도하에 내건 것 이 바로 반공법·국가보안법의 철폐, 용공인사의 석방, 소위 ‘통일혁명당’을 포함한 각 정당·사회단체의 대화 참여 요구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로써 공산화 혁명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쉽사리 달성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인 대화 중단 성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8. 남북대화 중단 이후 베마사건까지

남북대화 중단 이후 베마사건까지의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객체적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보고 남한 자체 내에서의 반미(反美)·반정부(反政府) 운동을 조성하여 소위 ‘인민혁명(人民革命)’의 여건을 고조시키는데 역점을 둔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약하였을 당시에는 대남전략 목표의 우선순위를 ‘선(先)주한미군 철수’에 두었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백지화하자 이번에는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선(先) 반공정권 타도’편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신축성있는 전술 운용으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는 ‘대화에 의한 공산화 혁명의 여건 조성을 단념하고 남한에 의한 대화 및 통일방안 제의를 사리에 맞지 않는 구실을 붙여 반대하면서 ‘대민족회의’ ‘전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 ‘100인정치인연합회의’ 등을 내세워 ‘연방제’ 안을 고집스럽게 내걸고 남한의 국론 분열을 기도해 온 것이다.

북괴가 이 시기에 전력을 다하여 불잡고 끌어 당기려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의 반공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정부 소요를 확산시키도록 공작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투쟁 형태를 배합하여 공작하며 남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점, 특히 각 계각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반정부적 운동을 고조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9. 베마사건 이후 현재까지

베마사건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객체적 여건은 만조기 직전의 완전한 앙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괴의 자체역량 비축 및 대열 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만조기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는 양면 전술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현시점에서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북대화의 유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착하고자 하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운동권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연결시켜 이들의 연계 투쟁에 의한 사회변란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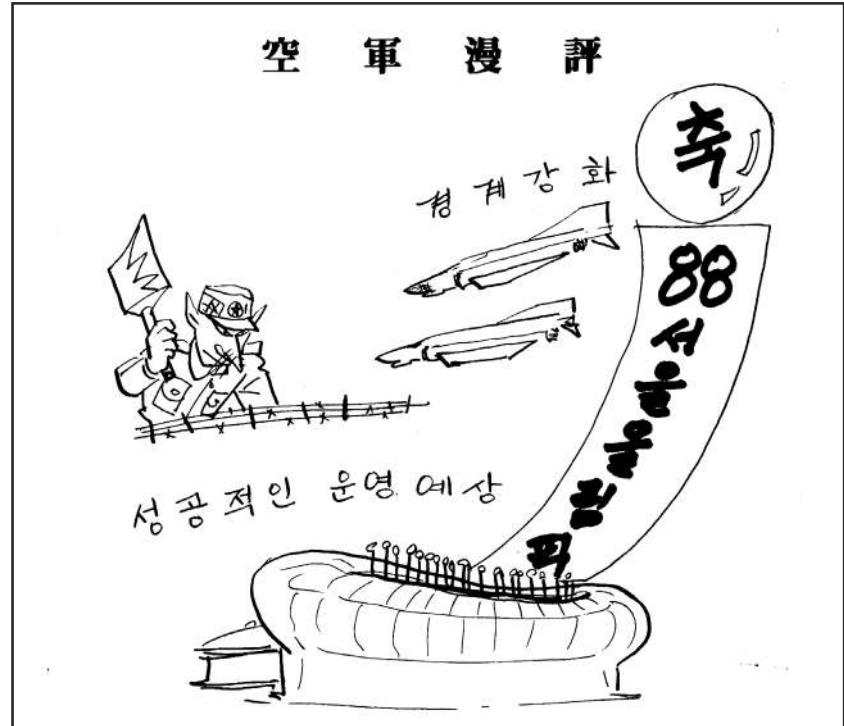
이상으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괴가 구사한 전술적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들은 일단 혁명의 만조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감행하고 그것이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면 후퇴하여 재공격을 위한 대열 정비와 역량 비축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열 정비와 역량 비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세적인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로 전환하여 피아(彼我) 간의 역량을 계산하고 시험하는 등 또 다시 만조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작에 임하게 된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각종 투쟁형태·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해 가면서 이용 가능한 모순과 약점에 파고들어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때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합법적인 경제 및 소규모 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상황이 허용되면 비합법적인 정치 및 대규모 투쟁으로 전열(戰列)을 강화·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적 지도원리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동 체계는 휴식이 없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은 이 과정에서 혁명의 주력군(主力軍)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장차 제거 또는 개조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청년 인텔리총과 종교인들의 현실 비판의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무·찬양·영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략이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의 전단계혁명(前段階革命)인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 전략단계의 특징인 전력적 지도에 따른 보조군 이용방법, 즉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이 성취되고 나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들 인텔리 및 종교인은 마땅히 제거 내지 개조대상으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민민주주의혁명(人民民主主義革命) 전략단계이기 때문에 장차 사회주의 혁명기에 숙청하도록 책정된 계층까지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전술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면서도 해당 혁명단계이 전략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괴의 향후 동향에 있어서는 그



전술상의 변화가 있을뿐 결코 전략적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골적인 무력남침 또는 남한 내에서의 혁명 유발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역량을 계산하고 시험하면서 혁명의 만조기를 조성하며, 소위 '결정적 시기'를 포착, 이용하려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생의 조그마한 의미



중위 신준상
〈제6546부대〉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축복하는 가운데 인간은 태어난다.

천진무구한 아이의 눈망울은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을 뒤덮는 백색의 눈처럼, 깊은 밤 훌연히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다.

아이들에게 적의를 품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또한 커오면서 적의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른 역시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푸른 하늘을 떠가는 물개구름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밤을 지새고 나면 모두 부질없는 일이거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짜증내고 가슴아파 하는가?

가슴을 비우고서 남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

추한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늙은 가운데서 생명력이, 바쁜 가운데서 한가로움이 비었던 가슴으로 되채워진다.

너를 보면서 나를 느끼고 나에게서 네 모습이 보이면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을 닦자.

보도블록 사이에 풀 한 포기를 들여다 본다.

비좁은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더니 사흘 이 지나자 제법 줄기가 올랐다.

각박한 세상을 용케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서로의 상처를 훑아주고 위로하던 내 부모님들의 모습이다.

먼 옛날 침략과 약탈 속에서 다시 허리펴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얼굴이다.

우리의 모습이 저 풀 한 포기일진대 나는 무엇을 아쉬워 하는가?

어린 시절 세계여행을 꿈꾸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나의 꿈도 세계여행이다.

조그만한 가방 하나를 들고 미련없이 훌훌 길을 떠나 배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쉬어가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다.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픔을 느끼고 즐거울 때 함께 웃으며,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걸, 그들이 바로 내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아직은 밤.

자동차의 낮은 경적소리를 멀리하고 조용히 상념에 젖어본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왔는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많은 어른들과 친구들 그리고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 하여 먼 훗날 내자식들이 어떤 생을 살아왔느냐고 묻거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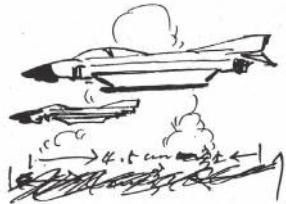
적지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하려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인간은 죽어간다.

그때 나는 웃고싶다.

하늘에 올라



여기는 하늘의 바다
고도 6천 피이트
기수는 남쪽으로
날으는 배를 타고
세상을 본다.

십층 육십층 높게만 보이더니
오천평 십만평 넓게만 보이더니
성냥갑 성냥갑 같은 집
벽돌장같은 건물 속에서
벌렌듯 벌렌듯 살아들 가지만

여기 와선 하찮은 광경

저마다 잘났다고 잘났다고
머리엔 천금을 이고
높고 낮음을 이루고
미음과 질투 사이를
뺏시고 뺏시게 살아들 가지만

여기 와선 하찮은 광경

중령 임관영
<공군 제6751부대>

빈부면 빈부가 얼마나 깊고
잘남과 잘남의 차이는 얼마나 되어
선과 벽을 이루고 살아들 가지만은

여기와선 하찮은 광경.

* 본 작품은 시인통신사 제1회 신인상 수상 작품임.

시작소감(詩作所感)

구름으로 닦여진 맑은 한낮에 파아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더 없이 아름답던 날 나는 출
장가는 길에 「하늘을 올라」를 썼다. 글을 끝
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었다. 잠시라도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것 아무 생각없이 시간을 보낸
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던가. 가끔 여가가 있을
때는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즐거웠던 일
슬프고 괴로웠던 일 해야 할일 그런 것들을 생
각하곤 했다. 아직도 눈 내리는 날 초저녁에 부엉이 울음 소리 들리면 1·4후
퇴 때 떠나가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새로이 눈물이 나고 고드름이 질편히 녹아
가는 봄날이면 들로 파종을 나가시는 어릴적에 아버지가 그립고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총소리 들리는 날이면 강한 어금니를 물고 어쩌다가 아는 이 부보
(訊報)를 접하면 멱통으로 우는 가슴, 이런 저런 생각들이 내게는 깨달음과 보
람으로 이어져 풀씨처럼 나(비(飛))는 시각의 연속이곤 했다.



좋은 시를 읽게 되면 훌훌히 산과 바다를 찾아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온 뒤의
상큼한 기쁨과 같은 신선함을 느낀다. 감히 그런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을 했었
다. 실은 자신이 없었고 오랜 군생활 속에서 임무를 항상 보람과 긍지로 실천
하는 나날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보니 깊은 사고로 예지 못한 글인듯
하다. 그러나 나의 임무가 무엇임을 알고 최소한 허물을 감싸주리라 믿는다.

FALCON이 나른다

준위 전호명
〈제3569부대〉

Falcon이다.

Fighting Falcon이다.

하늘의 요새(要塞) F-16

그 위용(威容) 명명(命名)하여

「필승(必勝) 보라매」

우리의 솜씨로

하늘을 날고

우리의 슬기로

높이 솟는다

구름을 갈라보는

조국(祖國)의 비상(飛翔)이려니

바람을 텁질하는

겨레의 비상(飛翔)이려니

음속(音速)을 가늠하는

자유(自由)의 비상(飛翔)이려니

멋을 창출(創出)하는

번영(繁榮)의 비상(飛翔)이려니

우리가 이룩한
역사(歷史)의 수레 위의
우리가 이룩한

세계(世界) 속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우리가 이룩한

안보(安保)의 역량(力量) 위에

우리가 이룩한

올림픽의 환희(歡喜)에서

우리가 보유(保有)한

「필승(必勝) 보라매」

희망(希望)을 위(為)한

보라매가 되어

사랑을 위(為)한

파수꾼이 되어

Falcon이 나른다.

하늘 더 높이 더 멀리

더 확실(確實)하게

Falcon이 나른다.

Fighting Falcon이 나른다.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

- 남북한(南北韓) 비교(比較) -



중위 오 광 석 (吳光錫)
(제6972부대)

목 차 (目次)

1. 서론(序論)
2.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의 개념(概念) 및 판단(判斷) 기준(基準)
3. 남북한(南北韓)의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 비교(比較)
4. 결론(結論)

1. 서론(序論)

분단(分斷)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한(南北韓)의 이질적(異質的)인 사회풍토(社會風土)는 주민(住民)들의 정신생활(精神生活)에서도 많은 변화(變化)를 가져와 사물(事物)에 대한 가치 판단(價值判断)의 기준(基準)과 정신적(精神的) 발달(發達)을 달리하게 되었다.

자유(自由)와 복지(福祉)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곧 인류역사(人類歷史)이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한 인류문화(人類文化)의 축적(蓄積)이 곧 인류역사(人類歷史)의 발전(發展)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민족(民族)의 보편화(普遍化)된 역사관(歷史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이와 같은 역사관(歷史觀) 위에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또한 무엇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價值) 있는 것인가를 판단(判斷)하는 기본적(基本的)인 가치체계(價值體系)를 수립하고 있다.

반면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은 물질주의(物質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관(價值觀)

을 내세워 소위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라는 이질적(異質的) 외래사상(外來思想)에 맹목적으로 도취되어 우리 민족의 사상적(思想的) 전통(傳統)을 근본적(根本的)으로 파멸시키고,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주체적(主體的) 정신(精神)을 분열(分裂)시키는 한편, 주체사상(主體思想)이라 불리는 김일성 유일사상(唯一思想)을 집단(集團) 이데올로기로 채택함으로써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을 날조·왜곡하고 있다.

2.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의 개념(概念) 및 판단기준(判斷基準)

가. 개념(概念)

정통성(正統性)(Legitimacy)은 정당(正當)한 계통(系統), 올바른 계승(繼承)을 의미(意味)하는 것으로 주체성(主體性)이 문화적(文化的), 사회적(社會的) 측면을 강조(強調)하는 민족적(民族的) 개념(概念)인데 반하여 정통성(正統性)은 정치적(政治的)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적(國家的) 개념(概念)이다.

따라서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은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민족(民族)의 자율기반(自律基盤)을 확인(確認)시켜 주며, 이러한 정통성(正統性)이 확인될 때 그것은 곧 통일(統一)을 실천(實踐)하려는 국가적(國家的) 정통성(正統性)을 의미(意味)하기도 하며, 또 통일(統一)된 이후의 역사(歷史)를 담당할 국가적(國家的) 정통성(正統性)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정통성(正統性)은 민족통일(民族統一)이나 그 이후의 역사(歷史)에 있어서 그 주체(主體)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확인(確認)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根本的)인 기반(基盤)인 것이다.

나.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 판단(判斷)의 기준(基準)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을 판단(判斷)하는 기준(基準)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普遍的)인 기준(基準)으로 정당성(正當性)의 여부와 정도, 공간(空間)에서의 중심성(中心性), 시간(時間)에서의 연속성(連續性)과 승계(承繼)에서의 선위성(先位性)을 듣다.

정당성(正當性)의 여부와 정도를 판단(判斷)하는 요소(要素)로는 국가이념(國家理念)의 민족주의(民族主義)에의 접근도(接近度), 균등(均等)한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참여(參與)의 기회제공(機會提供), 공정(公正)한 사회(社會)의 원리(原理)와 법률(法律)의 테두리 안에서 평등(平等)한 자유(自由)를 향유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시(重要視)된다.

공간(空間)에서의 중심성(中心性)은 인구(人口), 국민(國民)의 대내외(對內外) 활동(活動)의 양(量)과 질(質), 집단(集團)의 능력(能力)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간(時間)에서의 연속성(連續性)과 승계(承繼)에서의 선위성(先位性) 문제(問題)는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전통계승(伝統繼承), 민족독립투쟁(民族獨立鬪爭)의 승계자(承繼者)로서의 지위(地位) 등을 요소개념(要素概念)으로 하여 판단(判斷)한다.

다음 장(章)에서는 이러한 기준(基準)에 입각하여 남북한(南北韓)의 민족정통성(民族正統

性) 문제(問題)를 비교(比較) 분석(分析)하기로 한다.

3. 남북한(南北韓)의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 비교(比較)

가. 정당성(正當性)의 여부와 정도

정당성(正當性)을 판단(判断)하는 기준(基準)으로는 민족국가성(民族國家性)과 이론(異論)의 여지는 있으나 민주성(民主性)에 관하여 일반적(一般的)으로 인정되는 참여(参与)의 기준에 의한 장기집권과 독재를 중요(重要)한 척도(尺度)로 삼는다.

(1) 민족국가성(民族國家性)

- 남한(南韓) : 시민대중의 생산모태인 정치(政治) 사회화(社會化)와 경제발전(經濟發展)을 통해 단일민족적(單一民族的) 국민(國民)을 양성하고 현대국가(現代國家)의 기초확립(基礎確立)에 성공함으로써 국가(國家)의 민족화(民族化), 국가(國家)의 민주화(民主化)를 효과적(效果的)으로 달성하였다.

- 북한(北韓) : 계급의식적(階級意識的) 이데올로기에 의한 시민대중 간의 투쟁(鬪爭)과 민족구성원(民族構成員) 간의 분열(分裂)로 합리적(合理的), 자율적(自律的) 시민대중형성이 실패 또한 주체사상(主體思想)이라 불리는 김일성 유일사상(唯一思想)을 집단(集團)이데올로기로 채택함으로써 국민(國民)을 국가(國家)의 주체(主體)가 아닌 김일성의 객체(客體)로 전락(転落)시켰다.

(2) 민주성(民主性)

- 남한(南韓) : 모든 국민(國民)에게 균등(均等)한 참여(参与)의 기회(機會)를 부여하며 민주주의(民主主義) 이념추구(理念追究)에 노력하고 있다.

- 북한(北韓) : 남한과 비교가 안 될 뿐 아니라 공산권내(共產圈內)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기 1인독재 및 부자상속(父子相続)을 꾀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나. 공간(空間)에서의 중심성(中心性)

공간(空間)에서의 중심성(中心性)은 민족활동(民族活動)의 중심지(中心地)가 한반도(韓半島)에서 역사적(歷史的)으로나 현실적(現實的)으로 남북한(南北韓)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와 인구(人口), 그리고 집단(集團)의 능력(能力) 또는 국가역량(國家力量)의 성취도(成就度)를 기준(基準)으로 판단한다.

(1) 민족활동(民族活動)의 중심지(中心地)(평양의 서울에의 부속성(附属性))

해방(解放)과 동시에 좌익세력이 일제(日帝)의 통치권(統治權)을 인수함에 있어 서울에 중앙건국준비위원회(中央建國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평양에는 평남건국준비위원회(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결성 중앙건국준비위원회에 귀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방직후(解放直後) 한국공산당(韓國共產黨) 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 진주 소련군과 김성주가 북한지역에 공산당(共產黨)을 창설하기 위해 1945. 10. 10~10. 13까지 4일 동안 평양에서 소집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오도당(五道黨) 책임자(責任者) 및 열성자대회(熱誠者大會)」에서 서울에 이미 설치(設置)되어 있었던 조선공산당을 중앙당(中央黨)으로서 법통(法統)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조직(組織)을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으로 스스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그들의 활동(活動)에서 조차 서울이 역사적(歷史的)으로나 현실적(現實的)으로 민족활동(民族活動)의 중심지(中心地)였음을 알 수 있다.

(2) 인구(人口)

지금 남한의 인구는 약 4,200만, 북한은 약 2,000만으로 추산되는 바 남한이 북한의 2배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人口) 비교(比較)는 그 자체만으로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韓國人)의 활동무대가 압도적으로 남한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1945. 8. 15~1949. 8.까지 330만명이 자유를 찾아 월남했는데, 이것은 남한에게는 북한주민(北韓住民)의 30% 이상이 월남하여 민족국가(民族國家)의 합법성(合法性)을 제고(提高)시킨데 반해, 북한에게는 주민의 30% 이상이 정권(政權)을 외면(外面)하여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을 박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집단(集團)의 능력(能力), 국가역량(國家力量)의 성취도(成就度)

집단(集團)의 능력(能力) 및 국가역량(國家力量)의 성취도(成就度)는 경제(經濟), 외교(外交) 등 다방면에서 남한의 우위(優位)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84년 말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경제력(經濟力)을 비교(比較)해 보면 GNP는 남한이 811억불(弗), 북한이 147억 불(弗)로 5.5:1, 1인당 GNP 역시 1,999불(弗) : 962불(弗)로(魯) 2.6:1 등 각 부문에서 그 격차를 넓혀가고 있다.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 또한 '84년에 남한이 7.5%를 기록한데 비하여 북한이 3.9%에 머물렀으며, 북한은 특히 '84년이 그들의 제2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임에도 기간중(期間中) 생산계획목표(生產計劃目標)에 대한 실적(實績)이 약 40~50% 수준에 그쳐 새로운 경제계획(經濟計劃)의 수립에 차질을 가져 왔다.

외교면(外交面)에서도 남한은 전통적(伝統的)인 우방(友邦)과의 결속을 한층 강화하고 공산권(共產圈) 및 제(第)3세계(世界)에도 문호(門戶)를 개방(開放)하는 한편 각종 국제행사(國際行事) 및 국제경기(國際競技)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의 지위(地位)와 공신력(公信力)을 높여 가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테러수출과 밀수를 일삼아 자유세계(自由世界)는 물론 공산권내(共產圈內)에서도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시간(時間)에서의 연속성(連續性)과 승계(承繼)의 선위성(先位性)

시간(時間)에서의 연속성(連續性)과 승계(承繼)에서의 선위성(先位性)은 민족독립투쟁(民族獨立鬪爭)의 승계자로서의 위치와 민족사적(民族史的) 주체성(主體性),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전통계승(伝統繼承)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독립투쟁운동(獨立鬪爭運動)의 승계자(承繼者)로서의 위치(位置)

- 남한(南韓) :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이승만, 김구 등 민족지도자(民族指導者)가 거의 서울로 귀국하여 독립투쟁지도세력(獨立鬪爭指導勢力)의 중심성(中心性)을 독점하였다.
- 북한(北韓) : 독립투쟁사를 김일성혁명운동사로 날조하여 독립운동(獨立運動)의 승계자인 양 꾸며 선전(宣伝)하고 있다.

(2) 민족사적(民族史的) 주체성(主體性)

- 남한(南韓) : 한때 외세(外勢)의 이데올로기적 지도 하에 국가(國家)를 건설(建設)하는 등 문제(問題)가 있었으나 '60년대(年代) 이후 민족역량(民族力量)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민족사적(民族史的) 주체성(主體性)을 확립(確立)해가고 있다.
- 북한(北韓) :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교조적(教條的)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주체성(主體性)의 단절(斷絕)을 가져왔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단절(斷絕)은 반민족적(反民族的) 의식(意識)의 상징적(象徵的) 표현(表現)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의 조국(祖國)-소련」이라는 말이 이러한 사정을 명료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3)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전통계승(伝統繼承)

- 남한(南韓) : 전통문화(伝統文化)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自主的)인 문화(文化)를 육성(育成)하여 민족문화(民族文化)가 사회통합(社會統合)과 국민(國民)의 일체감(一體感)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북한(北韓) :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민족문화(民族文化)를 외치며 민족문화(民族文化)를 퇴폐적·자본주의적 잔재로 매도하며 우리 민족의 사상적(思想的) 전통(伝統)을 단절시키고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偶像化)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6. 결론(結論)

모든 국가(國家)가 개인(個人)의 행복(幸福)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正當)한 국가(國家)만이 국민 전체에게 개인적(個人的) 자아실현(自我實現)과 행복(幸福)의 터전을 제공(提供)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수호하는 것은 앞에서의 논의(論議)를 통해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정당(正當)한 국가실현(國家實現)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족정통성(民族正統性)을 계승한 나라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단 하나 밖에 없는 조국(祖國)이요,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을 이어받은 오직 하나의 국가(國家)이므로 지키고 발전(發展)시키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의 절실한 과제(課題)이며 군인(軍人)은 이 과제(課題)를 제1선에서 전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지식인(韓國知識人)의 사명(使命)과 임무(任務)



3.1혁명(革命) 이후 지식인(知識人)의 의식구조(意識構造)

이현희 (李炫熙)
〈교수·성신여대(한국사학)〉

목 차 (目 次)

- 지식인(知識人)과 민족운동(民族運動)
- 국내(國內)에서의 민족운동(民族運動)과 그 추진정향(推進定向)
- 해외(海外)에서의 독립전쟁(獨立戰爭)과 그 성향(性向)
- 지식인(知識人)의 위국활동(為國活動)과 그 계승문제(繼承問題)

지식인(知識人)과 민족운동(民族運動)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식인은 어떤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여 오늘날까지 의식구조 면에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3·1 민주혁명은 우리 지식인의 혼신적 참여로 성공한 최대의 세계적이고 민족적 환희의 연속이었다. 이는 동학혁명(東學革命)(1894) 이래 두번째 맞이하였다. 우리 근대사의 승리한 민중역사의 한 표본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로소 민족운동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며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진 것이다.

3·1 정신이 우리 민족 앞에 제시한 그 정향(定向)과 성격(性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로 외교자립주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체제로서의 우방과의 국교정상화를 끈질기게 추구하여 일제강점국제적으로 무색케 하였으며 그 총회기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민족의 저력-국력-이라 지칭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구체적인 위업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었다. 이 실력-국력 비축의 운동은 그 이후 교육, 문화, 산업진흥에 그대로 맥락지어질 수 있었다. 물산장려 -국산품 애용운동 - 경제 민족주의 운동-과 민주대학(民主大學)(종합대학 규모) 설치 운동이 범국민운동 -교육민족주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무 환기되었던 산업진흥 -민족기업운동 운동의 분위기가 바로 3·1 정신이 잉태한 민족적 위업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 공산주의자와 그 이념이 침투하여 민족주의 색채에 염색이 가해지는 혼란과 무분별이 잠시 개입 준동되어 민족진영을 당혹, 혼미케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었을 때 우리가 얻은 이득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민족진영의 단결을 혼돈케 하였던 것이다. 각종 서클과 개인의 투쟁이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혼란을 청산할 수 있었다.

세째는 독립전쟁 -무장투쟁·시위·응징-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는 특히 중국 일대와 동삼성 -만주지역에 전쟁기지 설치, 무장군의 양성, 지식인의 무력투쟁 열기 등의 제도적인 장치로 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맥락짓는 한국군의 정통성이 여기에 그 근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는 문화투쟁으로 우리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전통문화의 선양과 그 수는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기반을 조성해 주었던 것이다. 문화민족과 그 능력의 수렴이 일본의 혹독 간교한 식민통치책을 중심(中心)개념으로부터 청산 결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월의식을 지식인은 견지하고 있었다.

국내(國內)에서의 민족운동(民族運動)과 그 추진정향(推進定向)

1. 6·10 학생운동

3·1 혁명 이후 고조되었던 민족주의 지성운동은 이 시기에 침투 조직화하기 시작한 마르크시즘 - 공산주의에 압도되어 한때 그 방향감각을 찾지 못하고 도착된 의식 속에서 그 진로 모색에 부심하였다. 더우기 한때 민족주의 투쟁에 앞장섰던 인사가 이 운동과 주의에 솔깃하여 줄기찬 민족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향하는 성향마저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족자치운동이나 학생들의 맹휴(盟休)가 1920년대 초반의 민족주의운동을 대변하거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무력감 속에 빠져 그 진로가 불확실한 가운데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민족진영은 오히려 팔장만 끼고 주변 정세 등을 살피거나 일제 총독부 당국자에게 매수되어 변절, 이탈, 은둔, 협력, 자포자기하는 이변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탈민족운동성향 가운데 조선조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승하 -서거는 또 한 번의 3·1 혁명과 같은 양태(樣態)를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었다. 국내 학생들의 목표 있는 움직임과 해외 임시정부의 파견원에 의한 대대적인 독립투쟁의 기운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찰라에 있었다.

이때 6·10학생운동에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되어 그들 특유의 거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직화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사전 발각 구금당함으로써 사실상 6·10학생운동에 공산주의 색채가 깊이 물들어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필자가 학술논문으로 학계에 보고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이때 학생측에 가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공산주의계는 거의 사전에 봉쇄 소외됨으로써 이 운동은 항일민주학생의 승리로 진행되어 1926년 6·10학생운동을 가능케 하였다.

2. 신간회

1920년대 민족 공산주의자들의 합작적인 항일운동으로 최대의 결사항쟁이 바로 1927년 2월에 조직되어 1931년 5월에 해소된 신간회의 투쟁이었다. 이 결사운동은 마침 상해(上海) 임정(臨政)의 좌·우 합작적인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과 그 지도에 의하여 태동하기 시작한 민족주의 운동의 한 가지 유형이기도 한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과 단결, 기회주의를 배격하면서 진정으로 지성인의 대동단결과 화합만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그 진로를 민족 앞에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간회는 정치가는 물론 교육가, 의사, 변호사, 실업가,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 대표 30여명이 발기인이 되었으니 가위 지성인의 광장이며 지적(知的) 행동의 결의와 자극을 주기 위한 각성의 모임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좌·우합작에 공산주의계가 의도적으로 적극 침투하여 지성인을 상대로 공산운동을 펴나가게 되자 민족진영에서는 6·10운동의 자극과 영향에 따라 소명의식으로 모였는데 이런 영뚱한 작태가 일어나니 내심 당혹치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일제에 항거함과 동시에 공산주의계의 침투공작 및 이념확대에 적지 않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극복 타개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을 펴보일 수 없게 되자 국제공산당의 지령에 의하여 신간회의 해소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결국 “못다한 말의 아쉬움을 그대로 노출시킨” 결과가 되었거니와 합법적인 조직이며 결사라는 한계 상황을 인식할 때 신간회운동이야말로 1920년대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민족주의적 결사항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진로를 새로운 차원에서 규정하고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의의가 자못 크다 아니 할 수 없겠다. 여기에 참여한 지성인은 대개가 3·1 혁명 때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항쟁과 민족실력 양성운동에도 적극가담한 순수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3.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별동결사대와 같은 임무를 자담해 온 순수 여성의 모임을 우리는 근우회(槿友會)라고 한다. 무궁화꽃동산을 가꿀 여성 벗님네의 굳건한 단결을 표한 여성 애국주의운동가의 최대 결사라고 평가해 본다.

벌써 이들은 국내외에서 신식교육을 받은 인테리여성들로 뭉칠 수 있었다. 신간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성되었다가 비슷한 때 해소된 4년여의 활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역시 이들도 좌·우익계의 여성이 손잡고 이끌어 나간 여성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이들도 신간회의 결성과 같은 이념의 궤도를 달렸다.

특히 신간회나 근우회는 다 같이 최고의 민족지성이 자주적으로 집결되어 있었던 단체로서 그 지적인 진로는 이미 분명하게 설정되었고 목표를 향해 일로 매진하였던 것이다. 정치·경제적 각성과 단결을 촉구하면서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것은 소신과 의지가 가득찬 지성인의 행동성을 보여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3·1 혁명정신이 결여된 인사가 다수 변절, 이탈, 방관, 협력자로 변신 전락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자 이에 경종을 울리고 민족지성의 향방을 의지와 절개로 지킬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상연의 자유를 획득해야만 참 삶의 질을 구가 할 수 있다는 강조점으로 촛점을 모아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부인 형평(衡平) 운동의 지원과 실질적인 민족운동으로의 지향을 매우 긴박하게 촉구하고 있음도 그 의식구조상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인 것이다.

파벌주의의 배격, 만주동포의 구제, 내핍생활의 체질화, 동양척식회사의 철폐, 민족혼의 재발견, 재생산의 강조점도 신간 근우 두 남·녀 모임의 공통적인 성격이며 정향(定向)이라 지적할 수 있겠다.

근우회는 여성의 단결과 지위향상을 내세우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독립 투쟁이라는 적극적인 단계보다는 「여성해방」과 「신회참여」의 폭을 그만큼 넓히자는 의도가 다분히 잠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4. 광주학생운동

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로 폭발한 광주학생 항일운동(1929. 11. 3)은 곧 6·10운동의 맥락이며 (1926) 한국 민족주의 민중운동의 재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 운동은 그 배경이 3·1 혁명 이념과 의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적어도 6·10운동의 정신과 성진회, 독서회 등의 설립의지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광주학생운동은 「단순폭발」이나 「감정적 빌발」은 아닌 것이다. 그 사상적 배경과 지성적 자극이 이 학생운동을 가능하게 뒷받침하였고 전국적인 규모와 열기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신간회·근우회와의 연관에 의하여 이 운동이 가능해 질 수 있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민족지성의 양심, 정의, 자유, 진리가 이때 복합적으로 노출로의 작용을 감내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1 혁명 이후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좌·우의 개별행동 내지는 합작적인 형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종래에는 공산진영에서의 끈질긴 침투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지성인의 민족사적 의기나 양심에 따라 그들에게 부화뇌동하거나 흡수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 민족주의운동의 선명성, 확실성, 지속성을 강렬하게 발산하였던 것이다.

해외(海外)에서의 독립전쟁(獨立戰爭)과 그 성향(性向)

1. 임정(臨政)의 수립과 정책구현

3·1 혁명의 최대 성과는 중국 상해(上海)에 민족정통성을 잇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민주공화체제의 수립은 군주제의 청산인 동시에 민족의 진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이후 일본의 강점 속에서 모진 고문, 피체, 구금, 악형 등을 당하였으나 그래도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느라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시기에 3권분립 형태의 민주공화 체제의 출범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활력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정은 1919년 4월 13일 상해(上海)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가 그 이후 9월 초 국내외 각지의 6개의 임시 정부와 통합을 협의하여 단일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때의 지도체제가 제1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1945년까지 국무령(2차개헌 : 1925), 국무위원(3차개헌 : 1927), 주석(4차개헌 : 1940), 주·부석지도체제(5차개헌 : 1944)로 의회민주정치가 제도화된 것이다. 국무원, 의정원, 사법부의 3권이 분립된 민주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독립노선은 8가지로 나누어 강력하게 민중적 뒷받침 속에서 실시되었다.

내정교통, 군사외교, 재정사법, 교육문화가 그 주요정치의 방향이었다. 내정과 교통은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국내외를 통한 통치하는 비밀 행정연락기구를 구비하였다. 즉, 국내외를 체제적으로 통제 통합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민족운동의 방향과 성격이 보다 뚜렷해졌다.

군사와 외교면에서는 임정의 직할군대를 양성하여 독립전쟁-한일전쟁으로 확대 승리할 수 있었다. 독립군의 맥을 이은 임정직할의 광복군의 항일투쟁이 그려하였다.

외교정책면에서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하여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개별 접촉까지 전개하여 중국, 프랑스의 승인과 폴란드 등의 동구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그 외 태평양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규모의 대회에 독립청원을 호소한다든가 구미위원회 등 외교의 제도적인 보장을 통하여 군자금의 모집 등 실로 성과있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펴나갔다.

재정 사법분야에서는 임정의 예산결산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그리하여 군자금의 모집과 인구세, 호구세, 특별성금, 독립공채의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사법업무는 남의 나라, 도시, 그것도 프랑스 조계에서의 집행 때문에 제도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과 문화면에서는 의무교육의 실시와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신문과 사료편찬소를 두어 독립정신을 고양하였으며 잡지, 주간지, 단행본 등을 출간하여 국내외 동포에게 민족사상을 고취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의 어려운 경우를 설득하면서 독립에의 열망을 퍼나갔다.

임정은 상해(上海)로부터 중경(重慶)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을 하루같이 의회민주정치를 전개해 나가면서 국내외를 통치하였으므로 일제강점 35년사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 적어도 35년 통치 중 27년은 우리가 그들의 지배하에서나마 민주독립정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2. 해외운동의 성격

임시정부의 활동을 제외한 각지의 민족운동은 3·1 혁명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나게 하였다.

일본에서는 제2의 2·8 선언 등 보다 강렬하고 저돌적인 민족운동이 1945년까지 줄기차게 각분야와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왔다. 응징적인 항쟁이 전개되었는가 하면 설득적인 투쟁, 문화민족의 긍지를 알리는 민족자존의 행사가 일본의 자존심을 심히 동요케 하였던 것이다.

중국 만주에서는 무정부주의 운동과 함께 의열투쟁의 양상을 강하게 표출시켰다. 무엇보다도 중대한 투쟁은 1937년 중(中)·일(日)전쟁 이후 1945년까지 무장전투형태가 투쟁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를 계속 볼 수 있게 하였다.

미주지역에서는 국민회와 동지회가 민족구국운동의 중심을 이루어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여기에 여성단체까지 대두하여 남성을 지원하면서 투쟁을 보다 자신감에 차도록 유도해 주었다.

좌절, 방황, 의기소침 속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 신념, 의욕 등을 북돋아줌으로써 3·1 정신의 계승을 착실하게 맥락짓고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미주 하와이 지역에서는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비중있게 지원하고 있어서 임정 후원에는 매우 흡족하게 되어 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범 김구는 미주지역에서 들어오는 성금·군자금을 정성스럽게 저축하여 유효적절하게 이 성금을 사용하였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에 투입 활용되었던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구라파, 대만 등지에서의 민족투쟁도 3·1 혁명 이후 현저하게 활기를 띠었고 자신감과 가득 차 있었다. 계몽적인 민족사가들의 저술·조선상고사·독립운동지역사 등이 방황하고 찌든 지식인·국민을 일깨우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에 부응하는 참신한 저술이 민족의식 고취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3·1 혁명 이후의 민족운동은 그 방향과 성격이 보다 확실해졌고 체계화로 자신감을 성취한 면에서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지식인(知識人)의 위국활동(為國活動)과 그 계승문제(繼承問題)

1945년의 민족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 주었다. 지식인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를 생각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족해방투쟁의 핵심세력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과정에서 소외되고 대신 친일, 매국, 변절, 기회주의 정상배가 이승만의 단선(單選) 단정(单政)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민족정기나 사회정의가 퇴색 마모되어 갔던 것이다. 오늘날 사회정의의 회복을 강조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자유당 12년(1948~1960)의 독재와 부패 무능으로 나타나 4·19를 불러 일으켰다. 4·19는 미해결의 혁명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마무리지어야 했으나 그 담당체 역시 사회혼란의 외면, 통수체제의 미성숙, 지나친 자유, 방종의 구가 미조정 등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5·16은 시행착오적인 것도 있었으나 그것을 마무리짓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은 어떤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가를 결론적으로 평가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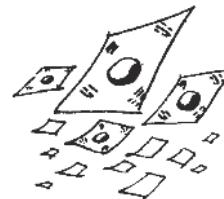
첫째, 일제강점하의 지식인이 구국과 외세 도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듯이 오늘날의 지식인은 이의 민족적 역량과 의지를 조국근대화와 세계화로 전환해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 구현과 청렴도, 기강의 확립 그리고 건전한 의식의 국력 수련화가 바로 지식인이 선도적으로 취해야 할 오늘날의 최대 과제이며 임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과감히 나라 부강과 세계속의 한국지식의 이미지 재생산에 투입, 건전상 확립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인의 의식구조는 곧 위정자와 국민간의 민족적 단합과 국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맥을 이어왔다. 따라서 위정자의 국민우선적인 정치의식이나 그 구체적인 통치의 사례가 비정상적이고 상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지식인의 임무는 다못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과감한 시정이라는 단체적 행동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은 자유, 정의, 진리, 양심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광복(光復)으로 가는길

분단(分斷) 41년 통일의지(統一意志)를 더욱 굳하자



마 육 (馬郁)

〈전우신문논설위원〉

목 차 (目次)

- 현실(現實)을 직시(直視), 모험주의(冒險主義) 경계하자
- 통일(統一)에의 뜨거운 의지(意志) · 신념(信念)을
- 인내(忍耐)와 성실(誠實)하게 지속하는 자세(姿勢)
- 위대(偉大)한 세대(世代)로 민족사(民族史)의 등불되자

서(序)

하나의 민족(民族)으로 남북한(南北韓)으로 갈라진 이른바 분단시대(分斷時代)에 살고있는 우리가 빠 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社會)의 고통(苦痛)의 뿌리가 곧 그 분단(分斷)에 있다는 평범하고도 심오(深奧)한 사실이다.

서로 다른 사상적(思想的) 갈등과 서로 다투는 체제(體制)아래서 살게됨에 따라 민족(民族)의 저력(底力)은 날이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낭비(浪費)가 심하며 받는 아픔도 커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통일의지(統一意志)는 꺼질 줄 모르고 오히려 강렬히 계속 불타고 있다.

그것은 그 무엇 보다도 소중하고 바꿀 수 없는 민족(民族)의 염원(念願)이며 또 활로(活路)이기 때문이다.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은 '82년도 국정연설(國政演說)(1·22)에서 조국통일(祖國統一)의 근본원칙과 그 실천방법, 또 통일(統一)까지의 과정 및 통일조국(統一祖國)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것이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이다.

이 통일방안(統一方案)은 분단 이후 남북한(南北韓)당국이 제시했던 어떤 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방안(方案)이었으나 북(北)은 오늘까지도 호응함이 없이 오히려 분단(分斷)의 벽을 두텁게 하고 있다.

결국 조국(祖國)의 분단(分斷)은 남북 모두에게 국방비는 물론 외교적(外交的) 대결에까지 적지 않은 심혈(心血)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내부 개혁(改革)의 강렬한 의지(意志)는 분단(分斷)으로 제약(制約)을 받게 되며 또 한 사회(社會)의 모순과 고통(苦痛), 나아가서는 어려움이 바로 분단(分斷)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제약(制約) · 고통(苦痛)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분단(分斷)이란 두 글자를 이 민족(民族)의 사전(辭典)에서 없애야 한다. 곧 통일(統一)을 앞당겨 이루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조국분단(祖國分斷) 41년, 통일(統一)로서 진정한 민족(民族)을 건설해야 하고 국가(國家) 건설을 완성해야 우리 모든 민족적(民族的) 에너지와 지혜를 발전적이며 생산적(生產的)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동(東)아시아에 평화(平和)를 가져오는 첨경이며 민족(民族)이 웅비(雄飛)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현실(現實)을 직시(直視), 모험주의(冒險主義) 경계하자.

오늘의 세계는 강대국의 정복(征服)을 통해 지배하고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블록을 형성하던 시대(時代)는 지났다.

오늘의 국제사회(國際社會)는 어떻게 보면 자유맹방(自由盟邦)의 개념도 신뢰(信賴)하기 어렵고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共產主義)도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냉전(冷戰)구조와 이데올로기적(的) 대결이 퇴조하고 있다. 여기서 자본민주주의(資本民主主義), 국가이기주의, 그리고 경제적(經濟的) 실용주의(實用主義)가 판을 치는 새로운 시대(時代)가 뒤 따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現實)은 과연 어떠한가. 남북(南北)은 이같은 세계의 흐름에서 밀려난 사각지대(死角地帶)로서 아직도 냉전(冷戰)구조가 낳은 민족분단(民族分斷)을 조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우리 민족(民族)을 갈라놓은 냉전(冷戰)구조와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의 유럽식 지배논리로 작용(作用)했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우리 민족(民族)의 통합에 장애가 됨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이익과 국제적 평화질서(平和與秩序)에도 유해(有害)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 우리 민족(民族)이 광복(光復) 41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이러한 냉전시대(冷戰時代)의 잔재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괴집단(北匪集團)의 시대적 착오와 비민족성(非民族性)에 기인한다.

광복(光復) 41주년을 맞는 오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北)이 남북대화(南北對話)를 거부하고 적화통일(赤化統一)노선과 군사적(軍事的) 모험주의(冒險主義)에 매달림으로써 남북(南北)의 긴장은 더욱 높아져 가고만 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統一問題)를 민족화합문제(民族和合問題)로 보지 않고 민족(民族) 내부의 갈등 내지는 계급투쟁(階級鬭爭)문제로 보고 있는데서 더하다. 그들은 분단(分斷)의 역사와 남북(南北)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歪曲)하고 이른바 「남조선(南朝鮮) 해방」이니 「남조선 혁명(革命)」이 통일(統一)의 전제 조건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그릇된 정세판단 내지는 통일관(統一觀)이 이른바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니 「전민족대회」니 하며 트집을 잡고는 대화(對話)를 거부하면서 속셈으로 무력적화(武力赤化)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까지 남북한(南北韓) 간에는 좁은 휴전선(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41년 동안 으르렁대며 아프리카대륙(大陸)의 모든 나라 군대(軍隊)를 합친 것과 맞먹는 방대한 규모의 병력(兵力)이 대치하고 있다.

또 그것은 언제 어느 때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감돌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된 남북(南北)대치 속에서 우리 민족(民族)은 자신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하여 나라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반공(反共)에 전념하는 사이에 어느덧 41년이라는 분단(分斷)의 애사(哀史)가 피로 점철(点綴)돼 온 이 땅에도 새로운 세대(世代)가 자라서 이제 전인구(全人口)의 80%가 해방 이후 출생세대가 됐다.

여기서 이른바 기성세대(既成世代)의 경험적인 안보관(安保觀)만으로는 새롭게 자라나는 그들을 설득(說得)하고 이끌어 가는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실에 비판적이고, 불의(不義)에 저항하며, 이상적 미래 지향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世代)는 이제 기성세대의 애인한 현상유지주의를 비판 내지는 무너뜨리려고까지 한다.

이것은 세계(世界)가 직면한 문제이며 남북(南北)이 다 같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광복(光復) 41주년을 맞는 오늘, 아직껏 남북(南北)이 대치하고 있고 또 언제 열리리라는 기미조차 찾을 길 없는 우리 나라에서 세대(世代) 간의 안보관(安保觀), 통일관(統一觀)의 차이는 그 무엇 보다 중요하고 또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다른 대내적 문제라면 다소의 시행(施行)착오가 용납(容納) 내지는 수정될 수도 있으나 국가존립의 바탕이 되는 안보(安保)와 통일(統一)문제에서는 한치의 국론분열(國論分裂)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장차 이 땅의 통일(統一)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젊은 세대(世代)들이 어떠한 통일관(統一觀)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겨레의 내일을 위해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통일(統一)문제 속에는 민족(民族)과 국가(國家) 발전문제가 모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기성세대(既成世代)의 경험적 안보관(安保觀)이나 애인한 현실주의

(現實主義) 등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민족(民族)이나 국가(國家)발전 문제를 모두 포용하는 통일지향적인 비전과 지도력(指導力)을 요구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남북(南北) 간의 통일(統一) 주도권 경쟁은 어느 쪽이 이 같은 새로운 비전과 지도역량(指導力量)을 가지고 민족의 화합과 대화(對話)를 주도하느냐가 문제이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민족(民族)의 화합(和合)과 대화(對話)의 문을 열자면 무엇보다 이를 가로막는 냉전(冷戰)구조의 잔재와 낡은 이데올로기의 깁질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상(思想)과 제도(制度)를 뛰어넘는 대화(對話)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쌍방 모두가 그 기본 전제로 포용력(包容力)을 발휘해야 하며 개방적(開放的) 자세로 대화(對話)의 광장(廣場)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북괴집단(北傀集團)은 더 이상의 생트집이나 이데올로기의 무쇠껍질을 벗어던지고 진정 민족(民族)의 양심(良心)으로 되돌아와 민족(民族)의 내일을 위해 허심탄회 나서야 한다.

통일(統一)에의 뜨거운 의지(意志)·신념(信念)을

그리면 우리가 걸어야 할 통일(統一)의 길은 어떤 것일까.

그 출발점은 첫째로 통일(統一)에 대한 뜨거운 신념(信念)과 굳은 의지(意志)의 자세이다.

온 민족(民族)이 통일(統一)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달아 모든 슬기와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단(分斷)상태에 안주(安住)하려는 악의(易惡)한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화(對話)함을 기꺼이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자세(姿勢)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주(自主)의 원칙(原則)이다.

통일(統一)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南北) 당사자간의 일이고 우리 민족(民族)의 일이기 때문에 소위 강대국(強大國)이 조정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때문에 통일(統一)정책은 외교(外交)정책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책(統一政策)의 수단이 외교정책(外交政策)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이며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자주(自主)의 원칙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 민주(民主)의 원칙이다. 통일(統一)문제가 어떤 계층이나 소수엘리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民族)의 개발적 성원의 진정한 염원(念願)과 의사(意思)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의 원칙을 지지한다.

분단(分斷) 40년으로 민족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감(不信感)을 청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청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접촉하고 이해(理解)되는 데서 민족이질(民族異質)이 아니라 동질(同質)을 실감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統一)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쪽에 의해 다른 한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統一)과 정복(征服)을 같이 보는데서 부터 전쟁(戰爭)이나 폭력(暴力)에 의존하려는 성향(性向)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인내(忍耐)와 성실(誠實)하게 지속하는 자세(姿勢)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대로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을 향하는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남북한은 「형제(兄弟)」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그 「형제」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델과 카인」 같은 형제가 돼서는 안된다.

우리 전래(傳來)의 우의(友誼)로운 형제이어야 한다.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81년엔 「남북한 최고당국자(最高當局者)의 서울, 평양 교환방문」 안(案)이 나왔다. 북(北)이 이 제의를 거부하자 '82년에 들어와서 제의와 역제의에서 1월 22일 전(全)대통령은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民主統一) 방안」을 제시 「남북대표자회의」(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한 「통일헌법(統一憲法)」안을 제의하고 2월 1일에 손재식(孫在植) 통일원장관이 「남북(南北)의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위한 20개 시범사업(示範事業)」안을 제의한데 대해 북(北)은 2월 10일 「남북한 정치인(政治人)연합회의」안을 내놓고 맞섰다. 이에 손장관(孫長官)은 2월 25일 「남북고위대표자회담」안을 제의, 상대방의 제의에 목살로만 일관하던 제의의 일방통행시대는 중단되는 듯한 인상마저 주기도 했다.

물론 이런 「제의의 역제의」는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낸 것 같지는 않으나 서로 통일문제(統一問題)를 이해시키고 「다룬다」는 국제적 표시에는 기여했다고 본다.

또 그것은 상대방의 제의에 대하여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만 없게 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 둬야 할 것은 북(北)이 제의한 「남북 정치인(政治人)연합회의」안 등 그들이 제의하는 모든 안(案)들이 현실(現實)을 떠나고 또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은 진심(真心)으로 민족통일(民族統一)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평화선전용 내지는 국제조류에 호응하는 듯한 수단(手段)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연초(年初)에도 그랬지만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은 유럽 4개국 순방(巡訪)에서도 「연내 남북 고위 회담 실현을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우리의 평화통일의지(平和統一意志)를 거듭 밝혔다.

민족분단의 비극을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또 능동적 역량으로 해결하자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물론 40년 분단(分斷)으로 이질화(異質化)된 오늘, 그 통일(統一)이 쉽게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몇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때문에 통일문제(統一問題)는 인내(忍耐)와 성실(誠實)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偉大)한 세대(世代)로 민족사(民族史)의 등불되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바로 이와 같은 민족의 비운(非運)과 불행(不幸)을 극복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참고 견디며 대화(對話)에 임해 가능한 것부터 교류를 갖고 신뢰(信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두 동강난 국토(國土)와 겨레를 하나로 묶어 번영되고 복된 통일조국(統一 祖國)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召命)이요, 자유, 평화·번영으로 치닫는 세계사(世界史)의 흐름에 대한 한민족(韓民族)의 적극적인 참여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적 비운(悲運)과 불행(不幸)의 원천이 비록 우리의 책임(責任)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겨례의 앞날을 밝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責任)이요, 반드시 해 내야 할 과제(課題)인 것이다.

조국(祖國)의 분단(分斷)으로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또 통일(統一)되어 영광과 발전을 누리게 될 것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서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이루한 선례(先例)는 없다.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평화 통일의 위업은 새 역사 창조의 빛나는 기록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통일(統一)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일조국(統一祖國)의 미래상은 결단코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분단(分斷) 40년에서 얻어진 교훈(教訓)이라면 우리의 통일의지(統一意志)와 노력이 약하고 소극적인 때에는 자칫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적화(赤化)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한반도(韓半島)가 적화(赤化)된다면 우리 자신의 억울하고 비통할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후손, 나아가서는 우리를 지원하고 아껴주던 세계의 모든 자유민(自由民)에게 배신(背信)이 되고 만다.

또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비극이 이 세기(世紀)를 넘어 또 한 세기(世紀)를 넘어가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 볼 수 만은 없다.

민족약진(民族躍進)의 '86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아 우리는 한민족의 「위대한 세대」가 되어 우리 민족사(民族史) 아니 세계사의 등불로 간직되도록 노력하자.

현대(現代) 화학전(化學戰)의 특성(特性)과 대책(對策)

소령 백 창 우 (白昌雨)

〈제3726부대〉



목 차 (目 次)

1. 개요
2. 화학전 역사
3. 북괴위협
4. 화학작용제 살포방법
5. 화학작용제의 특성
6. 화학작용제의 분류
7. 화학작용제의 성질
8. 화학작용제의 침입경로
9. 탐지 및 식별
10. 제독
11. 보호장비
12. 화학전하 개인행동 절차

1. 개요

최근 북괴의 5~7 일 전쟁 형태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화학전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들은 개전 초기에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병행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침략 야욕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들의 말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화학가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벌써부터 이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해 왔고 앞으로 몇 년이면 백% 완비가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화학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화학전 정의

전력(인명, 재산)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독성 화학작용제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한다.

나. 화학작용제란?

화학적 성질에 의해 살상, 자극, 연막, 소이, 신호 효과를 일으키며 적을 무능화하거나 살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화학전 역사

가. 동기

초기 고대인은, 성과 요새지 물락을 목적으로 독성물질을 사용하였으며, 1차대전 시에는 요새진지 속 교착상태에 빠진 전쟁을 타개하기 위하여 화학작용제를 사용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나. 발달사

(1) 고대 : B. C. 428년경 아테네 전투에서 송진과 유황을 불에 태워 사용

(2) 중세 (15세기 말) 독성 연막 사용

(3) 1차대전(근대 화학전이라 칭함)

○ 1915년 : 벨기에의 YPRES(지명) 전투에서 화학무기인 염소가스가 독일군에 의해 최초 사용

* 프랑스군 오만명 사망, 만오천명 후송.

○ 1917년 : 수포가스 출현

당시에는 방비가 불가능하여 겨자가스를 가스 중의 가스라 일컬었다.

* 1925년 제네바 협정 체결(화생무기 사용 금지)

(4) 2차대전

○ 신경가스 출현 : 많은 국가들이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호 보복을 우려 사용치 않았다.

(5) 2차대전 이후

◦ 국지전에 사용 : 아프간, 캄보디아, 이란·이라크 전

○ 생화학무기 출현(황우)

○ 세계 각국은 자국보호 목적 화학무기 생산 비축

3. 북괴 위협

가. 배경

북괴 김일성은 1961년 12월 25일 북괴 전역에 화학화를 선언, 이에 대비하였다. ① 시설 지하화, ② 대피 방호시설 확충, ③ 소련 화학장비 도입, ④ 화학부대 / 연구소 창설 등

나. 생산시설 및 능력

1970년대 초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10여개의 생산공장에서 각종 화학작용제 및 보호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화학작용제는 14톤을 생산, 현재 250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투발 수단

북괴는 중 장거리 포, 미사일 및 항공기를 이용, 화학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라. 공격 예상시기

북괴는 개전 초 기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주로 기온 경도가 역전층이 형성되는 여명 / 박모시에 사용할 것이다.

마. 공격목표

공군기지는 시설의 부동성, 노출성, 병력 설비의 집약성 등으로 1차 기습 공격목표(응징보복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4. 화학작용제 살포(공격)방법

가. 탄약에 충진

야포, 로켓트, 폭탄, 수류탄, 지뢰 및 전술 탄도 미사일에 충진하여 공격할 수 있다.

나. 살포 탱크

항공기, 지상 차량 등의 물탱크를 이용 살포한다.

다. 은밀 사용

음식물 등에 은밀히 사용(오염)

5. 화학작용제의 특성

가. 선택성

대인, 대동물, 대식물, 대장비, 물자 오염과 같이 선택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나. 지속성

기체 상태의 경우 쉽게 효과를 상실하지만 액체인 경우 상온에서는 1~2일 간 지속하나 아주 추운지방에서는 1주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다. 광면지역 오염

화학작용제는 바람을 따라 표류하여 넓은 지역을 오염시킨다.

○ 화학무기 피해 반경 : 풍상 / 측면 1마일, 풍하 2 마일

* 신경 가스 5 톤으로 200km² 오염 가능.

* 대량살상 유발 : T2 (황우) 500G/L으로 1천억 명 살상가능(집단 인원)

라. 침투 효과

공기가 통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침투할 수 있으며 피부조직도 침투 파괴한다.

마. 비 파괴효과

시설물, 장비, 물자 등을 파괴하지 않고, 인마살상을 주로 한다.

6. 화학작용제 분류

가. 물리적 상태에 의한 분류

화학작용제는 상온, 상압하에서 고체, 액체,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 (1) 기체 : 포스겐, CO, 비소 등
- (2) 액체 : 견자ガ스, 청산, VX 등
- (3) 고체 : ADAMSITE 등

나. 전술적 용도에 의한 분류

- (1) 살상작용제
- (2) 훈련 및 폭동진압 작용제 : 최루가스, 구토가스
- (3) 연막작용제
- (4) 소이작용제

다. 생리적 영향에 의한 분류

화학작용제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인 효과에 따라 분류한다.

- (1) 질식작용제
- (2) 신경작용제
- (3) 수포작용제
- (4) 혈액작용제
- (5) 최루작용제
- (6) 구토작용제
- (7) 무능화 작용제

7. 화학작용제의 성질

가. 질식작용제

주로 호흡기관, 코, 인후, 특히 폐를 상하게 하여 극단적인 경우 점막이 붓고 폐에 액체가 충만되어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망토록 한다.

- (1) 작용제의 종류 : CG, 염소, CP
 - (2) 증상 : 호흡곤란, 두통, 기침, 메스꺼움(보통 3 시간 이후 증세 나타남.)
 - (3) 방어 : 방독면 착용
 - (4) 치료 : 신선한 공기 흡입, 인공호흡
- * 질식 작용제는 가스상태이며, 무색이다.

나. 신경작용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 균형에 의거 신경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나, 가스가 부교감신경계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잃게 한다.

- (1) 작용제 종류
 - 기체상태 : GA, GB, GD
 - 액체상태 : VX

(2) 증상 : 콧물 흘림, 가슴답답, 동공 축소, 근육 경련, 혼수상태, 무의식증 방분·방뇨.

○ 호흡시 : 급속 효과

○ 피부 침투시 : 지연 효과

(3) 방어 : 방독면, 보호의 착용

(4) 치료 : 자동 아트로핀 주사

필요시 인공호흡 자동 옥심주사

(5) 제독 : 액체일 경우 KM258 (KM13) KIT로 제독

다. 혈액작용제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어 체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며, 대단히 신속한 사망 (15분 내)을 초래한다.

(1) 작용제 종류 : AC, CK, SA.

(2) 증상 : 경련, 피부변색, 두통, 현기증

(3) 방어 : 방독면

(4) 치료 : 아질산아밀(대체 치료제 개발 중)

라. 수포작용제

액체나 증기상태에서 체내 효소 단백질과 보조 효소를 공격하여 염증,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신체조직을 파괴한다. 눈이 가장 침해를 받기 쉬우며 폐나 기관지에 손상을 주어 호흡을 방해한다.

(1) 작용제 종류 : HD, HN, L. H.

(2) 증상 : 수포 형성, 눈에 염증

(3) 방어 : 방독면, 보호의

(4) 치료(제독) : 눈은 물로 세척한다. 피부는 KM258(KM13) KIT 이용 피부를 제독한다.

마. 구토작용제

일반적으로 고체상태로 존재하며, 야전에서 주로 적군에게 불쾌감을 주며 폭동 진압 작용제로 사용한다.

(1) 작용제 종류 : DM, DA, DC

(2) 증상 : 심한 구토, 메스껍고 가슴 죄임

(3) 방어 : 방독면

(4) 치료 : 크로로포름 냄새를 맡음.

바. 최루작용제

최루작용제는 살상효과는 거의 없으므로 훈련이나 폭동진압 작용제로 사용한다.

(1) 작용제의 종류 : CN, CS, CNC

(2) 증상 : 눈과 피부에 심한 자극, 눈에는 계속 눈물이 나오도록 자극한다. 재채기

(3) 방어 : 방독면

(4) 치료 :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눈에다 바람을 쐈다. 심한 경우 물로 세척

* 주의 : 눈을 비비지 말 것.

8. 화학작용제의 침입경로

가. 호흡기

대부분 기체 또는 에어로졸 상태의 화학 작용제는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침입하며, 즉시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나. 소화기

오염되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침입한다.

다. 피부

액체상태나 고농도 증기상태의 신경 및 수포가스는 노출된 피부에 흡착한다.

라. 눈

신경 및 수포작용제는 눈을 통하여 체내에 침투할 수 있으며 신경작용제는 눈의 동공을 축소, 수포작용제는 영구적인 눈의 손상을 일으킨다.

9. 탐지 및 식별

가. 주관적 탐지

인체 오관에 의거 탐지하는 방법으로 탐지에 도움을 주나 절대적인 탐지방법이 아니다.

* 취각 : 질식-풀냄새, 신경-과일냄새, 혈액-복숭아 씨 냄새, 수포-마늘, 생선냄새.

나. 객관적 탐지

탐지식별기구를 이용, 탐지하는 방법으로 작용제를 식별 및 제독제 사용후 방독면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현재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탐지 KIT는 다음과 같다.

(1) KM8 탐지지 : 백색 1권(25매)으로 액체작용제만 탐지 가능

○ 신경작용제(V) : 황색

○ 신경작용제(G) : 암록색

- 포작용제(H) : 적색
- (2) KM18A2 탐지킬 : 화학탐지반의 주장비로서 화학작용제를 정밀 탐지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 (3) KM256 신속탐지킬 : 화학탐지반의 주장비로서 화학작용제를 신속히 탐지하는데 사용한다.
- (4) KMg 자동경보기 : 기지 전역에 화학작용제 오염 여부를 조기에 탐지하여 자동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사전대비조치를 취하게 한다.

10. 제독

가. 제독책임

- (1) 1단계 제독 : 개인
- (2) 2단계 제독 : 각 부서
- (3) 3단계 제독 : 제독부대에서 특수장비와 제독제를 사용

나. 제독방법

- (1) 자연처치법 : 전술적 상황이 긴박하지 않은 곳은 기상조건에 맡김
- (2) 유세법 : 견고한 표면 등은 물과 비눗물로 세척
- (3) 용해법 : 구조가 복잡한 장비 등은 휘발유, 알콜, 석유 등으로 용해
- (4) 매몰법 : 장차 필요치 않을 물자 등은 매몰
- (5) 폭발법 : 오염지역을 파괴 및 분산
- (6) 가열 및 소각법 : 오염물질을 가열 또는 불태움
- (7) 화학적 처치법 : 화학약품으로 중화

다. 제독장비

- (1) KMn : 휴대용 제독기
- (2) KM9 : 제독차
- (3) M12A1 : 제독기
- (4) 기타 : 삽, 도저, 비, 솔, 걸레, 살수차 등

라. 제독제

- (1) STB : 백색 분말(KM9 제독차 용)
- (2) DS2 : 짙은 용액(KM11 휴대용, 제독기용)
- (3) 기타 : 가성소다, 알콜, 석유, 휘발유 등

마. 인체제독

(1) 따뜻한 비눗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샤워순서
 - 손 및 손톱을 솔로 씻는다.
 - 머리 및 머리카락을 완전히 씻는다.
 - 인체에 충분히 비누질
 - 씻는다.
 - 인체에 다시 비누칠
 - 씻는다.

(2) 인체 제독절차

- 개인장구 벗음(방독면 제외)
- 신발 제독
- 신을 벗어 용기에 넣음
- 장갑, 양말, 바지를 벗어 용기에 넣음.
- 내의를 벗어 용기에 넣음.
-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정화통 입구를 막고 샤워
- 오염 여부검사(필요시 응급처치)
- 방독면 벗음
- 피복 및 장구 재 지급

11. 보호장비

가. 조종사 : 조종사 보호의 세트(ACE)

나. 일반장병 : 지상 근무 요원 보호의 세트(GCE).

다. 특수요원 : 불침투 보호의 세트(KM3 SUIT)

12. 화학전하 개인행동 절차

가. 기본행동은 다음과 같다.

- (1) 공격전
 - ① 경보와 동시에 보호장구 착용
 - ② 지휘본부 지시 확인

- (2) 공격중
- ① 호흡중지, 방독면 착용 및 검사
 - ② 경보 전파
 - ③ 응급처치 및 제독
 - ④ 상황 허락시 윗바람 쪽으로 이탈
- (3) 공격 후
- ① 오염표지판 설치지역 회피
 - ② 사상자 응급치료 및 지휘계통 보고
 - ③ 오염된 피부, 피복, 장비 제독
 - ④ 인체 제독 후 피복 교체

나.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 상황에 직면 했을 때는 경보에 관계없이 방독면을 착용 한다.

- (1) 집중적인 항공기 폭탄, 야포, 박격포, 로켓트에 의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 (2) 항공기 살포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 (3) 출처가 불명한 연막이나 안개를 보았을 때
- (4) 의심스러운 액체나 냄새를 맡았을 때
- (5) 명백한 이유 없이 생리적 이상을 느꼈을 때
 - 콧물이 나온다.
 - 시력이 약화
 - 호흡곤란
 - 질식감을 느낀다.
 - 눈과 피부를 자극한다

소련(蘇聯)의 전략적 기만(戰略的 欺瞞) Maskirovka 개념(概念)

중위 임충식 (任忠植)
<공군 정참부>



* 역자(訳者) 주(註) : 소련(蘇聯)은 금년(今年) 사월(四月) 말(末)에 Chernobyl에서 발생(發生)한 핵발전소(核發電所) 사고내막(事故內幕)을 오랫 동안 은폐(隱蔽)하여, 전세계(全世界)로부터 많은 비난(非難)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소련(蘇聯)이 채택하고 있는 Maskirovka를 이해(理解)하면 쉽게 수긍(首肯)이 간다.

International Defense Review(1985. 8)에 실린 “The Soviet Service of Strategic Deception”이라는 제목(題目)의 기사(記事) 중(中), 관련 부분(部分)을 발췌(抜萃), 번역(翻譯)해 보았다.

이 “Maskirovka”라는 용어(用語)는 매우 신축성(伸縮性)있게 사용된다. 이것은 전시(戰時)나 평시(平時)에 적(敵)을 혼혹(眩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조치(措置)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소련육군(蘇聯陸軍)의 공세(攻勢)는 강력하고 신속하며, 또한 기습(奇襲)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소련 육군은 이 기습효과(奇襲効果)를 얻는데 항상 많은 노력(努力)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伝統的)으로, 오직 세 사람(삼인(三人)) 만이 전략적(戰略的) 작전(作戰)을 준비하는



데 관여(關与)하여 왔다. 예를 들어, 제이차(第二次) 세계대전(世界大戰) 기간 동안에는, G. K. Zhukov 원수(元帥), A. M. Vasilevskii 원수(元帥) 그리고 S. M. Shtemenko 대장(大將)이 이 삼인(三人)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VGK(최고(最高) 총사령관(總司令官))인 Stalin은 계획의 기본 idea만 승인하곤 했을 뿐, 보통(普通) 세부적인 준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伝統)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현금(現今)의 전략적(戰略的) 기강(企剛) 역시(亦是) 소수(少數)의 사람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징후(徵候)가 여러 가지 있다.

- 지형(地形)에서의 기만(欺瞞) -

작전(作戰)을 개시(開始)하기 위해, 적(敵)의 통행(通行)이 불가능(不可能)하다고 생각하는 지형(地形)을 선정(選定)한다. 예를 들어, 1944년(年)의 주공세(主攻勢)는 Belorussian 소택지(沼澤地)에서 이루어졌으며, 1945년의 만주(滿洲) 작전시(作戰時)의 주력(主力) 탱크부대도 이론적으로 탱크 뿐만 아니라 보병(步兵)에게도 통행이 불가능한 대(大) Khingan 산맥(山脈)을 통과하여 공격을 가했었다. 오늘날의 관점(觀點)에 서 본다면, 오스트리아의 일부(一部) 지역(地域)이 기동(機動)하기에 어려운 지역(地域)으로 간주(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지형(地形)이 이용(利用)될 가능성성이 적다고 적(敵)이 생각할수록, 소련(蘇聯) 사령부(司令部) 입장(立場)에서는 더욱 좋다. 일단(一旦) 실제(實際) 지형(地形)이 선정(選定)되면 소련(蘇聯) 사령부(司令部)는 다른, 좀더 기동(機動)하기에 유리(有利)한 장소(場所)들에 관심(關心)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또한 병력(兵力)을 그곳으로 집중(集中)시킨다. 병력(兵力)의 재편제(再編制)는 가능(可能)한 최후(最後)의 순간에 보통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Belorussian 회전(会戰)의 경우, 6개(個) 군(軍), 23개(個) 독립(獨立) 군단(軍團), 수백개(数百個) 독립(獨立) 사단(師團), 여단(旅團), 연대(聯隊)의 전개(展開)가 공세(攻勢) 이주(二週) 전(前)에 극비(極秘)로 이루어졌다).

- Paperwork -

어떤 작전(作戰)의 총계획(總計劃)은 오직 하나의 지도(地圖)위에 작성(作成)됐으며, 지금도 역시(亦是) 그러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계산(計算)은 매우 제한(制限)된 양(量)의 종이 위에서 이루어진다(Stalingrad 작전시(作戰時)에는, 단(单) 1권의 공책이 사용(使用)됐다). 각(各) 전략적(戰略的) 지시(指示), 전선(戰線), 군(軍), 사단(師團), 여단(旅團) 및 연대용(聯隊用) 사령지도(司令地圖)가 각각(各各) 작성, 준비된다. 작전 계획은 몇가지 변형(變形)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각(各) 지휘관은 각각 다른 작전계획이 들어 있는 여러 개의 서류(書類) 봉투를 수령(受領)하여 그의 금고(金庫)에 보관한다.

사령지도(司令地圖)가 들어 있는 봉투는 오직 VGK(최고(最高) 총사령관(總司令官))의 명령(命令)에 의(依)해서만 개봉(開封)된다. VGK의 명령이 만약 내려지면, 전략적(戰略的) 지시(指

示)를 하는 총사령관(總司令官)은 작전개시(作戰開始) 30일(日) 전(前)에 이 명령을 수령(受領)할 것이며, 전선(前線) 사령관(司令官)들은 20일(日) 전(前)에, 군(軍) 사령관(司令官)들은 10일(日) 전(前)에, 사단장(師團長) 및 여단장(旅團長)들은 5일(日) 전(前)에, 그리고 연대장(聯隊長)들은 3일(日) 전(前)에야 명령을 수령하게 된다. 개봉명령(開封命令)이 내려지면, 각(各) 지휘관(指揮官)은 그의 참모장(參謀長)과 그의 정치(政治) 담당 부지휘관(副指揮官) 입회하(立會下)에 지정(指定)된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을 그 두 사람에게 알린다(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개봉된 봉투 이외의 다른 봉투에 들어있는 작전명령은 무효(無效)가 되며, 이것들은 미개봉(未開封)된 상태로 즉시 파기(破棄)된다. 각(各) 지휘관은 그 자신의 부대, 인접부대 및 상위(上位) 편제(編制)의 과업(課業) 만을 명시(明示)하고 있는 하나의 지도(地圖)를 수령(受領)한다. 지시내용을 수령하고 나서, 지휘관은 그의 예하(隸下) 부대(포병, 공병, 정보, 군수 등(等)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각자가 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 만이 통보될 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명령이 발(發)해진 후(後), VGK의 대표자(代表者)들은 사단장급 이상(以上)의 예하 지휘관들과 비밀회의를 갖는다. 대대장, 보병 중대장 및 포병 중대장들은 24시간 전(前)에 구두(口頭)로 명령을 통보받는다. 이 순간 이후(以後)로는 전략적(戰略的) 작전(作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화기, 무전기, 전신타자기 등(等)과 같은 기술적(技術的) 수단(手段)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공세(攻勢)”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이동(移動)”, “외출(外出)” 등(等)과 같은 다른 용어(用語), 심지어는 “방어(防禦)”라는 용어도 다른 말로 대체(代替)된다. I. G. Pavlovski 육군 대장(大將)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해방(解放)시키기 전(前)에, “우리는 하루 70km의 속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전의 최종 준비 기간 동안에, 소련의 지도부(指導部)는 계획된 작전의 준비사항, 장소 및 시간을 은폐(隱蔽)하기 위하여 마련된 일련(一連)의 조치(措置)를 시행한다. 작전의 실제 시간은 적(敵)에게 가장 불편(不便)한 시간으로 정해진다(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 침공(侵攻) 시(時)에는 8월(月) 말(末)로, 아프가니스탄 침공(侵攻) 시(時)에는 12월(月) 말(末)로 정해졌다). 이러한 소련의 관행(慣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소련의 사령부(司令部)는 방어작전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공세(攻勢)준비를 하도록 하는 I급(級) 비밀의 명령(命令)(물론, 가짜의)을 발(發)하게 된다. 이러한 명령은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하달(下達)되며, 모든 참모들은 이 명령을 시행하는데 참여한다. 하지만, 이미 구두(口頭)로 전혀 다른 지시(指示)를 받은 지휘관과 참모장은 이 “방어(防禦)”를 위한 갖가지 준비사항이 “공세(攻勢)”를 취하는데 활용(活用)되도록 그들의 참모들의 준비작업을 유도(誘導)해 간다.

- 개별적(個別的) 접촉(接觸) -

가장 결정적(決定的)인 순간에는, 소련의 지도자(指導者)들과 그들의 적(敵)인 외국(外國)

지도자들 사이에 결코 공격(攻擊)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保証)하는 내용의 개별적(個別的)인 전화접촉(電話接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은 1956년(年) 헝가리 침공(侵攻) 시(時) Andropov가 사용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Brezhnev가 사용했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侵攻) 시(時)에는, Brezhnev가 그의 “예정(予定)된 희생물(犠牲物)”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Carter에게도 전화를 직접 했었다. 소련의 모든 보도기관은 그릇된 정보(情報)(역정보(逆情報))를 전파하는데 총동원된다. 소련의 사령부(司令部)는 다른 지역(地域)에서 기동훈련(機動訓練)을 실시하기도 하고, 비밀문서(文書)를 “분실(紛失)”하여 이것들이 적(敵)의 수중(手中)에 들어가게 한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장군(將軍)들이 국경(國境)(실제 공격이 예정(予定)된 구역(区域))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하급(下級) 보병장교(步兵將校)의 제복과 계급장을 착용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위(高位) 사령부(司令部)의 참모들은 잠정적으로 계급을 2내지 3계급씩 낮추어 달며, 그들의 성(姓)을 바꾼다. 지휘관들은 지휘관용(用) 승용차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중요한 부대의 전요원(全要員)들은 신호수(信号手) 및 Rocket 사수(射手) 등(等) 좀 덜 전문화된 부대인 보병(步兵), 탱크병(兵) 및 공병(工兵)들의 제복을 입는다. 병력(兵力)은 오직 야간(夜間)에만 전개(展開)된다. 해당지역에 있는 병력(兵力)과 철도원(鐵道員) 또는 그 지역 주민(住民)과의 여하한 접촉도 엄금(嚴禁)된다. 물론, 무선(無線) 통화도 금지된다.

이처럼, 소련의 군사부문(軍事專門) 용어법(用語法)에 있어서, 모든 이러한 조치(措置)는 “Maskirovka”라 불리운다. 이것은 “기만(欺瞞)”이라고 해석되고는 있지만, 서방(西方) 용어(用語)인 “Deception”과 “Camouflage”를 합친 것 보다도 훨씬 광범위(廣範圍)한 개념이다. 결국, “Maskirovka”는 실제의 모습을 가장(仮裝)하거나, 적(敵)에게 거짓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措置)를 뜻한다.

- Maskirovka에 대한 새로운 태도 -

소련 육군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모든 이러한 Tricks이 과거에는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상황 하(下)에서도 충분한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가 않다. 소련의 최고(最高) 사령부(司令部)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핵무기(核武器)의 발달은 재래식(在來式) 병력(兵力) 은폐방법(隱蔽方法)에 심각한 재고(再考)를 불러 일으켰다. 핵(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唯一)한 방법은 훌륭한 위장(偽裝)과 역정보(逆情報)를 통해서, 적(敵)으로 하여금 실제 목표(目標)가 아닌 거짓 목표(目標)에 공격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인공위성(人工衛星)의 출현으로 훨씬 복잡하게 됐다. 따라서, M. V. Zakharov 원수(元帥)에 의하면, “역정보부(逆情報部)(Disinformation on Service)는 핵(核)무기처럼 막강(莫強)해야 하고, 위성(衛星)처럼 전세계(全世界)를 Cover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核)무기와 위성(衛星)의 시대에 지휘관과 참모장의 노력 만으로 역정보(逆情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당(不適當)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임무(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소련에 특수 부서가 1968년에 설립되었다.

- 적(敵) 위성(衛星)에 관한 첩보를 수집, 처리하고, 소련의 영향권 내(內)에 있는 육지와 바다 위를 통과하는 위성(衛星)의 궤도를 예측하기
- 중요한 목표물을 위장(偽裝)하고, 미끼(Decoy) 목표물을 구축하여 국가(國家)와 군사목표물을 적(敵) 위성(衛星)으로부터 보호하고, 적(敵)이 위성을 이용하여 중요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저지(沮止)하기
- 국제적인 모임에서 실제의 상황을 은폐(隱蔽)하고, 거짓 상황을 제기함으로써 소련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 소련의 언론(言論)을 통제(군사적,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하고, 소련 및 외국 언론기관에 배포할 거짓 자료를 날조(捏造)하기
- 소련군(軍)과 군수산업(軍需產業) 내(內)에서의 비밀유지를 통제하고, 거짓 정보(情報)를 전파(伝播)시킴으로써, 국가비밀(國家秘密)을 보호(保護)
- 적(敵)이 우리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수집(收集)
- “적(敵)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부터 올바른 결론(結論)을 도출(導出)하지 못하도록 거짓 정보(情報)를 날조(捏造)
- 모든 작전(作戰)에 있어서 기습효과(奇襲効果)를 얻기 위해 소련군(蘇聯軍)이 취하는 모든 활동(活動)을 조정(調整) 등(等).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部署)가 총참모부(總參謀部) 내(內)에 세워졌는데, 이 부서는 GUSM(Gl-avnoe Upravlenie Strategicheskey Maskirovki ; Principal Directorate of Strategic Deception)이라 명명(命名)되었다.

- GUSM의 성장(成長) -

소련(蘇聯) 육군(陸軍)에는 Ogarkov 장군(將軍)이 GUSM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事實)은 GUSM이 Ogarkov를 원수(元帥)로 만들어졌다. 1967년(年)까지, N. V. Ogarkov 상급(上級) 대장(大將)(Colonel General)은 Volga 군관구(軍管區) 사령관(司令官)이었다. Ogarkov를 제외하고는, 이 군관구(軍管區) 사령관(司令官)을 지낸 사람으로서 원수(元帥)로 진급(進級)한 장군(將軍)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Volga 군관구(軍管區)는 원수(元帥)들이 이곳으로 추방(追放)되어, 나중에 체포(逮捕), 처형(處刑)되는 곳이었다. M. N. Tukhachevski 원수(元帥)와 G. I. Kulik 원수(元帥)도 이곳에서 군생활(軍生活)의 종지부(終止符)를 찍었었다. 소련(蘇聯) 공산당(共產黨) 정권(政權) 창립(創立) 제(第)50주년(週年)인



GUSM의 창시자(創始者)인 N. V. Ogarkov(좌측(左側) 인물(人物))

1967년(年)에는, 전례(前例)없이 막강(莫強)한 힘을 대외(對外)에 과시(誇示)하기로 결정되었다. Ogarkov는 훈련 도중에 철교(鐵橋)를 몇 시간 만에 건설하여, 서방측(西方側)을 놀라게 해주고, 또한 유사시(有事時)에는 소련전투병력(蘇聯戰鬪兵力)이 라인강(江)(Rhine)을 건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當時)의 소련 기술수준으로서는 그러한 교량(橋梁)을 몇 시간 이내(以內)에 짓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했다. 따라서, Ogarkov의 감독하에 진짜 다리가 아닌 전시용(展示用) 견본(見本)을 만드는 작업이 착수됐다. 얼마 후, 외국(外國) 참관인(參觀人)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교량(橋梁)이 훈련 도중에 건설, 조립(組立)되었으며, 실제로 특별열차(特別列車)와 수십대의 화차(貨車)가 그 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모든 화차(貨車)는 비어 있었고, 기관차(機關車)도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량(橋梁)은 시범운행중(示範運行中)에 곧 무너질듯이 쭉 쳐졌지만, 이것에 주목(注目)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교량은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서방(西方) Observers들을 놀라게 했다. 1968년(年)부터, Ogarkov 일행(一行)은 GUSM으로 알려지게 됐다.

GUSM이 등장하기 전(前)에는, 기만(欺満)에 관한 모든 문제와 이것의 기획(企劃)이, 총참모부(總參謀部)의 작전참모부장(作戰參謀副長)에 의(依)해 수행되어 왔었다. 따라서, GUSM

이 기만(欺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누가 누구를 통제해야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基本的)인 문제가 야기(惹起)되었다. “소련 육군(陸軍)의 미래(未來) 작전(作戰)은 정규전(正規戰)이 우선인가, 또는 기습전(奇襲戰)이 우선인가?”라는 순전한 이론(理論) 논쟁(論爭)의 구실(口實) 하(下)에 권력투쟁(權力鬭爭)이 일어났다. Ogarkov는 이 권력투쟁에서 승자(勝者)로 부상(浮上)했다. 기습(奇襲)은 승리(勝利)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要素)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군사기획(軍事企劃)이 Disinformation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Disinformation의 통제 하(下)에 놓이게 됐다. 이것은 Ogarkov의 Caree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勝利)였으며, 그 이후에 실시된 모든 훈련에도 적용됐다. Ogarkov는 “만약 이것이 훈련이 아니고, 실제 작전(作戰)이라면, 적(敵)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 충분히 설득력(說得力)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할 때는, 훈련을 취소(取消)하곤 했다. 이처럼 군사기획(軍事企劃)과 준비(準備)를 통제(統制)하게 됨에 따라, 전(全) 소련군(蘇聯軍)의 거의 모든 활동(活動)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Ogarkov는 군사(軍事) 산업위원회(產業委員會)(각료(閣僚) 회의(會議) 부의장(副議長)인 L. V. Smirnov가 이끄는 12인(人)의 군사(軍事)-산업(產業)관련 각료(閣僚)들로 구성됨)에 대(對)해 적극적인 공세(攻勢)를 폈다. 군사 산업위원회 소속 각료들의 통제하에 생산되는 모든 것의 양(量)과 질(質)은 비밀로 유지하고, 허상(虛像)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Ogarkov는 요구했다. 적(敵) 인공위성(人工衛星)이 상공(上空)에 있을 때는, 탱크, 항공기, 무선(無線)장비, 레이다 또는 잠수함의 시운전(試運轉)이 절대 금지됐다. 이처럼 모든 기술상(技術上)의 시험(試驗)은 GUSM이 승인(承認)한 일정(日程)에 따라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 GUSM의 동생(同生)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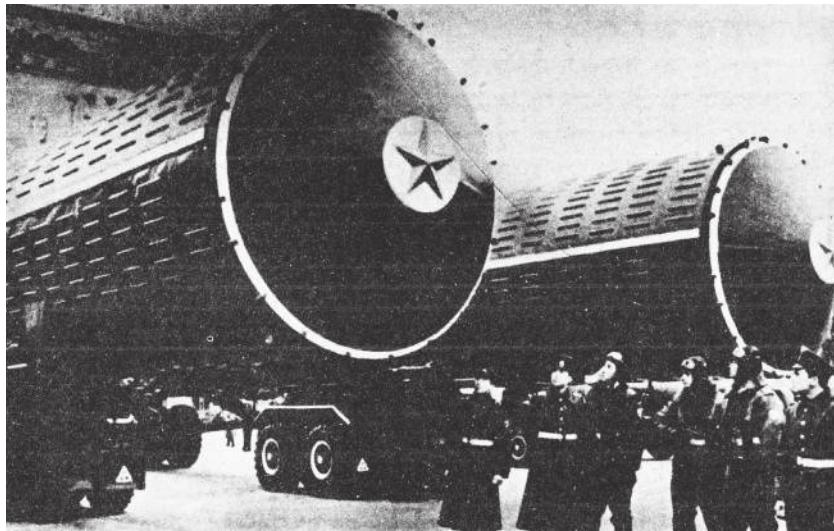
소련은 많은 국가(國家)들을 그의 통제하(統制下)에 두고자 애쓴다. 소련의 통제가 특히 확고한 국가들에는 GUSM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部署)가 설립되었으며, GUSM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 폴란드의 역정보부(逆情報部)는 아주 성공적인 Case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동생(同生) 국가(國家)”들의 역정보부(逆情報部)는 그러한 국가들에 공산주의(共產主義)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련의 도구(道具)이자, GUSM의 대변자(代辯者) 노릇을 하고 있다.

- 미래(未來)의 전망(展望) -

소련의 Maskirovka를 담당하는 GUSM의 조직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것의 권력(權力)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強化)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2가지만 들자면;

- 핵(核)무기 숫자의 증가(增加)와 그것들의 정확성(正確性)은 적(敵) 미사일에 거짓 목표물



모스크바 주위(周囲)에 전개(展開)된, NATO Codename “Galosh” 미사일

(目標物)을 제공해줄 필요성을 놓게 됐다. 이것은 역정보부(逆情報部)가 엄청난 양(量)의 활동 영역(活動領域)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 소련(蘇聯)은 증가(增加)하는 경제난(經濟難)때문에, 세계(世界)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위치(位置)를 유지(維持), 강화(強化)하기 위해 이미 휘두른 무기(武器)인 - 으름장(Bluff) - 에 더욱 의존(依存)하게 될 것이다.

보다 빠른 기상

보다 높은 이상

보다 힘찬 전진

중공 전투기 개발 추세 및 전망

최 양 수 역(訛)

<군무원·공본 정참부>



목 차

1. 개요
2. 중공 항공기의 명명법
3. 개발추세
4. 차기 전투기 개발
5. 항공기 생산 및 엔진현황
6. 중공군 현대화 움직임
7. 중공의 당면문제
8. 중공 항공산업의 문제점
9. 전망

1. 개요

중공은 최근('80년대)에 와서 군 현대화 및 중공 공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최신기술을 도입, 항공기를 중심으로 각종 무기를 개발 및 모방생산하는 한편, 무기수출국으로 지향하면서, 제3세계국을 대상으로 무기 판매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공의 역사적 배경을 연대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O 1960년

- 중·소 이념분쟁
- 소련의 군사 및 기술지원 전면 중단.
- 중공 항공산업 제트기 방제(倣製) 능력 보유(미숙)

O 1966~1978년

- 모택동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
- 기술발전 전면 중단상태 : 10년간 지속.
- 1970년대 중반, 중공 항공산업 기술 수준 : '60년대 수준 약간 상회.

○ 1980년대

- 군 현대화
- 항공기 개발 집중 노력.

2. 중공 항공기의 명명법

중공은 '60년대 중반경 MiG-17F를 방제(倣製) 생산, 최초로 파키스탄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공에서 방제한 항공기에 중공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임무별 기종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3. 개발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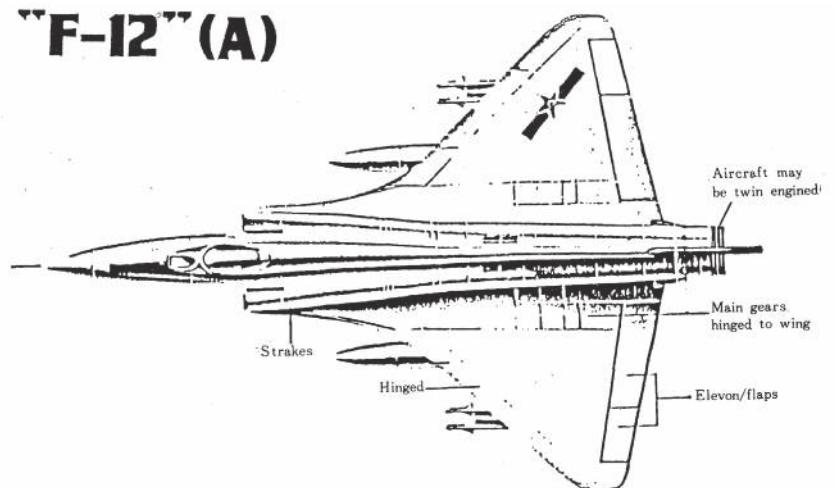
중공은 1960년에는 중·소간의 이념분쟁으로 소련의 군사 및 기술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그후 6년 뒤에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약 10년 동안 기술발전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70년 중반의 중공항공산업의 수준은 '60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으며, 기종별 개발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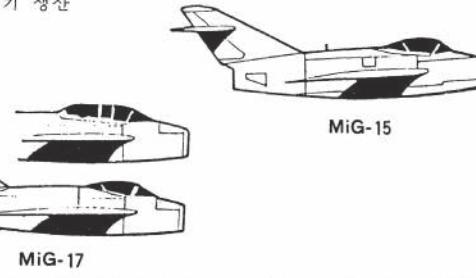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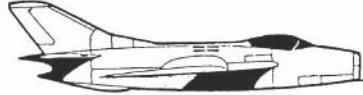
4. 차기 전투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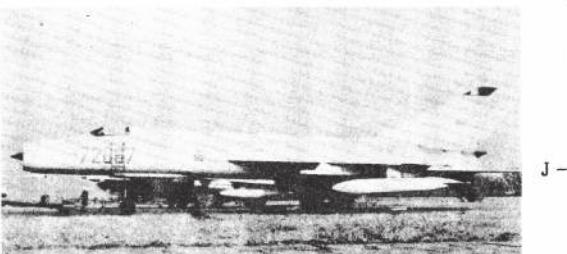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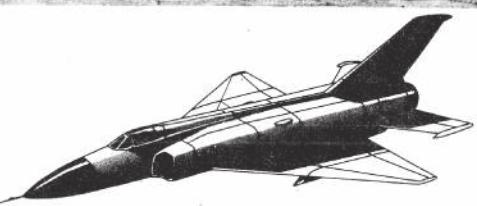
중공은 1960년대 초 2개 기종의 항공기,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J-6 및 J-7의 발전형인 Q-5와 J-8을 각각 개발하였으며, J-6/MiG-19에서 도출한 Twin-jet근접지원/대지공격기인 Q-5

韓國名	中 共 名	N A T O 名	備 考
戰闘機	殲 擊 機 J : Jianjiji or Jian	Fighter Aircraft F : Fighter	A : Jia B : Yi C : Bing
攻擊機	強 擊 機 Q : Qiangjiji or Qiang	Attack Aircraft A : Attack	
爆擊機	轟 作 機 H : Hongzhaji or Hong	Bomber Aircraft B : Bomber	
偵察機	偵 察 機 Z : Zhenchaji or Zhen	Reconnaissance Aircraft R : Reconnaissance	
訓練機	教 鍛 機 JJ : Jianjiaoji or Jiao	Training Aircraft T : Trainer	
直升機	直 乘 機 Z : Zhishengji or Zhi	Vertical Takeoff Aircraft H : Helicopter	
輸送機	運 輸 機 Y : Yunshuji or Yun	Transport Aircraft C : Car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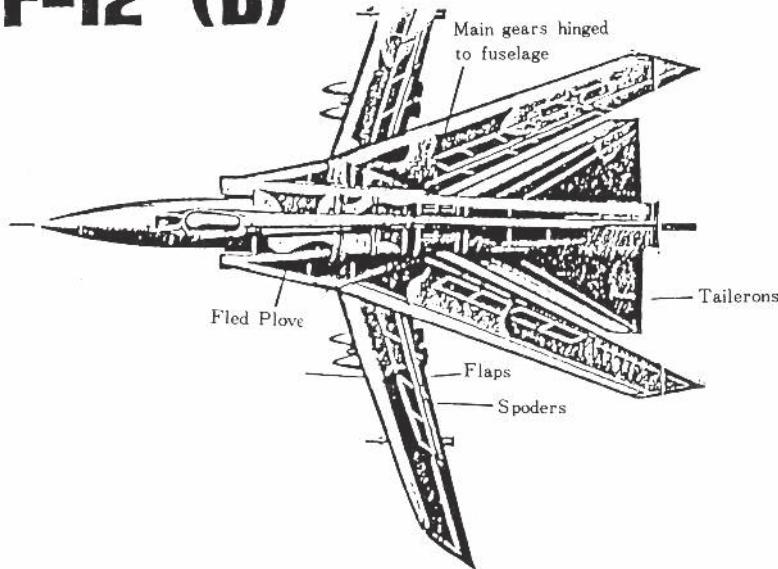
"F-12"(A)



기종	생산 및 최초비행년도	일반사항	개조 및 특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MiG기 생산  <p>MiG-15 MiG-17</p>	1950년대 중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CENCE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G - 15 BIS (단좌) 및 MiG - 15 UTI 복좌 훈련기 - 1956 - 60경 MiG - 15 UTI 및 MiG - 17F/PF 형 인도 ○ 최초 중공 독자적 생산(소련과의 LICENCE 제작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 - 5 UTI (JJ-5) 형 - 중공 공군 훈련기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제 MiG-15 UTI형의 CANOPY 개조 ○ A/B 장착하지 않은 엔진 사용 ○ 고정식 기총 장탈식으로 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 제작 전투기에 중공 명칭 부여 “예” MiG - 17F : J-5 MiG - 17PF : J-5A 수출형 : F - 5 훈련기 : JJ - 5 훈련기 수출형 : FT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G - 19 모방 생산 	1950년대 후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이전에 KNOCK - DOWN(분해조립식) KIT 형식으로 중공에 인도 (다수) ○ 1958. 1 중공에 LICENCE 제작 승인, J - 6 명칭으로 제작 ○ 1961. 12. 최초비행, 62년 중업 중공공군에 인도 ○ 생산 가속화로 약4,000여대 생산 ○ 제한생산 계속(소모 및 수출주문대수 충족 목적) ○ 노동집약적인 수제품(HAND - BUILT)이었으나, 소제 TUMANSKY R - 9 BF 엔진의 TBO(TIME BETWEEN OVERHAUL)를 연장하는데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G - 19, 6 개조 기종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 - 6 (소제 MiG-19S / SF형) - J - 6A (" MiG-19 PF 형) - J - 6B (" MiG-19 PM 형) - J - 6C (" MiG-19 SF 형) - J - 6XIN (중공제 J - 6A 개조형) - JZ - 6 (소제 MiG-19 R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개 기종 외에도 JJ - 6 전투 훈련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135대, 이집트 40대 수출 외에도 알바니아, 탄자니아 등 몇 개국에 100여대 이상 수출 ○ '79년에 JJ - 6이집트 및 파키스탄에 수출 (명칭TF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 - 5 FANTAN 출현 	1965년 중엽 최초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 - 6/MiG - 19에서 도출한 TWIN - JET 근접지원 / 대지공격기 ○ 1970년대 후반에 최초 확인 ○ 71년 생산 철정, 약 100대 생산 후 78년 생산 거의 중단 상태 ○ 81년 재차 생산 개시, 북괴 및 파키스탄에 수출 목적(추정) ○ 현재 약600대 보유 ○ 최초에는 F - 9 FANTAN 또는 F - 6 BIS로 잘못 보도, 1980년 중공명칭 Q-5, 수출명칭 A - 5, NATO 명칭 FANTAN-A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측의 전자장비 사용 ○ 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 인기, 수출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파키스탄에 42대 수출된 후 약 100 여대가 추가로 수출 중

기 종	생산 및 최초 비행년도	일반 사항	개조 및 특성	비고
○ J - 7 전투기 Fishbed, Finback and the Chinese future 	1964 말 최초 비행	○ 소제 MiG-21F (FISHBED -C) 를 방제한 전투기 ○ 1965년 중공 공군에 취역 ○ 60~70대가 생산된 후 문화혁명으로 일시 중단 ○ 초기형은 체공시간이 짧고 공대공 무장능력 빈약	○ TBO 확대 WOPEN - 7 : 약 100시간 WOPEN - 7A : 약 200시간 ○ 무장 적재능력 및 질적 조작능력 향상 ○ 이집트에서는 중공제 F-7 및 소제 MIG-21에 HEAD-UP DISPLAY 및 AIM-9P3/4 SIDEWINDER AAM 발사대로 개조하고 있다고 함. ○ F-7M(수출 개조형)은 - TYPE 956 HUDWACS (HEAD-UP DISPLAY AND WEAPON-AIMING COMPUTER SYSTEM). - SKYRANGER RANGING RADAR. - DIGITAL IFF 등 서방측 전자 장비 사용	○ 초기형: 알바니아 및 탄자니아에 수출 ○ F-7의 부품 및 엔진이 이집트로 수출된 바 있으나 약 160대가 추가로 주문된 바 있으며, 이는 일부는 이집트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이라크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J - 8 FINBACK  	J - 8 1984. 5 최초 비행 J - 88	○ 중공에서 개발한 공중 우세 전투기 ○ 1960년대 초 2개 항공기 개발계획 착수 J-6 및 J-7의 발전형인 Q-5와 J-8가 각각 개발 ○ 약 50여대가 생산되었으나, 취역은 하지 않고 SPEY 엔진, 30밀리 기총, 공대공 미사일 및 후퇴익 WING에 대한 시험 및 개발기로 사용 ○ 당시 원형기는 TUMANSKY R-11 터보제트 엔진 1개를 사용하고 있었음 (J-8참조). ○ 1985년 초에 신화사통신이 발표하므로 확인 ○ J - 8 XIN 으로 명명 ○ 대만 보유 F-5E의 대응기로 개발 노력 ○ INTAKE는 F-20 TIGERSHARK와 유사 ○ J - 8 보다 성능 크게 향상	○ 양쪽에 INTAKE가 있음. ○ J - 8 XIN은 기수부분을 개조 AI RADAR 장착 ○ 중량 증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량 고성능 엔진 (TUMANSKY R-13-100 개조형, 중공 자체 개발형) 사용.	

“F-12”(B)



투기로 전투기동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반면에 F-12B형은 가변 후퇴익 형으로 우수한 다목적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첨보(JANE'S Defense Weekly 1985. 12. 25)에 의하면, 중공은 후퇴익 및 Delta익(Mirage 2000과 유사)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일환으로, 엔진은 이미 개발 시험 중에 있는 J-8과 차기 전투기(J-10, 1개의 엔진을 사용한 Mach 2급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의 PW1120(최대추력 10톤급) 엔진을 구입하려 하고 있으며, 기체는 중공에서 방제(倣製)한 Mig Model의 부품 및 항공기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수대의 MiG기를 이집트로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이는 방제기술의 발전과 경험을 토대로 한 가변기하학기술(Variable Geometry Technology)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공은 이를 기반으로, J-11과 J-12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추측되며, J-12는 후퇴익 Twin-Engine, 2차원 Intake식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5. 항공기 생산 및 엔진현황

중공은 중공공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서방선진국들로부터 신기술 도입은 물론, 엔진 및 전자 장비 등의 도입교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개발한 항공기는 아직 방제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생산된 항공기 및 엔진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6. 중공군 현대화 움직임

중공은 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군의 감소

- 400만에서 300만으로 감소(공군 49만에서 35만으로 25% 감소).

- 보다 많은 무기구입을 위한 기금마련(경제적인 측면).

○ 주요 무기수출국으로 지향

- Xian 및 Chendu 공장 : F-7 수출

- Shenyang, Shanghai 및 Nanchang공장 :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많은 Buyer 확보.

- 1984년 무기판매고 : 20억불 상당.

- 6개 일류 무기수출국에 포함.

- 노후된 기술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 3세계국가들에게 수출 달러 및 경화(Hard Currency)를 획득, 정교한 무기 구입에 사용.

○ 장기간 기술획득 노력

- 단기간에 군 현대화시 막대한 비용 소요

- 필요한 군기술(최신무기 / 생산기술 등) 및 자급자족을 위하여 Long-Term Partner 추구

○ 미·중공간 군사관계 개선

- 고위급 대화(군 및 산업체 고위급 포함)

- 군 교류(공군이 가장 활동적)

- 군기술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7. 중공의 당면문제

현재 중공은 기술기반 조성 및 군 현대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측면(Money Gap)

- 중공경제 압박(1985년)

- 인플레 16%, 수입초과, 상품의 질저하

China's aircraft products

Chinese export designations	Type	Origin
Shenyang aircraft factory		
JJ-5/FT-5	fighter/trainer	MiG-17
J-6/F-6	fighter	MiG-19,
JJ-6/FT-6	fighter/trainer	Development of MiG-19
J-8/F-8	fighter	MiG-21 (twin-engined)
Xi'an aircraft factory		
J-7/F-7	fighter	MiG-21F
H-6/B-6	bomber	Tu-16
Y-7	transport	An-24
Design stage	supersonic bomber	(seeking partners)
Design stage	high-performance trainer	
Shanghai aircraft factory		
Y-10	transport (research)	similar to B707 (uses P&W engines)
Hanzhong aircraft factory		
Y-8	transport	An-12
Nanchang aircraft factory		
O-5/A-5	attack	MiG-19
CJ-6	basic trainer	similar to Yak-18
Harbin aircraft factory		
H-5/B-5	bomber	Il-28
Z-5	helicopter	Mi-4
Z-6	helicopter	Mi-8
Z-9	helicopter	licence-built Dauphin
Y-11	utility	An-2 replacement
Y-12	STOL transport	Y-11

Current Chinese aero-engines

Piston engines (Huosai)	Factory	Derivation	Power plant/rating
HS-5	Ouzhou	ASh-62IR licence	1000 hp
HS-5A	Harbin	ASh-82V licence	1700 hp
HS-6A	Ouzhou	AI-14RF	285 hp
HS-16	?	Chinese design	16 hp
Turboprop (Wojiang)			
WJ-5A-1	Shanghai	AI-24A copy	2900 ehp
WJ-6	Shanghai	AI-20K copy	4250 ehp
Turboshaft (Wozhou)			
WZ-5	Shanghai	WJ-5	2400 shp
Turbojet (Wopen)			
WP-2	Harbin	RD-45 licence	2270 kg st
WP-5	Harbin	VK-1 licence	*3380 kg st
WP-5D	Harbin	VK-1A licence	2700 kg st
WP-6	Shenyang	RD-9BM licence	*3250 kg st
WP-7	Chengdu	R-11-300F copy	*6200 kg st
WP-8	Xian	RD-3M copy	9500 kg st
WP-?	Xian	Spey 202 licence	*9305 kg st *with afterburning

- 경제위기(Economic Brakes)

- 예산(국방비 포함) 삭감.

○ 기술적 측면 (Technology Gap)

- 기술이용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결여.

- 정교한 무기체계 흡수능력 결여

○ 법률(국제법)적 측면(Legal Limitations)

- 무기판매 조종법(미국) 1,400 만불 이상 판매시 의회승인 요청

- 해외 원조법(미국)

국가이익 침해시 방어무기 판매액이 300만불 이상일 경우 대통령이 승인하지 못하도록 제한

- 군수품 통제법(미국)

1983년 이후 중공에 판매가 해제된 품목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 통제

- COCOM법

NATO 이외의 국가에 방어무기 판매시 COCOM의 승인을 획득

○ 중공 공군측면

- 민간항공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군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국으로부터

강한 압력

- 예산 삭감

- 최신 항공기 및 장비획득에 어려움.

8. 중공 항공산업의 문제점

중공 항공산업은 방대한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및 엔진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해외 선진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1976년 및 최근에 이집트로부터 MiG-23을 도입하는 일 외에도, 서방측의 최신기술을 도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 및 엔진생산공장

- '50년대 중반 소련에서 설립

- '80년도까지 최신 생산기술 미구비

- 부품 및 공구 등 자급자족상태

○ 기술도입조건

- 중공측에 유리하게 제시- 미국 및 서방 선진국의 비적극적 기술지원

○ 중공 경제성의 낙후- 경제력 부족

- 도입되는 신 기술자원의 지원능력 부족

○ 정책

- 신 기술 및 신 장비 일시 대량도입 금지

9. 전망

- 중공 항공산업은 그 낙후성을 면하기 위하여 미국 및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최신기술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망되며
- J-8을 개발하는데 약 20년이 소요되었고,
- 현재에도 항공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 당분간은 방제(倣製)능력에 불과할 것이며, 2000년 이후에나 독자적인 최신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1985, No.12.
- JANE'S Defense Weekly, 1985. 12, 14.
- JANE'S Defense Weekly, 1985. 12. 21.
-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85~1986.
- JANE'S Defense Review, 1983. No,9.
- The Chinese War Machine. 1979년 발행.

고성능 항공방송장비 소개



중령 서효창
(제3591부대)



목 차

1. 개요
2. 필요성
3. 사용목적과 효과
4. 장비 소개
5. 장착 검토
6. 결론(그림)

1. 개요

현대 기계문명의 구조적인 발달과 생활의 복잡 Speedy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하고 특히 '86, '88 양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안내 및 홍보방송, 공중초계, 긴급환자 공수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항공기장착 고성능 방송장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필요성

특히 우리공군의 헬기는 그 임무가 다양하여 전·평시 탐색구조, 긴급인원 및 물자공수, 화재(고총건물 및 산불) 진압, 수해 및 해난구조, 환자후송 등 장차 그 임무의 중요도와 난해도는 더욱 증가하여진다고 보겠다.

더하여 구조조종사라면 누구나 평소 탐색구조임무 중에 방송장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으며, 지상 혹은 해상의 조난자에게 조종사의 의도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본다.

3. 사용목적과 효과

구조기 조종사가 탐색 혹은 구조임무 중 항공기로부터 지상의 인원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요구사항이 각 상황별로 몇가지 있으나 Mess Age Drop, Wing Rocking, 착륙등 사용, 연막탄 사용 등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이어서 이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본다.

이와 반면 확성기에 의한 전달은 가청거리 내에서 직접 전달되어 조종사의 의도나 요구에 바로 응신할 수 있다.

탐색 및 구조 상황별, 종류별로 보면 -

○ 육상탐색 구조임무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탐색을 통하여 조난자를 찾아내는 수 밖에 없다. 조난탐색의 방법에는 현행 공군 탐색절차에 따르고 있으나 방송을 통하여 조난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조난자가 구조받기에 안전상 적합하지 못할 경우, 혹은 항공기에서 보내는 의도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방송으로 작업하기란 훨씬 쉬운 일이다.

현재의 방법은 헬기의 Down Wash(로타에 의한 강한 바람)와 소음때문에 Mess Age Drop 방법을 쓰고 있지만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확성기의 사용으로 조종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시하여 효과적인 임무완수가 기대되는 것이다.

○ 해상탐색구조 임무

특히 해상탐색구조에 있어 방송통신장비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항공기가 해면이나 선박 위에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난자나 선박의 상태 확인,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한 구조작업 상의 안전장애요소(예 : 마스트, 선(線), 위치 선정……)들을 제거한다거나 조난자에게 구조작업을 통제 지시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고총건물 화재 구조

점점 고총건물이 많아지고 있는 요즈음 헬기의 구조작업 중 하나가 고총건물 화재이다. 건물의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열기(熱氣)와 심한 연기(비행시 극히 시정장애 요인), 회돌림 바람과 이상(異常)기류, 고압선, 건물의 안테나 등으로 인하여 건물에 접근하기란 몹시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이때는 구조낭이나 인양기, 로프(Rope)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전통제와 질서유지 등 조치할 사항을 지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안전한 그리고 신속한 작업과 함께 지상 소방구조 대원들에게 통신유지, 화재의 각종 정보제공 등 공중통제의 역할에 큰 잇점이 된다.

○ 심리전 적용

대비정규전, 대테러작전, 폭동진압 등 심리전을 위해 외국의 경우 이 확성기를 통한 Message 전달 및 작전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적이나 필요로 하는 대상(對象)에게 심리적 불안(不安) 및 갈등, 행동의 제약(制約)을 야기시킴으로써 작전의 양상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또한 전단살포 보다는 청각적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공군도 이러한 방면으로 연구(研究)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86, '88 행사 지원임무

대규모 군중이 집중될 양대 행사에 헬기의 다양한 지원임무가 예상된다. 방송장비의 장착으로 Air Patrol, 홍보, 안내방송, 질서유지, 신속한 환자후송 등에 크나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군중이 많은 현장에 직접 이착륙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상(機上)의 안내요원이나 지상(地上)통제관 없이도 방송으로 인원, 차량소개(疎開)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

4. 장비 소개

○ 제원 및 성능

항공용 고성능 방송장비 확성기는 세계 여러 회사(会社)에서 제작, 운용(運用)하고 있으나, 대표적(代表的)인 장비로 미국(美國)에서 생산(生産)된 Applied Electro Mechanics(A. E. M) 사(社)의 900W 및 1,400 W이다.

○ 특성

- Compact 도안으로 장비의 중량은 150 LBS 이내로 되어 있으며 탑승인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항공역학적으로 비행자세 변화, 속도의 감속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음 도표는 미(美) Bell회사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한 후 산출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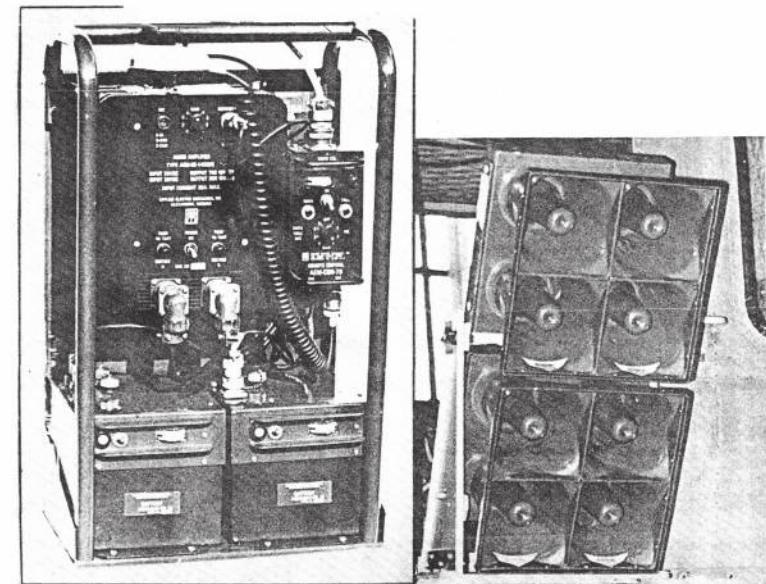
장비 출력력	900W	1,400W UH-1 비행소음	
거리 (m)	Sound	Level	(DB)
2.5	129.7	131.7	70.5
10	123.7	125.7	63.5
100	100.6	102.6	45.2
1,000	77.5	79.5	32.5
2,000	70.5	72.5	25.0
3,000	66.5	68.5	20.0
4,000	63.6	65.6	15.5
5,000	61.4	63.4	12.3

- 충전없이 3시간 이상 자체 전원으로 사용가능
- AC와 DC 겸용이며 항공기 자체 전원으로 충전가능하며 충전 중 사용가능
- 고성능으로 장거리 통달, 고공확성 가청과 넓은 지역을 Cover할 수 있어 유사시 적의 사격 유효사거리 밖에서 운영가능하며 초저고도 비행할 위험성이 없다.

5. 장착 검토

AEM사(社)에서 개발된 이 장비는 항공역학적, 성능, 동력시험 등을 마치고 UH-1 항공기에 장착 인가된 장비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육·해·공군, 해안 경비대(Coast Guard), 해양 경찰, 소방대, 산림청 등 각 부서에서 심리전, 탐색 및 구조, 공중방송, 인명구조, 공중순찰, 고속도로 순찰, 진화작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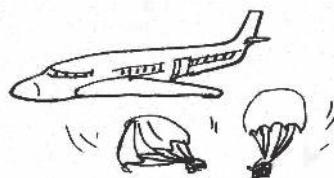
Control Box 및 Speaker



6. 결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헬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종사의 의도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장차 크게 이용될 방송장비를 장착한다면 원활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르린 공수(空輸)



소령 이귀형
(제 5672부대)

소련이 베르린을 봉쇄하던 1948년 6월부터 1949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베르린 시민의 생필품을 공수 함으로써 공산적화(共産赤化)의 음모를 모면케 했던 작전(作戰), 공수사상(空輸史上)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제시했던 그 작전(作戰)을 소개한다.

목 차

1. 역사적 배경
2. 작전의 세부계획
3. 작전 내용
4. 공수 취급업무
5. 베르린 봉쇄중지
6. 분석
7. 결론

항공기가 전쟁수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후 공수항공기의 역할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사시 공수항공기의 적절한 이용은 아군의 전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전쟁에서도 그 역할은 눈에 크게 띄지 않으면서도 아군의 손과 발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던 것이다. 그 몇 가지 예로써, 원산 철수작전시 유엔군 3천여 명의 공로철수와 장진호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미제10사단의 생필품 투하 및 공로탈출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그 당시 공수항공기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국부적으로 커다란 인명손실은 물론 유엔군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베르린 공수란 1948년 소련이 베르린을 봉쇄함으로써 '48년 6월부터 '49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베르린 시민의 생필품을 공수했던 것으로서 공수항공기의 위력과 능력을 보여주어 공수사상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제시한 좋은 예이다.

1.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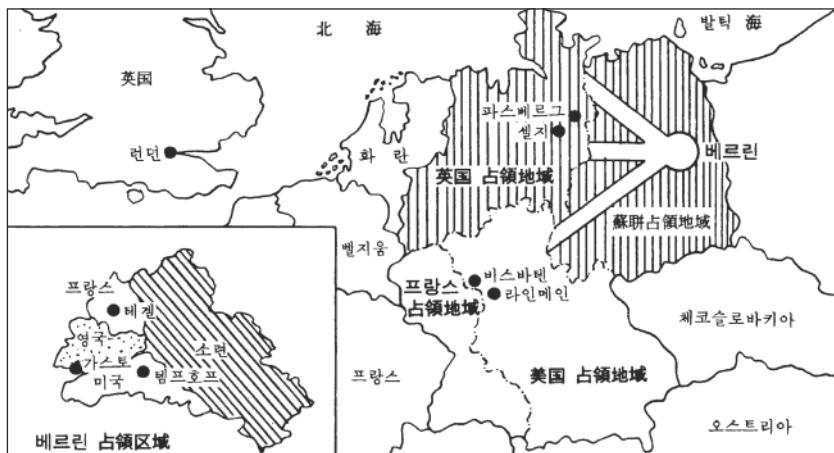
2차대전의 결과로서의 독일의 분할은 대전국들의 전후처리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였다. 대전후, 독일을 분할 지배했던 4개국(미·영·불·소)이 '47년 2월 런던에서 4개국 외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분할된 독일의 통일은 거의 가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방측의 미·영·불 3국은 그 점령지역에서 독자적인 정부수립과 공업화로써 소련에 다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소련은 이것이 「4개국 협정위반」이라고 트집삼아 '48년 3월 「독일관리사회」를 탈퇴했으며 동년 4월 1일부터는 서베르린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철도에 대하여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베르린 봉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된 독일의 통화개혁문제는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서 서방측은 6월 18일 새통화 독일 마르크화를 발행하였다. 이에 당황한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의 신통화를 발행하여 그들의 점령지역과 동베르린에 적용하면서 서독의 신통화가 서베르린 지구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구실로 서방측 점령지로부터 서베르린에 이르는 육상 및 수상의 모든 수송로를 차단하였다. 따라서 미·영·불 서방 3국은 고립된 베르린 시민을 기아에서 구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베르린이 소련 점령지역 하에 있다는 것이었다. 즉, 서베르린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련 점령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미국측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로서 소련의 봉쇄조치를 뚫고자 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 측은 이것이 제3차대전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 때문에 미국측 의도를 반대했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결국 서방 측은 공수항공기를 이용하여 서베르린에 생필품을 비롯한 제반 물자를 공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작전의 세부계획

베르린 공수작전(이 작전의 명칭을 미국은 비틀리스 작전 “Operation Vittles”, 영국은 플레인 훠어 작전 “Operation Plan Fare”라고 불렸음.)을 위한 모든 계획은 당시 유럽 주둔 미공군사령관인 “리메이” 장군이 담당하였고 군항공수송단장이었던 스미스(Joseph Smith) 중장이 「베르린 임시공수 특수임무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공수 항공기는 우선 유럽 주둔 미공군(본부 : 프랑크푸르트 근교 비스바덴의 스파트타운) 산하의 C-47 항공기를 동원하여 미군 점령지역인 비스바덴에서 서베르린 템펠호프기지까지 우유, 소맥분, 의약품 등 약 8톤의 생필품을 공수하였으며 계속적인 공수를 위하여 “리메이” 사령관은 미공군본부에 공수항공기와 조종사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54대의 C-54 항공기와 105대의 C-47항공기가 추가로 파견되었지만 베르린 봉쇄는 계속되어 서베르린의 미국과 프랑스 점령지역에는 일일 3,000톤, 영국 점령지역에는 1,500톤의 물량이 필요하게 되어 항공기는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반덴버그 장군(1944년부터 ’45년까지 유럽 제9공군사령관 재직)은 베르린 공수에 필요한 병력을 유럽 주둔 미공군병력 일부를 독일로 파견해 주도록 미 항공수송단에 명령하였다.

<표 1> 베르린 공수작전중(空輸作戰中) 베르린 접근로(接近路)

(1948. 6. 26~1949. 9. 30)



3. 작전 내용

당시 서베르린에 입항하는 경로는 미국 점령지역에 1개 영국 점령지역에 2개 도합 3개 밖에 없었다(표 1참조).

가. 비행장

초기에는 미국 점령지역의 라인메인(Rhein Main)과 비스바덴(Weisbaden) 기지에서 공수 하였으나,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미공군은 미국지역으로부터 베르린까지의 경로가 대체로 짧은 영국지역 파스베르그(Fassberg)와 셀리(Celle) 기지로 적재기지를 옮겼다. 또한 화물량이 그리 많지 않던 초기에는 주로 서베르린에서는 템펠호프기지, 영국에서는 가토우(Gatow) 기지를 사용하였으나 항공교통량과 화물량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프랑스 점령지역 내의 테겔(Tegel) 기지를 급조하여 사용하였다. 또 미공군은 이 작전을 위하여 총 7개의 비행장을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라인메인·비스바덴·파스베르그 및 셀리기지는 적재임무를 주로 하였고 템펠호프·가토·테겔 기지에서는 하역임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다.

나. 비행절차

당시 독일 내에서는 항공기 운행에 적합한 각종 시설이 전후 복구가 되지 않아 계기비행 상태 하에서의 비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서부유럽의 특이한 악천후와 안개는 작전수행에 더 많은 장애요소가 되었다. 우선 각 항공기 별로 지정된 고도와 속도가 주어졌다. 고도는 최저 5,000피트에서부터 최고 10,000피트까지 총 6개의 분리된 고도를 사용하였다. 이륙은 대략 3분 간격으로 하였으나 착륙기지의 접근관계 수용능력에 따라 다소 변경되기도 하였다.

◉ 비행경로

시계비행 상태 하에서는 경로가 별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계기비행 조건 하에서는 안전상의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계기 비행을 위해서는 항공기를 관제하는 지상 관제소와 적절한 지상 보조장치가 필요하였으나 종전 직후의 독일에는 그러한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오늘날처럼 현대화되지도 못하였다. 조종사는 이륙 후 계기비행상태까지는 주로 지형지물을 참조하여 상승하였으며 수평상태에 다다르면 급조한 ADF항법장비와 시간계산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즉, 지정된 지형지물이나 도시 상공을 통하여 ADF 무선국을 지나서 조종사간의 상호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간을 점검함으로써 시간상으로 목적지까지의 잔여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썼다.

◉ 접근착륙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서유럽에서는 운고 500피트 시정 1~2마일 이하의 기상 현상은 자

주 발생하는 악천후이다. 당시 정확한 기상점검을 위하여 B - 29항공기가 사전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예보를 말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오늘날처럼 장비가 현대화된 조건 하에서도 대부분 기지의 착륙 최저치가 200~500피트 사이이며 시정도 2마일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도 착륙에는 고도의 기량이 요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계기접근 착륙시에는 GCA접근을 시도하여 착륙에 실패할 경우(Missed App)에는 재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이륙기지로 되돌아 오도록 하였다. 이는 3분 간격으로 이륙하여 계속 접근하고 있는 후속 항공기와의 안전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특히, 활주로상의 조명장치는 접근 착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비행장 주변의 많은 고층 건물은 고도 강하에 비례하여 조종사의 긴장도를 높였고 이것은 활주로(Active RWY)가 접근하는 반대쪽일 경우에는 선회접근(Circling App)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4. 공수취급 업무

한국전쟁사에도 유엔군의 북진시 병참을 지원하는 공수항공기의 화물포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된 예가 있었다. 즉, 충격흡수기술과 낙하산 용량에 따른 적합한 화물 포장 그리고 부피 감소기술 등이 대두되었다. 베르린 공수시에 대두된 문제는 화물의 부피가 큰 것,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자류는 탈수를 했고 곡물류는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포장없이 자루에 넣어서 적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석탄류의 공수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었고 특히 이것은 검은 탄가루와 많은 먼지로 인하여 정비 작업에도 많은 애로점이 야기되었다. 또한 냉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항공기로서는 고기와 생선류 등 일부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 공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유류의 공수는 처음에는 드럼통을 사용하였으나 항공기에 기름탱크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생기면서 급유 전용항공기가 나왔다.

이것은 주로 영국측에서 담당하였으며 송유시설이 되어 있는 가토와 테겔기지에서 송유관으로 직접 베르린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

5. 베르린 봉쇄 중지

'48년 6월부터 베르린 공수를 시작하여 10개월여에 걸친 임무를 통해서 제반절차가 숙달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항공기가 베르린을 왕래하였으며 화물량도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봉쇄가 해제되기 한 달 전에는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수가 실시되기도 했다.

6. 분석

베르린 공수에 사용된 미국측의 주기종은 C-54항공기였다. 초기에 C-54가 투입되기 이전에는 C-47항공기가 사용되었으나 적은 화물 탑재능력 때문에 C-47보다 3배 이상의 탑재능력이 있는 C-54항공기로 대체되었다. 베르린 공수에 사용된 항공기는 약 400대였으며 주기적인 항공기 정비, 고장을 제외한 평균 가동 댓수는 319대였다. 이 가운데 19대는 조종사 및 기타 승무원의 교체용 (미본토로부터 서독까지)으로 사용되었고 75대는 급유기(Tanker)로 나머지 225대가 일반 생필품을 공수하였다.

원래 C-54항공기는 병력 수송용이었으나 일부는 화물 공수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였다. 영국은 민항기를 포함하여 74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다. 이렇듯 서베르린의 생필품과 식량, 유류 등 일체가 11개월 동안 공수작전으로 공급되었다. 총 277,728 소티의 비행으로 2,343,300톤의 물자가 공수되었다.

한때 공수임무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서베르린에는 평균 45초 마다 1대씩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셈이 되었다. 이 공수작전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미공군과 해군이 1억 8,130만불,(작전비용 570만불, 지원비용 6,470만불, 항공기 파손 750만불 항공기 감가상각 1,100만불)을 소모하였으나 그 목적은 훌륭히 수행하였다.

베르린 공수작전 중 발생한 비행사고는 공중충돌 1건과 지상충돌 12건으로 총 31명의 승무원이 순직하였다. 그러나 베르린을 방어했다는 커다란 업적에 비하면 극히 만족할 만한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당시의 공수체계가 미약했거나, 공수 작전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서독과는 전혀 다른 서독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도 공수작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공수가 없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이 신무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간과 하기 쉬운 이러한 공수 전력의 적시 적절한 이용, 투입, 후송, 재생산 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크나큰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결론

베르린 공수는 산악지방이 많아 전시에 고립되기 쉬운 우리 나라와 같은 곳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공수작전의 본보기인 것이다. 이 공수작전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예라는데 그쳐서는 아니되며 제반 비행절차, 항로이용방법, 승무원 휴식, 활주로 사용요령, 공수화물의 포장 등 세부적인 분야까지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유사시에는 항공 지원 시설이 미약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고성능의 항공기가 있고 노련하고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도 있으며 각자 타고 난 소질도 갖추고 있다. 또한 임무 수행 능력도 우수하다. 단지 현재의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적으며 조금은 소극적인

면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감출 수는 없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배운다는 옛 말대로 잊혀져 가는 과거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력을 다질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더욱 노력하는 공군상을 정립해야겠다.

오천년에 처음 기회

지혜롭게 이용하자

병무행정(兵務行政)에 관(關)한 종합적(綜合的) 이해(理解)



중위 한석규
(공본 인참부)

목 차

1. 병역의무(兵役義務)
2. 복무형태(服務形態)
3. 징병검사
4. 공군(空軍) 현역병(現役兵)의 입영(入營)
5. 공군선발(空軍選拔) 시험제도(試驗制度)
6.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교육 중 퇴교
(教育中退校) 된 자의 인사처리(人事處理)
7. 석사학위(碩士學位) 소지자(所持者)의
특수전문요원(特殊專門要員)
8.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 등의 처벌(處罰)

1. 병역의무(兵役義務)

“모든 국민은 법률(法律)이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병역의무조항(兵役義務條項)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병역법(兵役法) 제3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男子)는 헌법(憲法)과 병역법(兵役法)이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兵役義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여자(女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현역(現役)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 정하고 병역법(兵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兵役義務)에 대한 특례규정(特例規定)을 두 수 없으며, 6년(年)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병역(兵役)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역에서 제적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男子)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에 입각하여 징집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17세(才) ~30(세)才까지 병역의무(兵役義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제(第)5공화국(共和國) 헌법(憲

<표 1>

공군장병 입영형태

구분		학력	연령	전형방법
장교	사관생도	고졸 이상	만 17 이상 21세 미만	학력고사, 내신성적, 체력검정
	학군사관후보생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만 18세~ 22세 미만	학과시험(적성), 대학성적
	사관후보생	대졸 이상 (4년제)	만 20세~ 27세까지	적성검사, 전공시험
	특수사관후보생 (법무, 의무, 군종)	”	”	국방부 선발
하사관	기술고등학생	중졸 이상	만 15세~ 17세 미만	국, 영, 수, 과학, 사회
	학군하사관후보생	”	”	국방부 선발
	하사관후보생	고졸 이상	만 18세~ 25세까지	선발시험(국, 영, 수학, 과학)
병	기술 및 일반병	”	”	”

<표 2> 각군 장병의 복무형태

종별	복무구분	군별	복무기간	종별	복무구분	복무기간
현지	일반병	육군, 해병	30개월	학군 (R.O.T.C.)	(육군)	2년
	사관생도	육, 해, 공군	10년		(공군)	3년
	학사장교	육군	3년		(해군)	2년
	사관후보생	공, 해군	3년	하사관 (R.N.T.C.)	(금호고)	5년
역	정훈, 회계, 의정장교	육군	3년		(목포해양전문)	2년
	기술장교	”	3년	특례보충역		
	단기사관장교	”	6년		• 한국과학기술원생	2년(교육) +
	군법무관	육, 공, 해군	10년		• 방위산업체 종사자	3년실무종사
원	준사관후보생	육, 공, 해군	5년		• 기간	5년실무종사
	군위탁생	육, 해군	3년+위탁기간		• 해경경비 합성승선자	”
	군기술위탁생	육, 해군	5년		• 연구기관 연구원	”
	기술 및 일반 하사관후보생	육, 공, 해군	단기: 4년 장기: 7년		• 농촌지도직 공무원	”
복무	특전하사관	육, 해군	4년		• 학술, 예, 체능기능특기자	”
	현병하사관	육군	4년	복수전문요원(식사)		
	전투기술하사관	육군	4년		6개월	(군사훈련)
	일반 및 기술병	공, 해군	35개월		자연계 교원 요원 (충남대, 공대 교육공학)	6개월+교사
무	육군기술병	육군	30개월		2년 6개월	
	카류사	육군	30개월		4년제	7년(교사)
	특수장교 (법무, 군종, 군의)	육, 공, 해군	3년		2년제	5년(교사)
	5급공채(행장, 외무, 기술고시) 및 사법시험 합격자 종법무관 미임용 된 일반장교	육, 공, 해군	3년	전임	N.R.O.T.C(장교) N.R.N.T.C(하사관)	5년내 3년간승선
전임	방위복무 (육, 해, 공군)	방위병 (독자 등)	18개월 (6개월)		공중보건의	3년
	전투경찰				의무전경	3년
					작전전경	30개월
					경비교도대	30개월

法)은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不利益)한 처우(處遇)를 받지 않는다고 그 지위(地位)를 보장하고 있다.

공군(空軍)은 첨단과학을 이용한 고도정밀장비(高度精密裝備)를 운용관리(運用管理)하는 기술군(技術軍)으로서 전장병(全將兵)의 병역의무이행형태(兵役義務履行形態)를 지원(志願)에 의한 제도(制度)를 채택(採択)하고 있다(표 1).

2. 복무형태(服務形態)

각군(各軍)의 장교(將校), 하사관(下士官), 병(兵)의 복무형태와 특수병과(特殊兵科), 전임복무(転任服務), 방위병(防衛兵), 특례복무(特例服務)의 유형별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3)

신분별 징병검사 연기

연기사유	구분	연기기간	비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한연령 내에 해당학교 졸업 가능자	고등학생	연령에 무관하게 졸업시까지	○ 해당학교에서 매년 3.31까지 연기원 제출
	전문대	2년제	22세
		3년제	23세
	대학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대학원	4학기제	26세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인 자	사법연수원(사법)	26세	○ 대학원졸업 전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중앙공무원 교육원(행정, 외무, 기술고시)	25세	현역 입영대상자는 군법무관, 또는 일반장교로 임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현역 입영대상자	23세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국외 유학생	국내 대학생 제한연령까지	1년 연장가능(추가로)
	국외 체재자	"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	영주목적으로 재귀국할 때까지	

3. 징병검사

가. 대상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면 징병검사대상자인 제(第)1국민역(國民役)에 편입(編入)되고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兵役)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判定)받기 위해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區), 시(市), 읍(邑), 면(面)의 장(長)이 지정(指定)하는 일시(日時), 장소(場所)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事由)로 징병신체검사를 30세(歲)까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1세(歲)부터 면제되고 보충역(補充役)에 편입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정당(正當)한 사유(事由)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나. 징병검사 연기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표 3).

다만, 연기 대상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적 변동자”로 되어 연기가 되지 아니한다. 즉 ①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자, ②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에 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자, ③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 또는 입학한 자, ⑤ 복학, 전학한 자 등이다.

다. 신체검사의 판정(判定)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의 판정은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서 병역처분(兵役處分)이 내려진다(표 4). 이때 신체 등위는 1급에서 7급까지로 나뉜다.

(표 4)

신체검사 판정기준

군별	구분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중퇴, 국졸
육군(징집)	현역	1, 2, 3급	1, 2급	1급	
	보충역	4급	3, 4급	2, 3, 4급	1~4급
공군	사관후보생	1, 2급			
	하사관, 병	1, 2급	1, 2급		

여기서 공군지원신체검사(사관후보생, 단기 기술하사관 후보생, 기술 및 일반병) 신체등위가 1, 2급에 해당되어 합격이 가능한 주요 항목별 합격 기준을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공군 징병검사 합격기준

구 분	항 목	1, 2급 합격기준	비 고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 등위	시 력	나 안 : 0.1 이상 교 정 : 1.0 이상	
	혈 압	120~80(정상)	
	치 아	결손치아 2개 이하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신 장	159cm~185cm	체중에 비례
	체 중	46kg~88kg	신장에 비례

라. 가사사유(家事事由) 보충역(補充役) 대상자(對象者)

현역편입대상자로서 첫째, 생계유지곤란자(부양비율, 재산상태 정도 고려→표 6) 둘째,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즉, 가족 중 18세 미만, 70세 이상인 자만 있는 경우, 다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자 있어도 질병자일 경우에는 해당된다. 또한 종합소득액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된다).셋째, 부(父)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의 독자, 넷째, 부(父) 또는 형제 중 전사(戰死), 순직자나 전공상(戰公傷)(2급 이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의 1인(人) 등에 해당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補充役)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의 “가족(家族)”이란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인 3촌,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또한 본인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는 표6과 같다. 표6에서 피부양자의 비율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표 6)

생계유지곤란자의 보충역 편입기준

구 분	부 양 의 무 자	초과 피부양자수	비 고
남 자	25세~50세	4 인 이상	
	20세~24세	3 인 이상	18세~19세, 55세~59세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51세~54세	3 인 이상	피부양자가 모두 6 세 미만일 경우에는 2 인 이상
여 자	25세~40세	3 인 이상	피부양자가 모두 6 세 미만일 경우에는 2 인 이상
	20~24세	2 인 이상	18~19, 45~49세는 피부양자 에서 제외
	41세~44세	2 인 이상	

4. 공군현역병(空軍現役兵)의 입영(入營)

가. 입영시험(入營試驗)

공군병은 원칙적으로 매월 끝 주에 접수하여 접수 다음 달 중순에 학과시험, 신체검사를 거쳐 학과시험 2개월 후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 합격자 발표시 2차전형을 위한 입영일자를 지정하여 발표한다. 보통 지정된 2차전형 입영일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이내가 된다. 따라서 입영대상자가 공군에 접수하여 2차전형 입영시까지는 개략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입영대상자가 학교재학생일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관계를 고려하여 입영일을 결정한 다음 역산(逆算)에 의하여 90일 이전에 접수하면 정확히 맞아들어 갈 것이다.

나. 입영연기(入營延期)

현역입영대상자가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일을 연기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자 ④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 ⑥ 각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단,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가 병(兵)으로 지원한 때에는 입영일 90일 전까지 지원한 자에 한하여 1회연기가능(回延期可能)) 등으로서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관계

입영대상자가 공군에 지원할 경우에는 최종합격하여 입영할 시까지는 휴학하지 말아야하며, 입영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군입대휴학처리가 된다. 그리고 입영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필한 후 학교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2월말, 8월 말까지 해당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3월 15일 또는 8월 15일 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와 3월 1일 ~ 15일 또는 8월 1일 ~ 15일 휴가예정확인서를 구비하여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휴가예정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고 소속부대(행정계)에서 편의상 발행할 수 있다.

라. 교련이수자의 혜택

현역병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전문대 포함) 2년 이상 수료하고 입영한 자는 90일간, 1년 이상 수료한 자는 45일간의 복무기간 단축혜택이 있다. 다만, 1년 미만자는 혜택이 없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45일간 만의 단축혜택이 있을 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81년도 이후 입학자는 9 월 복학이 곤란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하여 후기졸업이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5. 공군선발 시험제도

공군은 전 신분이 지원제에 의하여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 신분을 필기시험(공군사관 학교는 제외)에 의한 전산체점 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분별로 본 시험과목은 표7과 같다.

(표 7)

선발시험제도 총괄

신 분	선 발 시 험	문항수	소요시간	배 점	내 용
사 관 후 보 생	장교적성검사 (AFOAT) (객관식)	50	60분	100	낱말추리..... 6% 독해력..... 18% Vocabulary..... 8% Structure..... 4% Comprehension..... 10% 산수추리..... 18% 자료해석..... 18% 논리분석..... 18%
	전공선택 (객관식)	50	50분	100	31개 선택과목 (원론수준에서 출제)
	계	100	110분	200	
학 후 및 병	사병선발검사 (AST) (객관식)	60	60	100	국어, 영어, 산수추리, 일반과학상식(물리, 생 물, 화학, 지학) '87년부터 국민윤리, 국사추가
사관생도	* '86년도 입학자부터 학과시험 폐지 (학력고사(340점), 고교내신성적(110점), 체력검정(50점)으로 선발				

다만, 공군사관학교는 '8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전형, 내신성적, 체력검정, 학력고사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전형절차

1 차 전 형	2 차 전 형	3 차 전 형
가. 신체검사	가. 정밀검사	가. 학력고사 : 340점 (68%)
나. 고교내신성적에 의한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나. 고교내신 : 110점 (22%)
	다. 체력검정	다. 체력검정 : 50점 (10%)

나. 신검기준

① 신장 162.5cm 이상인 자, ② 체중 54kg이상인 자(단, 연령별 표준체중표에 의함). ③ 시력 1.0 이상이며 색맹이 아닌 자(단, 성적이 우수한 자는 나안 0.6까지) ④ 결손치(지치 제외) 2개 미만, 충치 5개 미만인 자(단, 교정 후의 결손치와 충치는 무관함).

다. 체력검정

① 100m 달리기, ② 턱걸이, ③ 넓이뛰기, ④ 누워 윗몸 일으키기, ⑤ 1,500m 달리기

사관후보생은 1차시험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을 치루는데, 학과시험은 장교적성검사와 전공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장교적성검사는 영어와 국어(속담, 논설문 해석, 한문), 산수추리(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상생활 정보자료를 제시한 후 그 수치분석), 논리분석(A와 B의 대화가 충분조건인가?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인가?의 분석), 자료해석(일반경제, 사회 현상들의 자료를 제시하여 그들 상호관계의 분석)으로 형성된다. 즉 장교적성 검사는 별도의 공부보다 신문 논설, 생활통계자료 정보지의 숙독이 필요하고, 영어는 Toefl을 보면 족하다. 전공선택은 원론을 갖고 구석구석을 살피면 고득점할 수 있다. 즉 각 과목의 각론은 필요치 않다.

하후 및 병은 사병선발검사만 가지고 시험이 치루어 지는데, 국어, 영어, 산수추리, 일반과학상식과 '87년부터는 국민윤리와 국사가 추가된다. 국어는 논설문의 해석, 낱말상관관계, 문장 채우기, 영어는 고교수준의 선택(문법, 숙어, 회화), 산수추리는 일반적인 고교 수준의 수학(전문적인 공식은 불필요하고 일반적인 수학자료분석), 일반과학(물리, 생물, 지학, 화학)으로서 일상적인 것으로 고교교과서 수준), '87년부터 추가될 국민윤리는 공산주의의 경제, 정치, 철학의 허구성 및 전통적인 한국인의 사상과 이론일 것이고, 국사는 고교수준의 이론이 될 것이다.

라. 공군 전 장병의 전역 후 지도

사관후보생은 전원이 전역 후 병무처에서 대기업체에 취업 알선하여 전원 취업하고 있으며, 하후 및 병은 기술분야에 한하여 관련업체에 취업 알선하고 있다.

6.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교육(教育) 중(中) 퇴교(退校)된자의 인사처리(人事處理)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기술고등학생 및 단기 기술하사관후보생이 교육 중에 성적불량 등으로 인하여 퇴교되는 자는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즉 현역출신 퇴교자는 현역신분으로, 타군 현역출신 퇴교자는 타군 현역신분으로, 민간인출신 퇴

무관후보생 퇴교자 편입기준

(표 8)

신 분	교 육 기 간	현 역 편 입	계 급 부 여	비 고
사 관 생 도	1년 이상 재학자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	4 학 년-중사 2, 3학년-하사	병 편입된 자 →재학기간의 2/3를 환산하여 계급 부여
	3개월~1년 미만 재학자	단기 기술하사관 후보생 또는 병	후보생 또는 병	
사관후보생	기본 군사교육과정 이수자	"	"	병 편입된 자 교육기간의 → 100%에 해당하는 계급부여
	병의 기본 군사교육 기간 경과자	병	병	
준 사 관 후 보 생	하후 총 교육기간 경과자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	하사 또는 병	
	기본군사~하후 총 교육기간 미달자	하후 또는 병	후보생 또는 병	
	병의 기본 군사교육 기간 경과자	병	병	

교자는 민간인으로 복귀된다. 이때 퇴교된 자 중 “공본 현역편입 적부심사 위원회”(3~7인의 영관장교)의 의결에 의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표 8).

이때 복무하여야 할 의무기간은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편입된 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병(兵)의 의무복무기간(현재 35개월) 만큼 복무하여야 하며, 단기 기술하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자는 하사임용 후 4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고등학생과 단기 기술하사관 후보생이 교육 중 퇴교될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되며 제적된다. 기술고등학교 퇴교자는 학력미달로, 단기 기술하사관후보생 퇴교자는 자질미달로 인하여 공군병에 편입시킬 수 없다.

7. 석사학위소지자(碩士學位所持者)의 특수전문요원(特殊專門要員)

법률 제3450호('81. 6. 5)와 대통령령 제10652호('81. 12. 26)에 의거하여 1982년부터 특수전문요원을 선발하고 있다. 특수전문요원의 지원자격은 연령상으로 만 20세~만 27세인 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학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또한 특수전문요원의 선

특수전문요원 선발기준

(표 9)

구 분	전 형 과 목	선발시기	선 발 기 준	선발인원	비 고
국 내 특 수 전 문 요 원	외국어(2개) 국사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	연 2회 (3월 말 이전 8월 말 이전)	각 과목 40점 이상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 자 중에서 선발	석사정원의 20% 중 40%	인문, 자연 종 선발인원이 2,000 초과할 수 없음
	외국어(1개) 국사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	"	"	석사정원의 20% 중 60%	"
국 외 수 학 특 수 전 문 요 원	재외공관장 위임	"	"	별 도	"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면 소정기간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예비역 소위로 전역하게 된다(기본군사훈련).

발에 관한 제반기준 및 절차는 표 9와 같다. 특수전문요원의 선발기관은 문교부 대학국 학무과에서 중앙교육평가원 고사 1과(Tel 서울 732-1966)로 1985년부터 변경되었다.

8.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 등의 처벌(處罰)

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期日)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月)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를 대리하여 징병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기일로부터 현역입영은 5일, 방위소집은 3일, 병역동원, 전시근무소집, 교육소집은 2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입영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지방병무청장,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현역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채용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영을 기피한 때에는 해당 군참모총장이 고발한다. 이에 따라서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군 입영기피자의 고발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장교후보생, 하사관후보생, 현역병인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5일 경과 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거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없이 고발하여 병역법 제7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군은 지원에 의하여 합격자의 입영불응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다만 2차시험을 위한 1차합격자에 불과하고 1차합격자 성적사정시 2차전형 불응자를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또한 2 차전형 불응자에 대한 고발로 인하여 예상될지 모르는 우수자원의 지원기피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함에 있다.

따라서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취소 및 불응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 또는 불응한 경우에 채용통지서의 효력은 무효가 되며, 재효력의 발생은 없다

하절기 질병과 예방대책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열중증을 중심으로

대위 이태용
(항공의학 연구원)

목 차



1. 수인성 전염병(Water born Disease)
2. 식중독(Food Poisoning)
3. 열중증(熱中症)

최근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한 여름처럼 무덥기만 하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운 음식물을 멀리하게 되고, 찬 음식 또는 날 음식을 즐겨 먹으며, 냉수를 마시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순간에는 어떤 쾌감(?)이 우리의 오감(五感)을 자극할지 모르나 잘못된 경우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난에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온열 손상 등의 원인 및 증상과 그 예방대책 등을 설명하여 장병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며, 나아가서는 국방전투력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1. 수인성 전염병(Water-born Disease)

수인성 전염병은 집단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급수원에서 공급되는 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한 집단에서 일시적으로 일제히 발생하며 발생하는 환자수는 많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 죽은 사망률은 다른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질병들을 보통 소화기 전염병이라고 부르며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적리)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질병의 공통적인 감염경로는 인체의 배설물, 파리, 쥐,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일

어나며 이중 특히 중요한 전파물은 인체의 배설물이다. 즉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을 공급받을 경우 끓이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고 마셨을 때 앞에 언급한 소화기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장티프스는 밀집생활, 불결한 생활 및 식품의 조리 또는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호발하며, 증상은 고열이 계속되며 장미처럼 빨간 점이 온 몸에 생기며 관절통,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한다. 예방 및 관리방법으로는 매년 봄 가을의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음료수의 소독, 파리의 제거, 환자 배설물의 철저한 소독, 본인은 증상이 없으나 배설물에 균을 내 보내는 보균자의 색출 및 이런 사람들의 식품취급 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식사 전에 손발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콜레라의 전파방법도 장티프스와 비슷하며 증상은 쌀 뜨물 모양의 설사와 구토, 복통, 심한 탈수증이 생기며 심하면 근육경련, 의식불명 등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예방방법은 예방접종의 실시, 환자와 접촉한 자의 격리, 인분의 위생학적 처리, 급수소독, 식품위생, 개인위생의 철저 등 환경 위생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질은 코와 같은 점액 변을 누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다. 예방방법으로는 파리의 제거, 환자의 분뇨 소독철저, 물 또는 음식물을 끓여먹고, 야채류의 생식을 금지하며 손, 발을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하다.

2. 식중독(Food Poisoning)

식중독이란 세균 자체 또는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나 유해물질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주로 위장증세나 신경증세를 나타내는 급성질환을 통틀어 말하며 집단적으로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 화합물(化合物)에 의한 식중독, 자연물(自然物)에 의한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드물게 열(熱)이 날 수도 있다.

가.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물에 오염된 세균 자체에 의한 것과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독(毒)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 전자를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하며 후자는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말한다.

감염 경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식품자체가 오염 또는 감염 상태에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운반 도중에 오염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므로 식생활(食生活) 환경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전염병 못지 않게 문제가 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이며 원인식품으로는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우유제품들이 많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 6~48시간이 경과한 뒤에 앞에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장(腸)구균 식중독은 식사 후 4~5 시간 후에 발생하며 원인식품은 치즈,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식품에 많다.

호염균 식중독은 바다어류의 회, 말린생선 등에서 발생하며 원인균은 Vibrio균이며 증상은 콜레라와 유사하다. 작년에 신문, TV 등 매스콤을 통해 국민을 흥분하게 한 비브리오(Vibrio)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도 역시 Vibrio균이며, 역학(疫學)조사 결과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결핵, 당뇨병, 간기능이 저하된 40대 장년층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이 고막과 같은 어패류, 생선회 등을 날로 먹거나, 상처를 입은 채 수영을 한 경우 상처를 통해 균이 체내에 들어가 약 20시간 후 발병하게 되며 신체 외부조직이 썩는 등 패혈증을 일으켜 높은 치사율을 갖게 된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균이 자라면서 생긴 독에 의하여 발생하며 식사 후 2~6시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 감염원은 손 또는 인후(목구멍)에 화농성 질환-고름이 나오는 병-을 가진 사람이 조리하거나 취급하여 오염된 음식물, 우유 및 유제품 등에 의하여 전파된다.

보툴리즘(Botulism)은 식중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약 40%가 사망- 역시 균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신경성 증상을 나타내며 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호흡마비를 일으킨다. 감염원은 소시지, 육류제품이 대부분이며 특히 밀봉된 식품 및 통조림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통조림이 원래 모양보다 부풀었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구미(欧美)에서는 통조림을 집에서 가공하므로 멸균이 제대로 안된 상태가 많아 보틀리즘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독소형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높은 온도로 끓이거나 삶아도 독(毒)이 거의 없어지지 않으므로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아 불쾌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 가공제품 등은 섭식해서는 안 된다.

나. 자연물에 의한 식중독

자연물이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것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은 복어, 홍합, 굴 등이 있고 식물은 버섯, 감자, 청매(털 익은 매실) 등이 있다.

복어 중독은 복어의 생식기, 간, 창자(腸)에 많이 들어 있는 독(毒)에 의하여 발병하며 섭식 후 30분~5 시간 이내에 지각마비, 운동장애, 구토가 일어나고 중추신경계-특히 호흡기계-장애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한다. 복어를 음식점에서 먹은 후에 입, 또는 손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은 약간의 독(毒)을 섭취하여 생긴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홍합중독은 살시톡신(saxitoxin)이라는 홍합 속에 함유된 독에 의하여 발생하며 얼마전에 부산의 폐선 해체공장에서 15명의 공원(工員)이 사상자를 낸 것도 폐선 밑바닥에 붙어 있던 “담치”라는 홍합의 일종을 먹어서 발생한 것이다.

버섯중독은 독버섯을 먹었을 때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모양이 예쁘고 색깔이 화사한 것은 식용버섯이 아니다.

맥각 중독은 맥류에 기생하는 맥각균이 생성하는 독으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임신한 여인

의 조산,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감자 중독은 감자의 새싹이 나오는 부위, 또는 녹색을 띤 부위에 있는 독에 의하여 발생한다.

청매 중독은 술을 빚는 덜 익은 매실에서 발생한다.

다. 화학적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아연, 파라치온 및 메칠 알코올 등으로 식품첨가물 또는 용기, 포장기구를 통한 것과 농사철에 사용하는 농약의 중독시 발생한다.

따라서 영리에만 치우쳐 불법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장난감, 식품포장 용기 등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된 경우 장기적으로 중금속물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어 거의 체외로 배설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어떤 한계 농도가 넘으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식중독의 발생양상을 볼 때 식중독의 발생시기는 6월부터 증가하여 8월에 제일 많으며 9월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절기에 대비하여 이처럼 무섭고 다양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첫째, 생식을 금하고

둘째, 식품의 보존을 철저히 하고, 청결하게 하고 보관시간과 보관온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셋째, 식품의 생산 및 가공, 조리과정의 청결, 식품저장고, 취사장 및 조리기구의 청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식품을 취급하는 취사병은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손 또는 인후에 화농성 질환이 있거나 전염병 보균자 및 피부질환자 등은 취사병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은 공군규정 160-56 식품위생 관리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3. 열중증(熱中症)

열중증이란 고온(高温)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 임상증상(acute clinical condition)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분류방법이 다르나 임상적으로 열피비(heat exhaustion), 열경련(heat cramp), 열사병 (heat strok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세히 구분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환자의 증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류가 가능하며 군의관 또는 위생병이 아니더라도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열피비(heat exhaustion)은 계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된 결과로 발생하며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탈수현상이 동반되어 발생한다. 환자는 어지럽고, 피로감을 느끼며 두통을 호소하고,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오심을 호소한다. 외부적으로 체온은 정상범위,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진다. 피부는 습하고 때로는 덥거나 차다. 치료는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시키며, 소금을 가미한 부드러운 식사를 시키고 탈수가 심하면 군의관에게 연락하여 1,000ml 5% 포도

당 주사액 또는 식염수를 공급한다.

열경련은 고온환경에서 심한 발한을 동반한 중노동시 잘 발생하며 체내 NaCl의 현저한 감소 및 탈수가 원인이다. 주증상은 통증을 수반한 수의근의 경련 발작이 특징이며 현휘, 두통, 이명(윙-하는 소리), 호흡곤란 등이 있다. 예방법은 0.1% 식염수를 고온 환경작업자에게 마시게 한다. 1일 3~5gm의 소금을 섭취하면 되며 여름철 훈련시 소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는 즉시 군의관에게 연락하여 식염수를 주사하게 한다.

열사병은 체내의 땀을 내게 하는 기전의 마비로 체내에 열이 축적되고 체열조절의 실패로 발생한다. 체온이 급상승하며 중추신경의 장해를 일으킨다. 두통 현휘, 이명이 심하고 상태가 더욱 나빠지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체온은 상당히 높아지고 맥박은 빨라진다. 이 때는 체온의 하강이 급선무이므로 열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9°C 하로 내리게 해야 되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 찬물로 몸을 닦고 바람을 쏘이며 팔, 다리의 격렬한 마사지를 필요로 한다.

열중증의 예방책으로 정상인은 1일 소금의 소모량이 7~15gm이므로 음식물 이외에 소금정제 5gm~6gm씩 8회 복용을 하게 하고, 여름철 운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온에 노출시간을 적게 하며, 열중증의 예비증상이 보이면 즉시 쾌적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온환경이란 30°C 이상을 의미하며 33~34°C부터 열중증이 발생 가능한 온도의 범위로 생각된다.

수인성전염병, 식중독과 열중증 이외에 하절기에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일본뇌염은 어렸을 때 잘 생기나 청장년 층에서 발생시 치명적 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발생되지는 않는다. 예방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 하고,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한다. 모기의 구제 방법은 서식체의 제거, 방충망 또는 살충제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군대는 특수한 집단으로 젊고 건강한 청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므로 질병의 발생이 다른 일반집단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불결하거나 개인의 위생이 나쁠 때는 언제든지 앞에 언급된 질병들이 발생가능한 것이며 다른 전우들에게도 질병이 전염되어 환자 본인은 물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86년 하절기에는 장병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해나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공군전사(空軍戰史)의 영웅(英雄)

불멸(不滅)의 보라매
임택순 대위(任宅淳 大尉)



중위 흥성 범(洪性範)
<공군사관학교>

범하늘의 유성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명멸(明滅)해 갔지만, 조국의 안위가 흔들리고 민족의 생존이 경각(頃刻)에 달렸을 때 조국의 제단에 자기 한 생명을 기꺼이 바친 호국의 투사들은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빛나고 있다.

그 이름 임(任)! 택(宅)! 순(淳)!



F-51 무스탕 77호와 함께 적진 깊숙이 자폭을 감행하여 치솟는 화염 속에서 전 생애를 불살랐던 고(故) 임택순(任宅淳) 대위!

오늘도 영공수호의 산실인 보라매의 새 요람터에 우뚝서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을 희구하며, 불굴의 보라매 투혼으로서 후배들을 굽어보며 찬연히 솟아 있다.

약관 24세, 8,481일의 전 생애에 종지부를 찍는 1953년 3월 5일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된 “삶과 죽음이 명에 달렸으니 죽히 논하지 말라.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나아간다(死生有命 不足論 男兒縱容 征大空)”라는 문구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집념을 단적으로 나타낸 고 임택순 대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꽃같았던 그 생애의 첫 장은 1930년 12월 31일로부터 시작된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대사면 178번지에서 부 입학재, 모 민혜연 여사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덕수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어려서부터 매우 온순하였고 쾌활하였으며, 운동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태권도·기계체조·수영 등 각 종목에 뛰어나 선수로 출전하여 많은 기록을 세우기까지 하여, 만물박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재다능하였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 또한 극진하였고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다.

1949년 6월 10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다가 호국비천(護國飛天)의 응지(雄志)를 품고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하게 되었고, 생도생활의 바쁜 나날 속에서도 조용히 명상하며 정신수양에 힘을 쏟았다. 또한 인애정신(仁愛精神)이 뛰어나 단체행동에서 잘못되어 처벌이 내릴 때는 따뜻한 우정으로 동료들을 감싸주어 오히려 동기생들을 반성케 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임택순 대위는 학업면에서도 남다른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모범생도였다.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이 남침하자 외출나간 생도들을 비상소집하여 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원으로 야간행군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50년 7월 30일 대구에서 진해로 이동하였고, 9·28수복과 함께 성남중학교를 임시교사로 사용하였으며, '51년 1월 25일 제주도 모슬포기지로 이동하였고, 4월 26일 다시 진해 가교사로 이전하는 등, 이 때는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시기였다. 이러한 좋지 못한 여건과 전란의 와중에서도 꾸준히 학술교육과 비행훈련을 실시하여 1951년 8월 5일 역사적인 졸업식을 마치고 임대위는 전투 조종사가 되었다.

1953년 3월 초, 이 무렵의 지상전선은 휴전전선의 대진(對陣) 속에서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는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휴전성립이 가까워진 결전기(決戰期)이기 때문에 피아간의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반복되었다.

공산군의 인해전술은 더욱 더 극성스러웠다. 휴전성립과 동시에 군사적 이점을 장악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와 지형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마치 포탄대신에 인간을 투입하는 것과 같았으며, 이러한 인해전술은 중공군뿐만 아니었다. 동해안전선의 북괴 제7군단도 국군 제1군단의 방어 전면에 연일 대병력을 투입했으며, 국군 제 1군단은 남강계곡을 따라 편성

된 주저항선에서 북괴의 증강된 제7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351고지와 월비산(月比山)을 중심으로 가장 치열한 혈전이 거듭되고 있었다. 이 두 고지가 동해 안전선의 우열을 가르는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팽팽한 대결상을 이루는 지상전황에 따라 공군의 임무도 가중되기만 했다. 미국 지원의 F-51 무스탕전투기로 편성된 한국공군은 미 제5공군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로 한국지상군의 근접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동해안전선은 강릉에 기지를 둔 제10전투비행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었으며, 미 제5 공군의 출격으로 한국전선의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으므로 제공권에 대한 염려는 없다 해도,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적 대공포와의 대결은 더욱 가열되고만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0전투비행단은 고성(高城)으로부터 문등리(文登里)·금성(金城)·금화(金化)·철원(鉄原)·판문점(板門店)을 잇는 선의 북방전선에서 전투 중에 있는 우리 지상군과의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며 적에게 다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적의 보급품을 분쇄하여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적을 혼란상태에 빠뜨려 놓았다.

폭탄과 네이람탄, 그리고 소나기같은 기총소사로 적진을 강타하는 근접지원은 지상군의 공격과 방어작전을 염호하는 절대불가결의 임무인 것이었다. 따라서 보라매들은 나래를 쉴 사이도 없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출격해야만 했다. 특히 F-51 전투기편대는 주로 적후방의 물자집적 소와 고지 정상 또는 정사면(正斜面)의 적진을 때리는 포격의 사각(死角)지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대공포화에 의한 위험성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미7함대소속 함정들에 의한 함포사격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초토화작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괴군 제7군단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고성을 사수하라는 독전을 받고 기관총사수를 진지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월비산 방어를 돌려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기관총이나 실컷 살기고 죽자는 북괴군 최악의 발악에 국군 제1군단 공격일선 중대들은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공격 정면에는 반영구의 견고한 진지에 자동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보병화기로는 물론 박격포로도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상군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출격을 요청하게 되었다.

1953년 3월 5일, 하늘은 대체로 맑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끼는 날씨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릉기지에서는, 고성지구에서 적과 접전을 하고 있는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F-51 편대가 계속 이륙하고 있었다. 이날도 고성지구에서 분전하고 있는 아군 제5사단의 지상전투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임택순 중위는 10시 20분에 김만용(金萬鎔) 중위를 선두로 강릉기지를 이륙하였다. 4대의 F-51전투기는 적진 상공으로 진입하기가 무섭게 새로 구축한 적의 자동화기진지와 포진지를 찾아내어 단숨에 로켓탄과 기총소사로 파손시켜 놓고 4대의 편대는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

이 날의 일차 출격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조종사대기실에서 피로를 풀고 있던 임택순 중위는 15시에 제2차 출격임무를 받았다. 임무는 역시 1차때와 같이 고성지구의 적진을

강타하는 것이었다.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사생을 초월하는 그는 이학선(李學善) 중위를 선두로 기지를 이륙, 고성 상공으로 출격하였다. 편대는 적의 대공포화를 뚫고 적의 참호와 동굴을 파괴하면서 지상군에서 요청하는 목표를 강타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 애기(愛機) 77호에 서 내린 임중위는 동기생인 장창갑(張昌甲) 중위와 함께 전대본부로 발길을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다.

“임중위! 이번이 몇회째 출격이었지?” 장중위가 물었다.

“내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출격회수도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몇 회나 돼?”

“이번까지 10회를 기록했어. 그런데 왜 그것을 갑자기 묻나?”

임중위는 장중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임중위의 그 사격술이 너무나도 우수해서 물어본 거야. 하여튼 백발백중이더군. 나도 이번 출격까지 치면 20회가 넘는데 나의 사격술은 아직도 엉망이란 말이야”.

“별소리도 다 하는군”.

“별소리가 아니야. 나는 정말 임중위의 그 사격술이 부러워”.

장중위의 말 그대로 임중위는 사격술이나 조종술에 있어서 뛰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조종사였다.

1953년 3월 6일 금요일, 제10전투비행단이 지상군을 근접지원키 위해 나래를 쉴 사이도 없이 출격에 이은 출격으로 바쁜 작전에 임하고 있는 이 공군기지의 새벽은 창망한 동해 수평선의 면 공애(空涯)에서부터 밝기 시작한다.

날씨는 어제와는 달리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임중위는 이날도 역시 먼동이 트는 이른 새벽에 기상하여 피난지인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 요배를 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무사히 출격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제국 중위는 충분한 수면 뒤에 맛보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해맑은 새벽공기를 실컷 마시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바닷바람이 세차게 밀어닥쳤다. 창문을 도로 닫아야 했다.

“하필이면… 오늘 따라 바람이 사납다니….”

기지 주변의 키 큰 포플러들이 휘청거리고 있었다. 꽤 강한 바람이었다.

“잘 잤나? 이중위”. 임택순 중위의 귀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굿모닝! 임중위”.

“뭘 보고 있나?”

“저걸 보게나. 과히 좋은 일진은 못 되는데”.하고 이제국 중위는 창 너머로 포플러를 가리켰다.

“응! 보통이 아닌데. 자네의 99회 출격의 날인데 말이야”.

임택순 중위의 표정도 밝지 못했다. 매일처럼 한 편대에서 출격을 거듭하고 있는 두 사람은 남달리 친했다.

“글쎄 말이야. 하필이면… 하지만 99회보다도 오늘의 출격이 보통은 아니겠는걸”. 이재국 중위는 자신의 출격 99회 기록보다도 편대장으로서의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공군의 주전기종(主戰機種)은 일명 “무스탕”이라는 F-51형 전투기였다. 제2차 세계대 전때의 미공군 주전투기였는데 프로펠러기였으므로 역시 강풍의 영향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제10전투비행단은 편제상의 승격을 자축했다. 그러나 조출한 자축이었다. 출격에 쫓기고 있는 근접지원의 임무때문에 이 기쁜 날에도 맥주 한 잔씩을 나누었을 뿐, 작전상황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날의 출격목표는 351고지의 정사면(正斜面)을 비롯한 그 일대 적진이었다.

전날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괴 제7사단의 추진보급소에 새로운 물자가 쌓여 있다는 것이었다. 탄약을 비롯한 장비보강을 서두르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머지 않아 대규모의 공격으로 나올 징후인 것이다. 사전에 강타해야 할 목표였다.

그런데 상황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보라매들의 표정은 저절로 굳어지기만 했다. 공격목표가 너무나 잘 알려진 난소(難所)이기 때문이었다. 깊은 계곡에 묻힌 곳이었다. 남강이 북류하면서 깊게 굽이져 그늘진 사각(死角)을 파 놓고 있기 때문에 대지(對地)공격의 기수를 내리꽂는 순간부터 아슬아슬한 여려 고비를 겪어야 하는 “마(魔)의 난소(難所)”인 것이었다.

더구나 지형이 고약할 뿐만 아니라 상황설명에 따르면 “적은 대공화력을 대폭 증강했으므로 오늘의 출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주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재국 중위와 임택순 중위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임중위! 조심하게. 오늘은 보통이 아니겠는데….”

“자네야말로 조심하게, 이중위! 1백회 출격의 바로 일보직전이 아닌가!”하는 대화로 눈길을 주고 받았다.

서로의 무운을 비는 전우끼리의 마음이었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약할 수 없는 보라매들의 무언의 대화이자 격려인 것이었다.

“최근 적의 움직임에 비추어 이 일대에 대대적인 추진보급소를 증강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상전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때리지 않을 수 없다”

단장의 상황설명에 이어 출격편대가 지명되었다. 이재국(李載國) 중위와 임택순(任宅淳) 중위, 고광수(高光洙) 중위 및 다른 또 1대의 4기가 제1편대로 출격케 되었다.

동해의 바람이 만만치 않은 기상(氣象)이었다.

“임중위! 오늘은 몹시 흔들리겠는데. 조심하게”.

이재국 중위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임택순 중위의 어깨를 다정하게 껴안았다.

“자네야말로 조심하게. 1백회 출격의 일보직전이 아닌가”.

임택순 중위도 전우를 격려했다. 이재국 중위는 이날로써 99회의 출격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1회만 더 채우면 영예로운 1백회 출격기록을 세우게 될 소중한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출격이 시작되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편대들은 계속 활주로를 이륙하여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임중위는 전우들의 비행기가 출격할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손을 흔들며 무사귀환을 벌었다.

그러던 11시 10분, 임택순 중위에게도 드디어 출격임무가 내려졌다. 이재국 중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4기 편대는 프로펠러 소리도 우렁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출격했다. 편대장 이재국 중위의 애기(愛機)는 제71호, 제2번기인 임택순 중위의 77호기, 고광수 중위의 애기(愛機)와 또 한 대의 4번기인 은익(銀翼)도 찬란한 편대를 이루었다. 티 한 점 없이 맑게 개인하늘. 우측으로 펼쳐진 동해의 푸른 바다! 이날따라 모든 자연경관이 임중위에게는 신비롭게만 보였다.

고도 7천 피트를 취한 편대는 일로 북상했다. 태백산맥의 우람한 줄기가 왼쪽 아래로 바라보였다. 잠시후 한 줄기의 흰 피처럼 계곡을 누비는 남강이 시야에 들어왔다.

“전기(全機) 들어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돌입시에 목표 주변의 역기류와 적의 대공포화에 주의하라!” 편대장 이재국 중위의 목소리가 각기(各機)의 리시버를 힘차게 흔들었다.

이미 여러 차례 겪어 본 일이지만 남강유역은 그 깊고 굽이진 계곡으로 인해 역기류가 극심했다. 기류의 마소(魔所)인 곳이었다. 동해바람이 태백줄기에 막혀 이 비좁은 계곡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역조에 휘말리는 선박처럼 비행기도 이 역기류에 걸리면 방향유지가 어려워진다. 편대는 10분도 못되어 351고지를 눈아래에 굽어보게 되었다. 고봉리 산악지대 상공에 4대의 편대가 진공했을 때 임중위는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피아간의 지상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준령과 준령 사이의 계곡은 포연으로 가득했다.

특히 목표 주변의 산세는 F-51 전투기가 급강하한 뒤에 기수를 쳐들기가 어려운 지형이었다.

목표 상공에서 대기 중이던 모스키트(정찰기)한 대가 양 익을 흔들면서 예광탄을 발사했다. “전기(全機) 들어라! 목표유도를 주시하여 목표를 잡아라!” 편대는 즉각 종형으로 바꾸어 목표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였다. 모스키트의 예광탄이 다시 목표를 가리켰다. “각기(各機)의 무운을 빈다”. 이재국 중위의 제1번기는 두번째의 예광탄이 가리키는 목표를 향해 기수를 내리꽂았다. 이어 임택순 중위의 2번기도 뒤를 따랐다. 기체의 진동으로 봐서 역기류가 극심함을 직감했다. 조준경 가득히 떠오르는 목표, 상자며 달구지의 무리가 미처 은폐되지도 못한 채 폭격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내리꽂는 기수의 조준경 가득히 목표물이 커갔다. 기관포의 버튼을 잡으며 고도계를 주시했다. 계기판의 고도계는 6천 피트에서 5천으로 다시 4천 피트로 내려가더니 마침내는 2천 피트를 나타냈다. “받아랏” 가슴 속으로 외치면서 버튼을 눌렀다. “뜨르르” 장쾌한 연사음과 그 진동, 1천 5백 피트에서 기수를 치켜드는 바로 눈 앞에 산마루 하나가 크게 다가왔다.

아슬아슬하게 그 가장자리를 스치고 상승선회를 이탈해 나갔다. 생과 사가 순간에 달린 곡예와도 같은 급상승이었다. 그 뒤를 이어 3번기, 4번기 순으로 250파운드의 폭탄을 한 개씩 투하했다. 계곡을 단번에 뒤흔드는 파열음과 더불어 네 줄기의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전기(全機) 들어라! 이번에는 네이팜을 갈긴다.” 상공을 크게 선회한 편대는 제1번기를 선두로 다시 기수를 내리꽂았다. 네이팜단의 유성화염이 불바다를 이룬 뒤에 기총소사로 목표 일대를 휩쓸었다.

굉음(轟音)과 진동, 그리고 섬광과 더불어 화염이 난무하는 속에서 아비규환의 단말마를 부르짖는 적은 쥐구멍 찾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보급소 주변의 대공화력만은 만만치가 않았다. 제1차 돌입때부터 맹렬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편대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제2번기인 임중위는 이러한 대공화기의 소재를 눈여겨 주시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도 한시바삐 그 대공진지를 파괴해야만 했다. 편대는 다섯 번째의 돌입에 들어갔다. 숨돌릴 사이도 없는 돌입의 연속이었다. 편대장 이재국 중위에 이어 제2번기인 임중위는 기수를 숙이는 순간부터 뚜렷한 표적을 겨누고 있었다. 가장 치열하게 발악하는 대공화기진지였다. 보급소의 서쪽에 나지막하게 덩어리진 언덕배기에 있는 고사 기관포진지였다.

사대(砂袋)를 둉글게 쌓아올린 원형의 진지, 선두의 제1번기를 향해 또다시 두 줄기 화선(火線)이 치솟기 시작했다. “두고 봐라.” 임택순 중위는 기관포의 조준경에 원형의 진지를 담아 그대로 급강하해 나갔다. 순식간에 커지는 표적, 총구를 급히 돌려대는 적들은 분명히 당황하고 있는 몰골이었다. 고도가 마침내 3천 피트에 이르렀을 때 목표는 선명해졌고 “이때다.”라고 외치면서 임중위는 그대로 트리거를 당겼다. “뜨르르르” 장쾌한 속사음과 더불어 무수한 탄환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적진을 쓸어버렸다. “명중! 성공이다” 쾌재를 부르며 가수를 올리는 순간이었다. “앗” 임택순 중위는 호된 충격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기체의 조작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피탄했구나”하고 직감하며 고도계를 보았다.

3천 피트였다. 조종간을 다시 앞당겨 우선회로 기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우향타가 파손되었는지 계속 기울기만 했다. 뿐만 아니라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퍼지더니 실속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 번, 네 번 기체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고도는 이미 천 오백 피트로 떨어지고 있었다. “임중위! 애기를 포기하고 기상탈출하라!” 임중위의 애기(愛機)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본 편대장은 임중위에게 기상탈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임중위는 모든 것을 각오했다. 침착하게 각기(各機)를 호출했다. “여기는 2번기! 피탄으로 조종불능! 적진에 자폭을 감행하려 함! 편대장 이하 전우들의 무운을 빈다!” 그 직후, 임택순 중위는 일전직하로 적 보급소가 위치한 계곡을 향하여 기수를 내리꽂았다. 순간 요란한 폭음이 고봉리 산악지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굉음(轟音)과 더불어 치솟는 화염 속에서 그의 넋은 유성처럼 한 줄기 빛을 발하며 승화하였다 것이다.

임택순 중위는 이렇게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24살이란 꽃다운 청춘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

해 푸른 창공에 아낌 없이 바치며 한 떨기 희생화로 산화하였던 것이다.

1953년 3월 6일 고광수 중위의 일기에는 “전우를 그리는 이 마음, 무엇으로 형용하겠는가? 아침에는 그렇게도 활발하던 임택순 중위가 영원의 객이 되어버렸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애기(愛機) 77호와 더불어 351고지에 불덩어리처럼 자폭하던 그 순간의 그 모습, 초로 인생 이라니, 그대여! 고이 잠드시라!”라고 적혀 있다. 어찌 고광수 중위만이 동료를 잃은 단장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이곳 성무대에 우뚝서서 늠름히 창공을 응시한 채 조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임택순 대위의 살신보국의 충정은 보라매의 새 요람터에서 조국수호의 기량을 갖고 닦는 후배생도들의 가슴에, 임대위의 고향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에 사는 외삼촌 민진현씨의 가슴에, 이제는 멀리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민간 어머니 민혜연씨와 임대위의 형제들 마음 속에, 그리고 온 국민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보라매 혼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아시아는 86으로

세계는 88로

음악적 청취(聽取)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방법(諸方法)의 고찰(考察)



최인봉 (崔仁鳳)
<월간음악 편집주간>

목 차

- | | |
|----------------------|--------------------|
| 1. 지각(知覺) 개념(概念) | 11. 습관과 연습 |
| 2. 평균율 체계 | 12. 개인적인 체험상태 |
| 3. 이명동음적(異名同音的) 혼동 | 13. 작곡가의 개성에 대한 인식 |
| 4. 원시적 정신상태와 예술가적 소질 | 14. 신문을 통한 암시 |
| 5. 이국음악(異國音樂)의 청취 | 15. 소박한 청취와 반성 |
| 6. 분석적 청취와 종합적 청취 | 16. 객관적 판단 |
| 7. 배음(倍音)의 청취 | 17. 음향학적 사실들 |
| 8. 절대음감(絕對音感) | |
| 9. 상대음감(相對音感) | |
| 10. 귀울음(이명(耳鳴)) | |

흔히 일반 대중들은 가요를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편해서 좋아한다고들 말한다. 반면 고전음악이나, 우리 국악(國樂) 등은 난해하다고 하여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하고 반문한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다. 즉 자주 접할 수 있고 음악적 구조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가정(假定)이지만 우리가 어릴적부터 국악(國樂)만 들어 왔다면, 지금의 가요나 동요형식 보다는 국악이 더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시중에는 많은 형식의 음악들이 나돌고 있다(가요, 가곡, 클래식, 팝송, 군가, 국악 등……). 그러나 이 모든 음악을 그 구조나 형식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습관을 갖기란 힘들겠지만 일단 잘 이해함으로써 비단 청취뿐만 아니라 음악 창조행위(創造行為)까지도- (작곡, 연주 포함) 가능할 것이다.

본 고(稿)에서는 주로 음악적(音樂的) 청취능력 향상을 위한 사실적(事實的) 이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지각(知覺) 개념(概念)

사람들은 특히 공개적 비평에서 음악작품에 관해서, 그리고 모방적인 예술가에 의한 그것의 재현에 관해서, 드물지만 청취(Hören)와 이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일삼는다. 이렇게 하여 사태에 관련된, 그러나 실상은 인간적 개성에 그 제약적 판단의 상위(相違)가 성립하게 된다. 우리는 음악적인 것을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인 것을 고려한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태 만을 실제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도, 음악적 청취와 파악도 가능한 한 자세히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것은 미학은 지각에 관한 학설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각작용에는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상호 침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이기보다 개개인과 그의 개별적 지각내용과의 연관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개성적으로 형성된 시각적, 음향학적, 관념적인 상(像)을 갖고 있다. 여기서 재발견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한 종족과 어떤 시대(時代)의 특성, 인간 유형의 특성, 개개인 개성의 특성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각내용은 하나의 개별적인 특징만을 지니기보다, 오히려 ‘정상적 인상’의 주관적 변이는 경우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예술가에 있어서 주관적 변이는 비교적 높은 정도에 이른다.

2. 평균율 체계

우리의 현재 음악은 5도권에, 즉 방해받지 않고 전조(轉調)할 수 있기 위하여 오랜 기간 구성해 낸 체계에 의거한다. 그 표면적 목적은 C(다)장조에서부터 올라가 다시금 방해받지 않고 C 장조로 되돌아 오되 자연적으로 C장조를 벗어 나는 올림나(His-dur) 장조 쪽으로 향하지 않

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조율을 위한 노력은 건반악기(피아노, 하아모늄, 오르간 등)의 완성 증가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는, 단 하나의 음정 만이 자연적으로 순수한 것이 아니라 조율의 의미에서 보면 역시 불순(不純)하다는 사실이다. 아주 '순수'하게 조율된 피아노도 사실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실수없이 음을 맞추어 놓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조율의 허식에 우리의 귀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들리는 음정들을 오히려 불순하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직접적 지각기능으로서의 청각에 하나의 굴절이 발생한 것이다.

청취 속에는 이와 동시에 바하-칸트 아래로 음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思考)와 이해와 판단을 압도적으로 지배해 온 체계적이고 완결된 정신이 들어 있다.

3. 이명동음(異名同音)적 혼동

청취에 자유와 이해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것은 특히 이명동음적 혼동의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조율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건반악기나 여러 독주악기의 경우 Gb과 F#, C#과 Db 등등은 서로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진동수에 관계되는 객관적인 음향학적 사실이다. 이에 비해 화성론과 음악적 청취를 위해서는 그때마다 성립되는 하나의 중요한 구별점, 즉 그 속에 어떤 음이 덧붙여지는 제약의 관계가 주어진다. 이 사실은 조율된 음정들도 근원적으로 순수한 음정의 대변자가 된다는 데 기인한다.

왜냐하면 오직 이 조율(調律)을 위해서만 화성적 의미에서의 선행한 것에 대한 연속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화성적 요소들의 복잡성은 조성이 이명동음적으로 바뀌게 하였다. 물론 이 혼동에 기인된 하나님의 정신적 요소, 즉 실제 현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에 다른 의미로 주관적으로 들었던 것의 '고쳐 들음'에 근거한다.

4. 원시적 정신상태와 예술가적 소질

조율의 보다 발전된 문화단계에 있는 오늘날의 청취에 관한 것은 이미 고대나 어린이의 지각에서도 적용된다. 신화, 즉 자연의 신, 유령, 귀신에 대한 신앙은 부분적으로는 정신과 감각기능의 내적 일치에 근거한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알려지는 것들은 비록 객관적으로 거기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연 속에서 보여진다. 도도나(Dodona)의 사제와 옛 독일인들은 무성한 나뭇가지들의 부딪치는 소리에서, 인간이 제신에게 제기하는 질문의 대답을 들었다. 신탁(神託)이 가끔 울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독하게 살고 있는 사제의 무의식적 추측, 예감이 직접 지각속으로 들어가 보여지거나 들릴 수 있는 사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원시적, 어린이적 정신태도와 예술적 토대 간에 일종의 부분적 친족성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오늘날에도 화가들은 빈번히 환상적 분위기의 요정, 그로테스크한 인간(人間)

동물의 형상으로써 자신이 느끼는대로의 자연(自然)을 그린다. 음악가는 진정한 음악가로서, 새나 동물의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대도시의 소음을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해, 그 다음에는 그의 양식에 의해 음악적, 화성적, 리듬적으로 듣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뇌우와 폭풍우의 재현, 새소리 물소리의 음악적 재현을 각 시대양식에서 비교한다.

5. 이국음악(異國音樂)의 청취

모든 인간에 있어서는 지각과 그것을 초월하는 '고쳐들음'이라는 능력이 존재한다. 이국적, 원시적, 어린이적 방식을 연구하는 자에게 이것은, 특히 그가 강렬한 예술적 자세를 취할 때, 불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은 이국의 어디에서나 알려진 조성적 김각 안에서 무조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그 정당성과 가치가 의심스러운 혼합 문화(文化)가 생겨나는 것이다. 독일적 방식에 따른 중국민요라든가 프랑스식(式) 인상주의의 유형에 따르는 이집트나 인도의 조곡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원래의 아르메니아(Armenia) 와 터키·아랍의 방식들은 조성적으로 조율하고 화성화한다면 그것들이 갖는 인상들 중 자극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양식적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

6. 분석적 청취와 종합적 청취

또 다른 종류의 '고쳐 들음'은 바로 이런 행위에 관한 신문 평론가들의 판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야기시키는 근거가 된다. 일군의 평론가들은 보다 분석적으로 듣는다. 테크닉상의 작은 실수가 인상을 망쳐 놓는데, 실수를 실수로 인지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없이 잘 연주된 부분마저 실수가 침투된 것으로 들으며 전체를 유죄판결내리게 된다. 다른 일군의 종합적 태도의 평론가는 자연적 태도에 있어서 전체적 인상에 깊이 침잠하므로 사소한 실수는 대체로 듣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열정적, 감동적 연주의 마력에 끌려가고 이런 방향으로 해석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저급한 연주에서 위대한 대가의 정신과 양식을 엿듣는 음악 애호가들의 드물지 않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훌륭한 예술가들로부터 전축이 비예술적이며 유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듣는다. 모든 종류의 연구목적을 위한 전축의 의의(한 작품(作品)에 대한 작곡가들의 다양한 해석, 이미 죽은 성악가의 노래 기법, 외국음악의 고정화와 접근가능함)는 전혀 도외시한 채 그런 견해는 재현의 기술적 실수를 들을 수 없다는 것과 연주자를 통해 작품과 그의 해석만을 지각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7. 배음(倍音)의 청취

청취에 있어서의 분석적 요소와 종합적 요소는 서로 혼자하게 구별되는 영향력있는 해석과 판단의 경우에서도 분리된다. 특수한 유형의 분석적 청취는 자연적 배음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예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귀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데, 즉 비교적 단순한 악절에

서와 단순한 악기의 음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합음이 오르간에서처럼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료성과 일목요연함이 잘 관찰되지 않고, 소음에 가까운 혼잡스런 음들만 있는 것이다. 반면 이 특수한 능력이 존재치 않는다면 귀는 배음과 그 윗 배음을 전혀 알아 들을 수 없거나 알기 힘들어 이 위험은 월씬 경미한 것이되며 일목요연한 인식·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탄주나 취주에서 생겨나며 우리에게는 습관상 명료하지 않은 여러 소음들의 합성작용에도 역시 적용된다.

8. 절대음감(絕對音感)

때로 분석적 청취능력은 ‘절대음감 소유자’에게서 발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연주된 음만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이를 불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청취를 노래와 휘파람을 통해 방향지운다. 이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높은 정도에 도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별적인 음들을 그것들의 절대적 음높이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인식되는 근음 위에 세워지는 화음을 규정하는 극단적 경우가 있다. 아마도 그런 식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습을 통해 감소될 수 있으며 보편적 정신상태를 위해 대리적 의의를 소유할 만하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소유한 사람에 있어 이것은 음악적 청취와 해석의 한 구성요소이다. 그런 인간은 이것을 통해 장단점을 취한다. 그는 청취 중에 즉각적으로 조성(음조)을 인식, 평가하며 작곡가에 의한 이것의 적당한 사용에서 작품의 장점을 발견한다. 전조(轉調)는 그에 있어 화성적으로 멀어져 감에 따라 특징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출발점과 절대적인 목표가 조성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C장조에서 F #장조에의 이행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F장조에서 B장조에의 진행과 같다. 악기들의 절대 음높이도 그에게 교란적 영향을 끼치는데 이 경우는 오늘날 더 빈번히 일어난다. 왜냐면 우리가 a' =435 진동수라는 보편적 규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에서 피아노가, 현의 파열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기술적인 이유들로써 이 음높이에의 조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소한 음높이의 편차가 노랫소리나 합창에서 눈에 띠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능력(절대음감)이 소유되지 않은 음악적인 면은 많은 불쾌감이 생겨날 수 있다. 절대적 귀가 갖는 또 다른 손해를 살펴 보자. 노래나 연주에서의 이조(移調)는 특히 유명한 작품을 다룰 경우에는 매우 힘들다. 노래 연주상의 이유에 의해서 다른 음조로 이조되어지는 그런 작품을 듣는 경우, 불쾌감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이질감이 생겨 나서 객관적인 감상과 평가가 불가능해질 때가 있다. 이 점은 음악평론가에게도 중요한 사실이다.

9. 상대음감(相對音感)

절대적 음감과 대비되는 것이 상대적 음감이다. 이것은 절대음감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며 위 대항 예술 창작과 감상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첫음을 알았다면 나머지 음진행을

인식할 줄 알고, 화성적으로 가까운 혹은 면 음조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화음을 그 본질적 요소에 의거, 분석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실제적 음악가의 부류에 속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능력에는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는데 연습을 통해 많이 보완될 수 있다. 만일 이 능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발달된 것이면 감상하는 작품의 특성과 멎에 대한 이해를 보증하게 되고 반면에 이 능력이 미약하고 미발달된 것이라면 우리 음악의 근본형식들이 전혀 인식되지 않거나 겨우 초보적인 것만 인식된다. 그때는 완전한 청취가 불가능하다. 이 상대음감이 절대음감보다 이조(移調)와 화성 진행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10. 귀울음(이명(耳鳴))

모든 청취는 중심을 향해서 통해 있다. 누구든 양쪽 귀에 음들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안다. 이런 주관적이며 외계(外界)의 자극과 무관한 음들은 높고 깊게, 크고 작게, 길고 짧게, 지속할 수 있다. 청각의 혼란이 없는 한 몇 초 동안 지속되며 쾌적하게 울린다. 12개의 관용적인 장음계의 모든 단계에 대해 나타나는 음들을 하나의 합계가 생겨 나도록 합산하면, 하나의 5도권의 도식 내에서 이 값들이 종선(Ordinaten)으로 기입되며 그래서 C장조보다 밑에 있고 F장조보다 위에 있는 대칭적인 곡선이 하강한다. 이 곡선의 최소값은 C와 F 및 F#과 B의 쌍방의 유품화음 위에 있다. C장 음계의 음들이 가장 많이 청취 가능한 데서 출현하며 다른 것들의 출현빈도는 5도권의 멀어짐과 함께 감소한다.

11. 습관과 연습

음악적 청취는 또 다른 요소들, 즉 여태까지 언급된 것 보다 더 깊이 인간의 정신상태 속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한다. 물론 이 경우들도 다시금 더 단순해지거나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것은 계속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청취에 있어 우선적으로 습관과 연습의 요인은 중요한데, 하나의 작품이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을 준다는 것은 어려워서, 즉 최초의 인상은 감격아니면 그 반대인데, 수차례 청취, 직접연주, 혹은 가려냄으로써 실질적 파악과 최선의 청취가 생기는 것이다. 걸작품들도 계속 들려지고 연주되어 외워지면 인상이 무뎌지고 싫증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최선의 조건은 적당한 휴지(Pause)를 파악하여 청취를 지속하는 것이다.

12. 개인적인 체험상태

한 작품은 개인적 삶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청취된다. 그것은 지속적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잡다한 요소들과 연상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전체적 정신상태의 상징적 소지자가 된다. 그와 함께 동일한 작품에 대한 모든 앞으로의

청취를 위해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감응력이 성립된다. 각(各) 사람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소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체험 통일체가 형성되며 근원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상이한 요소들이 하나의 생생한 통일체로 융화될 수 있다. 그 결합은 그것 자체가 재현의 어떤 일정한 형식에 부착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인상들이 하나의 템포, 리듬, 다이내믹, 악절구분과 연결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러한 기초에 근거한 나중의 인상은 처음의 인상과 같지 않은데,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취 자체는 순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정신태도에 의해 조절된 것이다.

13. 작곡가의 개성에 대한 인식

음악의 유형은 경험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 개인적, 편파적 성격을 띤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작곡가의 개성, 운명, 감정, 행동, 음악관 혹은 여타 문제들을 보는 관점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청취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이유 있는 일인 것이다. 그것들은 아무에게나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사람들에게 읽힌다. 이를 통해 그것은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만들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베토벤의 완고성, 반항심, 충돌성을 그의 삶의 역사에서 알게 된다면 이 대가(大家)의 절분법(節分法), 그의 양식상의 강렬한 대상성이 완전히 다르고, 명료하게 들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들이 나타난다. 슈베르트의 요절(夭折)은 그 자체로는 멜랑콜리한 것이 전혀 없는 많은 가곡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예감으로 가득찬 것으로 들리게 한다. 바하의 경건하고 프로테스탄트적인 확신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그의 전주곡과 푸가에 담겨 있으며 바그너의 낭만주의적 형식들은 그의 개인적 삶을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겉치레하고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든 질적, 양적으로 해를 끼치는 판단들도 비음악적 계기에 근거하는데 모든 음악의 추상적 성격을 놓고 볼 때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다. 가령 어느 유명한 학자가 우리와 동시대의 아주 유명한 작곡자의 작품을 ‘매우 단순하다’고 평하고 또 다른 이의 것을 ‘매우 심오하다’고 평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현재의 공개적 비평도, 이러한 경우의 역사도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14. 신문을 통한 암시

모든 사람이 영향받는 암시도 청취와 해석을 위해 중요하다. 어느 대가가 신곡을 초연한다는 신문, 잡지의 광고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긴장과 호의적 기대로 가득차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회의와 억제를 불러 일으킨다. 두 사람은 듣고서 나중에 신용있게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그들의 귀와 비평은 이미 선결(先決)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쇄된 프로그램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존경하는 대가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바하의 귀, 베토벤, 슈베르트, 혹은 슈만의 귀로써 듣게 하며 반면에 유명하지 않은 ‘신인의 이름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귀를 억제되고 소극적인 수용기관으로 만든다. 통보되지 않고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면 직업적 비평가는 곧잘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의 실례는 흔하게 나타나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레거와 말러의 작품들을 발견하고서는 미리 두 대가의 차이점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어떤 외적인 이유로 레거만 연주되고, 마지막 순간에 유명한 작품 하나가 연주되지 않는 경우를 당하는 평론가의 운명을 우리 각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취는 하나의 복잡하고 정신이 관통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5. 소박한 청취와 반성

예술은 언제나 직접적인 것이며 무반성적으로 취해지길 원한다. 꼬치꼬치 따지는 사고작용이 시작되면 청취도 해를 입는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고작용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 소박하고 직접적인 청취자란 음악 자체도, 이론도, 음악사(史)와 음악 미학(美學)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엄격한 논리적 사고활동(思考活動)이 작용(作用)하는 것을 찾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근원적이고 소박한 체험이 음악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데서, 인간(人間) 전체가 음악에 전념하여 오로지 음악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러나 오래고 근본적인 사고활동이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소박한 청취가 더 높은 단계에서 성장하는 데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한다. 이 가장 섬세한 예술은 실제적 단계뿐만 아니라 사유적 단계를 통해서 그 후광이 획득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이 견해는 단지 청취는 탐구적 비판적인 제2의 단계(이것을 통해 청취가 세밀히 눈구되어야 한다는)에 들어 있다는 것의 표현일 뿐이다. 진실로 예술적 소양이 있는 자에게는 제3의 단계가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생긴다. 음악은 인간 정신의 가장 섬세한 부분을 배려하여야 하며 오성(悟性)이 음악을 해부하기 전(前)에 우선적으로 부드럽고 무비판적이고 소박하게 청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적 비평가는 영원한 분열로 차 있다. 그는 더 이상 소박하게 음악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경청해야 되고, 이해·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념적으로 개전하여 이해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원하든, 아니든 문헌에서나 발견되는 하나의 용어법을 강요받는다. 이 말하기 곤란하고 정의내리기 힘든 인상을 쉽고 감미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대가와 그의 작품에서 가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펴보이기 위하여 이해가 힘든 개념들과 아주 특수한 비유와 상징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비평가는 소박하게 체험해서는 안되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갖는 셈이다. 정신과 기지, 경험과 지식을 풍부히 갖고 있는 훌륭한 비평가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

는 것과 자신들의 인간 됨됨이에 보편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소박하고 선입견에서 해방된 청취자는 아니다. 이미 그들은 수년 동안 자신의 용어학적 재물을 순전히 개인적, 개성적 성격의 비유적 개념들을 만들어 왔고 이 도식 속에 예술이 환대 또는 멸시받는다.

16. 객관적 판단

음악을 정당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시대 양식에 공정하고 음악으로 하여 정신의 자연적 성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예술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될 수 있다 해도, 대가들과 양식들의 전 계열을 하나의 동질의 무리처럼, 객관적 실태의 규칙적인 세계처럼 관찰할 수는 없다. 누구나 개인적인 편애로 하여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며, 또 어떤 이는 모든 유명한 대가들을 승인한다. 부조니는 고대가 이론적으로는 침몰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천적으로 조율의 모든 형식들이 그의 작품에서 들을 수 있고, 사용되고 있다. 그의 도전적 시도는 그에 있어 진보요, 독창성, 이상이었다. 고대에서 사용된 형식들은 그를 지루하게 하여, 그의 자유롭고 야생적, 무형식적 판타지는 현대 작곡의 다소 혼돈스런 무질서에서 장래를 위한 무한한 풍족과 가능성을 주었으며, 그는 청취로써 그것을 이해했다.

17. 음향학적 사실들

청취는 처음 보기엔 음향학적이기만 하나 자세히 보면 지각개념의 복합적, 중심지향적인 것에 관련되는 요건이 있다. 오늘날 조율된 음체계는 특수하게 획득된 전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① 귀의 청취영역-평균적으로 11옥타브에서 12옥타브까지를 음향학적으로 파악하나, 피아노의 경우 단지 7 옥타브가 사용되며 이 범위는 지각 가능한 전체음계의 낮은쪽에 치우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낮은 음들(아래 이점음 A#~C)을 높은 옥타브에 있는 음들과 무게, 중력측면에서 동가라고 볼 때, 하나님의 균형과 대칭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② 옥타브 내의 영역(1점음(點音) 옥타브)-사용범위 내의 첫째 옥타브는 미학적으로 볼 때 전체 음계의 균형영역이며, 실질적인 주가 된다. 또한 낮은 음과 높은 음에서 느끼는 속성(무거움과 가벼움, 안정과 유동, 진지성과 유희성 등)이 풀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_

③ 표준율-이 기점의 확정이 처음에는 1885년 ‘비인협정’을 필요로 하였다. 정위(定位)되지 않고 상대적인 청취는 음의 높낮이를 구별할 수도 있으나 단지 어느 한계 내에서이며 절대적인 점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절대적 높이(평균율에 의한)를 갖고서 어느 일정한 음조에 묶여 있는 작품들이 전혀 다른 음조로 들렸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평균율의 변동은 청취 및 그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바하 이후 표준율의 평균치를 따라 낭만주의 전성기에까지 정도가 심해져 갔다. 더 높은 조율을 우대하는 경향은 바그너 서거 2년 후인 1885년 표준율을 여태까지의 변동 중앙치에 고정시켰고 그것은 화성법의 위기극복, 중세 이

래 일면의 집중적 발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식은 사실상 새로운 가능성이 고갈되어 진 것 같으며 양식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④ 논의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음계의 음들-표준율 이외의 음들(인지되지는 않으나 역할있는), 가령 맨처음의 F음은 자연을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많은 물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에서 가장 낮게 인지되는 기본음이라는데 증명되지는 않았다. 대가들이 F장조하면 자연스럽고 전원적 음조로 생각하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음의 낮음은 무기력, 침강을 의미하고 높음은 상승, 고양을 나타낸다. F를 중심으로 9화음 F-C-G를 관찰한 확인들은 19세기의 ‘60년대, ’70년대에 서부터 낭만주의 전성기까지 〈트리ستان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시대까지 이루어졌다. F-C-G의 9도는 동일한 화음에서 전조(轉調)된 것 마다 그에 상응하는 기조(C), 상승(G), 하강(F)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낭만주의 전성기는 5도권과 그것의 화성악의 완성을 이루었는데 9화음은 이 완성을 대표한다. 낭만주의 전성기는 음악, 또는 음악가 개인에 한정될 수 없는 하나의 운동이요 정신태도였다. 그것은 그 전 시대를 지배하였으며, 동시에 살고 있는 대가와 더 가깝게 관계를 맺지 못한 귀에게도 개시(開示)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문제되는 음들의 주관성을, 우리의 음악에서 결정적 발전단계를 이루는 어떤 정신태도의 근저에 대한 경청을 응호한다. 그것은 그리하여 청취의 어떤 방법에 대한 체계의 기초와 함께 빛을 가져다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취」에 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 보았다. 이것들을 토대로 청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음악을 접하면 여러 형식의 악곡들이 보다 분석적이고 깊이있게 우리의 지각 속에 침투될 것이다. 음악을 알고 느끼는 제1의 단계는 청취이며, 올바른 청취의 습관이 있고 나서 더 발전된 평가와 모방, 창작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더 좋은 의미의 활력 소가 되는 한 방면으로 음악을 느끼게 되며 그 속에 침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구한말(舊韓末) 일·로(日·露)의 38선(線) 분할음모(分割陰謀)



박 현 종
〈호서 역사연구회 연구원〉

목 차

- I. 일·로(日·露)의 협상(協商)
- II. 웨베르, 소촌각서(小村覺書)
- III. 로마노프의 외교(外交)
- IV. 일제(日帝)의 38선(線) 분할제안(分割提案)
- V. 로마노프·산현(山縣) 의정서(議定書)
- VI. 분할음모(分割陰謀)의 반응(反應)과 여독(餘毒)

I. 일·로(日·露)의 협상(協商)

1896년(고종(高宗) 33년) 2월 11일 아래로 고종을 자기네 공사관에서 보호하게 된 러시아는 겉으로는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왕실만이 아니라 조선의 국정(國政)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전날 요동반도를 둘러싼 청·일 분쟁의 와중에 뛰어들어, 일본이 요동을 청국에 되돌려 주게 하고 그 뒤로 청국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던 러시아로서는 또 하나의 수확을 거둔 셈이었다. 이로써 극동 아시아에 팽배하던 일본의 세력을 일축한 러시아는 청국과 조선의 보호자임을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이다. 쇄국(鎖國) 조선의 문호를 가장 먼저 개방시킨 일본으로서는 너무도 어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국력이 좌우한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기엔 일본의 국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또오(이등박문(伊藤博文)) 내각은 러시아를 가상(假想)의 적국으로 정하고 10개년 계획의 군비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전국민에게 상비병 15만에 전시병력 60만을 목표로 한 대육군과 22만톤의 무적해군을 보유하자고 호소, 청국에서 받아들일 배상금과 정부 세출예산의 40% 이상을 그 확장비에 충당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군비확장의 열의가 고조에 이른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서울의 아관파천은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일蹴즉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 맞설만큼의 충분한 국력이 아닌 그들은 더욱 군비 확장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외교교섭에 의한 타협과 절충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도쿄, 서울, 모스크바 등 3개국 수도에서 일본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진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조선에서의 양국 세력의 균형을 위한 협상을 벌이려 하였다. 일본은 「조선국 독립의 공동담보와 내정의 공동감독」이라는 기초에 의거, 대(對) 러시아 협상의 기본방침 3개 조항을 통지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① 국왕(조선)의 환궁을 촉구하되 앞으로의 안정보장 ② 양국대표가 국왕에 권고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인사를 내각의 각료로 등용케 하고 ③ 유혈(流血)보복이 없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을 일본·러시아 양국이 공동보호·감독함으로써 서로의 세력균형을 이루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웨베르·소촌각서(小村覺書)

일본정부의 위와 같은 기본방침은 각서(覺書)형식으로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Hitrovo)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전달되어, 같은 해 2월 회답은 외부대신이 모스크바 주재 일본공사 니시에게 구두로 전달, 3월에는 문서화되었다.

그 내용은, 제1, 2항은 일본정부의 제의에 반대치 않음을 나타내고, 제3항, 양국의 대표자는 전선(電線)의 보호를 위하여 아직도 외국군대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선로(線路)에서 어

느 정도 군대가 필요한지 조사하여야 될 것이다. 제4항, 양국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 양국 공사관 및 영사관의 보호를 위한 조처에 대해 상호협의, 제5항 이상의 담판은 쌍방이 화협(和協)·절충하는 정신으로 추진할 것이다. 제3항 이하는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제안으로써, 전선의 보호를 구실삼은 일본군대의 주둔과 행동이 조선도처에서 반감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빚어지는 유혈충돌이 빈번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에 화협하는 정신을 잊지말자는 것으로서 일본정부의 신경질적인 기우에 반하여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관용과 아량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후일 「노·일전쟁」의 불씨가 들어 있다. 그것은 일본군의 조선 주둔 문제이다. 즉 일본군 철수시사를 적당한 구실 아래 시일을 끌려고 한 일본정부의 태도이다. 어쨌든 다음날(3월 3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동의회답을 발송, 당면한 조선문제는 ① 목전의 현실 시인 ② 금후공동 보조로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의 상호타협이 표면상으로나마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3월 4일 이또·히트로보 협상회담이 있고 구체적인 협약체결은 양국의 조선주재 공사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웨베르공사와 고무라 공사의 협상 진행으로 제1차 「노·일협정」인 「웨베르·고무라 각서(覺書)」가 5월 14일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1. 조선국왕은 단독재량에 의해 환궁할 것이나, 양국 대표자는 폐하가 환궁하더라도 안전에 대해 의구를 품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궁을 권고할 것이며, 이 경우 일본대표는 일본인 장사(壯士)의 단속에 엄중 조처를 취할 것을 보증한다.

2. 현직의 내각대신은 조선국왕이 자유의사로 임명한 인물이 대다수인 바 그들은 과거 2년간에 국무대신 및 기타의 현직에 있으면서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로 양국 대표는 폐하게 관대·온화한 인물을 내각의 대신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관인한 태도로 그들 신민(臣民)을 대할 것을 항상 권고할 것이다.

3. 조선의 현황으로는 부산·서울 사이의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하여 일본수비병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3개 중대로 편성된 수비병들은 가능한 조속히 철수시키며 그 대신 현병을 대구 50명, 가흥(可興) 50명, 부산·서울 간의 10개 파출소에 각각 10명씩 배치한다.

위의 배치는 변경할 수도 있으나 현병대 총수는 결코 2백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들 현병도 장차 조선정부가 안녕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각지에서 점차 철수할 것이다.

4. 조선인으로부터 습격 당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 및 각 개항장(開港場)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에 2개 중대 부산·원산에 각 1개 중대의 일본군을 배치할 수 있다. 단, 1개 중대의 인원은 2백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비중대는 각 거류지의 가장 근접한 곳에 둔영(屯營)할 것이지만, 조선인으로부터의 습격에 대한 우려가 없게 되면 철수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공사관·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도 위의 각 지역에 일본군의 인원수와 비

등하게 수비병을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비병은 조선 국내가 완전히 평온을 되찾을 때 점차 철수할 것이다.

이상의 각서 내용은 일찍이 「갑신정변」 직후에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또오·이홍장이 체결한 「천진조약」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청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였던 천진조약에 비해 이번의 제1차 협정을 비롯한 앞으로의 일·로협정은 반대로 일본에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천진조약 당시에 비해 보다 근대 제국주의에 성숙한 일·로 양국은 위의 협정을 공고히 할 생각은 없었다. 특히 일본측은 로마노프가 「만주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이권(利權)의 교사」에서 분석·지적한 대로 위의 각서가 「러시아가 차지한 승리는 명료하게 형식화된데 반하여 일본측에는 어떤 유리한 특권도 없는 협정」이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조인된 협정이었으나 일본측으로 보면 아무 소득도 없으므로 근대 열강세력의 일원임을 자처한 일본의 야망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근본적인 권리의 타협을 기도함으로써 조선의 식민지적 분할을 획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계기로 일본의 전권대사 야마가타 아리모는 로마노프(러시아 외상)에게 조선을 38도선에서 남북으로 분할·점령하자는 비밀 제안까지 강행하게 된 것이다.

III. 로마노프의 외교(外交)

1896년(고종(高宗) 33년) 5월 26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전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 세계 20여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초청장은 중국·일본·조선의 동양 3국에도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궁내부 특진관 민영환을 특명 전권공사로, 학부협판 윤치호와 김득련·김도일 등을 수행원으로 하여 대관식에 참석하였으며 청국정부는 이홍장(北洋대신) 일본 정부는 군벌의 거물 야마가타를 전권대사로 모스크바에 파견하였다. 낮에는 대관식을 위한 여러 의식과 축하행사가 진행되고 밤이면 당시의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의 용의주도한 배려에 의해 공개·비공개의 외교전이 불꽃을 튕기었다. 로마노프의 관심은 서쪽으로 발칸반도의 군소국과 동쪽으로 조선·청국·일본에 쏠려 있었다. 그 결과 후일에 알려진 로마노프의 동양 3국과의 교섭·절충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권 민영환이 제의한 원조요청에 대하여 조약체결이 아닌 회답의 형식으로 5개 조항을 약속하였다. ① 조선국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체재하는 동안 러시아 수비병의 호위를 받으며 환궁할 경우의 안전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도덕적 보증을 책임진다. ② 군사교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러시아 고급장교를 경성에 파견 조선국왕의 친위병을 편성하는 일을 맡게 하고, 재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③ 러시아 고문의 파견문제는 제②항에 따르며 ④ 차관약정은 조선의 경제상태와 조선정부의 필요 여부가 판명되는대로 기도(企圖)될

것이다. ⑤ 러시아의 육상 전신(電信)을 조선의 전신선과 연결할 것을 승낙, 원조 시행할 것이다.

둘째, 만주와 조선에 대한 일본세력 배제를 위해 시베리아 철도의 만주횡단을 위한 「동청(東清) 철도」 부설의 밀약체결을 서둘러 청국의 이홍장과 러시아의 로마노프 간에 유효기간 15년의 「청·로 밀약」을 조인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 일본이 기도하는 일체의 침략에 양국은 모든 육·해군 병력을 동원하여 상호원조함 ② 양 체약국은 그 적국에 대해 단독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③ 청국항만을 러시아 군함을 위해 개방·원조함 ④ 청의 길림·흑룡성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철도건설 인정 ⑤ 러시아의 철도사용 자유 ⑥ 본 조약은 15년 유효」 등이다.

이상의 밀약 제4조 규정에 의거 동청철도 회사가 설립되었다.

셋째, 로마노프는 조선과 청국에 이어 일본의 암마가따를 상대로 조선의 식민지적 분할을 위해 중대한 비밀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IV. 일제(日帝)의 38선(線) 분할제안(分割提案)

앞서의 언급대로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1차 노·일 협정체결에 이르긴 했으나, 일본 측에 불리한 것을 아는 일본은,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다소나마 보유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의 협상을 당면 실정이었다. 조선에 대한 러시아와의 권익분배나, 관계열강의 공동 간섭 아래 조선의 문호 개방과 권익 획득의 기회균등을 단행하든가, 아동든 러시아만의 독점지배를 배제하도록 절충·타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분할 음모가 러시아 측에 제의된 것은 같은 해 5월 2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와 암마가따의 제1차 비밀회담 석상에서인데 정치·경제·군사 등 주요 부문에 있어서 권익의 공동분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암마가따의 제의내용 중 지나칠 수 없는 중요사항은 제4항 5항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④ 현재 일본국 정부의 소유인 전신선은 조선국 정부가 이를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국 정부가 계속 관리.

⑤ 내우·외환 때문에 조선 국내의 안녕 질서가 매우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가 협의한 결과 전신선이나 거류민 보호를 위하여 조선에 파견된 군대 이외에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본·러시아 양국은 양국 군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각기 군대의 파견지를 분할하되 남부와 북부로 파견 양 군대간에 상당한 거리를 둘 것이다.

조선의 안녕 질서가 문란하다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구실로 전선이나 거류민보호를 위한 주둔군 이상의 군대파견이 필요할 경우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러시아 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남의 나라를 38도선 근처에서 남북으로 분할, 점거하자는 근대 제국주의 일본의 역사적(歷

史的) 흥모(凶謀)였다. 그런데 러시아의 태도는 일본보다 더 엉큼한 것이었다.

일본의 제안을 받은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는 「총돌회피」 운운에 대체로 같은 뜻을 표명하면서도 가부간의 확답은 잠시 보류하고 러시아 정부, 특히 군부의 견해를 종합 타진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로마노프의 「만주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이권 외교사」에 이렇게 요약되었다.

「조선국의 운명은 러시아 제국 장래의 조성지역(組成地域)으로 지리적·정치적 조건을 기초로 내가 판단 예정한 판도이다. 그런데 일본에 남부지역을 조약에 의해 양도한다면 러시아는 전략 및 해군군사관계상 조선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포기하여 장래 러시아의 행동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정러시아의 야심은 이미 조선의 전부를 침략, 독점할 예정이므로 서울을 포함한 그 남반부를 일본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노프는 같은 해 6월 4일의 제2차 비밀회담에서 위의 일본측 제안 가운데 제5조에 대하여 「남북」 2자의 삭제를 주장함으로써 장래의 자기 속박을 회피하려 하였다.

V. 로마노프·산현(山縣) 의정서(議定書)

1896년(고종 33년) 5월 28일과 6월 9일 일본대표 암마가따와 러시아의 로마노프 사이에 조선에 관한 밀약(密約)이 성립되자 그들끼리 작성한 의정서에 조인까지 완료하였다. 내용은 공개조관이 전문(全文) 4개조 비밀조관이 2개조이다.

1. 공개조관

제1조, 일본·러시아 양국정부는 조선국의 재정곤란을 구제할 목적으로 조선국 정부에 대하여 일체의 경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그 세출입의 평형을 보전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만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개혁때문에 외채(外債)를 모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선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제2조,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는 조선국의 재정 및 경제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외원(外援)을 빌리지 않고 조선국 내의 질서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선인으로서 조직되는 군대 및 경찰을 창설하고, 그 유지를 조선국에 일임할 것이다.

제3조, 조선국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전신선을 계속 관리할 것이다.

러시아는 경성으로부터 그 국경에 이르는 전신선의 가설권(架設權)을 유보한다. 또 조선내의 모든 전신선은 조선정부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는 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전기(前記)의 원칙으로서 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의(定義)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후일에 상의를 요하게 될 기타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양국 정부의 대표자가 우의적으로 이를

타협할 수 있도록 위임될 것이다.

2. 비밀조관

제1조, 원인 불문하고, 만일 조선의 안녕질서가 문란케 되든가, 장차 문란케 될 위구가 있으므로, 만약에라도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가 양국 신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전신선 유지의 임무를 소유한 군대 이외에 각기 합의를 얻어 군대를 다시 파견하여 조선관헌을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국정부는 그 군대 상호간의 모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군대와 군대 사이에 전혀 비점령(非占領)의 공지(空地)를 존치(存置)하도록 각 군대의 용병(用兵)지역을 확정할 것이다.

제2조, 조선국에 있어서 본 의정서의 공개조항 제2조에 게재한 조선인의 군대를 조직하게 될 때까지는 일본·러시아 양국이 동수(同數)의 군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권리에 관하여 웨베르·고무라 두 사람이 기명한 협정(假協定)은 그 효력을 보유할 것이며, 조선국왕의 신변보호에 관하여 현존하는 상태 또한 그 임무를 가진 조선인으로 호위대가 창설될 때까지는 모두 다 이를 계속할 것이다.

위와 같은 로마노프·야마가따 협정(協定)이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문제에 대한 일본·러시아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볼 때 그 공개된 내용은 앞서 웨베르·고무라 협정에 기록된 것처럼 「양국정부는 조선국 정부가 외채를 필요로 할 경우 공동으로 원조한다」라는 조항을 재확인한데 불과하다.

비밀협약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 제안한 38선에서의 남북 분할안이 표면상으로는 일단 거절당하고, 장차 필요에 의하여 공동 점거하기를 약속한데 불과하다. 그 약속마저 아주 막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지금껏 조선에서 차지했던 일본의 「우위」와 「특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고 그반면에 러시아가 새로이 획득한 권익은 조약의 명문규정에 의해 보장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의정서 조인을 마친 양국 정부 관계자의 술회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 역시 그것의 이·불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일본 측의 술회를 들어보면 의정서 체결의 주역인 야마가따 자신은 「비상히 선고·진력하였다」고 고백한다. 그와 함께 활약했던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니시 도꾸지로오는 보다 더 솔직이 고백해서, 그들이 조인한 「모스크바의 정서가 만족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었다」고 전제한 다음 「국왕의 환궁」이나 「조선병사의 훈련」 같은 중요 문제에 있어서도 뜻대로 용인되지 않으므로 「합의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의정서로 작성, 조인한데 불과하다」고 말한다.

러시아측 입장은 로마노프의 「만주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이권외교사」에 재무상 위례는 「지극히 성공적인 것」으로 전제, 「일본 측 대표자는 기꺼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재정 고문관을 임명치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세력분할이 확고하게 되었으니 소득이 컸다」고 과

시하였다.

다음은 그들의 비밀협정에 관한 후 일의 논평이다. 로마노프가 일본의 제안 「38선에서의 남북 분할안」을 표면상 거부한 점에 대해 랭거는 그 이유를 첫째, 미·영국이 그 분할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니 곤란하다. 둘째, 조선은 정치적·지리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예정된 판도로 남부의 요지를 일본에 할양할 수 없다. 세째는 조선왕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수차에 걸쳐 공언해 온 만큼 당장의 남북 분할안을 수락하기는 거북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 일본의 러시아 주재 공사 니시 도꾸지로오의 보고에서 보면 러시아의 태도에 관해 첫째, 지금 러시아로서는 단독·공동간에 조선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영국이나 기타의 세력과 예상치 못한 교섭을 갖게 할 뜻이 없었다. 둘째, 현재로는 일본과 함께 조선국을 남북으로 분할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장차 조선국의 독립이 유지될 수 없게 되든가 일본 세력이 강성해져서 항쟁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동분할」을 사양치 않을 것이다. 알고보면 문제의 「남북」 2자는 일본이 시험삼아 러시아에 던져본 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니시의 견해는 곧 당시의 러시아 태도가 실상 앞으로의 정세변동에 따라 분할·점거도 사양하지 않으리라고 일본에게 간파됐음을 알려준다. 또 후일 러시아 측이 38도선 분할을 제의함으로써 니시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이렇듯 조선에 대한 러시아측의 침략야욕이 지대하였음을 증언한 이외에 나시의 언명은 「시험삼아」 서라도 남북분할의 제안을 일본측이 감행했다는 것을 생생히 밝혀주고 있다.

실로 러시아와의 식민지 경쟁 때문에 일국의 왕후인 민후를 시해하고 한 나라의 국토를 양단, 분식하려 한 일본의 야망은 너무도 흉악한 것이었다. 더한 것은 후일 고종의 환궁(1897. 2월)이후에 내외정세가 변동되자 조선과 러시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재빨리 모스크바 밀약 내용을 조선 정부에 통보한 수법이다.

이렇듯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일본의 외교전이 불꽃을 튕기고, 또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충격적인 것임을 조선정부의 요로에선 얼마나 파악하고 대처했는가.

VI. 분할음모(分割陰謀)의 반응(反応)과 여독(餘毒)

민영환 공사일행이 특파사질로 모스크바까지 왕복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조국에 대한 중대 밀약이 민공사가 모스크바에 체재한 때 진행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듯 싶다. 조선 정부에 알려진 내용은 다만 의정서의 공개된 사항 뿐으로 일본 측이 제기한 남북 분할안 같은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일본 양국이 「보호」 운운한 점만이 어느 정도 알려져 당시의 유일한 「독립신문」에 실리고 논설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1. 1896년 (고종 33년) 5월 14일자 「독립신문」은 「외국통신」 난에서 「일본신문이 러시아·일본이 조선 일을 같이 보아주자고 하는 담판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였다」라고 보고, 처음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2. 같은 해 5월 16일자 논설에서 「보호」 운운에 관해 논박하였다.

근일 일본 신문들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같이 보호한다는 말이 많이 있으되 우리 생각에는 이 말이 실상이 없는 것 같거니와 원치도 않는다. 조선이 독립국이라면, 독립국으로 행세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할 것이다. 남의 보호국이 된다면 독립은 없어지는 것이다. 조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 조선 일을 임의(任意)로 몇 백년을 해 왔다.

근년에 청국이 원세개를 보내서 조선 정부의 일을 다 아는 척 한 것은 조선 정부에서 자청한 일이다. 일본과 청국이 싸운 후에는 조선이 독립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인 즉 일본의 속국이 됨과 같은 것이다.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모두 일본 공사관에서 조처하였으니 독립국에도 남의 나라 사신이 그 나라 정부의 일을 결정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우리 생각에는 조선이 조선인의 나라인 만큼 외국사람과 교제를 하더라도 조선 사람 생각을 먼저하고 외국 사람은 둘째로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다만 하나나 둘만 한다하여 나라가 잘 될 수는 없다. 전국 인민이 모두 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

3. 같은 해 5월 16일자에는 「러시아의 서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신문 노브스디가 보도하기를 러시아는 조선을 차지할 경황은 없으나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는 못할 것이다. 조선국왕이 환어하시고 정돈되면 러시아 군대는 서울에서 내보낸다」고 하였다.

4. 5월 28일자 「논설」 난에서는 일본신문이 보도한 모스크바 의정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평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이 근일에 조선일로 하여 담판을 가졌는데 내용은 첫째,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환어하시는 일. 둘째, 조선에 있는 일본 군사를 모두 돌려 보내는 일. 셋째, 일본이 조선에 놓은 전신을 모두 조선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만일 러시아와 일본이 이 세가지 일을 인연하여 작정한 후에 약속대로 조선 독립을 두 나라가 서로 밝혀서 한 나라도 조선독립에 해롭지 않게 하며, 만일 한 나라가 약속을 저버리고 무리한 일을 하려들면 또 다른 나라가 그것을 탄하여 조선을 도와줄 것이므로 우리는 이 약조가 잘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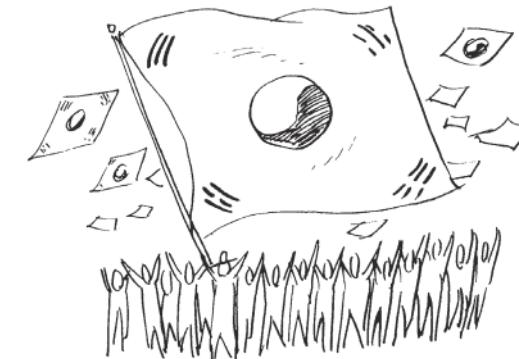
5. 6월 9일자 「외국통신」 난에는 논평없이 프랑스 신문에 말하기를 독일·영국·미국공사들이 러시아 외부대신 로마노프공께 시비하기를 러시아가 조선 일에 너무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시비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들이 실상 뜻을 들어본 것이요, 또 독일공사는 당초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조선 일 때문에 각국에서 조금지도 걱정이 없고 다 바라기를 러시아·일본이 합력, 조선 독립을 보존케 하고 또 국외(局外) 중립국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독립신문」 기사 및 논설 정도가 모스크바 협정(協定)에 대한 조선관민 상하의 대표적(代表的)인 지식이자 견해이며 또 주장이었음에 틀림없으니, 외지(外紙)가 보도한 「보호」 운운에 이의를 제기하다가도 공개된 그 내용을 보고는 국왕의 환궁과 외국군의 감병설에 찬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쉰 것 같다. 나아가 특파사절 민영환 공사가 귀국한 뒤의 「독립신문」 논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공사일행을 치하하고 러시아 장교

공군만평(空軍漫評)

〈8·15 광복절〉

새시대 새희망 광복정신 이어간다



의 초빙을 찬양하였을 뿐, 모스크바 협정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조선이 남의 나라처럼 사신을 보냈으니 양국교제상 매우 유익한 일이며, 둘째,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공사를 유럽에 보내 자주 독립국임을 알렸으니 나라의 경사이고 셋째, 러시아의 육군교사를 연어왔으니 조선 군사도 짜임새 있는 규모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조선의 관민 상하는 이렇게 러시아의 「호의」와 「우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군사고문이 모든 재정고문이 오든, 오로지 환영 일변도로 기울어, 이를 시기하는 일본 측은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일 것이며, 구미의 열강 역시 수수방관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협정이 공포된 이래 일본·러시아의 밀약 부분을 상세히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 된 세계 열강은 너나 없이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조선의 천연자원과 근대적인 이권을 상대로 격심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빈사상태에 이르도록 난맥에 빠진 조선왕조의 정부는 열강의 침략정책에 주권과 국토를 통틀어 억울한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위에 인용했던 1896년 5월 28일자 「독립신문」의 논설 중에는 「우리가 점장이는 아니로 되, 조선 정부에서 아주 발을 벗고 나서서 백성만 위하여 일을 아니한다면 몇 해가 아니되어 이것을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노라」라고 경고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편집후기(編輯後記)

○ … 토마스 카알라일은 수년에 걸쳐 집필했던 그의 역작 “프랑스 혁명사” 원고가 하녀의 실수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벽난로 속의 재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좌절과 실망은 극도에 달하여 삶을 포기하기에까지 이르렀으나, 어느날 벽돌공이 커다란 성채를 짓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각성 끝에 한 장씩 원고를 다시 써 내려가 후일 더 훌륭한 저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크고 엄청난 성과만을 기대하면서, 손 쉬운 일조차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착실한 걸음걸이가 허둥대다가 오래 주저앉는 것보다 훨씬 목표지점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숲을 볼 줄 아는 큰 눈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겨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굳은 소명감은 작고 하찮은 우리의 일과에서도 진주와 같이 귀한 이상과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 “공군” 198호가 제작되어 가는 동안 우리 공군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F-16 신예기의 실전배치는 우리의 공군 전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는 뜻깊은 일이었는데, 이러한 우리 공군의 경사처럼, 앞으로 발간될 “공군”도 면모 일신하여 더욱 알차고 내용있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장병 투고(將兵 投稿) 환영

「공군(空軍)」은 공군(空軍) 유일의 장병교육(將兵教育) 및 교양지(教養誌)이며 장병 여러분 자신이 꾸미는 잡지입니다.

평소 병영생활과 자신의 일과(日課)를 통하여 느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여 보내주거나, 군발전(軍發展)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등을 모아 투고하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옥고(玉稿)를 계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예작품(文芸作品)도 물론 환영합니다.

투고요령(投稿要領)

• 매수(枚數) :

200자 원고지 20~40매 정도
단, 논문(論文)은 제한 없음

• 마감일자 : 제한 없음

• 보내실곳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정훈감실 「공군」
담당(우편번호 151-01)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으나, 부지불식 중에 적의 전략정 보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그런 일 없도록 책자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 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이명구
편집실 전화	: 69-3511, (호)-5241
인쇄	: 1977년 6월 25일
발행	: 1977년 6월 30일

3,700

제목 : 공군지 198호

1986년 8월 10일 인쇄
1986년 8월 15일 발행

발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 : 공군교재창